

議政白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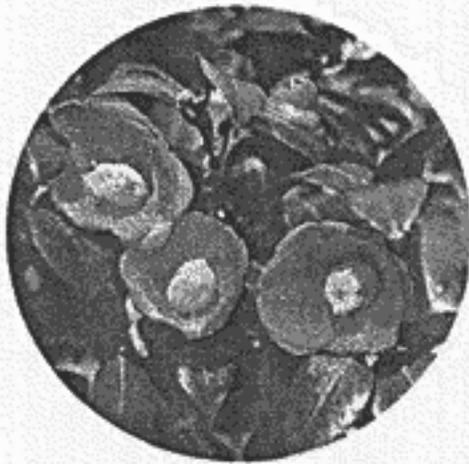
第 2 輯

(1995. 7. 1 ~ 1998. 6. 30)



高 敞 郡 議 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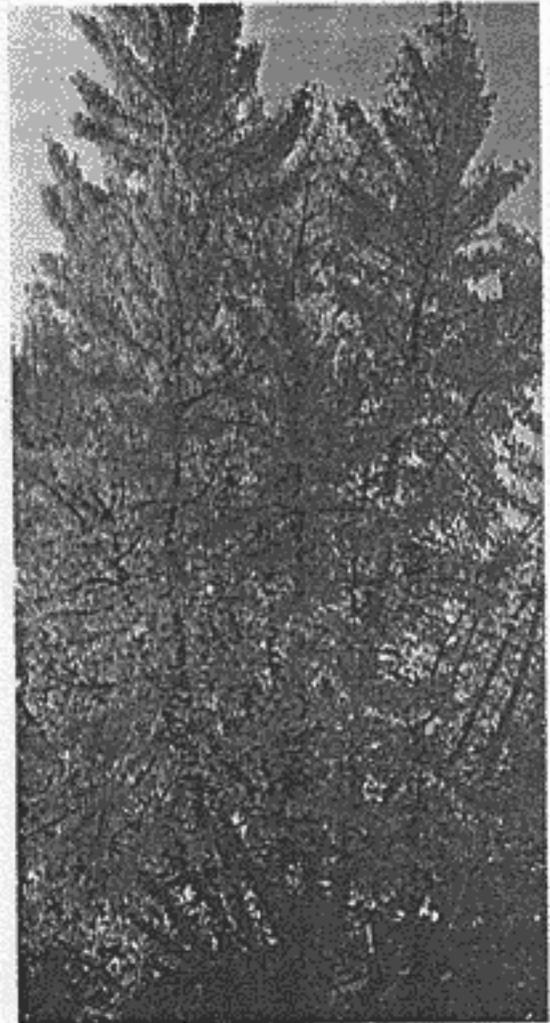
高敞郡의 상징



- 군화 : 동백꽃
- Gun Flower : Camellia



- 군조 : 비둘기
- Gun Bird : Pigeon



- 군목 : 은행나무
- Gun Tree : Ginkgo

- 군화 : 동백꽃 / 우리고장 특유의 충·효·열로 인내와 새 인재 배출을 상징
- 군조 : 비둘기 / 군민의 애항심과 온순함으로 군민평화와 화합을 상징
- 군목 : 은행나무 / 강한 의지와 청백, 순박으로 깨끗한 환경속의 군민임을 상징

高 敞 郡 議 會 旗



高敞郡民 憲章

우리 고창은 의와 예의 고장이다.
슬기를 모아 전통을 빛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실천요강을 밝혀
복지 고창건설의 지표로 삼는다.

1. 우리는 선인의 얼을 이어 정의에 서서 불의, 부정을 물리치고 밝은 사회를 이룩한다.
1. 우리는 내고장 전통국악을 중심으로 향토예술을 개발하여 예향의 명성을 내외에 선양한다.
1. 우리는 풍부한 농촌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촉진하여 부를 쌓아 국리민복에 기여한다.
1. 우리는 창의와 근면과 협동으로 생업을 개척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앞서가는 국민이 된다.
1. 우리는 인륜 도덕을 숭상하여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믿고 서로 돕는 도의 사회를 구현한다.

高敞郡議會 議員 倫理綱領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민의 뜻을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고창군의 발전과 주민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양심적이고 봉사적인 의원상을 정립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1. 우리는 의원으로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공사활동에 신뢰를 받는다.
1. 우리는 군민의 봉사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적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하여 창조적이고 부단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의회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히 대변하고 의회운영에 있어서 의원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하여 민주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한다.
1. 우리는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숭선수범하여 공선사후 일념으로 공사적 행위에 책임을 지고 소신있는 의원상을 실현한다.

연구 노력하는 선진의회 구현

고창군의회 의장 / 진 남 표



의형 1만불의 국민소득 이면에 비능률, 낭비, 저품 등 잘못된 우리의 자화상으로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절박한 중압감을 의연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에찬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안정되고 신명난 삶을 영속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내재된 편협과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고 화합과 내실을 도모하여 제2전국 정신으로 농축된 패러다임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은 예로부터 많은 유적과 전통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는 어우러진 멋과 감칠 맛나는 고창으로서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우고 보국안민을 주도해온 자랑스러운 고창입니다. 그러한 자긍심과 지역정서를 바탕으로 출발한 제2대 고창군 의회의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좌표를 정립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바른역사는 새역사 창조에 밑거름이며 삶의 척도를 조명할 수 있는 가치관을 창출합니다. 진실보다 고귀한 것이 없듯이 지난 3년간의 고창군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에 입각하여 보탬이나 꾸밈없이 진실하게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고창 발전을 선도해온 의원들의 땀과 정열이 굴절됨 없이 생생하게 전파되고 지역화합의 근간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과 더불어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써 군민과 눈높이를 같이하며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선진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함께 희망찬 고창건설 이끌어야

고창군수 / 이 호 중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난 3년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오신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중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의 산적한 현안사업 등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의정활동은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러한 의정활동이

뿌리를 내려 주민의식이 성숙되고 주민과의 화합을 통해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복지를 위한 각종 자치법규 등을 제정 정비하고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기능을 통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변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의회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함께 희망찬 고창건설"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적 상호협력과 이해로서 공동의 연구와 노력으로 고창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과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하겠습니니다.

그러한 때에 그간의 의정활동 기록을 책으로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방자치발전에 커다란 초석이 되어 고창군 의회사에 길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국회의원 / 정 균 환



제2대 고창군의회 의정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거 정권은 국민의식 수준이 낮아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방자치를 하기는 이르다거나 통일이 될 때 까지는 연기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지방자치가 있게끔 한 정당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이제 지방자치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해방후 50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민주주의적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신 군의원 여러분 및 이를 뒷받침한 군민들의 뜨거운 열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의 과감한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의회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도 수준에서나마 자치경찰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회는 군민들을 위해서 군수와 더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적인 군정, 군의회의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창군민들 정서에 맞는 고창발전 방향이 설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고창발전과 살림살이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고 서로 힘을 합쳐 추진토록 합시다.

저도 할 수 있는 심부름은 최선을 다하여 해 낼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집권여당 사무총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상 일을 맡고 보니 "민주개혁"과 "IMF 극복"이라는 두가지 큰 과제가 겹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난극복"과 "민주주의 발전"은 함께 이루는 것이라는 심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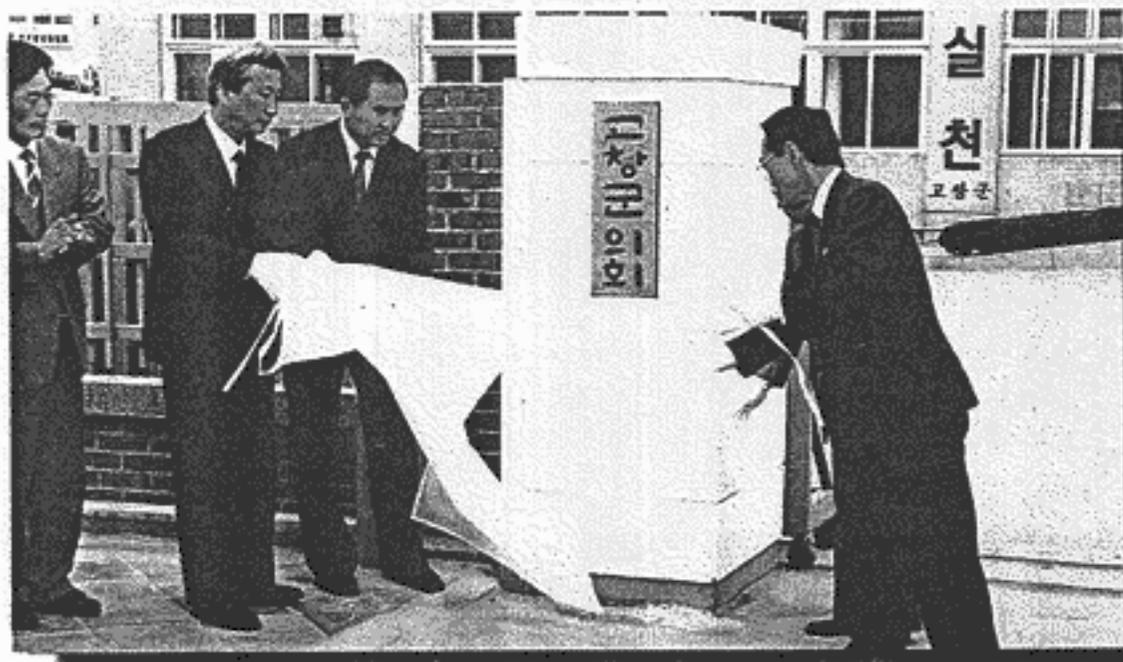
비록 몸은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국가개혁업무에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고창군의회에서 의정백서를 내는 것은 국난극복과 궤를 같이하는 뜻깊은 일입니다. 이번 의정백서가 지방자치 정착의 디딤돌이 되기를 빌면서 고창군의회에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시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대 고창군 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개원식



고창군의회 현판식

제2대 고창군 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개원식



고창군의회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군정보고



전라북도 교육위원 선출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제41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최



상임위원회(내무) 운영



상임위원회(산업건설) 운영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회의



영광 원자력 발전소 조사 특별위원회
전문인 초청 강연 및 토론회 개최



제2대 의원의 의정수행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 개최
지역현안사업등 의견 교환토론



자매결연 자치단체 부산 동래구
의회 의원 방문접견



지역실정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장 방문 및 군민과의 대화



고창군의회 의원 부인 간담회



제1회 전라북도 시군의원 친선 체육대회

현장답사

홍덕~신림간 군도 제23호선 확포장공사



아산면 마명지구 경지정리 배수로 점검



부안면 상포지구 축제식 양식장 조성



신림면 해암지구 생활용수 개발지역
현황 청취



어촌개발(동호 축제장 양식장)
사업장



심원면 용기지구 해안 방조제 공사 현장

무장면 첨단 시설하우스 사업현장



선운산 하천정비 사업예정지 문제점 지적



첨단 시설 하우스를 이용한 고소득 작목 방울토마토 재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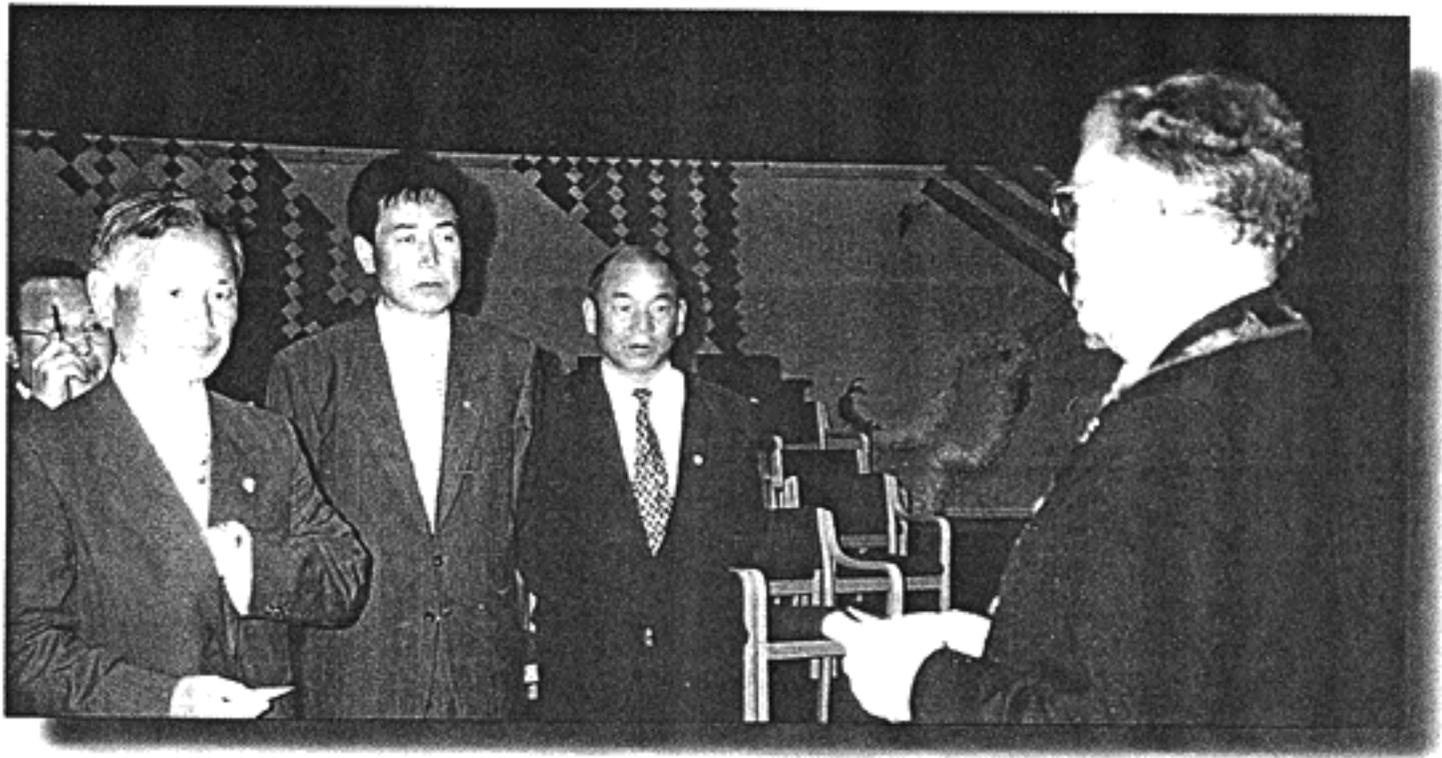


골재 채취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강구

해외연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의회 방문



전반기 의장단

('95. 7. 1. ~ '96. 12. 31.)



의장 : 이 돈 우



부의장 : 김 기 채



운영위원장 : 성 호 익



내무위원장 : 최 석 기



산업건설위원장 : 고 병 운

후반기 의장단

(' 97. 1. 1. ~ ' 98. 6. 30.)



의장 : 최 석 기



부의장 : 고 병 운



운영위원장 : 원 병 희



내무위원장 : 이 중 위



산업건설위원장 : 유 중 운

제2대 고창군 의회 의원 프로필



성명	陳南杓	선거구	고창읍
생년월일	1947. 2. 19.	직업	기타
주소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95-2번지		
학력	전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대 고창군 의회 의원 ○ 지역개발연구회 회장 ○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지역활성화대책특위 위원장 		
재임기간	'95. 7. 1. ~ '98. 6. 30.		



성명	金相弼	선거구	고창읍
생년월일	1942. 3. 16.	직업	상업
주소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90-1번지		
학력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고등학교 육성회장 ○ 고창여자고등학교 육성회장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장 ○ 고창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장 		
재임기간	'95. 7. 1. ~ '98. 6. 30.		



성명	柳佶承	선거구	고수면
생년월일	1955. 3. 25.	직업	농업
주소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문화마을 1-4번지		
학력	인천체육대학 졸업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수면 청년회장 ○ 고창군체육회 이사 ○ 고창군지역의료보험조합 감사 ○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재임기간	'95. 7. 1. ~ '98. 6. 30.		



성명	成 鎬 益	선거구	아산면
생년월일	1955. 4. 3.	직업	관광업
주소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건양A 나동 101호		
학력	전북대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대 고창군 의회 의원 ○ 고창군 체육회 이사 ○ 고창경찰서 선진질서 위원장 ○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95. 7. 1. ~ '98. 6. 30.		



성명	李 敦 禹	선거구	무장면
생년월일	1934. 1. 7.	직업	농업
주소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 198번지		
학력	성균관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대 고창군 의회 의원 ○ 무장향교 전교 ○ 고창군 삼향지편찬 부위원장 ○ 전반기 의장 		
재임기간	'95. 7. 1. ~ '98. 6. 30.		



성명	崔 錫 基	선거구	공음면
생년월일	1947. 3. 10.	직업	농업
주소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558번지		
학력	전북대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대 고창군 의회 의원 ○ 민주당 공음면협의회장 ○ 고창군 체육회 이사 ○ 후반기 의장 		
재임기간	'95. 7. 1. ~ '98. 6. 30.		



성명	魯炳烈	선거구	상하면
생년월일	1943. 1. 22.	직업	농업
주소	고창군 상하면 장호리 505번지		
학력	상하국민학교 졸업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농협 이사 ○ 고창경찰서 방범자문위원 ○ 상하중학교 육성회장 ○ 예결위원장 		
재임기간	'95. 7. 1. ~ '98. 6. 30.		



성명	李晚雨	선거구	해리면
생년월일	1954. 12. 29.	직업	농업
주소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 156번지		
학력	한국방송통신대법학과 재학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 J.C 회장 ○ 해리고 동문회장 ○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간사 		
재임기간	'95. 7. 1. ~ '98. 6. 30.		



성명	李鍾尉	선거구	성송면
생년월일	1955. 3. 27.	직업	농업
주소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79번지		
학력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수료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고창제1지구조직부장 ○ 평민당 중앙 대의원 ○ 고창 J.C 회장 ○ 후반기 내부위원장 		
재임기간	'95. 7. 1. ~ '98. 6. 30.		



성명	金起采	선거구	대산면
생년월일	1949. 2. 17.	직업	농업
주소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972번지		
학력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대 고창군 의회 의원 ○ 민주당 선거대책위원 ○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전반기 부의장 		
재임기간	'95. 7. 1. ~ '98. 6. 30.		



성명	全鍾烈	선거구	심원면
생년월일	1946. 9. 26.	직업	수산업
주소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629번지		
학력	서울 서라벌 고등학교 졸업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대 고창군 의회 의원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정읍지청 상임선도위원 ○ 고창군 산림조합 감사 		
재임기간	'95. 7. 1. ~ '98. 6. 30.		



성명	元丙喜	선거구	홍덕면
생년월일	1936. 7. 25.	직업	농업
주소	고창군 홍덕면 신송리 215번지		
학력	전북대 법학과 졸업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고창지부신용부장 ○ 민주당 지방발전협 홍덕협의회장 ○ 후반기 운영위원장 		
재임기간	'95. 7. 1. ~ '98. 6. 30.		



성명	高炳允	선거구	성내면
생년월일	1940. 5. 12.	직업	농업
주소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543번지		
학력	이리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대 고창군 의회 의원 ○ 전반기 운영위원장 ○ 민주당 중앙 대의원 ○ 후반기 부의장 		
재임기간	'95. 7. 1. ~ '98. 6. 30.		



성명	柳鍾潤	선거구	신림면
생년월일	1941. 2. 10.	직업	농업
주소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103번지		
학력	농협대학교 협동조합최고경영자반 수료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림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 신림농협장 4대역임 ○ 신림중학교 육성회장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재임기간	'95. 7. 1. ~ '98. 6. 30.		



성명	金俊衡	선거구	부안면
생년월일	1948. 10. 4.	직업	농업
주소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28번지		
학력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대 고창군 의회 의원 ○ 군정 자문위원 ○ 고창군체육회 이사 ○ 예산결산위원장 		
재임기간	'95. 7. 1. ~ '98. 6. 30.		

議政白書

第 2 輯

(1995. 7. 1 ~ 1998. 6. 30)



高 倣 郡 議 會

목 차

제 1 장 일반현황

제 1 절 고창군 일반현황	41
1. 고창군 연혁	41
2. 지역여건	43
3. 지역특성	43
4. 고창군 위치	44
5. 행정구역	45
6. 읍·면별 세대 및 인구	46
7. 재정규모	47
8. 역대 고창군수	48
제 2 절 고창군의회 기구 현황	49
1. 의회 기구	49
2. 의회 현황	50
3. 사무과 현황	52
제 3 절 고창군 선거 현황	53
1. 전국 선거	53
가. 국회의원 선거	53
1) 제헌의원 선거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3) 제3대 국회의원 선거	
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5) 제5대 국회의원 선거	
6) 제6대 국회의원 선거	
7) 제7대 국회의원 선거	
8) 제8대 국회의원 선거	
9) 제9대 국회의원 선거	
10)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11)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1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13)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1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15)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나. 참의원 선거	90
2. 지방선거	93
가. 도의원 선거	94
1) 제1대 도의원 선거	94
2) 제2대 도의원 선거	96
3) 제3대 도의원 선거	98
4) 제4대 도의원 선거	99
5) 제5대 도의원 선거	101
나. 군의원 선거	102
1) 제1대 군의원 선거	102
2) 제2대 군의원 선거	106
다. 읍·면의원 선거	109
1) 제1대 읍·면의원 선거	109
2) 제2대 읍·면의원 선거	116
3) 제3대 읍·면의원 선거	123
3. 교육위원 선거	125
4. 기타 선거	126
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26
나. 통일주체 대의원과 선거인.....	131
5. 고창군 정당활동 상황	135
가. 지구당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및 소멸상황	135
나. 지구당 등록상황	137
다. 연락소 등록상황	141

제 2 장 의원선거 및 개원준비

제 1 절 의원선거	143
1. 의원 선거 현황	145
2. 의원 당선자 현황	150
제 2 절 개원준비	151
1. 제1대 개원	151
1) 의회 사무기구 신설	
2) 지방자치 관련조례·규칙 정비	
2. 제2대 개원	152
1) 원구성	
가. 집회공고	
나. 의장단선거	

제 3 장 초대 고창군의회 운영

제 1 절 집회와 회기	157
1. 집회 일람	157
제 2 절 본회의 주요의안 처리상황	159
1. 주요의안 처리상황	159
제 3 절 의안 제출 및 처리	177
1. 종류별 의안처리 상황	177
2. 예산안 결의안	178

가. 회기별 처리 현황	178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현황	179
다. 예산·결산안 처리 상황	181
3. 조례안	182
가. 회기별 처리 현황	182
나. 유형별 조례안 처리현황	183
다. 조례안 처리 상황	183
4. 승인안	190
가. 회기별 처리 현황	190
나. 승인안 처리 현황	191
5. 건의 및 결의안	194
가. 회기별 처리 현황	194
나. 건의(결의)안 처리 현황	194
6. 의견 청취안	195
가. 회기별 처리 현황	195
나. 의견 청취안	195
7.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상황	196
8. 결의문 채택	203
가. 영광원전 주변대책 강구 및 5·6호기 건설반대 결의문	203
나. 지방업체 보호와 부실공사방지 촉구 결의문	205
다. 청운무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206
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중징계 요구 결의안	207
마. 직업전문학교 교과목 증설 건의안	208
바. 수박, 우리밀 피해면적 조사 및 보상 촉구 결의안	209
사. 원전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	210
아. 부부 간첩단 사건 규탄 결의문	212

제 4 절	군정질문과 답변	213
1.	군정질문과 답변내용	213
제 5 절	민원처리	320
1.	민원 처리 현황	320

제 4 장 기타 의정활동 사항

제 1 절	해외연수 및 사찰보고	333
1.	연수개요	333
2.	국가별 일반연수	334
제 2 절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342
1.	의정활동 총결산	342

제 1 장 일 반 현 황

제1절 고창군 일반현황

1. 고창군 연혁
2. 지역여건
3. 지역특성
4. 고창군 위치
5. 행정구역
6. 읍·면별 세대 및 인구
7. 재정규모
8. 역대 고창군수

제2절 고창군의회 기구 현황

1. 의회 기구
2. 의회 현황
3. 사무과 현황

제3절 고창군 선거현황

1. 전국 선거
2. 도의원 선거
3. 군의원 선거
4. 읍·면의원 선거
5. 교육위원 선거
6. 기타 선거
7. 고창군 정당활동 상황

제 1 절 고창군 일반현황

1. 고창군 연혁

삼한(三韓)시대에는 마한(馬韓)땅으로 모로비리국(牟婁卑離國: 1793년에 간행된 高敞邑誌에는 牟伊部曲이라고 기록)에 속했으며 삼국(三國)시대에는 백제의 모량부리현(毛良夫里縣: 지금의 고창 고수 아산), 송미지현(松彌知縣: 지금의 성송 대신 무장 일부 공음 일부), 상로현(上老縣: 상하 해리 삼원 무장 일부 공음 일부), 상칠현(上漆縣: 지금의 흥덕 신림 성내 부안 일부)의 4개현에 속하던 지역으로 757년(경덕왕 16년)에 모량부리현을 고창현(高敞縣), 송미지현을 무송현(茂松縣), 상노현을 장사현(長沙縣), 상칠현을 상질현(尙質縣)으로 개칭하였으며 보릿 고을을 상징하는 모양부리의 속명(俗名) 모양(牟陽)이 고창과 함께 불리어 왔다.

행정의 체제는 고창 무송 장사의 3개현은 무령군(武靈郡: 지금의 靈光郡)의 영현(嶺縣)이 되었고 상칠현은 고부군(古阜郡)의 속현으로 떨어져 있었다.

(註) : 백제와 고구려가 망한 후 唐에 의해 688년(新羅 文武王 8년)에 설치된 安東都護府 시절에 高敞縣은 無宮縣. 上老縣은 佐魯縣으로 불렸었다(참고문헌: 三國史記)

고창현은 고려시대 초기에는 고부군에 속했거나 갈려서 상질현의 감무(監務)가 상칠과 겸하여 다스리게 되었고, 장사현은 영광군에 속하였고, 무송현도 초기에는 영광군에 속하였고, 후에 장사 감무가 무송을 겸해서 다스렸다.

상질현은 고부군에 속했다가 그 명칭을 장덕(章德) 또는 창덕(昌德)으로 고쳐 감무를 두었고 고창을 겸임하였다.

1308년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자 왕명(王名)을 피해 장덕을 다시 흥덕(興德)으로 고쳤다.

조선(朝鮮)시대에 들어서는 고창현은 1401년(太宗 1년)에 감무를 두게 되어 흥덕의 겸임에서 풀려났으며 1455년(世祖 1년) 지방 방위 조직의 개편에 따라 나주진관(羅州鎭管)의 속읍(屬邑)이 되어 감무를 현감으로 고쳤고 속오군(東伍軍)은 입암산성에 속하였으며 후기에는 방리(坊里)가 8個面(川北, 川南, 古沙, 水谷, 五東, 五西, 大雅, 山內)에 1982가구(1759년)가 되었다.

1895년(高宗 32년) 5월 26일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勅令 98號)현(縣)에서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며, 1906년(光武 10년)에 전라북도예 편입되었다.

무송과 장사현은 1417년(太宗 17년)에 두 고을을 합병하여 무장현(茂長縣)으로 고치고 진

(鐵)을 두어 병마사(兵馬史)가 고을일을 겸임하게 하였는데 1423년(世宗 5년)에 병마사를 첨절제사(僉節制使)로 바꾸었다가 1482년(成宗 14년)에 현감으로 고쳤고 1455년에 나주진관의 속읍이 되었다.

후기에는 방리가 16면(面: 一東, 二東, 白石, 托谷, 瓦孔, 冬音岫, 大梯, 大寺, 蔦子山, 星洞, 元松, 青海, 五里洞, 心元, 上龍伏, 下龍伏), 6817가구(1759년도)가 되었다.

1836년(憲宗 2년)에 승격하여 군(郡)이 되었고 1895년에 지방제도의 개편에 의해 전주부(全州府)에 소속되었다가 1896년 다시 전라남도에 편입되어 2등군으로서 군세가 막강하였으며 1906년에 전라북도에 편입하였다.

홍덕현은 1392년(太祖 1년)에 겸임하던 고창과 갈라서게 되었고 1455년에 전주진관의 속읍이 되었으나 속오군은 입암산성에 속하였으며 감무를 현감으로 고쳤다.

후기에는 방리가 8면(縣內, 北, 一東, 二東, 一南, 二南, 一西, 二西), 2762호(戶: 1759년도)가 되었다.

1895년에 군으로 승격하였고 1906년에 고부군(古阜郡)의 부외(富外) 부내(富內) 두면을 병합하여 부안면(富安面)으로 개칭하였다.

일제(日帝)시대에는 1914년 3월 1일 부군(府郡) 폐합령에 따라 무장군과 홍덕군을 병합하였고 비능률적인 행정단위를 통·폐합하여 천북·천남면과 오동·산내, 고사면의 일부를 합하여 고창면(高敞面)으로, 고사·수곡면을 합하여 고수면(古水面)으로, 오동·오서면을 합하여 오산면(五山面)으로, 대아·산내면을 합하여 아산면(雅山面)으로, 일동·이동면을 합하여 무장면(茂長面)으로, 와공·동음치를 합하여 공음면(孔音面)으로, 대사·장자산면과 대제면의 일부를 합하여 대산면(大山面)으로, 성동·원송면과 대제면 일부를 합쳐 성송면(星松面)으로, 청해·오리동면을 합하여 해리면(海里面)으로, 심원은 심원면(心元面) 그대로, 상용북·하용북을 합하여 상하면(上下面)으로, 그리고 홍덕고을은 현내·북면을 합하여 홍덕면(興德面)으로, 일동·이동면을 합하여 성내면(星內面)으로, 일남·이남면을 합하여 신림면(新林面)으로, 일서·이서면을 합하여 벽사면(碧沙面)으로, 그리고 부안면을 합하여 17개면으로 줄었다.

1935년 3월 1일 폐합 및 구역 변경의 개편에 따라 오산면이 고창과 고수면으로 폐면 흡수되고 석곡면이 아산면과 무장면으로, 벽사면이 신림 부안 홍덕면으로 편입되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4개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전국후에는 1955년 7월 1일 고창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1읍 13개면이 되고 1968년 4월 23일 180개 이동(里洞)으로 개정되었다가 1971년에 다시 489개 분리동을 나뉘었으며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림면 재하리(堤下里)가 홍덕면에 편입되었으며, 1987~1988 兩년에 성송면 상금리가 대산면으로, 신림면 송암리가 홍덕면으로, 성내면 일부가 정읍군 입암, 소성면으로 각각 편입되었고, 해리·상하·무장면 등 3개면의 분리가 조정되는 등 1993년 현재 고창군의

행정조직은 1읍 13면 189개의 법정리, 533개의 행정리에 868개의 자연부락과 1,282의 반조적을 이루고 있다.

지난 1961년 10월 1일 당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읍면의 지방자치는 폐지되었고 1991년 군이 지방자치단체로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지역여건

본 군 동남은 노령산맥이 중첩하여 관내 방동산(742.8m), 방장산(640m), 문수산(620.5m), 고산(527.8m) 등의 높은 산세를 보이며 해발 500m이상의 준봉이 연하였고, 고찰로 유명한 조계종 24교구의 본산인 선운사가 있으며, 그 외 고수면의 문수사, 부안면의 소요사, 선운산도립공원 내에 크고 작은 암자들이 산재해 있다.

선운사 옆을 흐르는 주진천의 본류는 모든 산맥에서 발원하여 본 군의 중앙을 관류하여 서해에 유입하는 관계로 지세는 자연히 동남부가 높고 서북부가 낮은 평야를 이루고 있다.

하천 유역은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지로서 천연부여의 양질의 땅이며 해안은 전북 부안군계에 서 본 군 5개면(홍덕, 부안, 심원, 해리, 상하)과 접하고 있으며, 그 연장이 73.7km로서 5개소의 포구(후포, 사포, 상포, 동호, 구시포)마을이 있고 굴곡이 많으며 해상은 무진장한 해산물이 있어 수산 발전이 크게 기대되며 해안일대는 남한 유일의 군소 염전들이 산재하고 있어 국내 소금생산의 절반량에 가까운 몫을 하는 천일염의 산지이기도 하고 그 염도가 높아 질 또한 우수하다 함.

본 군 지형상의 표고는 40m이며 그 중 평야가 전체면적의 40.7%인 245,867,447㎡이며, 임야가 46.2%인 279,213,598㎡이고, 기타가 13.1%인 78,912,441.5㎡로서 총 603,993,486.5㎡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군이다.

3. 지역 특성

미곡위주의 전통적 농촌으로 연간 56만석 이상을 생산하고 또한 전국 최대의 야산이 개발되어 과수원예와 목수작물(수박, 무, 땅콩 등) 재배지로 발전하고 있고 이후에도 UR대체작물개발 잠재력이 큰 고장임,

- 관광자원으로는 국민관광휴양지인 선운산 도립공원내의 선운사 사찰을 비롯한 풍부한 문화재의 보존군임. 여름 한철의 휴식처로서의 구시포 및 동호해수욕장이 서해의 휴양 명승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지역개발면으로 서해연안의 간척, 양식어업의 적지이며, 대단위 야산개발로 당도높은 수박, 양질의 땅콩, 무우 등의 생산이 전국제일의 주산단지임을 자부하는 고장임.
- 조선조 단종원년(1453년)에 축성된 고창읍성(사적 145호)은 원형이 보존된 전국유일의 자연석 성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관광객의 계속 증가는 물론 학생들의 역사탐방 교육장과 안보교육의 장이기도 함.
- 한편, 인물의 고장으로서 金性洙(전 부통령), 白寬洙(독립운동가), 申在孝(판소리 창시자), 陳懿鍾(전 국무총리), 金相浹(전 국무총리), 金素姬(국악인 : 인간문화재) 등의 인물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함.

4. 고창군 위치

본 군은 전라북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군으로서 위도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극동(極東) : 신림면 가평리 동경 126° 46'
- 극서(極西) : 상하면 자룡리 동경 126° 25'
- 극남(極南) : 대산면 지석리 북위 35° 18'
- 극북(極北) : 부안면 봉암리 죽도 북위 35° 34'에 달하며 그 연장이 동서 31.0km이고 남북이 31.5km인데다 군 전체면적은 603.993km²(도 전체면적의 7.4%)이며, 동북은 본 군과 인접된 정읍시 소성면과 입암면, 부안군 줄포면이 위치하였고 동남은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삼계면, 영광군, 대마면, 법성면, 흥농읍과 인접하고 있다.

서북부 일대는 73.7km에 달하는 서해안에 연장을 이루고 있다.

본 군에서는 주요지역간의 거리를 보면 전주가 고속도로편으로 69km인데 정읍시(28km)를 거쳐서 가야 되며, 광주 48km 거리에 장성(24km)을 경유하고 영광읍이 30km, 법성면이 30km 간격을 두고 있다.

본 군 관내 구시포해수욕장이 39km, 동호해수욕장이 29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부안군이 40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안군에 위치한 변산국립공원 및 정읍시의 내장산 국립공원과 본 군의 관광지인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읍성, 석정온천, 구시포 해수욕장, 동호해수욕장 등과 연계를 이루고 있는 위치에 있다.

5. 행정구역

연도및 읍면별	구분	면적 (km ²)	구성비 (%)	읍	면	리 동		반	자연부락
						행정	법정		
1992		603.053	100	1	13	533	189	1,282	824
1993		603.993	100	1	13	533	189	1,282	868
1994		603.891	100	1	13	533	189	1,282	868
1995		606.777	100	1	13	533	189	1,282	868
1996		606.683	100	1	13	533	189	1,282	911
1997		606.874	100	1	13	539	189	1,293	911
고창읍		42.533	7.0	1	-	69	18	173	81
고수면		45.570	7.5	-	1	35	14	79	59
아산면		74.745	12.3	-	1	33	16	85	67
무장면		43.782	7.2	-	1	39	16	95	79
공음면		50.068	8.3	-	1	45	12	88	82
상하면		32.861	5.4	-	1	36	9	90	58
해리면		39.472	6.5	-	1	46	12	102	76
성송면		36.261	6.0	-	1	34	11	66	56
대산면		43.866	7.2	-	1	43	15	113	69
심원면		39.229	6.5	-	1	26	10	71	43
홍덕면		33.350	5.5	-	1	40	16	94	72
성내면		30.877	5.1	-	1	30	13	81	64
신림면		40.911	6.7	-	1	26	13	70	50
부안면		53.349	8.8	-	1	37	14	86	55

※ 자료 : 내무과

6. 읍·면별 세대 및 인구

연도별 읍면별	구분 세대 수	인 구 수			세대당인구
		계	남	여	
1992	26,305	95,858	47,384	48,474	3.6
1993	26,391	91,855	45,523	46,332	3.5
1994	26,157	88,038	43,356	44,482	3.3
1995	26,296	85,239	42,088	43,151	3.2
1996	26,408	82,656	40,732	41,924	3.1
1997	26,258	79,823	39,287	40,536	3.0
고 창 읍	6,137	20,668	10,167	10,501	3.4
고 수 면	1,322	3,946	1,926	2,020	3.0
아 산 면	1,594	4,714	2,374	2,340	2.9
무 장 면	1,824	5,460	2,699	2,761	3.0
공 음 면	1,590	4,790	2,403	2,387	3.0
상 하 면	1,402	3,992	1,940	2,052	2.8
해 리 면	1,859	5,410	2,607	2,803	2.9
성 송 면	1,149	3,309	1,636	1,673	2.9
대 산 면	2,217	6,550	3,271	3,279	2.9
심 원 면	1,350	4,227	2,063	2,164	3.1
홍 덕 면	1,766	5,223	2,523	2,700	2.9
성 내 면	1,190	3,475	1,744	1,731	2.9
신 림 면	1,305	3,750	1,845	1,905	2.9
부 안 면	1,553	4,309	2,089	2,220	2.8

※ 자료 : 기획실

7. 재정규모

1998년도 고창군의 예산규모는 총 17,453,137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64,575,725천원으로 96%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6,877,412천원으로 4%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에 있어 지방세 6,645,971천원, 세외수입 12,077,718천원, 지방교부세 45,636,000천원, 지방양여금 11,430,566천원, 보조금 92,662,882천원, 지방채 3,0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 16,973,965천원, 물건비 16,642,612천원, 경상이전 13,558,866천원, 자본지출 118,048,537천원, 융자및출자금 426,479천원, 보전재원 1,112,634천원, 내부거래 1,323,855천원, 예비비및기타 3,366,189천원으로 자본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비교적 건전한 재정으로 편성되었다.

□ 세입 세출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171,453,137	164,575,725	6,877,412
세입	지방세	6,645,971	6,645,971	
	세외수입	12,077,718	8,508,766	3,568,952
	경상적외수입	5,045,203	3,550,472	1,494,731
	임시적세외수입	7,032,515	4,958,294	2,074,221
	지방교부세	45,636,000	45,636,000	
	지방양여금	11,430,566	11,430,566	
	보조금	92,662,882	89,354,422	3,308,460
	국고보조금	69,846,869	67,215,266	2,631,603
	도비보조금	22,816,013	22,139,156	676,857
	조정교부금			
세출	지방채	3,000,000	3,000,000	
	인건비	16,973,965	16,973,965	
	물건비	16,642,612	12,518,279	4,124,333
	경상이전	13,558,866	12,619,662	939,204
	자본지출	118,048,537	117,616,574	431,963
	융자·출자금	426,479		426,479
	보전재원	1,112,634	189,880	922,754
	내부거래	1,323,855	1,323,855	
예비비및기타	3,366,189	3,333,510	32,679	

※ 자료 : 재무과

8. 역대 고창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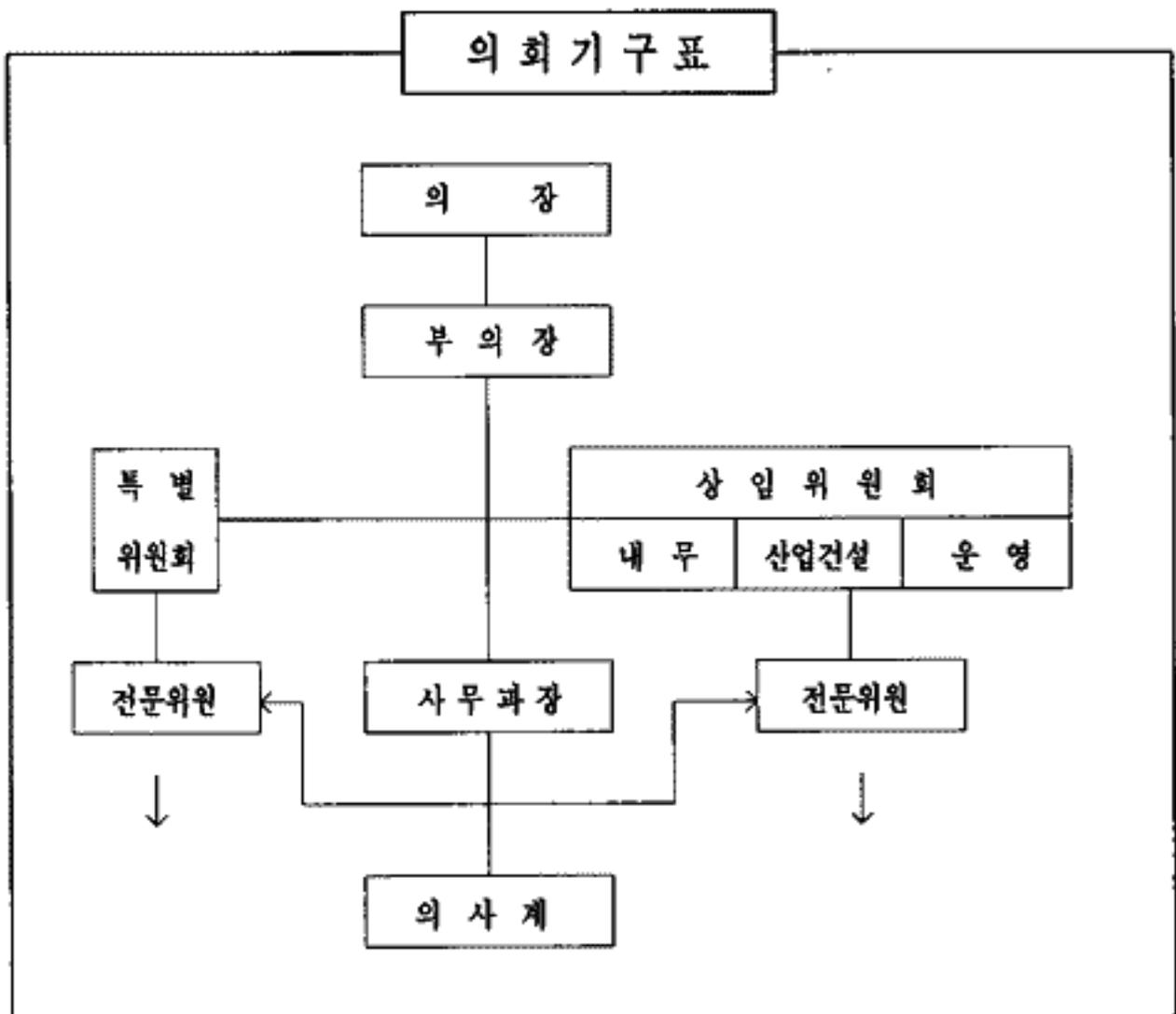
대수	성명	재임기간	대수	성명	재임기간
1	嚴柱完	45. 3. ~ 47. 4 (25개월)	22	李吉衍	70. 3. ~ 71. 8 (17개월)
2	許洪錫	47. 4. ~ 48. 3 (11개월)	23	李錫在	71. 8. ~ 73. 6 (22개월)
3	安普吉	48. 3. ~ 48. 12 (9개월)	24	權承周	73. 6. ~ 74. 12 (18개월)
4	오보균	48. 12. ~ 50. 2 (14개월)	25	金準洙	74. 12. ~ 75. 6 (6개월)
5	柳燦朝	50. 2. ~ 50. 5 (3개월)	26	曹相勳	75. 6. ~ 77. 2 (20개월)
6	엄병선	50. 5. ~ 50. 12 (7개월)	27	金年喆	77. 2. ~ 79. 5 (27개월)
7	白南祺	50. 12. ~ 52. 4 (16개월)	28	柳完淳	79. 5. ~ 80. 7 (14개월)
8	高在烈	52. 4. ~ 53. 12 (20개월)	29	宋載久	80. 8. ~ 81. 7 (11개월)
9	金倫相	53. 12. ~ 56. 12 (36개월)	30	柳秀澤	81. 7. ~ 82. 11 (16개월)
10	金仁德	56. 12. ~ 59. 1 (25개월)	31	柳萬永	82. 11. ~ 83. 4 (5개월)
11	金永信	59. 1. ~ 59. 8 (7개월)	32	高光淳	83. 4. ~ 85. 3 (23개월)
12	임재항	59. 8. ~ 60. 1 (5개월)	33	李尤甲	85. 3. ~ 88. 2 (35개월)
13	金寬默	60. 1. ~ 60. 5 (4개월)	34	朱尤哲	88. 2. ~ 88. 12 (10개월)
14	梁昌鉉	60. 5. ~ 60. 10 (5개월)	35	金完柱	89. 1. ~ 91. 1 (24개월)
15	柳南起	60. 11. ~ 61. 6 (7개월)	36	朴丙植	91. 1. ~ 91. 12 (11개월)
16	柳龍圭	61. 7. ~ 61. 12 (5개월)	37	崔忠一	91. 12. ~ 92. 7 (7개월)
17	李廷相	61. 12. ~ 62. 11 (11개월)	38	張鉉燾	92. 7. ~ 94. 1 (18개월)
18	申祥雨	62. 11. ~ 65. 3 (28개월)	39	梁圭章	94. 1. ~ 94. 12 (12개월)
19	柳凡秀	65. 3. ~ 66. 12 (21개월)	40	元鍾泰	95. 1. ~ 95. 6 (6개월)
20	崔完相	67. 1. ~ 67. 11 (10개월)	41	李昊鍾	95. 7. ~ 98. 6 (36개월)
21	崔瑋彩	67. 1. ~ 70. 3 (38개월)	42	李昊鍾	98. 7. ~ 현재

제 2 절 고창군의회 기구 현황

1. 의회 기구

의결기관인 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의장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 (내무, 산업·건설, 운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전문위원은 각 위원회 운영을 보좌한다.

고창군 의회기구는 다음과 같다.



2. 의회 현황

□ 제1대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총 15명이고, 고창읍 2명 13개면에서 각 1명씩이다.

초대 전반기 의장은 성송면 선거구의 반기진의원이며, 부의장은 고창읍 선거구의 김동훈의원
으로 그 임기는 1991. 4. 15~1993. 4. 14일자로 만료되었으며, 후반기 의장은 고창읍 선거구의
김동훈의원이고 부의장은 신림면 선거구의 류길규의원으로서 임기는 1993. 4. 15~1995. 6. 30일
까지이다. 김동훈의장이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1995년 3월 29일자로 의원직을 사퇴하여 부의
장 류길규의원이 1995. 3. 30~6. 30일까지 의장직무대리를 하였다.

고창군의회 제1대 의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려	비 고
의 장	金 東 勳	37. 11. 2	고창읍 읍내리 268-5	고 졸	
부 의 장	柳 吉 圭	29. 12. 8	신림면 무림리 139	대 학 원 졸	
의 원	陳 南 杓	47. 2. 10	고창읍 삼우연립 204호	대 학 원 수료	
"	李 鍾 云	46. 5. 10	고수면 상평리 636	고 졸	
"	崔 亨 植	52. 11. 8	아산면 중월리 335	"	93. 7. 15 퇴직
"	成 鎬 益	55. 4. 3	아산면 목동리 272	대 학 원 수료	93. 11. 9의원당선
"	李 敦 禹	34. 1. 17	무장면 강남리 198	국 졸	
"	崔 錫 基	47. 3. 10	공음면 칠암리 558	고 졸	
"	金 亮 鎭	48. 11. 4	상하면 검산리 433	고 졸	94. 5. 7 사망
"	吳 均 鎬	45. 12. 16	해리면 하련리 208	대 학 원 수료	
"	潘 琪 鎭	35. 1. 20	성송면 향산리 79	고 졸	
"	金 起 采	49. 2. 17	대산면 매산리 1079	고 퇴	
"	全 鍾 烈	46. 9. 26	삼원면 월산리 629	고 졸	
"	愼 世 宰	43. 6. 13	홍덕면 사천리 53	대 졸	93. 1. 26퇴직
"	金 白 洙	40. 3. 30	홍덕면 오호리 151	대 졸	93. 3. 26의원당선
"	高 炳 允	40. 5. 12	성내면 옥제리 543	고 졸	
"	全 在 準	32. 8. 5	부안면 중흥리 146	고 퇴	92. 2. 29퇴직
"	金 俊 衡	48. 10. 4	부안면 중흥리 128	대 졸	92. 8. 26의원당선

□ 제2대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총 15명이고, 고창읍 2명 13개면에서 각 1명씩이다.

전반기 의장은 무장면 선거구의 이돈우 의원이며 부의장은 대신면 선거구의 김기채 의원으로 그 임기는 '95. 7. 1~'96. 12. 31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후반기 의장은 공음면 선거구의 최석기 의원이고 부의장은 성내면 선거구의 고병운 의원으로 임기는 '97. 1. 1~'98. 6. 30까지의 장단으로 고창군의 지방자치 발전에 노력하였다.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비 고
의 장	崔 錫 基	47. 3. 10	공음면 칠암리 558	고 졸	
부 의 장	高 炳 允	40. 5. 12	성내면 옥제리 543	고 졸	
의 원	陳 南 杓	47. 2. 10	고창읍 교촌리 삼우연립 204호	대 학원수료	
"	金 相 弼	42. 3. 16	고창읍 읍내리 590-1	국 졸	
"	柳 吉 承	55. 3. 25	고수면 황산리 문화마을 1-4	대 졸	
"	成 鎬 益	55. 4. 3	고창읍 읍내리 건양A나동 101	대 학원수료	
"	李 敦 禹	34. 1. 7	무장면 강남리 198	국 졸	전반기 의장
"	魯 炳 烈	43. 1. 20	상하면 장호리 505	국 졸	
"	李 晚 雨	54. 12. 29	해리면 하련리 156	방 통 대 제	
"	李 鍾 慰	55. 3. 27	성송면 계당리 79	중 퇴	
"	金 起 采	49. 2. 17	대산면 매산리 1079	대 퇴	전반기 부의장
"	全 鍾 烈	46. 9. 26	심원면 월산리 629	고 졸	
"	元 丙 喜	36. 7. 25	홍덕면 신송리 215	대 졸	
"	柳 鍾 潤	41. 2. 10	신림면 무림리 103	중 졸	
"	金 俊 衡	48. 10. 4	부안면 증흥리 128	대 졸	

3. 사무과 현황

고창군의회의 사무과는 전문위원과 1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명으로 사무과장 1명 전문위원 3명과 의사계장 1명, 정규직원 8명, 청원경찰 1명, 사무보조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사무과 직원 현황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의회 사무과	사무과장	안재식	
"	전문위원	양병항	
"	"	염규용	
"	"	오동근	
"	의사계장	정재평	
"	직원	최창규	
"	"	조병균	
"	"	김광용	
"	"	권오택	
"	"	오운탁	
"	"	봉원엽	
"	"	염숙희	
"	"	김현숙	
"	"	이천수	
"	"	김명자	
"	"	조은상	

제 3 절 고창군 선거 현황

1. 전국 선거

가. 국회의원 선거

1) 재헌의원 선거

1948년 2월 UN소총회에서는 “가능지역내의 선거 실시에 관한 권한”을 UN한국위원단에 부여하는 결의를 함에 따라 한국위원단은 바로 가능지역인 남한내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미군정당국이 선거준비와 집행을 맡았다.

군정당국은 먼저 1947년 9월에 공포된 남조선과도 정부 법률 제5호 ‘입법의원선거법(立法議員選舉法)’을 골자로 해서 잠정적인 국회의원선거법(군정법령 제175호)을 제정하였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선거권은 금치산 선고 받은 자, 반민족행위자 등을 제외하고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에 구별없이 국면으로 만 21세에 달한 자에게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다.
- ② 피선거권은 ‘각 선거구마다 1인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고, 선거구의 확정은 부(府), 군(郡) 및 서울시의 구(區) 단위로 하여 인구 15만 미만은 1개구, 인구 15만 이상에서 25만 미만은 2개구, 인구 25만 이상에서 35만 미만은 3개구, 인구 35만 이상에서 45만 미만의 부(府)는 4개구로 하되 동법(同法) 부표(附表) 제1호에 의하여 총 200개의 선거구를 확정하되 법정선거구획정주의(法定選舉區劃定主義)를 따랐다.
- ③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으로서 만 25세에 달한 자면 누구에게나 부여하였다.
- ④ 비밀투표를 보장하였으며,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으로 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였다.
- ⑤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1948년 5월 10일에 총 20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치안관계로 인하여 북제주 갑구와 울구가 선거를 실시할 수 없었다. 좌익계와 남북협상파(南北協商派)가 불참하고 많은 정당, 사회단체들이 선거 반대를 주장하였지만 무려 49개의 정당들이 참여함으로써 난립하게 되었다. 선거인의 명부에 등록된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여하여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는데,

투표결과를 보면 총의석의 27.5%인 55석을 차지한 대한독촉국민회(大韓獨促國民會)가 제1세력으로 부각되었으며, 선거 전에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던 한민당(韓民黨)은 당중진을 포함한 입후보자들이 대거 탈락하고 91명의 후보 중에서 29명만이 당선되어 총의석의 14.5%에 머물고 말았다. 그 외에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 등의 군소정당(群少政黨)이 30석 이상의 당선자를 내었고 무소속이 85석을 차지하여 총의석의 42.5%를 얻었다. 이는 원내에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하였다.

고창군의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국회의원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선거구는 갑구와 을구로 나뉘었다. 갑구에는 고창읍 비롯하여 고수면, 성송면, 무장면, 대산면, 공음면, 상하면이 그리고 을구에는 아산면, 해리면, 심원면, 부안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이 포함되었다.

갑구에는 무소속의 金永東후보가 총 유효투표의 27.3%를 얻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또한 을구에서는 한민당(韓民黨)소속의 白寬洙후보가 총 유효투표의 67.5%를 차지함으로써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무소속의 김영동은 조선전업사원의 경력을 가진 노동자 출신으로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급진적인 노선을 추종한 세력들이 지하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가 출생한 무장면은 그 당시에 고창군 인민위원장이 그곳에서 나올만큼 진보성향이 강했던 지역이었다.

을구에서 당선된 白寬洙는 일본 명치(明治)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사장을 역임한 당시의 인물로서 그 명성이 자자하였다. 해방이 되자 그는 1946년에 비상국민회의에 참여하여 민주입법위원의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백관수는 초대 법사위원장과 헌법기초의원으로서 헌법을 비롯한 건국 초기의 각종 법률 제정에 참여하여 건국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1950년 6·25가 발발하자 그는 그의 자택에서 공산군에 의해 남북당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 62세였다.

제헌의회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고
林芳郁	남	43	고창읍 읍내리	농업	대졸·농업	한국민주당	6,963	
李達春	·	59	·	·	대졸·농업	대한독촉농민총맹	2,091	
吳毅均	·	66	·	·	한수10년·군수2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6,188	
金基采	·	41	·	회사원	대졸·산업사4년	무소속	6,499	
金永東	·	42	무장면 무장리	실업	종졸·조선전업사원	·	8,317	당선

□ 고창군 읍구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고
白寬洙	남	60	성내면 덕산리	입법 의원	일본명치대졸 동아일보사장	한국민주당	19,787	당선
朴洪根	·	47	홍덕면 홍덕리	농업	보전졸·면장5년	무소속	4,448	
愼輔載	·	44	·	·	대중퇴·국민회장	대한독립조선국민회	5,062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제헌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으로 끝나면서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를 위해 국회는 1950년 4월에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舉法)을 새로이 제정하였는데, 그 까닭은 제헌의원 선거에 적용되었던 선거법이 시한적(時限的)이었던 것으로 미군정(美軍政)과 함께 소멸되었기 때문이었다.

새 선거법은 미군정(美軍政)하에서 제정되었던 제헌의회의원 선거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단지 달라진 사항이라면 선거구를 200개에서 210개로 늘린 것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조항을 일부 변경시킨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선거권 중에서 달라진 내용을 보면 이 때에는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効)가 거의 만료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해제하였으며 현역군인, 법관, 검찰관, 심계원(審計員), 감찰원, 경찰관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였다.

피선거권 제한 규정외에는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의 원칙, 소선거구와 다수대표제, 그리고 행정구역 및 인구에 의한 선거구 법정劃定主義(法定劃定主義)등 선거제도상의 중요사항은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존속되었다.

제2대 총선거는 남북협상과를 포함하여 제헌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그 선거결과 대통령지지자들의 당선이 크게 줄어 들었고 무소속(無所屬)이 전체의석의 60%인 126석을 차지함으로써 이승만정권의 지지기반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승만으로 하여금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도록 만들었다.

1952년 1월 정부는 대통령직선제개헌안(大統領直選制改憲案)을 내놓았으나 국회는 이를 찬성 19표, 반대 143표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부결시켰다. 국회를 통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이승만은 직접 경찰력을 동원하고 원외자유당(院外自由黨)을 앞세워 개헌안부결반대(否決反對)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헌법에도 없는 국회의원 소환운동(召還運動)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야당은 오히려 개헌정족수(改憲定足數)를 한 사람 넘는 123명의 연서(連署)로 의원내각제안(議員內閣制案)을 제출하여 그에 맞섬으로써 두 세력간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승만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다시 한번 직선제개헌안을 제출하여 야당의 의원내각제에 맞서는 한편, 직선제개헌을 위한 전격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지방의회의원선거(地方議會議員選舉)와 계엄령(戒嚴令)이었다.

서둘러서 시행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원외자유당의 사람들이 당선됨으로써 국회에 대항할 기반을 구축하고, 공비를 소탕한다는 구실로 선포한 계엄령은 직선제개헌안을 통과시킬 의도였다. 계엄령 하에서 의원내각제개헌을 주장한 의원들을 검거하는 등 일대 혼란을 일으킨 후에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연금한 상태에서 모든 법절차가 무시된 가운데 기립표결(起立表決)로서 대통령직선제(大統領直選制)와 양원제(兩院制)를 골자로 하는 소위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부산정치파동(釜山政治波動)이다.

고창군의 제2대 국회의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고
林芳郁	남	43	무장면 무장리	국회의원	중졸 1대 국회의원	국민당	2,373	
金秀學	·	54	고창읍 읍내리	회사중역	경도계대졸 상공부차관	무소속	10,999	당선
鄭泰煥	·	49	성송면 하고리	농업	한문수학 고창중학이사	·	7,532	
嚴柱昇	·	56	고창읍 읍내리	무직	중졸·공무원	·	895	
金永守	·	30	고수면 외촌리	상업	명치대학상과졸 회사원	·	사퇴	
姜無	·	53	대산면 지석리	실업	일본동양대학졸 면장 만주이민계척단장	·	3,125	
吳毅均	·	67	고창읍 읍내리	농업	한문수학·군수	국민당	1,146	
金基采	·	42	고창읍 읍내리	회사사원	대졸·회사원	무소속	4,860	
林暢郁	·	38	고창읍 읍내리	농업	대졸·인쇄업	·	3,941	
鄭淳默	·	40	성송면 계당리	광업	국졸·면서기	·	사퇴	

□ 고창군 읍구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고
朴 洪 根	남	48	홍덕면 사천리	농업	국졸·면장	무소속	5,678	
徐 廷 天	·	43	심원면 월산리	수리조합 도지부장	수원농고졸 도농지계량과장	·	1,326	
元 成 容	·	44	홍덕면 신송리	회사원	대졸·토건업	·	2,500	
金 奉 洙	·	56	고창읍 읍내리	인쇄업	중졸·인쇄업	국민당	1,022	
白 寬 洙	·	61	성내면 덕산리	국회 의원	일본명치대졸 동아일보사장	민국당	6,098	
愼 鑑 頊	·	48	홍덕면 사천리	항공 사업	동경항공전문대졸 대한항공사장	무소속	6,360	당선
李 龍 雨	·	59	해리면 성문	농업	한문수학	·	1,150	
朴 柱 瓚	·	29	홍덕면 홍덕리	·	대졸·교원	·	2,700	
洪 淳 熙	·	37	고창읍 읍내리	회사원	대졸·공무원	·	4,821	
姜 錫 東	·	41	해리면 금평리	농업	전문대졸·농경농감	·	2,750	
金 宇 成	·	25	부안면 수남리	·	고대예과3년제화 전국고학생연맹장	·	879	

갑·을구 다같이 후보들이 난립하였다. 갑구의 경우 10명이, 을구의 경우는 11명이 각기 경합을 벌여 국회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헌국회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그 당시의 열망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경력을 보더라도 매우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학벌의 경우 한문수학에서 대졸자까지 다양하였고 직업에 있어서도 농업을 위시로 해서 고급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범위가 심대함을 알 수 있다.

선거결과 갑구에서는 일본에서 경도대학을 졸업하고 상공부차관을 지낸 무소속의 金秀學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의 37%를 얻음으로써 당선되었다.

한편 을구의 경우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이곳의 선거전은 제헌의원을 지낸 바 있는 전국적 인물의 국민당의 백관수 후보와 재력이 튼튼한 무소속의 愼鑑頊후보로 좁혀졌으며 이들 간의 선거전은 치열해졌다. 당시 이승만의 후광을 업은 신용욱은 튼튼한 재력을 바탕으로 백관수 후보진영을 공략하여 262표라는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되었다. 국가적 인물인 백관수의 탈락은 그 당시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일로 인하여 고창 사람들은 세간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고도 한다.

3) 제3대 국회의원 선거

1952년의 '발취개헌(拔萃改憲)'에 의해 국회는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參議院)의 양원(兩院)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등과 같은 국내외의 혼란된 정세로 인하여 참의원은 구성되지 못하고 1954년에 제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도 참의원 선거는 실시되지 못하고 민의원 의원선거만이 개성시를 포함한 휴전선 이북지역의 7개 선거구를 제외한 20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헌법 상으로는 양원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민의원 의원만을 선출하였기 때문에 1950년의 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제도상의 변화는 없었지만 자유당(自由黨)과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이 각각 공천자를 내어 우리의 선거사상 처음으로 입후보자 공천제를 실시하는 소위 정당정치(政黨政治)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이한 사실은 전체투표의 36.8%를 얻은 자유당(自由黨)이 114석을 차지한 반면 전체 투표의 47.9%를 얻은 무소속이 67석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소선거구 다수투표제의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선거구의 크기가 모두 다르고 후보자의 득표 차이에는 관계없이 최다득표자를 뽑음으로써 소수지지에 의한 다수당(多數黨)이 출현하기 쉽다는 단점이 드러난 것이다.

고창군의 경우 갑구에서는 7인의 후보가 경쟁을 벌인 반면 을구에서는 3인의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되었다.

갑구의 경우 자유당의 공천을 받은 陳懿鍾후보와 무소속의 鄭世煥후보의 싸움이었다. 젊은 지식인으로서 집권당의 공천을 받은 진의종 후보는 젊은층에 파고들어 지지기반을 확보해 나갔으나 대산·무장 동 갑구지역에 가장 많은 성씨를 가진 정세환 후보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선거결과 진의종 후보는 10,458표를 얻었고 정세환 후보는 10,713표를 획득함으로써 정세환 후보가 255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진의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갑구의 선거는 혈연관계가 투표행위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진다.

을구의 경우는 자유당의 현역의원인 慎鑄項후보와 무소속의 洪淳熙후보간의 경쟁이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라고 소문날만큼 이승만과 깊은 관계를 가진 신용욱은 탄탄한 재력으로 재선되었다. 그는 6,977표차로 홍순희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당선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고
陳 誌 鍾	남	32	무장면 무장리	변호사	경성제대법과졸 상공부광부장	자유당	10,458	
徐 炯 南	·	48	고창읍 읍내리	의사	세브란스의전졸 의학박사	국민당	1,443	
鄭 世 煥	·	38	대산면 읍촌리	농업	일본정치대학졸 가사예종사	무소속	10,713	당선
金 永 久	·	53	무장면 성내리	회사원	동양대학졸 대한날염공사장	·	2,789	
姜 無	·	57	대산면 지석리	농업	일본동양대학졸 면장 5년	·	1,155	
林 暢 節	·	42	고창읍 읍내리	·	조도전대학졸 금융조합장	·	4,563	
申 三 勳	·	47	고창읍 읍내리	·	국졸·대한노총 고창군연맹장	대한노총	1,079	

□ 고창군 을구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고
備 鍾 項	남	52	서울종로구 청운동	민의원 의원	대졸 민의원의원	자유당	16,103	당선
洪 諱 熙	·	41	고창읍 읍내리	회사원	일본명치대졸 홍해산업(주)전무	무소속	9,126	
閔 品 植	·	55	서울종로구 4가	·	조도전대졸 동양맥주감사역	·	3,801	

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1956년의 제3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집권세력과 야당은 다같이 1958년에 실시되는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에 따른 선거법개정이 중요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1952년 발췌개헌 이후의 헌법은 국회의 구성을 양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50년에 제정된 의회의원 선거법은 단원제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참의원 선거를 위한 법개정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었다.

야당은 선거위원회와 공정한 구성, 입후보자의 등록절차 간소화, 선거의 공명성 확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여당은 이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 공영제의 실시, 선거자금의 제한, 선거사범의 벌칙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두 개정안은 그 내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법안을 둘러싼 파란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여야는 80여차례나 협상을 벌여 단일안을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1958년 1월 민의원 의원선거와 참의원 의원선거를 분리한 '민의원 의원선거법(民議院議員選舉法)'을 공포하였다.

1958년의 민의원 선거법과 1950년의 국회의원 선거법을 비교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의 확정·설치방법 및 당선인 결정, 투표방식 등 투표제도상의 기본골격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에 의해 투표참관인(投票參觀人)의 권한 확대, 각급 선거위원회의 의원 중 일정수의 정당에 의한 추천 등이 보완 또는 강화되었다. 한편으로 여당의 주장에 의해 후보난립을 막기 위한 기탁금제(寄託金制)와 선거공영제가 실시되고 선거비용과 선거운동이 대폭 제한되었다.

참의원 의원선거법은 선거구를 각 시(市)와 도(道)단위로 하여 인구 60만에 2인씩 선출하는 것과 선거구 수를 30개, 의원정수를 70인으로 할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외의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민의원 의원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선거는 법공포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는 1958년 5월 2일에 실시하여 3대 국회의원선거 때 보다도 30개 선거구가 늘어난 233개의 선거구에서 총선거인의 90.6%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선거 후에 법원에 제기된 선거소송이 105건에 달했고 여론에 못이긴 자유당이 당선된 1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선언할 만큼 행정력이 총동원된 부정선거였다.

선거결과 특징적인 것은 첫째, 자유당이 126석을, 민주당이 79석, 통일당이 1석을, 그리고 무소속이 27석을 차지함으로써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수립된 것이다. 둘째, 1956년의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나타난 여촌야도(興村野都)의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자유당이 126석을 차지하긴 하나 이 중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26개 시지역에서 당선된 의석은 13석에 불과하였고, 민주당의 79석 중에서 43석은 도시지역에서 얻은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3대선거에서와 같이 제1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소선거구 다수투표제의 이점을 이용하여 자유

당은 득표율 42.1%에 의석수는 54.1%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민주당과 무소속은 34.2%와 21.5%의 득표율을 하였으나 실제의 의석수는 33.9%와 11.6%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고창군의 민의원선거의 양상은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현상 즉 '여촌야도(餘村野都)'가 들어맞지 않았다는데 있다.

갑구의 경우에는 무소속의 鄭世煥후보가 재선되었고, 을구의 경우는 야당인 민주당의 洪淳熙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정세환 후보가 무소속이면서도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정씨문중(鄭氏門中)의 지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본다. 정씨 자신이 소탈하여 인심을 잃지 않고 아직도 혈연이 투표행위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풍토에서 그의 당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을구의 경우에는 재력이 약한 민주당의 홍순희 후보가 재력이 강한 여당의 신용욱 후보를 누를 수 있었는데 이는 홍순희에 대한 동정과 민의원으로서의 신용욱 후보가 보여준 실적에 유권자들이 실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력을 쥔 신용욱의 권력남용은 지지자들의 반감을 사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그의 지지자들이 이탈하여 그는 고배를 마실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고
陳誌鍾	남	36	무장면 무장리 260	변호사	대졸·회사원	자유당공천	10,296	
李範	·	54	서울 종로구 원남동 28-4	회사원	상고졸·정당인	민주당공천	2,965	
曹秉厚	·	36	고창읍 월산리 482-5	농업	고려대졸·대한상무회전북지회장	무소속	9,673	
鄭世煥	·	42	대산면 울촌리 174	민의원	일본대졸 민의원	·	10,946	당선

※ 金秀學은 제4대 국회의원선거의 고창군 갑선거구에 후보등록 하였다가 사퇴함.

□ 고창군 을구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고
慎鐘項	남	56	서울 종로구 청운동 51-21	민의원	비행전문졸업 민의원	자유당공천	14,543	
洪淳熙	·	45	고창읍 읍내리87	회사원	대졸·정당인	민주당공천	15,321	당선

5) 제5대 국회의원 선거

1960년 4·19의거로 이승만이 사임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붕괴되고 제2공화국 수립을 위한 개헌작업이 진행되었다. 1960년 6월 15일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의 원 가운데 208대 3이라는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제3차 개정헌법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법이 마련되었는데 헌법과 선거법 모두 선거 부정을 막고 자유·공명선거를 보장하는 내용을 보장하였다.

우선 헌법에서 중앙선거위원회(中央選舉委員會)가 처음으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민의원은 선거위원회법(選舉委員會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선거관리기구의 명실상부한 독립을 통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자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선거법도 자유·공명선거의 실시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제4대 민의원선거에 적용되었던 협상선거법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색을 지닌다.

- ① 입후보 등록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천장제도(推薦狀制度)를 폐지하였다.
- ② 선거권을 더욱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選舉人名簿)는 매년 1월 1일 현재로 그 구역내에서 6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기본선거인명부(基本選舉人名簿)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그 구역내에서 60일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작성하는 보통선거인명부(普通選舉人名簿)를 병용토록 하였다.
- ③ 부재자(不在者)의 현지투표(특히 軍에 있어서의)가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부재자투표제도(不在者投票制度)를 채택하였다.
- ④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참관인제도(投票參觀人制度)를 강화하고 릴레이식 투표방지를 위한 투표용지 일련번호삽입제(一連番號插入制)를 채택하였다.

자유·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의 변경을 제외하면 선거제도상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4·19의거가 젊은 학생들과 청소년층의 힘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헌법에서 선거권을 21세에서 20세 이상으로, 그리고 참의원 피선거권을 35세에서 30세 이상으로 각각 내렸다.

제5대 민의원선거는 7월 29일에 전국 233개 선거구에서 총선거인의 84.3%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제1공화국에서의 선거와는 달리 경찰과 관권의 개입은 없었으나 일부에서는 매표매수행위(賣票買收行爲)가 자행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선거결과 예상대로 민주당이 압승하였는데 민주당은 총의석의 75.1%인 175석을 차지하였다. 한편 자유당은 2석밖에 얻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와해되었고 그 외에 사대당(社大黨)이 4명, 한민당(韓民黨)과 통일당(統一黨)이 각 1명씩 당선자를 내었다. 그리고 무소속은 전체의석의 21.1%인 49석을 얻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 자체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었고, 또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多數代表制)가 강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 데에 있다고 보여진다. 민주당은 총투표의 41.7%를 얻었으나 의석에서는 총의석의 75.1%를 얻었고, 무소속의 경우는 총투표의 46.8%를 얻었으나 의석에 있어서는 21.1%를 얻는데 그쳤다. 또한 사대당(社大黨)은 총투표의 6%를 얻었으나 의석에서는 1.7%를 얻었고, 자유당은 27%의 득표에 0.9%의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고창군의 민의원선거의 경우 갑구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柳 津후보가 당선되었고, 을구에서는 무소속의 金相欽후보가 각각 당선되어 고창군에서는 민주당이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다.

갑구에서 당선된 유 진 후보는 서울대 영문학 교수로 그 당시 그의 저서인 《구문론》이 대학입시생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다. 영문학을 전공한 대학교수가 민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예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이다. 그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4·19이후의 제2공화국 주체가 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도 있지만 대학교수로서의 신선한 이미지와 적지않은 유씨종친들의 지지가 또한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이나 근소한 표차이로 정세환 후보에게 연속적으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진의종 후보는 이번에도 유진 후보에게 25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또 다시 패배하고 말았다. 한편 불리한 자유당의 소속으로 출마한 정세환 후보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4,998표라고 하는 상당수의 득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때까지도 혈연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제5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성 명	성 별	연 령	주 소	직 업	학 력 및 경 력	소 속 정 당 단 체 명	득 표 수	비 고
鄭世煥	남	44	대산면 읍촌리 174	민의원	일본대학전문부졸 민 의 원	자유당	4,998	
金宇震	·	50	서울 마포구 아현동 463-28	회사장	민주일보사장 대한행정신문사장	무소속	2,707	
金亨石	·	35	성송면 행산리 415	회사원	해양대학교졸 해양대학조교수	·	2,899	
裴祥基	·	38	고창읍 읍내리 185	양조업	성균대정경대수료 도 의 회 의 장	·	5,668	
陳 懿 鍾	·	38	나주군 나주읍 교동리	회 사 취창업	경성제대법과졸 상공부광무국장	·	8,775	
柳 津	·	54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137	출판업	연 회 전 문 졸 경동지사대학영문부졸 서울대 교수	민주당	8,800	당선

□ 고창군 을구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고
元永喜	남	31	전주시 풍남동 83-8	농업	고려대학교 졸업 삼남일보편집위원	무소속	2,016	
金孝南	·	37	홍덕면 후포리 495	·	단국대학1년중퇴	·	6,792	
李炳淵	·	26	서울시 종로구 화동 90	기자		민주당	4,736	
洪淳熙	·	47	고창읍 읍내리77	민의원		무소속	4,636	
愼鐘頌	·	58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2-21	회사장		·	5,907	
金相欽	·	39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25	회사원		·	7,648	당선

을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상홍 후보가 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친 김성수의 후광이 크게 작용하였다. 김성수는 2대 부통령을 역임하였고 동아일보와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고창이 배출한 전국적 인물이었다.

김상홍 외에 그 당시 부친의 후광을 업고 정계에 진출한 대표적인 예로는 조병옥의 아들인 조운형과 신익희의 아들인 신하균을 들 수 있다. 당시에 정계의 '삼총사'라고 불리운 김상홍, 조운형, 신하균은 큰 기대를 모았다.

김상홍은 그 자신은 고창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그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정치문화를 반영한 일단으로,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후대가 거두어 들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기대가 그의 자식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6) 제6대 국회의원 선거

5·16군사정부(軍事政府)는 제5차 개정헌법을 공포한 후 민정이양을 위한 대통령선거에 적용될 선거법을 제정하여 1963년 1월 16일 공포하였다. 국회의원선거법의 경우 8월에 제1차 개정을 거쳐 11월 26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했다. 선거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선거사범의 피선거권 회복기간을 연기하고 병역기피자(兵役忌避者)에 대해서 형의 집행 완료 내지는 면제된 후 7년간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였다.
- ② 선거구(選舉區)를 지역구(地域區)와 전국구(全國區)의 2종으로 하고 지역구는 과거의 233개의 선거구를 변경하여 131개구로 하고 전국구는 지역구의 3분의 1인 44석으로 하였다.

그리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병용하기로 하였다.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운영에 있어 각 정당이 후보를 미리 서열적으로 확정하여 공표하는 엄정구속명부제(嚴正拘束名簿制)를 채택하였다.

- ③ 후보자의 정당추천제(政黨推薦制)를 실시하였다.
- ④ 선거운동은 정당 본위로 하고 개인의 선거운동은 제한하였으며, 공영선거운동(公營選舉運動)을 확장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제3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비례대표제는 사표(死表)를 구제하고 전국적인 인물이나 직능대표(職能代表)를 선출한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이 비례대표제는 양당정치를 실현한다는 명분아래 제1당과 제2당에게 유리한 배분방식(配分方式)을 가지고 있었다. 제1당은 득표비율(得票比率)이 100분의 50을 넘으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으며, 득표율이 100분의 50미만일 때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국구 의석의 2분의 1을 배정받게 되었다. 제2당은 제3당 이하 정당들이 득표한 총득표의 2배를 초과할 때는 제1당에 배분되고 남은 잔여의석을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으나, 이를 초과하지 못할 때에는 득표비율에 관계없이 잔여의석의 3분의 2를 배분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당과 제2당에게 배분되고 남은 잔여의석은 득표비율에 따라 제3당 이하에 배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봉쇄조항(封鎖條項)을 두어 지역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전국구 의석배분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다.

1963년 11월 26일 전국 131개 지역구에서 제6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2년 7개월 동안의 군정기간(軍政期間)동안 혁명정부를 책임진 朴正熙가 민주공화당의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민정당의 尹潽善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민주공화당은 유리한 조건에서 난립한 야당을 상대로 하여 국회의원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총선거인의 72.1%가 투표에 참가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33.5%, 민정당은 20.1%, 구민주당계(舊民主黨系)의 민주당(民主黨)은 13.6%, 국민당은 8.8%, 자유민주당은 8.1%, 그리고 이외의 7개의 군소정당들이 도합 13.9%의 득표를 하였다. 그러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특징이 나타나 공화당은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전국구 의석의 68%에 해당하는 88석을 차지하였다. 민정당의 경우는 지역구 의석의 20.6%인 27석을 얻어 득표비율이 의석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정당에 있어서는 의석점유율이 득표비율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다. 공화당(共和黨)은 전국구 의석에서도 유리하게 배분받았다. 33.5%의 득표율로 44석의 총의석 중에서 절반인 22석을 배정받았다. 그리고 제2당인 민정당(民正黨)은 20.1%의 득표율로 전국구 의석의 31.8%인 14석을 배정받았다. 그 외에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각각 5석과 3석을 배정받았고 나머지 정당은 모두 당선자 3명과 득표비율 5%의 조건에 미달되어 전국구 의석이 돌아가지 않았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62.11.10)	선거인수	투표자 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48	183,385	89,827	64,084	1,903	65,987 (2,467)	23,840	73.5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명	주소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자유민주당	金秀學	고창읍 읍내리 202	대졸	2대 국회의원	3,241	
신흥당	孫明燮	고창군 심원면 302	정읍농고졸	육군특수대근무	1,524	
국민의당	李炯淵	서울 서대문구 292-450	대졸	언론인	9,382	
보수당	陳斗銀	홍덕면 홍덕리 352	고졸	홍덕중학원장	2,181	
민주당	姜澤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7의 558	대졸	초대 참의원	7,357	
민정당	金相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5	연전졸	제5대 민의원	16,680	당선
추풍회	安判童	홍덕면 홍덕리 560	독학	9지구당조직책	1,361	
민주공화당	成正基	서울 신당동 372-444	대졸	삼양교역 주식회사 상무이사	16,531	

고창군의 경우에는 선거구에 있어서 종전에는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으나 선거법의 개정으로 1인만을 선출하도록 변경되었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해가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져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73.5%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무효투표는 선거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0여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권자들 중에 무학자가 그 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촌야도'의 현상이 아니라 야당인 민정당 김상훈 후보가 민주공화당의 성정기 후보를 149표차로 힘겹게 누르고 당선되었다.

김상훈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제5대 국회가 5·16으로 말미암아 단명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 보내야 한다는 동정여론과 인촌 김성수의 후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아주 아깝게 패배한 성정기 후보는 1963년 12월 5일 개표(開票) 및 계표부정(計票不正)을 들어 선관위원장 정진홍(鄭鎭洪)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964년

12월 10일에 원고의 소취하로 간주되어 재판은 종결되었다. 따라서 김상홍 후보의 당선은 유효하게 되었다.

7)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제6대 국회는 1963년에 실시된 선거법에 여러가지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개원 초부터 지적하여 오다가 그 임기가 끝날 무렵인 1966년 12월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은 이전 선거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다만 몇 가지 운용상의 문제점만을 시정하였다.

첫째, 선거인명부 사본교부제의 신설

둘째, 선거운동 제한규정의 일부 완화

셋째, 투표통지표의 교부제도 변경

넷째,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구역표를 새로 정립한 것 등이다.

이와 같이 선거법에 의하여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참여율은 76.1%였으며, 집권당인 공화당은 선거직전 통합야당(統合野黨)으로 출발한 신민당(新民黨)을 누르고 압승을 거두었다. 공화당은 50.6%의 득표율로 지역구 102석, 전국구 27석을 차지하였고, 신민당은 32.7%의 득표율로 지역구 28석, 전국구 17석을 각각 얻었다. 이들 외에 9개의 정당이 참여하여 총합계 16.7%의 표를 얻었으나 전국구 배분방식에 따라 대중당만 유일하게 단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였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양당제가 아닌 1.5의 정당체제가 확립되어 거대여당의 독주가 예견되었다.

고창군의 경우 투표율은 82.6%로 전국 투표율의 76.1%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무효투표도 투표율의 증가와 더불어 많아졌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 경우에는 1,903표였으나 7대에 이르러서는 3,419표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집권당이 과열하게 유권자를 투표에 참여시킨 결과라고 보여진다. 즉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모르는 무학자들을 투표에 참여시킴으로써 무효표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선거의 결과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이 다른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고창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민주공화당의 愼鏞南후보는 5대, 6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상홍 후보와 12,151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신민당의 김상홍 후보와 통일사회당의 孫明燮후보는 당선된 신용남 후보의 부위원장인 丁奎濶을 걸어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원인은 모든 경찰력과 행정조직 그리고 공화당 조직이 삼위일체가 되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이고, 또한 부정선거에 의해 이루어진 당선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원고가 제시한 소장에 기록된 부정사실을 몇가지만 기술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같은 해 5월 3일에 치뤄진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인의 총수는 부재자신고인 223명을 포함하여 86,311명이었던 것이 6월 8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때에 이르러서는 불과 1개월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인데 부재자신고인 3,910인을 포함하여 10,024인이나 급증한 96,335인으로 사전에 결탁하여 격자자로서 투표가 불가능한 자는 물론이고 그 중세에 혹은 5년 내지는 10년전에 사망한 유령자까지 유권자로 조작하여 6·8국회의원선거 명부에 등재된 부재자신고인 3,910명을 제외한 순증가분 7,337명의 유령유권자 등의 투표 통지표와 5·3대통령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령유권자 약 6,000명의 통지표를 합한 약 13,000여표 가운데 약 8,000표의 통지표를 면직원 각리의 참사 및 공화당원 등으로 하여금 미리 확보케 하여 이들 모두 사위(대리)투표케 함으로써 당시 공화당의 공천을 받은 신용남 후보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케 하여 당선될 수 있었다.
- ② 공화당 조직은 행정조직을 총동원하여 전유권자(全有權者)의 성분을 분석하고 조사케 하고 신민당의 공천을 받은 김상훈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투표통지표 8,000매를 매당 100원 내지 200원씩 매수하여 고의로 기권하게 함으로써 김상훈 후보가 득표할 8,000표를 사전 득표방해를 하였다.
- ③ 각 면장, 부면장 등은 면직원과 리참사들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시부터 투표통지표 교부시까지 신민당의 김상훈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 약 2,000인에게 고의로 선거인명부에 누락케 하였거나 투표 통지표를 교부치 않음으로써 신민당 공천자인 김상훈 후보의 득표 2,000여표를 사전에 방해하는 부정을 자행하였다.
- ④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나타난 총 3,910인 중에 약 50%에 해당하는 2,000인의 거소를 각기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장들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허위로 기재하고 신고케 하여 부재자신고인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지역구 선거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시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투표용지를 일괄 회수해서 그중 거소가 전혀 다른 투표용지 2,000통 가운데 500통은 다시 반송되어 오도록 하고 잔여 1,500통은 당시 공화당의 공천자인 신용남 후보에 기표해서 회송용 봉투에 넣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우송함으로써 선거관리상의 부정을 감행하였고 따라서 피고 신용남은 1,500표를 부정득표하였다.
- ⑤ 흥덕면 제1투표구 동사리 죽정부락 건거인 120인에게 일금 3만원을 지급 또는 지급키로 약속하고 공화당에서 이들에게 공개투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흥덕면 제3투표구, 해리면 제1·2투표구 등 도합 약 2,120인의 선거인에게 공개투표하도록 하는 불법·부정을 감행하였다.
- ⑥ 해리면 제1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은 신민당의 공천자인 김상훈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에게 위원장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를 배부함으로써 원고가 투표할 100표를 무효

표가 되게 하는 부정을 자행하였다.

이같은 내용들 이외에도 많은 부정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당선무효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위의 ①항에서 지적한 부정사실 가운데 피고 신용남이 관의 협조아래 유령유권자 등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사위(대리)투표를 함으로써 부적득표한 ①항의 8,000여표와 ②항의 원고가 득표할 8,000여표의 투표용지를 매수함으로써 고의로 기권케 하여 피고가 그 반사적 이익을 본 8,000표, 그리고 ③항의 원고가 득표할 2,000표를 투표통지표를 교부치 않았거나 또는 선거인 명부에 아예 누락시킴으로써 역시 피고 신용남 후보가 그 반사적 이익을 보게된 2,000표, 또한 ④항의 1,500표의 부재자신고인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피고 신용남 후보란에 기표해서 우송하여 부정득표한 1,500표, 그리고 ⑤항의 원고가 득표할 표를 무효표가 되게 한 100표 등 이를 종합해 보면 총 19,600표를 피고 신용남 후보가 부정득표를 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득표할 표를 감소시킴으로써 그 반사적 이익을 본 것이므로 차점자인 원고와 표차 12,151표를 감한 7,449표차로 도리어 피고 신용남 후보가 낙선할 것이 분명하므로 당시 공화당의 신용남 후보의 당선결정공고가 무효임이 명백하다는 것이었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선거 전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받아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보궐선거는 1968년 9월 24일에 실시되었는데 후보자가 지난 선거보다 2인이 늘어나서 모두 7명이 경합을 벌였다. 투표율은 82.6%에서 75.1%로 낮아졌으나, 무효표는 3,419표에서 4,933표로 증가하였다. 후보등록에 있어서는 자유당의 정세환 후보와 통일사회당의 손명섭 후보가 재출마하지 않고 들어갔으며 정의당의 林均錫후보, 자민당의 孫一權후보, 통일사회당의 俞永峯후보, 그리고 서울에서 3·4대 민의원을 지낸 바 있고 대통령에 출마하여 낙선한 통일당의 吳在泳후보가 가세하였다.

선거결과 대중당으로 나온 신용남 후보가 32,563표를 얻어 신민당의 김상훈 후보를 3,519표차로 누르고 재승리하였다. 이 보궐선거에서 당락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지난 선거와는 달리 당선자와 차점자간의 표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제7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66.10.10)	선거인수	투표자 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49	196,414	96,335	76,131	3,419	79,550 (3,236)	16,785	82.6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명	성 명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 고
자 유 당	鄭世煥	대산면 174	대 졸	제3·4대국회의원	1,269	
민 중 당	陳斗銀	홍덕면 홍덕리	고 졸	홍덕중학원장	891	
신 민 당	金相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5	대 졸	국 회 의 원	27,804	
민주공화당	愼鑄南	홍덕면 사천리 69	대 졸	대한민국항공사장	39,955	당선
통일사회당	孫明燮	삼원면 302	고 졸	통시당중앙당임위원	570	

제7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 구 수 (62,111.10)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49	196,414	96,505 (5,172)	67,485	4,933	72,418 (4,166)	24,087	75.1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명	성 명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 고
신 민 당	金相欽	읍내리 196	연 전 졸	제5·6대국회의원	29,044	
정 의 당	林均錫	부안면 433	대 졸	정의당·중앙당당위원	1,832	
대 중 당	愼鑄南	홍덕면 사천리 69	대 졸	대한민국항공사장	32,563	당선
자 민 당	孫一權	극성면 신기리 306	대 졸		969	
민 중 당	陳斗銀	홍덕면 353	고 졸	63·67년 국회의원입후보	292	
통일사회당	俞永峯	영등포구 봉천동 46	중 졸	통일당당무위원		사퇴 9. 21
통 한 당	吳在泳	서울 마포동 195-2	보통교4년 중 퇴	3·4대 민 의 원	2,785	

8)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대 국회의원선거는 압승으로 끝났으나 선거과정에서 저질러진 부정행위들로 말미암아 선거 후 정국은 쉽게 정상화될 수 없었다. 야당은 선거가 모두 부정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일부만을 인정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의견이 팽팽이 맞선 가운데 여야는 제3차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안에 합의하였다.

선거법의 개정에 있어서 야당은 기본적으로 관권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고 투·개표의 부정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선거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구 15개구가 증설되는 것을 제외하면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운동의 방법, 투표용지의 형식·인쇄·배부방식, 개표참관과 무효표의 기준 등 선거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즉 선거제도의 기본골격에는 변화가 없고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제3차 개정을 거친 선거법은 1969년 10월 17일의 소위 삼선개헌안(三選改憲案)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고 난 다음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 국민투표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문제로 여야간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막후 접촉에서 다시 선거제도의 개선이 모색되었다. 제4차 개정선거법은 1970년 12월 22일 공포되었는데 역시 관권의 개입과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개정의 목적이었다. 이에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사의 기공식(起工式), 단합대회, 야유회, 종친회 등의 금지, 선거기간 중 공무원의 통상적 업무외의 출장금지 등의 규제조항이 첨가되었다. 그리고 선거구가 다시 7개구 증설되고 전국구 의석배분(議席配分)요건 중 종래의 지역구 3석 이상을 5석 이상으로 개정하여 배분기준을 높였다.

제7대 국회에서 2번이나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여 1971년 5월 25일 제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투표율은 73.2%이었다.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은 관권의 개입이 제7대 선거보다는 줄어들었으나 금력선거(金力選舉)라고 불리울 만큼 돈에 의한 매수가 극심하였다.

선거결과는 제1당의 신민당(新民黨)이 42.5%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지역구에서 65석과 전국구 24석을 각각 얻어 지역구 153석과 전국구 51석 총 204석의 43.5%를 차지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다. 반면 집권당인 공화당은 48.9%의 득표율로 지역구에서 86석, 전국구에서 27석을 얻어 총 의석의 55.4%인 113석만 얻음으로써 그 세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양당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여당에 버금가는 야당의 부상은 박정희 정권에 새로운 정치적 위협이 되었다.

고창군의 경우 투표율은 79.9%로 전국의 수준인 73.2% 보다는 높았다. 그리고 무효투표는 3,161표로 아직도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경우에는 민주공화당의 신용남 현역의원과 신민당의 진의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安鍾燁후보가 출마하여 결국 신민당의 진의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진의종 후보는 유효투표 66,805표 중에서 40,765표를 얻어 61.0%를 차지함으로써 여유있게 당선될 수 있었다. 이로써 진의종 후보는 제3대 국회의원에 3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출마하여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이어 제4대와 제5대에 제도전하였으나 역시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제8대에는 야당의 공천을 얻어 실로 오랫동안 선량의 꿈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국회의원이 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단행된 유신(維新)으로 말미암아 국회가 해산되어 국회의원직을 내놓는 비운을 맛보아야 했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62.11.10)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56	188,803	87,612 (3,552)	66,805	3,161	69,966 (3,359)	17,646	79.9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명	주소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민주공화당	愼鑄南	홍덕면 사천리 69	대졸	제7대국회의원	23,012	34.4%
신민당	陳懿鍾	서대문구 부암동 210-27	대졸	상공부차관	40,765	61.0%
민중당	安鍾燁	대산면 산정리 467	고졸	신민당10지구당 선전부장	1,435	2.1%

9) 제9대 국회의원 선거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이라는 정치적 대변혁이 실시됨으로써 전국에 걸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따라서 모든 정당활동이 중지되고 국회가 해산되었으며, 그 기능과 권한은 비상국무회의(非常國務會議)로 넘어갔다.

대통령선출도 중전의 직접선거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이 대통령의 추천에 의거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헌정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간접선거를 헌법에 의하여 보장하는 사례를 남겼던 것이다.

간접선거제도의 도입 외에도 유신초기의 선거제도는 그 이전의 것과 비교하여 여러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유신헌법이 확정·공포된 직후 제정된 6년 임기의 지역구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법에 잘 나타나 있으며, 새로운 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철저

한 공영제 선거운동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전국구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73개 선거구로 하여 선거구에서 2인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 ② 선거구 확정과 관련하여 지역구의 기준인 인구수 조항이 없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지역구를 나누었으나 유신체제하에서는 지역구의 확정에 있어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고 각 선거구의 인구를 감안하여 이를 확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구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못되었다.
- ③ 제3공화국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유신체제하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 ④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채택하여 개별적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벽보의 첨부, 선거공보의 발행, 후보자가 참가하는 합동연설회에서만 하도록 하였다.
- ⑤ 정당원과 선거운동 관계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유신체제하의 선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1구 2인의 중선거구제의 채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선거제도는 대정당(大政黨)에게만 유리한 1구 1인의 소선거구가 지닌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으나 '동반선거'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여당과 야당의 공천이 사실상 당선과 직결됨으로써 공천권을 가진 정당간부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지역민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기준 인구수의 선택은 선거구간의 대소(大小)의 격차를 크게 벌림으로써 자칫 평등선거의 원칙을 어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집권당에 의하여 선거구가 멋대로 그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

실제적인 예를 들면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대 선거구인 서울 성북구의 선거인수는 532,514명으로서의 최소 선거구인 강원도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선거인수인 107,266명보다 다섯 배나 많은 것이었다. 그리고 야당의 지지기반이 되어온 대도시의 선거구가 큰 선거구인 점을 고려한다면 인구수의 삭제는 여당에 의하여 선거구가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거제도에 의하여 1973년 2월 27일에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선거는 총선거인의 72.9%가 참여하는 비율을 보였다. 선거결과 집권당인 공화당은 전체 38.7%의 득표율로 73명의 당선자를 냈으며, 제1야당인 신민당은 32.5%의 득표율로 52명, 민주통일당은 1.4%의 득표율로 2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그리고 무소속에서는 19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고창군의 경우는 선거법에 의하여 고창군과 부안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다. 지리적으로나 교통편 및 교류의 측면에서 보면 고창군과 정읍군이 같은 선거구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인구수에서 보면 고창군과 부안군이 비슷하여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인수를 보면

고창군은 84,133명이고 부안군은 75,426명으로 고창군이 8,707명이 더 많다. 이와 같이 인구수에서 보면 고창군과 부안군이 같은 선거구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그 당시 혁명의 주체세력으로 실세이었던 김제 출신의 장경순과 부안군의 이병옥이 김제군과 부안군이 같은 선거구로 될 경우 집권당의 공천을 받을 때 둘 중의 하나가 탈락될 수도 있다는 계산에서 김제군과 정읍군을 같은 선거구로 묶고 고창군과 부안군을 한 선거구로 묶게 된 내력이라고 보여진다.

고창군과 부안군의 투표율을 보면 고창군 77.5%이고 부안군은 71.7%로써 고창군의 투표율이 다소 높았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된 것처럼 '동반당선'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부안군에서는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의 李炳玉후보가, 고창군에서는 제1야당인 신민당의 金相欽후보가 출마하였고 무소속으로는 부안군 출신의 金正基후보와 고창군 출신의 陳懿鍾후보가 연고지의 표를 의식하고 출마하였다. 그러나 집권당과 제1야당의 '동반당선'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김상흠 후보는 제일 저조한 득표를 기록하여 낙선하고 말았다. 그가 낙선하고 진의종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제5대와 제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흠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알만큼 알았다는 인식과 평상시에는 지역의 관리에 소홀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중앙에서 공천을 얻어 내려오는 낙하산식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식상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진의종 후보는 제3·4·5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근소한 표차로 계속 낙선했다가 제8대에 들어 제1야당인 신민당의 공천을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으나 의원직 1년여만에 유신의 대변혁으로 국회의원직을 사임해야 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동정이 그를 당선되게 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진의종은 한국전력이나 상공부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고창군 출신들을 등용하여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평소에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군 명	읍면수	투표구수	인 구 수 (729,30)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25	146	339,458	159,569 (4,849)	116,548	2,790	119,338 (4,078)	40,221	74.8
고창군	14	78	181,262	84,133 (2,476)	63,588	1,657	65,245 (4,678)	18,888	77.5
부안군	11	68	158,196	75,526 (2,373)	52,960	1,133	54,093	21,333	71.7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명	성 명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 고
민주공화당	李 炳 玉	부안군 부안읍 소외리 105	대 졸	6·7·8대 국회의원	39,684	당선
신 민 당	金 相 欽	서울 종로구 가회동 27-1	대 졸	5·6대 국회의원	23,664	
무 소 속	金 正 基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56-1	동경고등공학 운전기과졸	교 원	24,655	
무 소 속	陳 懿 鍾	서울 서대문구 부암동 210-27	경 성 제 국 대 졸	제8대 국회의원	28,545	당선

10)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제10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1년여 남짓 남겨놓고 제9대 국회는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였다. 1972년에 제정된 선거법의 기본골격에는 변화가 없었고 지엽적인 것들만 개정되었다. 즉 선거구의 증설, 합동연설회 횟수의 증가, 두·개표 참관인의 범위 및 선정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것이었다.

제10대 국회의원선거는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유신체제에 관한 논쟁이 일체 금지된 상태에서 1978년 12월 12일 치뤄졌다. 지역구도 제9대 때보다 4개가 증설되어 총 77개구였다. 선거결과 공화당이 전체 지역구 의석의 44.2%인 68석을 차지하였고, 제1야당인 신민당은 39.6%인 61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민주통일당은 1.9%인 3석에 머물렀다.

그러나 득표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민당이 32.8%로서 공화당의 31.7%보다 1.1%를 앞서게 되었다. 야당이 여당보다 득표율에 있어서 앞선 것은 총선사상 처음있는 일로써 이는 국민의식의 성장과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군 명	읍면수	투표구수	인 구 수 (78.10.31)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25	148	313,324	154,494 (4,980)	128,055	2,157	130,212 (4,845)	24,282	84.3
고 창군	14	78	164,386	79,266 (2,359)	63,977	1,215	70,192 (4,845)	9,074	88.6
부 안군	11	70	148,938	75,228 (2,261)	59,078	942	60,020	15,208	79.8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명	성 명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 고
민주공화당	李 昊 鍾	고창군 성내면 신상리 436	고 대 상 과 졸	은성산업(주) 대 표 이 사	36,478	당선
신 민 당	陳 懿 鍾	서울 서대문구 부암동 210-27	경 성 대 법 과 졸	제 8 · 9 대 국 회 의 원	34,831	
민주통일당	金 一 凡	부안군 부안읍 151-1	원 광 대 졸	전북제6지구당 위 원 장	5,748	
무 소 속	金 鍾 洙	부안군 부안읍 263	전북법정대 정치외교과졸	신민당·중앙당 경 리 부 장	7,346	
무 소 속	朴 龍 基	부안군 부안읍 431-3	남 원 농 고 졸	전 북 곡 물 협 회 장	36,941	당선
무 소 속	鄭 均 桓	고창군 대신면 광대리 439	성균관대 정치외교과졸	無	6,675	

고창군의 경우 제9대 선거처럼 선거구에는 변화가 없이 부안군과 한 선거구가 되어 선거가 치루어졌다.

투표율은 고창군이 88.6%로서 부안군의 79.8%보다 8.8%가 높았다. 무효투표 역시 고창군과 부안군이 거의 비슷하게 1,000여표를 기록하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은 고창군 출신의 李昊鍾을 추천하였고 제1야당인 신민당 역시 고창군 출신의 진의종 현역의원을 추천하였다. 또한 무소속으로 鄭均桓이 후보로 출마하였다.

부안군 출신으로는 재력이 좋은 것으로 소문난 무소속의 朴龍基와 역시 무소속인 金鍾洙, 그리고 민주통일당의 金一凡이 출마하여 고창군 출신이 3인, 그리고 부안군 출신이 3인으로 자기 지역을 기반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고창군의 경우 집권당과 제1야당이 맞붙는 결전장이어서 두 후보에 표가 고르게 분산되었으나 부안군의 경우는 박용기 후보가 부안 출신의 타후보들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많은 득표를 할 수가 있었다.

투표결과 무소속의 박용기 후보가 36,941표를 얻어 최고 득표자로 당선되었으며 고창 출신의 이호종 후보는 36,478표를 얻어 같은 고창군 출신의 신민당의 진의종 후보보다 1,637표를 더 얻어 차점자로 당선되었다.

11)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됨에 따라 12월 6일 유신헌법의 절차에 따라 崔圭夏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최규하 정부는 출범 즉시 '위기관리정부(危機管理政府)'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헌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한 후 새로 구성될 정부에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5·17광주항쟁(光州抗爭)이라는 유혈사태가 벌어지자 최규하 대통령은 사임하고 다시 유신헌법의 절차에 따라 계엄당국을 책임지고 있던 金斗煥장군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제5공화국 수립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확정된 후에 10월 26일 이를 공포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그때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던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가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하여 1981년 1월 29일 공포하였다. 새로운 선거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유신헌법에서와 같이 지역구의 기준인구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즉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확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 ② 선거구는 지역구와 전국구 제도를 병용하며 전국구원의 정수는 지역구의 2분의 1로 한다.
- ③ 지역구는 92개를 두되 1개 지역구에 의원 2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한다.
- ④ 전국구 의석의 배분에 있어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지역구 선거의 의석수에 있어 제2당 이하의 정당에게 그 의석의 비율 순으로 배분한다.
- ⑤ 전국구에서의 당선은 각 정당이 중앙선건관리위원회에 미리 제출한 전국구 후보자 명단에 기재된 순위에 의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선거법이 지니는 특징은 선거구의 획정문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제출된 명부상의 순번에 따라 당선이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관한 것이다.

우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기준인구수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유신체제하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선거구와 작은 선거구 간의 크기에 있어 많은 격차가 생겼다. 예를 들면 서울의 최대 선거구인 동대문구의 인구는 511,208명인데 반하여 최소 선거구인 전북의 진안(鎭安), 무주(茂朱), 장수(長水)는 불과 100,544명으로써 동대문구의 선거구 5분의 1에 불과한 많은 격차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대도시에 야당의 세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당이 매우 유리하도록 짜여졌다고 할 수 있다.

제5공화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국구 비례대표제(全國區比例代表制)라고 할 수 있다.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제3공화국에서도 채택된 바 있으나 제5공화국에서 채택한 비례대표제는 몇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로 제3공화국에서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의석이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로 배정되었으나, 제5공화국에서는 2분의 1을 배정하여 전국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둘째로 제3공화국에서는 제1야당에게 전체 전국구 의석의 최소 50%에서 최대 3분의 2까지를 배정하고 제2야당에게는 제1당이 차지하고 난 뒤에 남은 잔여의석의 최소 3분의 2까지를 배정하여 제1당과 제2당에게 프리미엄이 주어졌던 것이다. 이는 양당정치를 위한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추구한다는 기치 아래 제1당에게 무조건 3분의 2를 배분하고 제2당부터는 지역구의 의석수에 따라 잔여의석을 나누도록 하였다. 즉 제1당에게만은 높은 프리미엄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셋째, 제3공화국에서는 전국구 의석의 배정을 각 정당의 지역구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제5공화국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배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제11대 국회의원선거는 1981년 3월 25일에 실시되었다. 많은 구정치인의 정치활동이 묶인 상태에서 1개의 정당이 후보를 냈으며 또한 106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선거참여율은 78.4%였으며, 선거결과 집권당인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이 35.8%의 득표율로 90석을 얻어 제1당이 되었고, 민주한국당(民主韓國黨)이 21.6%의 득표율로 57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이 10.3%로 7석을 얻었다. 전국구 의석은 민주정의당이 전국구 전체의석의 3분의 2인 61석을, 그리고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은 각각 24석과 7석이 배분되었다. 따라서 제1당인 민주정의당은 35.6%의 득표율로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하여 전체의석의 54.7%를 차지함으로써 국회내에서의 안정세를 확보하였다.

고창군의 경우 선거구에서 변화가 있었다. 이전까지만 하여도 부안군과 한 선거구로 되어 있었으나, 제11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정읍군과 묶여 한 선거구로 되었다.

정읍군 인구수와 고창군의 인구수를 비교할 때 정읍군의 인구수는 232,741명으로 고창군의 인구수 149,080명보다 83,661명이 더 많다. 선거인 수에 있어서도 정읍군의 경우 117,898명으로 고창군의 76,411명에 비하여 41,487명이 더 많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군 명	읍면수	투표구수	인 구 수 (81.1.31)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31	189	381,821	194,309 (6,437)	156,374	1,854	158,228 (6,096)	36,081	81.4
고창군	14	78	149,080	76,411 (23586)	61,105	684	61,789	14,622	80.9
정읍군	17	111	232,741	117,898 (4,079)	95,269	1,170	96,439 (6,096)	21,459	81.8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명	성 명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 고
민주사회당	曹 秉 厚	고창읍 월산리 528-2	대 졸	육군대령예편	9,473	
민주정의당	陳 懿 鍾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260	대 졸	제8·9대 국회의원	61,443	당선
신 정 당	申 正 宰	서울 마포구 공덕동 29-5	대 졸	광일기업대표	3,699	
한국국민당	李 昊 鍾	성내면 신성리 436	대 졸	제10대 국회의원	20,316	
원일민립당	李 景 泰	정읍군 고부면 백운리 442	장노교성서 연구과졸	대한청소년신문 논 설 위 원	3,374	
민주한국당	金 元 基	정읍 정주읍 수성리 643-19	대 졸	제10대 국회의원	41,789	당선
무 소 속	魯 棟 采	고창 부안군 송현리 187	대 졸	새교육신문사장	16,280	

투표참여율은 고창군이 80.9%, 정읍군이 81.8%로 비교적 비슷하다. 무효표의 경우 선거를 치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이제는 1,000표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후보자를 보면 민주정의당의 陳懿鍾 후보와 민주한국당의 金元基후보, 그리고 민주사회당의 曹秉厚, 신정당의 申正宰, 한국국민당의 李昊鍾, 원일민립당의 李景泰, 그리고 무소속의 魯棟采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지역별로 후보자를 살펴보면 고창군 출신으로는 진의종, 조병후, 신정재, 이호종, 노동채 후보이고 정읍군 출신으로는 김원기와 이경태 후보 2인 뿐이었다.

선거결과는 민주정의당의 진의종 후보가 61,443표를 차지하여 1등으로 당선되었고 민한당의 김원기 후보가 41,789를 차지하여 2등으로 당선되었다. 후보들 중에 10,000표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제10대 국회의원을 지낸 한국국민당의 이호종 후보가 20,316표를, 무소속의 노동채 후보가 16,280표를 얻었다. 이는 고창군 지역의 투표가 열전이었음을 의미한다.

1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제11대 국회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1984년 7월 25일 국회의원선거법을 부분 개정하였다. 개정의 내용은 주로 선거운동의 규제와 투·개표 참관인 제도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선거제도의 골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는 1985년 2월 12일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 직전에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조치가 풀린 구야당계(舊野黨系)의 정치인들이 새롭게 조직한 신한민주당(新韓民主黨)을 중심으로 하여 대거 참여하였다. 선거결과 민주정의당이 35.3%의 득표율로 87명의 당선자를 냄으로써 제1당의 자리를 계속 지켰고 신당인 신한민주당이 29.3%의 득표율로 50석을 얻

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그 외에 민한당과 국민당이 19.7%와 9.2%를 각각 얻어 26석과 15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전국구 의석은 이러한 지역구의 의석수에 따라 민주정의당이 61석을, 신한민주당이 17석을, 그리고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이 각각 9석과 5석을 배정받았다. 이 선거에서도 제1당인 민정당은 35.3%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53.6%를 차지함으로써 원내에서의 안정세를 계속 확보하게 되었다.

고창군의 경우 1981년 7월 1일에 서로 승격한 정주시(井州市)를 포함하여 기존의 정읍군과 묶어 한 선거구로 되었다.

고창군의 투표율은 8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무효표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때 1,174표로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후보자들의 경합을 살펴보면 민주정의당의 전종천 후보를 비롯하여 신한민주당의 이원배 후보, 그리고 제10·1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원기 후보가 민주한국당으로 출마하였다. 그러나 제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정정법(政淨法)에 묶여 제11대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었던 柳甲鍾은 신한민주당의 공천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신민주당(新民主黨)을 창당하여 출마하였다. 제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1년여의 의원직 생활을 하다가 이듬해에 유신으로 말미암아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던 전력과 감옥생활을 했다는 과거의 경력이 유권자들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음으로서 고창의 전종천 후보에 이어 차점자로 당선될 수 있었다.

민주정의당의 전종천 후보는 정읍과 고창에서 끌고온 지지표가 나와 68,248표라고 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신한민주당의 공천을 놓고 이원배와 김원기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이원배에게 낙점되자 김원기는 민주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이원배 후보가 26,314표, 김원기 후보가 26,449표를 얻음으로써 거의 대동한 지지표를 획득하였지만 떨어지고 말았다. 이밖에 한국국민당으로 출마한 유종기 후보가 있으나 그의 득표는 2,212표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출신별로 살펴보면 전종천 후보만이 고창군에서 단독으로 출마하였고 정주시와 정읍군에서 나머지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자기 자신들의 지역표를 놓고 경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정주시와 정읍군의 표는 분산된 반면 고창군의 표는 전종천 후보에게 몰림으로써 다득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85. 1.31)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78	135,843	75,120 (3,011)	60,185	1,174	61,357	13,761	81.7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명	성 명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 고
한국국민당	柳 鍾 基	정주시 상동 498-3	대 졸	동학사상연구소장	2,212	
신민주당	柳 甲 鍾	정주시 상동 18	"	제8대 국회의원	37,688	당선
민주정의당	金 鍾 千	정주시 시기2동 170-17	"	치안본부치안감	68,248	당선
신한민주당	李 元 泮	정읍군 입암면 봉양리 472	"	정 치 인	26,314	
민주한국당	金 元 基	정주시 수성동 450-14	"	제10·11대 국회의원	26,449	

13)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1980년 10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출범한 제5공화국은 경제실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였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는 87년에 들어서서 국민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한편으로 제5공화국은 88년도에 시행하는 하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제5공화국 헌법을 고수한다는 4·13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를 기점으로 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폭발하자 민주정의당의 차기 대권후보자인 노태우는 민주화를 위한 6·29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헌법에 관한 개정작업이 진행되어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된 헌법이 공포되었다.

새 헌법은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어 전문(前文)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과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헌법 편재상 제5공화국의 헌법이 '정부'를 '국회'보다 앞에 놓아 두고 있으나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서는 그 반대로 '국회'를 '정부' 앞에 배치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중시하고 있다. 둘째 대통령 선출에 있어서 제5공화국에서는 7,000인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나 새로운 개정헌법에서는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셋째, 대통령 임기에 있어서 제5공화국 헌법은 7년 단임으로 하였으나 새 헌법에서는 5년 단임으로 하였다. 넷째, 구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새 헌법에서는 국회해산권의 권한을 삭제하였다. 다섯째, 국회의 권한에 대하여 구헌법은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신 개정헌법은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감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끝

으로 정기국회의 회기에 대해서 구현법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새 개정헌법에서는 10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6공화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선거법에 관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 ① 제5공화국 헌법이 지역구에 대하여 92개를 두고 1지역구에 의원 2인씩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으나, 신 개정헌법은 지역구를 224개로 늘리고 1구에 1인씩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 ② 전국구의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제5공화국 선거법이 지역구의 2분의 1로 하였으나 개정 선거법에서는 3분의 1로 감축하였다.
- ③ 전국구 의석의 배분에 있어서 구선거법은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우선 배정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지역구 선거의 의석수에 있어 제2당 이하의 정당에게 그 의석의 비율로 배분하였으나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제1당이 된 정당이 지역구 총의석의 50%미만일 때는 전국구 총의석의 2분의 1을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제2당 이하의 정당에 그 지역구 의석비율로 배분한다. 전국구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은 5석 이상의 지역구를 얻은 정당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결과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전국적으로 평균 75.8%의 투표율을 보였다. 정당별로 득표상황을 보면 민주정의당이 33.96%를, 평화민주당이 19.26%를, 통일민주당 23.83%를, 신민주당이 15.59%를, 그리고 한겨레민주당이 1.25%를 각각 얻었으나 나머지 정당들, 즉 민주한국당, 한국 국민당, 기독교성민당, 민중의당, 사회민주당, 우리정의당, 제3세대당, 한국의통일 한국당 등은 1% 미만에 머물렀다. 그러나 무소속은 4.75%를 획득했다.

지역구 당선자의 경우를 보면 민정당이 총 224석 중에서 87석을, 평화민주당이 54석을, 통일민주당이 46석을, 신민주공화당이 27석, 한겨레민주당이 1석, 그리고 무소속이 9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전국구 의석의 배분은 민주정의당에 38석, 평화민주당에 16석, 통일민주당에 13석, 신민주공화당에 8석이 각각 배분되었다. 결과적으로 총의석 299석 중에서 민주정의당이 125석, 평화민주당이 70석, 통일민주당이 59석, 신민주공화당이 35석, 한겨레민주당이 1석, 무소속이 9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특징은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야당인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이상의

의석들을 확보하여 이른 바 4당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총득표율에서는 통일민주당에 4% 이상 뒤진 평화민주당이 의석수에 있어서는 통일민주당을 8석이나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소선거구제가 지니는 특성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번 13대 선거가 이른바 지역감정에 의하여 지역성을 크게 띠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정의당은 경북·강원·충북 및 경기에서 득세한 반면, 평화민주당은 전남·북과 서울에서, 통일민주당은 부산과 경남에서, 신민주공화당은 충남과 충북 일부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이다. 서울의 경우는 평민당이 다소 우위를 차지한 반면, 민정당·민주당·공화당이 각축전을 벌였다.

고창군의 경우 투표율은 81.6%로 전국 평균의 75.8%를 상회하고 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평화민주당의 정균환 후보가 31,188표를 차지하여 총 유효투표의 54.3%를 얻음으로써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정균환 후보가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른바 '황색바람'이라고 하는 평화민주당의 바람이 고창지역에도 거세게 몰아쳤기 때문이다. 전라남·북도의 어느 선거구에서도 평화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 이외에도 유권자수가 많은 정씨 문중의 지지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연의 지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투표구수	인 구 수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79	121,679	71,420 (2,887)	57,425	856	58,281	13,139	81.6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명	기호	성 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 고
민주정의당	1	李 昊 鍾	대 줄	제10대 국회의원	13,159(22.9%)	
통일민주당	2	鄭 在 吉	·	전 북 대 교 수	2,421(4.2%)	
평화민주당	3	鄭 均 桓	·	평화당조직4국장	31,188(54.3%)	당선 1
무 소 속	4	魯 棟 采	·	언 론 인	10,657(18.5%)	인

1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1992년 3월 24일에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등록된 후보자수는 지역구 1,052명, 전국구 154명 등 총 1,206명으로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는 총유권자수 29,003,828명중 20,843,482명이 참여 71.9%의 투표율을 보여 역대국회의원선거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개표결과 지역구는 민주자유당 116명, 민주당 75명, 통일국민당 24명, 신정당 1명, 무소속 21명이 당선되었으며, 전국구는 지역구의 의석비율에 따라 민주자유당에 33명 민주당에 22명, 통일국민당에 7명이 배분되어 국회의원 총당선자는 민주자유당 149명, 민주당 97명, 통일국민당 31명, 신정당 1명, 무소속 21명이 되었다. 그러나 공명민주당, 민중당은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등록하였으나 당선된 후보자가 한명도 없을 뿐만아니라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함으로써 92년 3월 30일 정당법 제3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공명선거정당협의회개최 등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 등의 선거법준수 및 깨끗하고 질서있는 선거운동유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대처, 그리고 언론기관, 각종사회단체, 직능단체, 학교 등과 협조·연계를 통한 국민의식개혁운동의 범국민적인 전개 등 공명선거 정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역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평온하고 질서있는 가운데 공명하게 치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14대 고창군의 국회의원 선거는 총유권자 64,004명중 49,669명의 투표로 투표율은 77.6%이며 전국 평균(71.9%)을 5.7% 상회하고 있으며 기호 1번 민주자유당의 이호종 후보와 기호 2번인 민주당의 정균환 후보, 기호 3번 통일국민당의 노동채 후보가 경합을 벌여 정균환 후보가 26,061표로 총유효투표수의 53.2%를 차지하여 당선되었다.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제13대에 이어 황색바람의 열풍과 정균환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78	95,858	64,004	48,963	706	49,669	14,335	77.6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기호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민주자유당	1	이호종	대졸	제10대 국회의원	17,868(36.5%)	
민주당	2	정균환	·	제13대 국회의원	26,061(53.2%)	당선
통일국민당	3	노동채	·	언론인	5,034(10.3%)	

15)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96년 4월 11일에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된 총선거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후보자 등록수는 전국구 161명, 지역구 1,389명 총 1,550명이며, 지역구 후보자의 평균 경쟁률은 5.5:1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경쟁률 4.4:1(제13대 국선시 4.7:1)보다 높았으며, 67년 제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는 총유권자수 31,488,294명(남자 15,490,279, 여자 15,998,015)으로 인구수 45,928,048('96. 3. 20 현재)의 68.6%였으며, 지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수와 비교하여 보면 2,484,466명(6.8%) 증가 하였다.

개표결과 지역구는 신한국당 121명, 새정치국민회의 66명, 통합민주당 9명, 자유민주연합 41명, 무소속 16명이 당선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법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선거법에서 포괄적 제한·금지규정을 폐지하고, 개별적 제한·금지규정으로 제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가 대폭 확대되었다.

따라서 합동연설회와 정당, 후보자 연설회등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보다는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를 대면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등 개별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널리 활용되어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안정되고, 질서있고 공명하게 치뤄졌다.

제14대 고창군의 국회의원 선거는 총유권자 59,723명중 43,236명의 투표로 투표율은 72.39%이며, 기호1번 신한국당 김주섭, 기호2번 새정치국민회의 정균환 후보가 경합을 벌여 정균환 후보가 27,575표로 총유효투표자의 67%를 차지하여 당선되었다.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은 정균환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52	84,559	59,723	40,968	2,268	43,236	16,487	72.4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기호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신한국당	1	김주섭	대졸	신한국당위원장	13,393	
새정치국민회의	2	정균환	*	제14대국회의원	27,575	당선

□ 읍면 투표구별 후보자 득표현황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계		
			김주섭	정균환			
합계	(1,978) 59,723	(1,884) 43,236	13,393	27,575	40,968	2,268	16,487
고창읍1	(1,978) 3,534	(1,884) 3,005	705	2,161	2,866	139	529
고창읍2	1,971	1,372	417	915	1,332	40	599
* 3	1,582	1,123	380	695	1,075	48	459
* 4	1,635	1,169	396	748	1,144	25	466
* 5	1,625	1,158	367	726	1,093	65	467
* 6	1,603	1,150	317	814	1,131	19	453
* 7	1,008	713	177	507	684	29	295
* 8	1,811	1,322	434	863	1,297	25	489
소계	14,769	11,012	3,193	7,429	10,622	390	3,757
교수면1	1,080	775	192	556	748	27	305
* 2	1,087	791	235	513	748	43	296
* 3	820	624	235	355	590	34	196
소계	2,987	2,190	662	1,424	2,086	104	797
아산면1	1,543	1,050	347	646	993	57	493
* 2	1,100	748	209	505	714	34	352
* 3	953	677	230	418	648	29	276
소계	3,596	2,475	786	1,569	2,355	120	1,121
무장면1	1,502	1,012	282	652	934	78	490
* 2	1,465	1,065	367	645	1,012	53	400
* 3	1,066	697	136	522	658	39	369
소계	4,033	2,774	785	1,819	2,604	170	1,259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 표 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호 투 표 수	기 권 수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계		
			김 주 섭	정 균 환			
공음면1	1,310	935	252	633	885	50	375
* 2	769	514	130	356	486	28	255
* 3	877	627	110	482	592	35	250
* 4	678	486	98	358	456	30	192
소 계	3,634	2,562	590	1,829	2,419	143	1,072
상하면1	1,451	1,052	220	756	976	76	399
* 2	776	531	152	323	475	56	245
* 3	769	566	144	374	518	48	203
소 계	2,996	2,149	516	1,453	1,969	180	847
해리면1	1,116	806	258	506	764	42	310
* 2	1,125	789	162	516	678	111	336
* 3	618	426	99	281	380	46	192
* 4	1,219	886	259	541	800	86	333
소 계	4,078	2,907	778	1,844	2,622	285	1,171
성송면1	762	579	194	349	543	36	183
* 2	830	610	179	404	583	27	220
* 3	1,055	765	187	517	704	61	290
소 계	2,647	1,954	560	1,270	1,830	124	693
대산면1	1,689	1,212	347	813	1,160	52	477
* 2	1,235	844	199	597	796	48	391
* 3	1,020	732	154	532	686	46	288
* 4	977	689	200	437	637	52	288
소 계	4,921	3,477	900	2,379	3,279	198	1,444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계		
			김주실	정균환			
심원면1	1,544	1,145	291	775	1,066	79	399
" 2	949	687	180	466	646	41	262
" 3	622	439	88	324	412	27	183
소 계	3,115	2,271	559	1,565	2,124	147	844
홍덕면1	1,408	1,027	438	558	996	31	381
" 2	1,367	955	425	478	903	52	412
" 3	369	293	135	145	280	13	76
" 4	725	538	195	302	497	41	187
소 계	3,869	2,813	1,193	1,483	2,676	137	1,056
성내면1	1,322	991	601	353	954	37	331
" 2	846	648	395	229	624	24	198
" 3	614	461	296	152	448	13	153
소 계	2,782	2,100	1,292	734	2,026	74	682
신림면1	912	655	244	389	633	22	257
" 2	969	693	239	436	675	18	276
" 3	1,017	750	249	476	725	25	267
소 계	2,898	2,098	732	1,301	2,033	65	800
부안면1	936	696	193	467	660	36	240
" 2	568	414	136	261	397	17	154
" 3	1,098	762	326	388	714	48	336
" 4	796	582	192	360	552	30	214
소 계	3,398	2,454	847	1,476	2,323	131	944

□ 역대 국회의원 선거일

역대별	공 고 일		선 거 일		선거 기간	임기	선거 구수	의원 정수	비 고 (해 산)
	연 월 일	요일	연 월 일	요일					
제 현	'48. 3. 30	화	'48. 5. 10	월	42	2년	200	200	
제 2 대	'50. 4. 12	수	'50. 5. 30	화	49	4년	210	210	
제 3 대	'54. 4. 7	수	'54. 5. 20	목	44	4년	203	203	
제 4 대	'58. 3. 31	월	'58. 5. 2	금	33	4년	233	233	'60. 6. 23
제 5 대	'60. 6. 27	월	'60. 7. 29	금	33	4년	233	233	'61. 5. 16
제 6 대	'63. 10. 26	토	'63. 11. 26	화	32	4년	131	175	
제 7 대	'67. 5. 8	월	'67. 6. 8	목	32	4년	131	175	
제 8 대	'71. 5. 1	토	'71. 5. 25	화	25	4년	153	204	'72. 10. 17
제 9 대	'73. 2. 9	금	'73. 2. 27	화	19	6년	73	219	
제 10 대	'78. 11. 24	금	'78. 12. 12	화	19	6년	77	231	'80. 10. 27
제 11 대	'81. 3. 5	목	'81. 3. 25	수	21	4년	92	276	
제 12 대	'85. 1. 23	수	'85. 2. 12	화	21	4년	92	276	
제 13 대	'88. 4. 8	금	'88. 4. 26	화	19	4년	224	299	
제 14 대	'92. 3. 7	토	'92. 3. 24	화	18	4년	237	299	
제 15 대	선거일 법정화		'96. 4. 11	목	17	4년	253	299	

나. 선거인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확정된 선거인수는 31,488,294명으로 인구수 45,928,048명('96. 3. 20 현재)의 68.6%였으며, 이중 남자는 15,490,279명, 여자는 15,998,015명이었다. 이는 지난 제 14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와 비교하여 보면 2,484,466명(6.8%) 증가하였다.

나. 참의원 선거

1952년 발췌개헌(拔萃改憲)이후 헌법은 국회를 양원(兩院)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의원 의원만을 선출하여 오던 국회는 1958년에 치르게 될 제4대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법개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야당은 각급 선거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입후보자 등록절차의 간소화, 선거의 공명성 확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여당은 이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대폭 제한, 선거공영제의 실시, 선거자금의 제한, 선거사범의 벌칙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두 개의 개정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법안의 상정과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과란이 예상되었다. 이에 대해서 여야는 80차례의 협상을 거쳐서 양안을 절충한 단일협상안을 작성하여 1958년 1월 민의원 의원선거와 참의원 의원선거를 분리한 '민의원의원 선거법(民議院議員選舉法)'을 공포하였다.

참의원 의원 선거법은 선거구를 각 시(市), 도(道) 단위로 하여 인구 60만에 2인씩 선출하는 것과 선거구 수를 30개, 의원정수를 70인으로 할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 외에 선거에 관한 일반사항은 민의원선거법을 준용(準用)토록 하였고 법 공포 후 1년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의원선거는 실시되지 못하고 1960년 4·19를 맞이하게 되었다. 4·19이후 제2공화국을 위한 개헌작업이 진행되었는데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와 양원제(兩院制)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의원 선거와 관련된 조항도 수정되었는데, 1958년에 마련된 참의원 선거법과 비교하여 볼 때 몇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① 선거구를 서울특별시와 도(道)단위로 하고 의원정수를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2인 내지 8인으로 하였으나 3년마다 2분의 1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정당별 당선외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자가 해당선거구 의원정수의 반수 이하의 후보자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제한연기투표제(制限連記投票制)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선거법에 의하여 1960년 7월 29일에 전국 233개의 선거구에서 총선거인의 84.3%가 참여한 가운데 제5대 민의원선거와 더불어 초대 참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대선구제 실시로 후보자는 최저 7인에서 최고 34인까지 출마하였으며, 정치의식과 수준이 낮은 관계로 서울을 제외한 그밖의 9개의 도에서 기호 1번이 전부 당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은 총의석의 53.4%인 31석을 차지하였고 자유당은 겨우 4석만을 얻었다. 그 외에 사회당, 한국사회당 등이 각 1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무소속의 당선자는 전체의 34.5%인 20명이었다.

대선거구제와 제한연기투표제에 의하여 민주당은 39.0%의 득표로 53.4%의 의석을 차지한 반면에 무소속은 49.3%의 득표율로 총의석의 34.5%만을 차지하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 전역을 2부로 나누고 선거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은 85.5%로서 전국 평균인 84.1%와 거의 비슷한 투표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선거결과 6명의 참의원 정원 가운데 민주당이 4명, 무소속이 2명의 후보를 당선시켰다.

고창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창 출신의 강택수 후보가 민주당의 공천을 얻어 참의원 부의장으로 피선된 소선규 의원에 이어 차점자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 초대 참의원선거 현황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및 단체명	득표수	비고
계			16인			1,878,900	
梁春根	남	36	무직	창주대 졸업 육군대령	무소속	163,181	당선 2부
姜澤秀	·	53	·	일본동양대 졸업 전주사범교장	민주당	197,071	당선 1부
柳壽福	·	45	·	전주고보 졸업 도의원	·	133,392	
嚴敏永	·	45	변호사	일본구주상대 졸업 미시카고대학원 졸업 경희대법대학장	·	133,459	당선 2부
李承穆	·	59	무직	明大전문부 졸업	무소속	53,734	
宋邦鑑	·	47	이사	연전 졸업 제 2·3대 민의원	·	165,206	당선 1부
閔晶植	·	61	무직	와세다대 졸업 민주당중앙상임위원	민주당		사퇴
申奎植	·	53	민의원	와세다대 졸업 제 3·4대 민의원	자유당	93,573	
朴東根	·	47	광업	상고 졸업 도의회의장	무소속	53,740	
李愚植	·	58	변호사	경성법전 졸업 대법관	·	91,748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및 단체명	득표수	비고
金基玉	·	45	변호사	변호사 시험 합격	민주당	124,514	
李要漢	·	61	농업	佛專 2년 졸업 제헌의원·전북지사	자유당	79,984	
盧兢湜	·	56	문교재 단이사	고려대 졸업 서울시상공국장	무소속	46,668	
嚴秉學	·	42	농업	전주고보 4년 수료 제 2대 민의원	민주당	139,983	당선 2부
蘇宣奎	·	56	정치인	福島高商 졸업 민주당정책위원회의장	·	264,695	당선 1부
金秀學	·	64	회사 중역	京都帝大 졸업 제 2대 민의원	자유당	67,259	
金奉斗	·	54	농업	일본明大 졸업 제헌의원	무소속	70,883	
金大容	·	47	변호사	九州帝大 졸업 판사	·		사퇴

□ 초대 참의원 정당별 당선 상황

구분	정당별	정당별							합계
		민주당	자유당	무소속	사회 대중당	한국 사회당	한국 독립당	기타 단체	
후보자 수		60	11	115	7	2	1	5	201
당선자 수		31	4	20	1	1	-	1	58

2. 지방 선거

□ 광역 단체장 선거

'95년 6월 25일 실시되었던 광역단체장 선거결과 주요 특징은 지역 할거주의이다. 민자당은 영남지역, 민주당은 호남지역, 자민련은 충청지역에서 일당 지배적인 득표력을 보여 주었다.

시·도별 광역단체장 선거의 당선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곳으로 민자당은 부산과 경남 민주당은 광주와 전북, 전남 그리고 자민련은 대전, 강원, 충남을 들 수 있다.

□ 광역의회 의원 선거

광역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기초단체장 선거결과 드러났던 일당지배적 지역구도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을 지배하는 것으로 드러난 지역은 호남의 전지역(민주당)과 부산(민자당) 그리고 대전과 충남(자민련)이었다.

광역의원 득표율 분석은 시·도별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비교함으로써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의 선거 제도속에서 유권자의 자지도가 어느정도 의석으로 연결되었는지 정당별로 검토하여 보며, 다음 표와 같으며 다수대표제의 가장 큰 단점은 사표(死票) 증가에 따른 대표성의 위기를 들 수 있다.

이는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권자가 지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역의 대표로써 선출될 수 있다는데 있다.

또한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약 46%,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70%가 과반수 미만의 지지로 당선되었으며, 기초의원의 경우 30%미만의 득표로 당선된 경우에도 23%에 달하고 있다.

◦ 광역의회 의원 선거 득표율 및 의석 점유율(비례대표 제외)

구 분	정 당 별				무 소 속	비 고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기 타		
득 표 율	36.4	32.7	7.2	0.1	23.6	
의석점유율	32.7	40.2	9.8	0	17.3	

가. 제1대 도의원 선거

제헌헌법은 제96조와 제97조에서 지방의회 구성을 포함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다. 제헌국회는 이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정을 서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즉각적인 실시를 주장하는 국회와 분권화(分權化)에 따르는 집권의 불안을 고려하여 법률공포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실시하자는 李承晩총과의 정치적 대립으로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에야 제정공포되었다. 이 초대 지방자치법은 다시 동년 12월 제1차 개정을 거쳐 수정 보완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시와 도 및 시·읍·면으로 규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내에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켜 상호견제케 한다.
- ③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지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한다.
- ④ 집행기관으로 서울시에는 서울시장, 도에는 도지사, 그리고 시·읍·면에는 각각 시·읍·면장을 두며 이들 중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들에 의하여 간접 선출된다.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마련된 이후에도 정부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계속 미루어 오다가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자 1950년 12월에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동란(韓國動亂)이 발발함으로써 무산되었다. 그러다가 이승만 정부는 갑자기 1952년 4월 임시수도를 부산에 두고 있는 전쟁의 와중 속에서 지방의회선거를 공포하였는데, 이것은 대통령 직선개헌을 위해 반국회운동을 전개할 의도를 지닌 이승만의 책략의 일환으로 이해되었다. 이승만은 국회의 간선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직선개헌을 시도하였는데 원외자유당의 세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를 장악하도록 하여 반국회운동을 전개할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지방의회선거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전쟁 중에 선거가 치루어진 지방자치법 중에서 지방자치장 선출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의 선출에 관한 조항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회의원선거에서와 같이 선거권 연령은 만21세 이상이며, 금치산자(禁治產者)나 형집행(刑執行)중에 있는 자 등이 아닌 자로서 6개월 이내 동일자치단체(同一自治團體)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이면 모두 선거권이 주어진다.
- ②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선거권자에게 주어지며 특정한 공직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는것으로 한다.

- ③ 선거구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의원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시·군·구의 구역으로 한다.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눌 수 있고 각 선거구의 의원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선거구에서 다수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시·읍·면 의회 의원의 선거구 분할 및 의원정수는 도규칙(道規則)으로 정하되 이 역시 1선거구에서 다수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 ④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점자 순위에 의하고 후보자가 의원정수에 미달할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도록 한다.

□ 전라북도의원 소속정당 사회단체 일람표

시 군 명	의원정수	자유당	민주당	한 청	국민회	무소속
계	32	16	1	6	1	8
전주시	2	1				1
군산시	2	1	1			
이리시	1	1				
진안군	2					2
금산군	2	2				
무주군	1	1				
장수군	1			1		
임실군	2	2				
고창군	4	3		1		
부안군	3	1				2
김제군	5	2		2	1	
옥구군	3	1		1		1
익산군	4	1		1		2

□ 도의원 당선 상황표

의원정수	유권자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4	64,659	54,518	51,586	3,322

□ 제1대 도의원 선거현황

후보자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정당	득표	비고
安基南	1914. 2.14	대산면 매산리	농업	중졸	면장	자유당	11,129	당선
朴東鎧	1903. 7. 5	고창읍 읍내리	·	대졸	중학교장	·	7,516	·
裴祥基	1923. 2.25	고창읍 읍내리	·	전졸	한청군부단장	한청	7,046	·
朴聖烈	1916. 1.12	무장면 무장리	·	중졸	면장	자유당	6,413	·
鄭淳默	1906. 6.14	성송면 계당리	광업	·	회사사장	·	5,021	차점
鞠勳燁	1913. 5.14	홍덕면 홍덕리	농업	국졸	·	무소속	3,775	
李昇淵	1916. 3.20	정주시 수성동	기자	중졸	학원장	·	4,035	
李昌奎	1906. 2. 2	심원면 연화리	농업	·	면장	·	3,496	
金在沃	1916. 1.10	전주시 전동 121	변호사	대졸	판사	·	3,155	

이러한 선거규정에 의하여 전선(戰線)에 인접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와 계엄령이 선포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었다.

1952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전국 도의회 의원선거는 총선거인의 81%가 투표에 참가하여 306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선거결과 야당인 민주당(民主黨)은 4명의 당선자를 내는데 그친 반면 여당인 자유당은 의원 총수의 48%인 147석으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한청(韓靑), 노총(勞總), 국민당(國民黨)등의 친여세력을 합하면 여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0%에 달하였다.

고창군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의원 소속정당 사회단체 일람표>에서 보는 것처럼 4인의 정수에서 자유당이 3석, 한청(韓靑)이 1석씩을 차지하였다. 또한 정원 4석을 놓고서 9인의 후보가 경쟁하여 23대 1의 경쟁력을 보였다.

나. 제2대 도의원 선거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파동이 지나고 제3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지방자치법은 1956년 2월과 7월, 2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선거의 방식에 적

지않은 변화가 발생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시·읍·면장이 지방의회에 간접 선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주민에 의한 직접 선출로 바뀐 것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권(不信任權)이 폐지된 것이다.

이밖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선거권에 있어서 주소요건을 6개월에서 90일로 완화하였고 둘째, 금고(禁錮)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사면된 후 3년까지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였다는 것과 셋째, 선거구에 있어 서울특별시·도의회 의원선거구는 민의원 의원선거구를 분할·확정하여 1구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서울특별시와 도의원 선거가 1956년 8월 13일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었는데,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투표현상이 나타났다. 도시성이 약한 충청북도에서는 의원정수 30석 중에서 1석을 제외하고는 자유당이 전의석을 차지하였고, 강원도의 경우도 총 25석 중에서 2석을 제외한 23석을 자유당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의원정수 47명 중 자유당은 단 1석을 차지하였을 뿐이고 민주당이 40석, 무소속이 5석, 그리고 농민회가 1석을 차지하였다. 부산의 경우에도 19석 중에서 4석만을 자유당이 차지하였을 뿐이고 무소속이 10석, 국민회가 3석, 민주당이 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대구의 경우 총 9석 중에서 2석만을 자유당이 차지하였고, 민주당이 6석, 무소속이 1석을 각각 얻었다.

전라북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원 44석 중에서 자유당이 16석, 민주당이 6석, 그리고 나머지 22석을 무소속이 차지하였다.

제2대 도의원 선거 현황

□ 제1선거구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소속	득표수	비고
裴祥基	남	35	고창군 고창읍 85	양조	대졸	도의원	자유	12,139	당선
金仁錫	·	38	고창 대산 중산리	농업	중졸	수리조합장	자유	9,126	차점

□ 제2선거구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소속	득표수	비고
鞠勳燁	남	43	고창 흥덕 흥덕리	농업	중졸	회사사장	자유	5,945	당선
李昇淵	·	40	고창 부안 오산 183	·	정치학교졸	당원	민주	5,256	차점
金永春	·	41	고창 신림 법지 205	·	경학원졸	면장	무	1,595	
柳烈碩	·	53	고창 신림 외화리	·	중졸	면의원	자유	3,130	
金利洙	·	35	고창 부안 용산 490	·	전문졸	교원	무	2,073	
尹炳重	·	43	고창 부안 사창리	·	중졸	면의원	·	860	
柳濟煥	·	36	고창 아산 목동리	·	·	면장	·	3,146	

□ 제3선거구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소속	득표수	비고
朴聖烈	남	40	고창 무장 무장 64	농업	중졸	도의원	자유	8,869	당선
金徹洙	·	26	고창 해리 방축리	·	대재	·	무	7,195	차점
李柱浹	·	31	고창 해리 사반 187	·	중졸	면서기	·	2,106	
李鍾涉	·	44	고창 해리 라성 100	·	대졸	교원	·	3,171	

고창군의 경우 정원수에 있어서 제1대 때에는 4인이었으나 이번에는 3인으로 조정되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1대 때에는 고창군 전체에서 4인을 득표순으로 뽑는 중선거구제였으나 제2대 때에는 각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되었다. 따라서 고창군의 선거구는 3지구로 분할되었는데, 제1선거구는 고창읍, 고수면, 성송면, 대산면이 포함되었고, 제2선거구는 성내면, 흥덕면, 신림면, 부안면, 아산면을, 그리고 제3선거구는 심원면, 해리면, 상하면, 공음면, 무장면을 포함하였다.

당선자들은 모두가 무소속이었다. 제1선거구에서 당선한 배상기 의원은 제1대 때에도 도의원에 당선된 관록을 가진 재선의원으로, 제2대 전라북도의회에서 부의장으로 피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훈엽 의원은 제1대 때에는 도의원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권토중래(捲土重來)하여 기어코 당선을 차지하여 초선의원이 되었다.

제3선거구에서 당선한 박성열 의원은 제1대에 이어 또다시 당선되는 재선의원이 되었다. 각 후보별 득표현황은 위와 같다.

다. 제3대 도의원 선거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현상이 1958년 5월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나타났고,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장(長)의 선거에서도 계속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자유당은 시·읍·면장의 주민직선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1958년 12월 24일 소위 2·4파동시 자유당 의원들만에 의해 신국가보안법(新國家保安法)과 함께 통과되었는데 그 개정내용은 ‘시장은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읍·면장은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선거가 1960년 8월에야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법은 사용되지 못한 채 4·19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헌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도 바꾸어짐으로써 지방자치법은 또 한차례의 손질을 요구하였다. 7·29총선 이후 구성된 국회는 곧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둘렀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선거관계 조항을 이전의 지방자치법의 관계조항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완전한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헌법에 규정된 시·읍·면장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 및 도지사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 ② 선거권의 연령을 민의원(民議院) 및 참의원(參議院) 선거에서와 같이 만 20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그리고 피선거권에 있어서 지방의회 및 시·읍·면장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만 25세 이상으로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의 경우는 만30세 이상으로 하였다.
- ③ 서울특별시장 선거에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후보자의 이름을 기명하는 자서식(自書式)투표제도를 채택하였다.
- ④ 민의원과 참의원선거에서와 같이 부제자투표를 인정하였다.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선거구와 당선자 결정은 서울특별시와 도에 있어서는 소선거구제와 다수대표제를, 시·읍·면에 있어서는 1선거구에서 다수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선거법에 의하여 제3대 도의원선거가 1960년 12월 12일에 치루어졌다. 선거 결과 특징적인 것은 첫째, 투표참여율이 1차와 2차선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제1차 도의원선거의 투표율은 81%, 제2차 선거의 투표율은 86%였으나 제3차 선거의 투표참여율은 61.4%에 머물렀다. 둘째,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전체 의석 중 민주당과 신민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무소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유권자 1,096,308명의 71.8%인 787,629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는데 이러한 투표율은 제1회의 83%, 제2회의 90%에 비하여 월등하게 저조한 것으로 점차 도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퇴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도내 도의원 정수 48명에 대해 178명이 입후보하여 3.7대 1의 경쟁율을 보였는데 당선자를 당적별로 보면 민주당이 26명, 무소속이 17명, 신민당이 5명으로 되어 있다.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된 제3대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고창지구 출신은 鄭基洙, 朴用奭, 李仁圭, 李昇淵 등 4명이었다.

라. 제4대 도의원 선거

1988년 4월 26일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와 민주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고, 지금까지 그 실시를 미루어 온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재연되었다.

야당의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국회는 제12대 국회에서 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88. 4. 6 제정)을 전면 개정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를 의결하였고 이듬해인 1991년 2월 1일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30년만에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시·도의 광역의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시·군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시·군에 있어서는 30만을 초과하는데 매 20만까지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 미만이 되는 자치구 시·군은 2인씩을 선출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의회는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있어서, 각 정당은 1인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고창군의 경우에는 3선거구로 나뉘어 졌는데, 제1선거구에는 고창읍, 고수면, 성송면, 대신면 등이 포함되고, 제2선거구에는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제3선거구에는 아산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등이 포함되었다.

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된 광역의회의 선거결과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감정이 그대로 판을 쳐 이 지역에서는 평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라북도의 경우 평민당이 모든 의석을 석권함으로써 한국의 정치판도를 그대로 재연하게 되었다. 고창군의 경우에도 3인의 당선자 모두가 평민당원이었다.

각 선거구의 투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1선거구

후 보 자	당 소 속	득 표 수	비 고
卓 正 淵	민 주 자 유 당	2,825	
崔 百 圭	신 민 당	9,606	당 선
鄭 厚 泳	무 소 속	3,915	

□ 제2선거구

후 보 자	당 소 속	득 표 수	비 고
朴 成 宇	민 주 자 유 당	3,878	
崔 康 善	신 민 당	6,742	당 선
金 榮 俊	무 소 속	1,264	
李 相 振	무 소 속	3,250	

□ 제3선거구

후 보 자	당 소 속	득 표 수	비 고
朴 炳 燁	민 주 자 유 당	2,625	
金 容 元	신 민 당	9,140	당 선

마. 제5대 도의원 선거

새로운 선거문화 형성에 기틀이 될 수 있는 통합선거법이 '94. 3. 16제정 공포된 이후 헌정사상 처음으로 4개 지방선거를 '95. 6. 27일 실시하였다.

시·도의 광역의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시·군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시·군에 있어서는 30만을 초과하는데 매 20만까지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미만이 되는 자치구는 시·군은 2인씩을 선출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의회는 정당활동이 허용되고 있어서, 각 정당은 1인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고창군의 경우에는 3선거구로 나뉘어졌는데, 제1선거구는 고창읍, 고수면, 성송면, 대산면 제2선거구는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 제3선거구는 아산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이 포함된다.

이번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수가 많고 선거운동의 다양화에 따라 종전의 단일선거보다 복잡, 과다한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선거사무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처리의 신속화를 도모 하였다.

고창군 광역의회 선거는 제3선거구에 6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2: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새 선거법의 정신과 깨끗한 선거운동 실천으로 평온하고 질서있는 선거를 실천 하므로써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각 선거구별 투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1선거구

후보자	성 별	나 이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소 속	득표수	비 고
金永錫	남	48	고창읍 읍내리 덕산 진흥하이츠 308	상업	대전신학 대 수료	신협이사·고창 여고육성회장	민 주 자 유 당	8,435	
崔百圭	·	54	고창읍 교촌리 214	정당인	전북대	제 4 대 의 원	민 주 당	9,953	당선

□ 제2선거구

후보자	성 별	나 이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소 속	득표수	비 고
奉丙大	남	56	공음면 용수리	무	전북대	새마을운동고창지부장 민주평통군협의회장	민 주 자 유 당	5,199	
崔康善	·	55	상하면 하장리 943-4	상업	법성 상고	새마을금고이사장 민주당고창부위원장	민 주 당	8,527	당선

□ 제3선거구

후보자	성 별	나 이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소 속	득표수	비 고
林東圭	남	51	신림면 가평리 431	상업	전북대	새마을운동고창지부장 국 제 농 기 계 대 표	민 주 자 유 당	6,198	
金容元	·	63	흥덕면 흥덕리 357-2	수의사	전북대	농협중앙회자문의원 전북대수의대부회장	민 주 당	6,859	당선

3. 군의원 선거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이 1990년 12월 31일 전문개정이 이루어지고, 91년 2월 1일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됨으로써 동년 3월 26일에 자치구 시·군을 포함하는 기초의원 의원선거가 일제히 실시되었다.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2만을 초과하는 때 2만까지마다 1인을 더한다. 이 경우 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인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45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정수를 45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70만을 초과하는 구·시·군의 정수는 50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고창군의회는 각 면단위로 1인씩 13명과 고창읍 2인을 합쳐 15인으로 구성되었다. 기초단체 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특색은 정당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앙정치의 영향을 배제하고 순수 지방자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 법제정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정당이 관여하는 선거가 되었다. 후보들은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홍보물에 당적표시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역감정을 암암리에 이용하였다. 고창군의 경우에도 야당인 평민당 관련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 제1대 군의원 선거

□ 후보자 현황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비고
고창읍	1	金相弼	남	1942. 3. 16	고창읍 읍내리 590-1	상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고창고 육성회장 구시포종합개발위원장	
	2	金蒼勇	·	1933. 12. 11	고창읍 읍내리 256-12	상업	고졸	평민당부위원장	
	3	陳南杓	·	1947. 2. 10	고창읍 교촌리 85-10	사업	전주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지역개발연구회장	당선
	4	金東勤	·	1937. 11. 2	고창읍 읍내리 268-5	상업	고졸	고창농협·이사·감사 고창농조이사	당선
고수면	1	金沃鉉	·	1932. 5. 23	고수면 장두리 139	농업	고졸	고창농협이사·감사 고창농조이사	
	2	李鍾云	·	1946. 5. 10	고수면 상평리 636	농업	고졸	평민당고수면책	당선
	3	柳信承	·	1955. 3. 25	고수면 남산리 439	농업	인천체육대졸	고수면체육회부회장 고수면청년회장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비고
아산면	1	柳顯泰	남	1931. 2. 1	아산면 목동리 158	농업	중졸	아산년농협조합장 16년역임·아산 중학교육성회장역임	
	2	崔亨植	"	1952. 11. 18	아산면 중월리 335	상업	고졸	정읍농고학생회장 고창자동차공업사대표	당선
	3	成鎬益	"	1955. 4. 3	아산면 목동리 272	농업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고창군예향청년회이사 (유)대부관광사장	
무장면	1	李敦禹	"	1934. 1. 17	무장면 강남리 178	농업	성균관유도회 본부경학원수료	무장향교전교 고창군삼향지부권한위원장 정읍검찰청청소년선도위원	당선
	2	金南圭	"	1952. 5. 7	무장면 무장리 52-9	상업	국졸	무장영선중학교육성회장 체육회부회장	
	3	鄭基杓	"	1947. 9. 8	무장면 덕림리 332	건설업	고졸	민주평통위원	
	4	林炳吉	"	1934. 11. 20	무장면 송현리 295	농업	고졸	고창군정자문위원	
	5	朴鐵洙	"	1954. 4. 8	무장면 무장리 345-2	농업	고졸	무장면체육회총무 평민당면연청지회장	
공음면	1	崔錫基	"	1947. 3. 10	공음면 칠암리 558-3	상업	고졸	공음농협감사 평민당공음면조직책	당선
	2	羅信柱	"	1943. 10. 11	공음면 칠암리 588-3	사업	고퇴	신영석재이사	
	3	金潤哲	"	1949. 10. 3	공음면 장곡리 365	농업	전북농대졸	새마을지도자	
상하면	1	李又衍	"	1944. 12. 8	상하면 자룡리 360	농업	고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상하면새마을협의회장	
	2	金亮鎭	"	1948. 11. 4	상하면 김산리 432	농업	고졸	평민당고창지구당 조직부장	당선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비고
해리면	1	金漢炳	남	1926. 2. 6	해리면 하련리 110-6	농업	고졸	정주시청선도위원회고창군회장	
	2	韓冲漢	·	1957. 12. 7	해리면 하련리 205-2	상업	고졸	경주석산고총동창회장 한겨레신문지국장 평민당대의원교육부장	
	3	李晩雨	·	1954. 12. 29	해리면 하련리 155	수산업	대재	고창JC회장 평민당해리면운영위원장	
	4	吳均鎬	·	1945. 12. 16	해리면 하련리 208-6	상업	건국대학교 대학원수료	해리초·중·고등학교 교육성회장	당선
성송면	1	李鍾尉	·	1955. 3. 27	성송면 계당리 571-2	상업	고퇴	평민당성송면책 항공학교설립반투위원장	
	2	潘琪鎮	·	1935. 1. 20	성송면 향산리 79-1	농업	고졸	전세마을군지회회장 새마을협의회도부회장	당선
대산면	1	趙重賢	·	1933. 11. 13	대산면 매산리 175-7	농업	전북대학교 대학원수료	전북부산물 비료협의회회장	
	2	鄭奉洙	·	1943. 11. 9	대산면 광대리 589	농업	고졸	대성고등학교이사	
	3	具貴會	·	1943. 10. 5	대산면 연동리 601	농업	고졸	동아일보대산지국장	
	4	金正基	·	1940. 5. 15	대산면 중산리 927	농업	고졸	대산농협이사	
	5	金起采	·	1949. 2. 17	대산면 매산리 1079	농업	고퇴	민주당군선거대책위원 고창경찰서행정자문위원 평통정책자문위원	당선
심원면	1	李在洙	·	1951. 8. 21	심원면 연화리 723-3	수산업	중졸	평민당심원면책 세진수산대표	등록 무효
	2	劉己奉	·	1940. 3. 28	심원면 두어리 327	농업	국졸	고창군청군정자문위원 심원농협수석이사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비고
심원면	3	全鍾烈	남	1946. 9. 26	심원면 월산리 629	수산업	고졸	산림조합 감사 청소년선도위원	당선
	4	李甲鎬	"	1934. 5. 15	심원면 주산리 667	농업	해리고등공민 학교 수료	1970 ~ 1987년 까지 심원면야당면책역임	
홍덕면	1	愼世宰	"	1943. 6. 13	홍덕면 사천리 53	농업	대졸	예비군중대장 선거인당선	당선
	2	李伯龍	"	1936. 10. 19	홍덕면 치룡리 596-5	도정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고창군위원장	
성내면	1	高炳允	"	1940. 5. 12	성내면 옥제리 543	농업	고졸	성내단협근무 성내면농민회장	당선
	2	朴炳燁	"	1936. 7. 27	성내면 산림리 279	농업	고졸	성내국교육성회장	
신림면	1	申東夏	"	1942. 1. 22	신림면 벽송리 57	농업	중졸	법률신문 고창보급소장	
	2	柳吉圭	"	1929. 12. 18	신림면 무림리 139	농업	전북대학원 대졸	신림단협장 (주)한림공영이사 평민고창지구당운영위원	당선
	3	柳煥永	"	1938. 2. 8	신림면 무림리 124	농업	국학대학 법률과졸	신림면새마을협의회장 고창군군정자문위원	
	4	李東範	"	1948. 4. 29	신림면 덕화리 287	농업	전북대학원 제학	신림단협이사 고창군농촌지도자부회장	
부안면	1	全在準	"	1932. 8. 5	부안면 중흥리 146	상업	고퇴	중흥정미소운영 새마을금고이사장	당선
	2	金海東	"	1937. 2. 24	부안면 사창리 243	도정업	국졸	고창군청군정자문위원 한국양곡가공협회고창 지부장·삼계농협이사	
	3	張世泳	"	1949. 8. 29	부안면 검산리 71	상업	고졸	정주지청 상임선도위원	

나. 제2대 군의원 선거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비고
고창읍	1	金東勳	남	1937. 11. 2	고창읍 읍내리 268-5	상업	고졸	제 1 대 의 원 농협이사·감사	
	2	李連洙	"	1935. 4. 20	고창읍 읍내리 324	광업	중졸	제 일 건설 대표 고창교육성회장	
	3	陳南杓	"	1947. 2. 10	고창읍 교촌리 85-10	사업	대학원수료	제 1 대 의 원 지역개발연구회장	당선
	4	金相弼	"	1942. 3. 16	고창읍 읍내리 590-1	상업	대학원수료	고창교육성회장 구시포개발위원장	당선
	5	朴泰洙	"	1938. 8. 5	고창읍 신월리 356	상업	고졸	예비군중대장 제향군인회이사	
	6	金勝鉉	"	1946. 7. 20	고창읍 읍내리 364-3	회사원	대졸	교보생명영업소장	
고수면	1	李相勇	"	1939. 4. 14	고수면 예지리 374	농업	대졸	고수농협조합장	
	2	李鍾云	"	1946. 5. 10	고수면 상평리 636	농업	고졸	제 1 대 의 원 평민당고수면책	
	3	柳信承	"	1955. 3. 25	고수면 황산리 1-4	농업	인천체대졸	고수면청년회장 고창군체육회이사	당선
아산면	1	姜信校	"	1948. 4. 28	아산면 하갑리 67	농업	방통대졸	예비군중대장 농업신문지국장	
	2	成鎬益	"	1955. 4. 3	아산면 목동리 158	관광	대학원수료	제 1 대 의 원 경찰서질서위원장	당선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비고
무장면	1	金南圭	남	1952. 5. 7	무장면 무장리 59-2	상업	국졸	영선중육성회장 체육회부회장	
	2	李敦禹	"	1934. 1. 17	무장면 강남리 178	농업	경학원수료	제 1 대 의 원 무장향교전교	당선
공음	1	崔錫基	"	1947. 3. 10	공음면 철암리 558-3	상업	대학원수료	제 1 대 의 원 고창군체육회이사	당선
상하면	1	全春植	"	1952. 11. 2	상하면 하장리 985-7	농업	방통대졸	상하청년회장 농업후계자회장	
	2	魯炳烈	"	1943. 1. 22	상하면 장호리 505	농업	국졸	상하중육성회장 경찰서방법자문위원	당선
해리면	1	韓冲昊	"	1957. 12. 7	해리면 하련리 205-2	상업	고졸	석산고총동창회장 평민당대의원교육부장	
	2	吳均鎬	"	1945. 12. 16	해리면 하련리 208-6	상업	대학원수료	제 1 대 의 원 해리초중교육성회장	
	3	李晚雨	"	1954. 12. 19	해리면 하련리 156	농업	방통대재학	고창 JC 회 장 해리고동문화회장	당선
성송면	1	金永浩	"	1952. 2. 22	성송면 괴치리 519	농업	국졸	성송농민회장 민주동지회사무국장	
	2	沈載圭	"	1944. 11. 16	성송면 사내리 산27	농업	중퇴	성송농협이사	
	3	李永燁	"	1947. 12. 7	성송면 계당리 246	농업	고졸	의용소방대장 농업후계자회장	
	4	李鍾尉	"	1955. 3. 27	성송면 계당리 79	농업	대학원수료	평민당중앙대의원 고창 JC 회 장	당선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비고
대산면	1	吳通烈	남	1948. 8. 25	대산면 매산리 182-10	농업	대졸	모양라이온스이사 작목회장	
	2	金起采	남	1949. 2. 17	대산면 매산리 1079	농업	대학원수료	제 1 대 의 원 민주당선거대책위원	당선
심원면	1	朴興烈	남	1959. 4. 6	심원면 주산리 37	양식업	방통대재학	청년회장 민족통일위원	
	2	李在洙	남	1951. 8. 21	심원면 연화리 723-3	수산	중졸	평민당심원면책 세진수산대표	
	3	全鍾烈	남	1946. 9. 26	심원면 월산리 629	수산	고졸	제 1 대 의 원 정읍지청상임선도위원	당선
홍덕면	1	金白洙	남	1940. 3. 30	홍덕면 오호리 151	농업	대졸	제 1 대 의 원 홍덕농협장	
	2	元丙喜	남	1936. 7. 25	홍덕면 신송리 215	농업	전북대법대 졸	농협군지부신용부장 민주당홍덕협의회장	당선
	3	崔仁圭	남	1953. 5. 23	홍덕면 홍덕리 238-11	상업	고졸	홍덕중동창회 총무	
성내면	1	李孟根	남	1938. 12. 12	성내면 양계리 210	농업	고졸	성내면장	
	2	高炳允	남	1940. 5. 12	성내면 옥제리 543	농업	고졸	제 1 대 의 원 민주당중앙대의원	당선
신림면	1	柳吉圭	남	1929. 12. 18	신림면 무림리 139	농업	전북대학원 졸	제 1 대 의 원 평민당고창운영위원	
	2	柳鍾潤	남	1941. 2. 10	신림면 무림리 103	농업	경영자반수 료	신림농협장4대 신림중육성회장	당선
부안면	1	全在植	남	1930. 2. 27	부안면 송현리 537	농업	국졸	부안농협장	
	2	金俊衡	남	1948. 10. 4	부안면 증흥리 128	농업	경희대졸	제 1 대 의 원 고창군체육이사	당선

4. 읍·면의원 선거

가. 제1대 읍·면의원 선거

1949년 7월에 제정 공포되어, 그해 12월에 제1차 개정을 통하여 수정 보완된 지방자치법에 의한 제1차 시·읍·면의원 선거는 1952년 4월 25일에 실시되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승만은 대통령직선개헌을 위하여 반국회운동(反國會運動)을 전개하기 위한 책략의 일환으로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그 실사를 강행하였던 것이다. 그의 세력기반인 원외자유당 인사들이 지방의회를 장악케 함으로써 반대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회에 대항하여 맞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선거결과 선거인 총수의 약 90%가 선거에 참여하여 378명의 시의원과 1,115명의 읍의원, 그리고 16,051명의 면의원이 선출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자유당이 25.3%, 자유당 기간단체가 31.3%를 차지함으로써 이승만은 그의 세력기반을 시·읍·면의원 선거에서 구축할 수 있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이 전체의석의 0.2%밖에 차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승만의 지방의회를 통한 반국회투쟁의 의도는 적중한 셈이라고 보여진다.

고창군의 경우 면의원 179명 중에서 자유당이 84석, 국민회가 5석, 한청이 2석, 그리고 무소속이 86석을 차지하였다.

제1대 면의원들의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대 면의원 당선자 득표현황

□ 고창읍(高敞邑)의회

당 선 자	연령	학 력	경 력	득 표 수	정 당
曹 必 承	45	한 문 수 업	농 업	402	무 소 속
朴 東 英	41	소 졸	약 국 상	381	·
徐 東 鉉	30	·	면 서 기 3 년	364	자 유 당
洪 鍾 升	53	·	경 찰 관 3 년	317	무 소 속
金 一 炳	38	·	면 서 기 3 년	270	자 유 당
申 吉 同	49	·	군 서 기 3 년	260	무 소 속
林 柱 成	27	중 학 중 퇴	무	454	·
趙 澤 承	42	한 문 수 업	농 업	414	·

당 선 자	연령	학 력	경 력	득 표 수	정 당
林 洪 祚	57	소 졸	농 업	298	국 민 회
金 在 局	39	중 졸	군 서 기 3 년	404	무 소 속
徐 在 鉉	34	"	"	402	"
金 在 喆	42	소 졸	이 장 2 년	389	"
柳 在 泓	38	무	농 업	383	"
柳 翰 錫	41	한 문 수 업	"	282	"

□ 고수면(古水面)의회

당 선 자	연령	학 력	경 력	득 표 수	정 당
安 乘 浩	55	한 문 수 업	농 업	270	무 소 속
柳 龍 胎	35	소 졸	"	259	자 무 소 당 속
徐 致 容	50	한 문 수 업	"	219	"
金 在 吉	48	"	"	199	"
金 圭 烈	65	"	"	209	"
金 朴 休	40	소 졸	"	195	"
金 鳳 會	38	한 문 수 업	"	182	자 무 유 소 당 속
金 四 春	47	"	"	180	"
金 趙 學	38	"	"	295	"
安 錫 元	58	"	"	225	"
金 玉 植	42	"	"	222	자 무 유 소 당 속
柳 鳳 錫	42	"	"	201	"

□ 성송면(星松面)의회

당 선 자	연령	학 력	경 력	득 표 수	정 당
鄭 瑛 煥	44	소 졸	농 업	407	무 소 속
姜 壽 遠	41	한 문 수 업	"	302	"
鄭 休 燮	44	소 졸	"	400	"
鄭 休 成	50	"	"	296	"
姜 休 文	47	한 문 수 업	"	318	"
朴 汰 年	47	"	"	218	"
金 四 錫	40	"	"	215	"
鄭 碩 均	47	"	"	197	"
李 碩 天	37	소 졸	"	268	"
金 基 源	41	중 졸	"	193	자 무 유 소 당 속
權 赫 鎮	40	소 졸	"	178	"
庾 鳳 萬	40	"	"	163	"
鄭 基 萬	41	"	"	160	"

□ 아산면(雅山面)의회

당 선 자	연령	학 력	경 력	득 표 수	정 당
柳 濟 煥	33	중 졸	농 업	366	자 유 당
朴 炳 元	40	소 졸	면 서 기 3 년	324	"
申 東 九	49	"	이 장 9 년	299	"
姜 璣 元	30	중 졸	농 업	257	"
李 寬 載	42	소 졸	경 찰 관 3 년	무투표당선	"
鄭 四 得	52	"	이 장 8 년	"	"
金 在 烈	33	"	이 장 5 년	"	"
吳 福 煥	38	"	농 업	"	무 소 속
吳 碩 根	39	한 문 수 업	구 장 8 년	"	"
趙 哲 振	41	"	농 업	"	"
李 基 昊	55	"	"	"	"
金 判 根	45	소 졸	이 장 3 년	"	"

□ 상하면(上下面)의회

당 선 자	연령	학 력	경 력	득 표 수	정 당
金 在 燁	38	소 졸	면 서 기 3 년	280	무 소 속
金 剛 容	51	"	농 업	221	"
金 鳳 彩	30	중 졸	철 도 국 3 년	181	자 유 당
全 白 龍	41	소 졸	농 업	133	"
李 永 圭	44	"	"	118	"
金 謹 浩	65	한 문 수 업	면 회 원 2 년	108	"
朴 永 武	34	소 졸	농 업	167	무 소 속
金 在 坤	33	"	면 서 기 3 년	156	"
黃 致 業	47	한 문 수 업	농 업	142	자 유 당
吳 太 性	33	소 졸	이 장 3 년	146	"
徐 奎 鉉	36	"	농 업	128	"
表 尙 天	45	한 문 수 업	"	115	"

□ 해리면(海里面)의회

당 선 자	연령	학 력	경 력	득 표 수	정 당
金堯哲	48	소 졸	농 업	325	자 유 당
朴炳旭	38	"	"	298	"
金永泰	35	"	이 장 3 년	291	"
金大鎭	39	한 문 수 업	농 업	281	"
成夏錫	38	소 졸	이 장 3 년	265	"
李鉉澤	45	"	농 업	254	"
金喆洙	54	한 문 수 업	이 장 3 년	320	"
金彩炯	61	"	농 업	226	무 소 속 당
金湧泰	39	"	"	225	무 소 속 당
金一元	39	소 졸	회 사 원 3 년	189	"
이영래	43	한 문 수 업	이 장 11 년	무투표당선	무 소 속
이성운	49	"	이 장 5 년	"	"
李權泳	45	"	이 장 4 년	"	"

□ 부안면(富安面)의회

당 선 자	연령	학 력	경 력	득 표 수	정 당
鄭寅洛	33	중 학 중 퇴	면 서 기 3 년	296	무 소 속
曹環煥	53	소 졸	면 서 기 10 년	276	"
尹炯重	40	중 졸	면 서 기 3 년	241	"
慎在晟	52	한 문 수 업	농 업	192	자 유 당
姜吉秀	33	소 졸	"	152	자 무 속 당
金日來	54	한 문 수 업	"	181	자 유 당
李殷雨	41	소 졸	면 서 기 8 년	312	자 무 속 당
鄭東學	35	"	농 업	223	자 유 당
李銓雨	30	중 학 중 대	면 서 기 3 년	192	자 무 속 당
趙東煥	45	한 문 수 업	농 업	158	"
安昌憲	38	소 졸	"	195	"
田成燁	49	한 문 수 업	이 장 4 년	152	"
趙圭晟	30	중 졸	농 업	125	"

□ 흥덕면(興德面)의회

당 선 자	연령	학 력	경 력	득표수	정 당
金 相 會	30	중 학 중 퇴	우 편 국 3 년	215	자 유 당
金 慎 善	55	소 졸	농 업	173	·
朴 柱 燦	46	중 졸	상 업 8 년	152	무 소 속
沈 甲 植	43	소 졸	회 사 원 3 년	139	·
陳 洙 成	52	·	구 장 3 년	109	자 유 당
李 鳳 吉	38	·	회 사 원 3 년	108	·
崔 壬 煥	58	·	이 장 12 년	243	·
邊 禹 燮	36	중 소 졸	이 장 4 년	183	·
李 采 煥	39	소 졸	면 서 기 3 년	175	·
金 一 南	43	·	농 업	238	무 소 속
朴 奉 基	37	·	·	206	·
金 鍾 淑	46	·	·	193	자 유 당
金 潤 丙	46	·	운 전 수 10 년	156	무 소 속

□ 신림면(新林面)의회

당 선 자	연령	학 력	경 력	득표수	정 당
金 麟 秀	30	소 졸	농 업	351	한 청
朴 祿 求	39	한 문 수 업	·	286	자 유 당
李 春 植	59	·	·	231	무 소 속
李 趙 成	55	소 졸	·	225	자 유 당
金 長 洙	27	·	·	235	무 소 속
高 光 泰	33	·	·	225	·
高 奇 奉	26	중 학 중 퇴	·	208	자 유 당
李 儀 權	60	한 문 수 업	이 장 7 년	179	무 소 속
金 正 洙	26	대 학 2년 수료	교 원 6 년	376	자 유 당
高 光 南	33	중 졸	면 서 기 3 년	347	·
高 吳 濟	39	한 문 수 업	이 장 4 년	274	무 소 속
柳 熙 碩	49	중 졸	면 서 기 3 년	218	민 국 당
柳 鍾 泰	39	소 졸	농 업	212	무 소 속

□ 성내면(星內面)의회

당 선 자	연령	학 력	경 력	득 표 수	정 당
李 喆 洙	31	중 졸	회 사 원 9 년	275	자 유 당
鄭 休 善	28	소 졸	농 업	183	"
李 秉 魯	47	"	국 민 회 2 년	225	"
黃 品 九	42	중 졸	농 업	248	"
白 南 燮	31	소 졸	경 찰 관 3 년	276	"
李 秉 淵	40	중 졸	회 사 원 1 년	232	"
白 南 伊	55	한 문 수 업	면 협 의 원 1 년	206	무 소 속 당
高 判 吉	51	소 졸	이 장 12 년	166	자 유 당
黃 鳳 翼	42	"	농 업	216	"
魯 學 鍾	37	"	이 장 3 년	216	"
履 載 範	49	"	농 업	139	"
張 禧 東	41	중 학 중 퇴	경 찰 관 3 년	214	"

□ 대산면(大山面)의회

당 선 자	연령	학 력	경 력	득 표 수	정 당
金 在 卜	39	소 졸	면 서 기 3 년	무투표당선	자 유 당
金 在 輕	40	한 문 수 업	이 장 3 년	"	"
姜 智 奎	39	소 졸	"	"	"
金 東 洽	59	한 문 수 업	이 장 3 년	"	"
姜 永 秀	53	"	이 장 5 년	"	"
李 亨 錫	46	전문3년수료	농 업	"	"
安 圭 連	35	중 졸	상 업	"	"
鄭 桂 默	40	"	이 장 3 년	"	"
吳 應 鍾	35	"	면 장 2 년	"	"
辛 斗 碩	59	한 문 수 업	면 장 2 년	"	"
吳 晦 根	36	소 졸	무 농	"	"
俞 東 植	45	한 문 수 업	"	"	"
奇 宇 燮	52	"	"	"	"

□ 무장면(茂長面)의회

당 선 자	연령	학 력	경 력	득표수	정 당
金 源 容	54	한 문 수 업	면 서 기 9 년	무투표당선	자 유 당
金 方 洙	47	"	회 사 원 9 년	"	"
金 正 彬	47	"	이 장 9 년	"	"
金 京 洙	40	"	회 사 원 8 년	"	"
李 應 哲	45	"	이 장 9 년	"	"
金 孟 圭	37	소 졸	농 업	"	"
鄭 基 柱	36	"	소 방 대 장 1 년	"	"
魯 棟 立	36	"	이 장 5 년	"	무 소 속
鄭 基 柱	31	"	농 업	"	한 무 소 속
李 康 洙	53	"	"	"	"
鄭 休 春	36	중 졸	경 찰 관 3 년	"	"
鄭 棋 湜	31	대 졸	회 사 원 3 년	"	"
金 允 成	43	한 문 수 업	농 업	"	"

□ 공음면(孔音面)의회

당 선 자	연령	학 력	경 력	득표수	정 당
朴 允 求	31	소 졸	군 인 3 년	무투표당선	무 소 속
蔡 弘 業	35	"	이 장 3 년	"	자 유 당
崔 判 吉	38	"	이 장 2 년	"	무 소 속
金 宋 會	35	"	소 방 대 장	"	자 유 당
金 塔 燮	41	"	이 장 8 년	"	"
裴 炯 燮	52	한 문 수 업	농 업	"	무 소 속
全 根 鎬	56	"	"	"	"
金 永 琪	25	소 졸	군 인 8 년	"	"
鄭 均 澤	25	"	군 인 3 년	"	자 유 당
文 昌 煥	33	중 졸	경 찰 관 3 년	"	"
丁 景 日	56	한 문 수 업	농 업	"	무 소 속
金 景 奎	33	중 학 중 퇴	경 찰 관 3 년	"	자 유 당
李 泰 鎮	44	소 졸	농 업	"	무 소 속

□ 심원면(心元面)의회

당 선 자	연령	학 력	경 력	득표수	정 당
鄭 在 厚	50	한 문 수 업	이 장 5 년	무투표당선	무 소 속
金 堯 聖	45	소 졸	면 서 기 3 년	"	국 민 속
陳 世 彦	48	"	이 장 4 년	"	국 민 속
朴 年 喆	38	한 문 수 업	이 장 5 년	"	국 민 속
金 炳 友	52	소 졸	면 서 기 5 년	"	무 소 속
李 寬 憲	35	"	이 장 1 년	"	"
金 聖 烈	49	한 문 수 업	국 민 회 장 8 년	"	국 민 회 속
金 梁 珍	58	"	이 장 3 년	"	국 민 속
金 在 丁	55	"	면 서 기 3 년	"	"
李 昌 洙	29	소 졸	이 장 5 년	"	"
金 昌 基	40	"	면 서 기 8 년	"	자 유 당
孫 亮 協	52	한 문 수 업	이 장 5 년	"	"

나. 제2대 읍·면의원 선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파동이 지나고 제3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지방자치법은 1956년 2월 7월 2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읍·면장이 지방의회에서 간선되던 것을 주민에 의한 직선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지방자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권(不信任權)도 폐지시켰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변경된 선거제도에 의하여 1956년 8월 8일에 시·읍·면장과 시·읍·면의회 의원을 뽑는 동시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자유당은 제1대 지방의회 때보다 높은 안정세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면의회도 갈수록 그러하였다.

고창군의 읍·면장 및 의원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창읍(高敞邑)의회

科 읍장: 曹秉鼓

당 선 자	성 별	연 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裴 宗 璉	남	40	상 업	소 졸	상 업 10 년	무 소 속
徐 東 鉉	"	33	농 업	"	교 원	자 유 당
金 一 炳	"	41	토목청부업	"	"	"
曹 璘 升	"	45	농 업	"	면 의 원	무 소 속
朴 東 浣	"	33	"	"	"	자 유 당

당 선 자	성 별	연 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崔萬基	남	31	회 사 원	중 소	회 사 원	무 소 속
曹甲承	"	42	농 업	중 소	면 의 기 원	"
林柱成	"	30	"	대 소	"	"
朴南成	"	32	"	"	"	자 유 당
金在成	"	43	"	"	"	"
柳泰錫	"	28	"	"	"	무 소 속
嚴京燮	"	37	"	"	"	자 유 당
柳泓錫	"	37	"	"	"	"

□ 고수면(古水面)의회

면장: 安秉一

당 선 자	성 별	연 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丁成秀	남	49	농 업	소	이 장	자 유 당
安珍煥	"	46	"	한 문 수	체 대 군 인	"
李公柄	"	27	"	중 고	"	"
金斗厚	"	31	"	중	순 대 군 인	"
李鍾厚	"	39	"	"	순 대 군 인	"
吳鍾惠	"	27	"	"	순 대 군 인	"
朴宗均	"	49	"	한 문 수	이 순 장 경	"
金點童	"	33	"	한 소	면 의 회 의	"
柳鳳童	"	45	"	한 문 수	면 의 회 의	"
金玉植	"	43	"	"	면 의 회 의	"
安錫煥	"	35	"	소	면 의 회 의	"

□ 아산면(雅山面)의회

면장: 朴良默

당 선 자	성 별	연 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姜天秀	남	34	농 업	소	이 장	무 소 속
崔翼相	"	34	상 농	"	이 면 의 회 의	"
羅弘燦	"	37	"	중 학 중	이 면 의 회 의	자 유 당
劉永三	"	33	"	중 소	이 면 의 회 의	"
李俊載	"	42	"	중 소	이 면 의 회 의	"
吳永寬	"	26	"	중 소	이 면 의 회 의	무 소 속
李寬載	"	40	"	"	이 면 의 회 의	"
林東柱	"	42	"	"	이 면 의 회 의	"
李東江	"	40	"	한 문 수	이 면 의 회 의	"
李承源	"	27	"	중 대 소	이 면 의 회 의	"
趙金燮	"	31	"	"	이 면 의 회 의	"
趙奉勳	"	28	"	"	이 면 의 회 의	무 소 속

□ 무장면(茂長面)의회

면장: 鄭吉洙

당 선 자	성 별	연 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徐 鍾 來	남	37	농 업	소 졸	이 장	자 유 당
金 珍 轍	"	35	"	중 학 중 퇴	면 의 원	"
金 在 成	"	40	"	소 졸	이 장	"
朴 龍 柱	"	41	"	"	"	"
金 澤	"	46	"	중 학 중 퇴	면 서 기	"
魯 棟 立	"	38	"	소 졸	면 면 의 원	"
金 全 順	"	39	"	"	이 장	"
孫 炳 一	"	30	"	중 소 졸	면 서 기	무 소 속
吳 鳳 煥	"	30	"	소 졸	이 장	자 유 당
鄭 基 湜	"	34	"	중 소 졸	면 의 원	"
劉 相 昱	"	33	"	소 졸	"	무 소 속
金 筆 煥	"	34	"	"	"	자 유 당

□ 공음면(孔音面)의회

면장: 金基成

당 선 자	성 별	연 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金 斗 會	남	47	농 업	소 졸		자 유 당
崔 福 男	"	39	"	"	면 의 원	"
羅 承 男	"	37	"	"	신 문 사 원	무 소 속
金 守 根	"	54	"	"	"	"
李 鍾 現	"	33	"	"	소 방 대 장	자 유 당
庚 庸 中	"	34	"	대 졸	"	무 소 속
鄭 學 燮	"	60	"	"	면 의 회 의 장	자 유 당
崔 必 周	"	35	"	"	부 면 장	"
南 宮 炫	"	43	"	"	사 친 회 장	무 소 속
文 昌 煥	"	63	"	소 졸	"	"
全 性 璘	"	53	"	"	"	"
崔 炳 奉	"	34	"	"	경 찰 2 년	자 유 당

□ 상하면(上下面)의회

면장: 房二熾

당 선 자	성 별	연 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金 在 默	남	33	농 업	대	졸	면 의 원	자 유 당
金 相 得	"	33	"	대	졸	"	"
李 慕 蘭	"	55	"	소	졸	면 장	"
金 鍾 五	"	32	"	"	"	경 찰	"
金 容 烜	"	30	"	"	"	면 서 기	"
黃 致 一	"	36	"	"	"	"	"
朴 永 默	"	37	"	"	"	"	"
魯 濶 熙	"	28	"	"	"	"	"
徐 奎 鉉	"	37	"	한 문 수 업	"	면 의 원	"
魚 鍾 年	"	29	"	소	졸	면 서 기	"
魯 元 塾	"	46	"	"	"	"	"

□ 해리면(海里面)의회

면장: 金永泰

당 선 자	성 별	연 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成 夏 徹	남	40	농 업	소	졸	면 서 기	민 주 당
李 鉉 三	"	28	"	"	"	"	무 소 속
李 喆 寧	"	42	"	"	"	이 장	"
金 孟 洙	"	40	"	"	"	이 장	자 유 당
殷 俊 杓	"	30	"	대	졸	회 사 원	무 소 속
成 夏 碩	"	37	"	대	졸	면 의 원	자 유 당
朴 錫 容	"	41	"	소	졸	이 장	"
박 승 철	"	37	공 무 원	중	졸	회 사 원	무 소 속
金 一 元	"	41	농 업	소	졸	"	자 유 당
李 判 雨	"	36	"	"	"	이 장	무 소 속
李 漢 泳	"	38	"	중	졸	면 서 기	"
文 圭 石	"	44	"	한 문 수 업	"	이 장	"

□ 성송면(星松面)의회

면장: 權赫鎮

당 선 자	성 별	연 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姜 大 玉	남	39	농 업	소 졸	이 장	자 유 당
鄭 大 默	"	34	"	중 졸	면 서 기	"
金 寧 海	"	31	"	소 졸	이 장	"
鄭 相 烈	"	30	"	중 졸	교 원	민 주 당
權 泰 洪	"	37	"	한 문 수 업		자 유 당
周 同 燮	"	27	"	중 졸	면 서 기	"
姜 奉 遠	"	28	"	소 졸	"	"
鄭 上 鐸	"	29	"	중 졸	"	"
權 赫 承	"	27	"	"	면 서 기	"
鄭 芳 默	"	27	"	"	"	"
權 寧 泰	"	28	"	"	군 서 기	"
庚 炳 泰	"	28	"	"	이 장	"

□ 대신면(大山面)

면장: 鄭均善

당 선 자	성 별	연 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金 龍 鉉	남	40	소 졸	이 장	자 유 당	농 업
鄭 在 豐	"	40	"	"	"	"
趙 誠 柱	"	39	중 졸	면 의 원	"	"
金 奉 琪	"	33	소 졸	이 장	"	"
鄭 均 昌	"	33	"	공 무 원	"	"
安 鍾 遠	"	25	중 졸	"	"	"
卓 坂 洙	"	44	"	"	"	"
朴 一 南	"	31	소 졸	이 장	"	"
吳 應 鍾	"	53	"	면 장	"	"
李 炳 琪	"	33	"	신 문 기 자	"	"
辛 一 夏	"	33	"	이 장	"	"
鄭 鳳 彩	"	34	"	이 장	"	"

□ 심원면(心元面)의회

면장: 孫亮淳

당 선 자	성 별	연 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李 米 石	남	35	염 업	중 학 중 퇴	회 사 원	무 소 속
李 圭 采	"	31	농 업	소	"	자 유 당
裴 容 淡	"	29	"	"	군 인	"
朴 鎰 求	"	42	"	"	구 장	무 소 속
鄭 吉 萬	"	41	회 사 원	"	면 서 기	"
李 行 烈	"	34	농 업	"	군 인	자 유 당
金 辰 根	"	31	"	"	"	"
金 鍾 述	"	37	"	한 문 수 업	구 장	"
李 昌 洙	"	31	"	소	면 의 원	"
孫 奉 述	"	36	"	소 중 퇴	구 장	"
孫 奇 焄	"	30	"	중 학 중 퇴	면 서 기	무 소 속

□ 흥덕면(興德面)의회

면장: 樞鑾善

당 선 자	성 별	연 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崔 東 煥	남	30	농 업	소	이 장	무 소 속
沈 甲 植	"	46	상 업	"	면 의 원	자 유 당
慎 鏞 椅	"	53	농 업	중	"	"
鄭 點 洙	"	26	"	소	군 인	참 전 회
李 奉 喆	"	47	"	"	"	무 소 속
宋 在 萬	"	33	"	"	이 장	자 유 당
李 載 南	"	28	"	"	면 서 기	무 소 속
蔡 喆 默	"	39	"	"	회 사 원	자 유 당
金 鍾 淑	"	49	"	중 학 중 퇴	면 의 원	"
尹 平 燮	"	31	"	소	면 서 기	"
朴 奉 基	"	39	"	중 학 중 퇴	"	"

□ 성내면(星內面)의회

면장 : 高鉉圭

당 선 자	성 별	연 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南 載 銅	남	29	농 업	소 졸		무 소 속
高 箕 相	"	30	"	"		"
金 尙 永	"	44	"	중 졸	회 사 원	자 유 당
李 國 鍾	"	45	"	"	면 장 원	"
黃 晶 九	"	45	"	"	의 원	"
李 點 烈	"	28	"	소 졸	"	"
白 南 燮	"	36	"	"	"	"
高 河 相	"	45	"	"	"	"
黃 鳳 翼	"	47	"	한 문 수 업	"	"
金 正 義	"	50	"	소 졸	"	"
魯 學 鎮	"	38	"	"	"	"

□ 신림면(新林面)의회

면장 : 高光南

당 선 자	성 별	연 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朴 東 來	남	42	농 업	소 졸	이 장	무 소 속
尹 炳 贊	"	30	"	"	경 찰 기	자 유 당
조 익 년	"	29	"	"	면 서 기	무 소 속
朴 子 承	"	25	"	"	"	자 유 당
李 南 信	"	29	"	"	한 의 사	무 소 속
林 漢 豐	"	38	"	한 문 수 업	이 의 장	자 유 당
金 星 壽	"	31	"	소 졸	면 의 원	무 소 속
金 基 立	"	47	"	한 문 수 업	이 의 장	"
柳 甲 圭	"	31	"	국 소 졸	면 의 장	자 유 당
李 三 圭	"	52	"	소 졸	면 서 기	"
吳 濟 金	"	43	"	"	면 의 원	"
金 元 結	"	29	"	"	대 창 장	"

□ 부안면(富安面)의회

면장: 愼在展

당 선 자	성 별	연 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金 日 來	남	57	농 업	한 문 수 업	면 의 회 의 장	자 유 당
李 銓 雨	"	35	"	소 졸	면 의 원	"
朴 商 圭	"	29	"	중 학 중 퇴	교 관	"
崔 鎭 大	"	47	"	소 졸	조 합 원 장	무 소 속
尹 京 重	"	45	"	"	이	"
이 두 범	"	53	"	한 문 수 업		"
李 正 九	"	39	"	소 졸		"
金 潤 成	"	29	"	중 졸		자 유 당
趙 炳 秀	"	33	"	소 졸		무 소 속
曹 圭 晟	"	39	"	중 학 중 퇴	면 의 원	자 유 당
金 命 植	"	44	"	농 졸		"
金 甲 童	"	33	"	소 졸	소 방 대 원	"

다. 제3대 읍·면의원 선거

허정 과도내각이 퇴진하고 뒤를 이어 들어선 민주당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자유당이 1958년 2·4과동 때 시·읍·면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었던 지방자치법을 다시 직선제로 복귀하는 한편 시비점을 보완하여 4·19정신에 맞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지사 및 특별시장까지 직선토록 하였다. 1960년 11월 1일에 공포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의해 동년 12월 12일에 서울특별시 및 도의회 의원 선거를, 12월 19일에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12월 26일에 시·읍·면장 선거, 12월 29일에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전라북도의 읍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는 정수 92명에 대해 입후보자는 200명으로 2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투표율은 80.1%로 비교적 높았다. 투표결과 무소속이 79명, 민주당이 12명, 신민당이 1명으로 무소속이 단연 높은 진출을 보였다.

면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면의원 정수 1,763석을 놓고 3,465명의 후보자가 나서 약 2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선거결과 무소속이 1,350명, 민주당이 372명, 신민당이 37명, 기타 3명이 당선되어 면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이 단연 우세한 진출을 보였다.

읍장선거에 있어서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8개의 읍장직을 놓고 40명이 입후보하여 5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무소속이 7명, 민주당이 1명을 각각 당선시킴으로써 여기에서도 무소속의 현저한 진출을 볼 수 있다.

또한 164개의 면장직에 대해 783명이 입후보하여 48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무소속이 121명, 민주당이 40명, 신민당이 3명을 당선시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소속이 단연 앞서고 있다. 이러한 무소속의 눈부신 진출과 민주당의 패배는 그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낮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경우라고 보여진다.

고창군의 읍·면의원 및 장(長)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읍·면장〉

고창읍장 : 박은구, 공음면장 : 김기성, 심원면장 : 손기엽, 부안면장 : 김부성, 상하면장 : 김상득, 흥덕면장 : 이재한, 고수면장 : 이종후, 해리면장 : 김한병, 성내면장 : 이진범, 아산면장 : 이옥재, 성송면장 : 정기만, 신림면장 : 고광남, 무장면장 : 김진철, 대산면장 : 정균선(이상 14명)

〈읍·면의원〉

고창읍 : 曹源承, 崔萬基, 裴宗蓮, 劉聲鍾, 李起華, 曹秘承, 全昌燮, 曹甲承, 劉永會, 金永斗, 鄭榮基, 曹東洙, 李洪雨

고수면 : 安甫淵, 吳鍾德, 徐致容, 丁成秀, 金壽鉉, 崔石金, 李義福, 安載燦, 趙常元, 劉永元, 李公雨

아산면 : 羅弘燦, 金源爽, 劉世永, 姜天秀, 朴普根, 李鍾萬, 李俊載, 趙龍勳, 吳性烈, 趙榮奘, 康成煥, 尹奉祚

성송면 : 宋炳玉, 柳滿錫, 庚炳琪, 權泰正, 洪淳鎬, 周東燮, 李權鉉, 俞致旭, 姜結秀, 鄭龍煥, 姜興錫, 柳鉉鐸

대산면 : 金容煥, 辛鍾源, 趙重賢, 金寧春, 朴在鶴, 金鍾焄, 崔炳先, 鄭昌煥, 林才衍, 丁炳棟, 金千石

무장면 : 金永來, 金在成, 柴泰洵, 李燾, 金海成, 康休權, 鄭休重, 金筆煥, 吳鳳煥, 徐鍾來, 千丙德, 金永杓

공음면 : 金守根, 金斗會, 崔苾周, 崔判吉, 羅承男, 崔福南, 權寧述, 庚庸中, 鄭奉默, 文昌煥, 李鍾現, 全性璘

상하면 : 金休源, 金在千, 孫亨澤, 表泰熙, 朱永坤, 朴憲澤, 李暹熙, 金大鎮, 金在泳

해리면 : 金在錫, 金勝坤, 金容基, 崔炳模, 李正錫, 李和範, 李錫雨, 李錫泳, 趙成夏, 李德淵, 孫俊植

심원면 : 孫基焱, 裴略淡, 閔炳烈, 李奎采, 陳世彥, 朴年喆, 李周憲, 孫奉述, 金翔昊, 吳壽鶴

흥덕면 : 李允錫, 金在慶, 吳元鍾, 鄭在植, 金結洙, 金珍錫, 李正錫, 李普寧

성내면 : 南栽綱, 李點烈, 白南燮, 高永植, 魯鎮河, 黃鳳翼, 朴性仁, 黃晶九, 高光得, 李鍾基, 白一鉉, 高容淑

신림면 : 柳鍾洙, 李明信, 金元喆, 吳東洙, 李正範, 金堯鎮, 李文千, 高大植, 趙孟連, 李承烈

부안면 : 金鍾連, 鄭得采, 朴東永, 金正鉉, 李主烈, 李京九, 金容燮, 金辛洙, 金鍾述, 崔振鎬, 申鉉根, 吳然哲

5. 교육위원 선거

자유당 정권은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49년 12월 교육법을 제정하고 52년 4월 교육법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52년 6월 4일 교육자치제가 한국 헌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 교육위원 선거는 특별시·도와 시·군단위의 2계층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 특별시와 도의 경우에는 시·군 대표들로 구성되고, 시·군자치구는 면·읍·동에서 직선된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각 시·군의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선출하였다.

고창군의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 직선된 1명씩, 14명으로 구성되었다. 고창군 교육감은 李升永씨가 1·2대를, 金容純씨가 3대를 맡았다.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는 각 시·군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 1인의 대표와 도지사가 임명한 3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고창군에서는 吳成鐸씨가 1·2·3대의 대표로 선출되어 도교육위원이 되었다. 오씨는 3대 때에 도부의장직을 맡았다.

자유당 시절에 시작되어 3번 실시되었던 교육위원 선거는 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와 더불어 그 막을 내리고 깊은 잠을 자다가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4월 23일에 동시행령이 마련됨으로써 재현될 수 있었다. 30여년만에 부활된 교육자치법은 자유당 시절의 2단계 관할구역을 축소하여 시·도에만 국한하였다. 그리고 교육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되었다. 시·군·구의회에서 2인씩을 도의회에 추천해야 하는데 이때 피추천자 2인 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 경력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도의회는 각 시·군·구에서 추천한 2인 중에서 1인씩을 선출하는데 이때에도 전체 당선자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경력자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고창군의 경우 유병천과 정규동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도의회는 비교육 경력자인 유병천씨를 도교육위원으로 선출하였다.

□ 제1대 고창군 교육위원

성 명	연 령	직 업	경 력
林 暢 郁	41	농 업	면 장 3 년
金 憲 奎	31	농 업	면 서 기 5 년
金 榮 洙	38	회 사 원	신 문 기 자 (대 줄)
成 夏 潤	38	농 업	국 교 후 원 차 장
鄭 均 善	38	·	면 협 의 원
慎 碩 載	35	·	면 농 회 장

성명	연령	직업	경력
金正洙		농업	면직원 8년
鄭寅洛	34	신문지국	면의회 부의장
鄭在淳	37	농업	소졸
李昌根	36	중학교장	대졸
金在寬	46	농업	사친회장
金奉海	31	·	중학 중퇴
金允植	62	·	면장 8년
孫葛淳	37	·	면의회 의장

※ 제 2·3대는 자료구입 불가

6. 기타선거

이 항에는 국회의원, 참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일주체 대의원 선거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으로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972년 12월 15일 실시되었다.

고창군의 경우에는 15명의 대의원 정수를 놓고 36명이 경합하여 24대 1의 경쟁을 보였다.

처음 실시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많은 후보자들이 경합을 하였다. 14개 지구 중 어느 지역구에도 무투표 당선 없었다는 것은 대의원 직책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당선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당선자 명단

선거구명	당선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고창읍	金判淳	1917. 6. 4	고창읍 읍내리 157	
	柳錫滿	1938. 3. 5	고창읍 읍내리 353-3	
고수면	安井會	1935. 5. 24	고수면 황산리 72	
아산면	鄭善默	1938. 4. 5	아산면 용계리 80	
무장면	朴成宇	1939. 9. 27	무장면 무장리 280-2	
공음면	庚東奕	1939. 3. 5	공음면 건동리 770	
상하면	魯淵業	1939. 5. 6	상하면 하장리 955	
해리면	李德淵	1933. 11. 9	해리면 동호리 1-6	
성송면	姜聲昱	1935. 6. 20	성송면 암치리 319	
대산면	康九丁	1929. 7. 23	대산면 회룡리 452	
심원면	朴來杓	1934. 2. 20	심원면 연화리 705	
홍덕면	金乘甲	1924. 10. 3	홍덕면 치룡리 596-3	
성내면	李點烈	1928. 2. 3	성내면 양계리 509	
신림면	高一圭	1930. 1. 3	신림면 무림리 452	
부안면	朴知吾	1936. 6. 4	부안면 상암리 218	

□ 후보자별 득표사항

선거구명	후보자별 득표수			
고창읍	庚東蘭 1,504	金判淳 2,945	殷鳳杓 1,318	柳錫滿 2,615
고수면	崔炳日 1,728	安正會 2,019		
아산면	鄭善默 1,495	金永載 624		
무장면	朴成宇 2,954	鄭益煥 1,637		
공음면	鄭玟炫 1,364	庚東奕 1,941	姜大振 1,268	
상하면	魯淵業 2,412	金在默 1,381		
해리면	殷浚杓 1,512	李鍾述 1,618	李德淵 1,883	
성송면	姜聲昱 2,109	鄭在哲 1,639		
대산면	趙重賢 831	姜九丁 1,937	金範起 1,846	
심원면	孫亮淳 1,100	金道性 990	朴來杓 1,586	
홍덕면	金乘甲 2,045	李康南 1,745		
성내면	李點烈 1,720	金泰奧 966	李守京 848	
신림면	高一圭 1,667	趙主熙 1,294	李孟起 1,590	
부안면	朴知吾 2,529	洪淳範 1,914		

□ 투표상황

선거구명	투표구수	선거인수	투표자 수			가권수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78	(2,748) 86,541	62,574	5,379	65,953	20,588	76.2
고창읍	11	(421) 11,376	8,382	171	8,553	2,823	75.2
고수면	4	(155) 4,996	3,747	135	3,882	1,114	77.7
아산면	6	(226) 6,272	2,119	2,506	4,625	1,647	73.7
무장면	5	(261) 6,577	4,591	276	4,367	1,710	74.0
공음면	6	(205) 5,996	4,573	120	4,693	1,303	78.3
상하면	5	(134) 5,103	3,793	461	4,254	849	83.4
해리면	7	(169) 7,085	5,013	407	5,420	1,665	76.5
성송면	4	(156) 5,171	3,748	183	3,931	1,240	76.4
대산면	5	(220) 6,377	2,614	125	4,739	1,638	74.1
심원면	4	(149) 4,676	3,676	148	3,824	852	81.8
홍덕면	5	(148) 5,381	3,790	225	4,015	1,366	74.6
성내면	5	(151) 5,062	3,534	249	3,783	1,279	74.7
신림면	6	(207) 6,337	2,551	158	4,709	1,628	74.3
부안면	5	(146) 6,132	4,443	215	4,658	1,474	76.0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978년 5월 18일에 실시되었다.

고창군의 경우 정수 15인에 32인이 경합하여 평균 21대 1의 경쟁을 보였으나 제1대 때와는 달리 무장면, 성송면, 심원면 등 3개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었다. 각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당선자 명단

선거구명	당선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고창읍	曹乘泰	1935. 8. 21	고창읍 월암리 139	
	金判淳	1917. 6. 4	고창읍 읍내리 157	
고수면	安井會	1935. 5. 24	고수면 황산리 72	
아산면	羅弘燦	1920. 12. 30	아산면 목동리 397	
무장면	朴成宇	1939. 9. 27	무장면 무장리 280-2	
공음면	鄭玟鉉	1936. 7. 6	공음면 균유리 190	
상하면	魯淵業	1939. 5. 6	상하면 하장리 943-1	
해리면	李德淵	1933. 11. 9	해리면 동호리 1-5	
성송면	鄭哲默	1935. 1. 15	성송면 산수리 85	
대산면	金範起	1942. 4. 3	대산면 덕천리 145	
심원면	朴來杓	1934. 2. 20	심원면 연화리 725	
홍덕면	李康南	1931. 11. 7	홍덕면 신덕리 108	
성내면	李點烈	1928. 2. 3	성내면 양계리 509	
신림면	韓相薰	1947. 6. 2	신림면 부송리 309	
부안면	朴知吾	1936. 6. 4	부안면 상암리 28	

□ 후보자별 득표사항

선거구명	후보자별 득표수			
	후보자명	득표수	후보자명	득표수
고창읍	曹乘泰	2,342	金起華	2,276
			陳南權	540
			金判淳	2,455
고수면	安井會	2,126	金相勇	1,764
			林桓柱	2,120
아산면	姜程熙	2,159	羅弘燦	2,440
무장면	朴成宇	무투표당선		
공음면	金明植	657	朴泳石	1,208
			情玟鉉	1,648
			金吉洙	1,462
상하면	魯淵業	2,382	金煥鉉	1,908
해리면	李德淵	2,707	尹錫山	2,467
성송면	鄭哲默	무투표당선		
대산면	吳晦根	1,989	金範起	1,993
			辛禹夏	1,207
심원면	朴來杓	무투표당선		
홍덕면	金乘甲	2,002	李康南	2,171
성내면	梁淳喆	1,390	李點烈	2,433
신림면	高一奎	1,189	韓相薰	1,661
			金永喆	1,559
부안면	朴知吾	2,936	洪淳範	1,814

□ 투표상황

선거구명	투표 구수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수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78	(2,309) 81,941	55,005	1,931	56,936	9,640	85.5
고창읍	11	(368) 11,572	9,733	205	9,938	163	83.1
고수면	4	(155) 4,670	3,890	124	4,014	645	85.9
아산면	6	(169) 5,754	4,599	198	4,797	957	83.3
무장면	5	(158) 6,252	무 투표 당선				
공음면	6	(151) 5,756	4,975	157	5,132	624	89.1
상하면	5	(112) 5,063	4,290	217	4,507	556	89.0
해리면	7	(210) 6,631	5,174	216	5,390	1,241	81.2
성송면	4	(146) 4,673	무 투표 당선				
대산면	5	(167) 6,207	5,189	188	5,377	830	86.6
삼원면	4	(88) 4,440	무 투표 당선				
홍덕면	5	(150) 5,119	4,173	174	4,347	772	81.9
성내면	5	(139) 4,632	3,823	95	3,918	714	81.6
신림면	6	(181) 5,338	4,409	160	4,569	769	85.5
부안면	5	(155) 5,834	4,750	197	4,947	887	84.7

나. 통일주체 대의원과 선거인

〈제1대 통일주체 선거인 선거〉

1972년 10월 17일 '유신(維新)'의 대변혁에 의하여 제4공화국은 탄생되었다. 1972년 11월 21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유신헌법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민의 전권적 수입기관'으로서 전국에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구 1인에게 1구 5인까지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병용하였고 철저한 선거공영제 아래 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 선거법에 의하여 1972년 12월 15일과 1978년 5월 18일 각각 제1차와 제2차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다. 1차에서는 전국 1,630개 구에서 2,359명을 선출하였으나 2차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을 개정하여 1,665개 구에서 2,583인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기능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 지역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소위 '유정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이러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찬반토론도 없이 투표를 진행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게 하였다. 그리고 유정회 국회의원선거도 또한 대통령의 추천에 의한 유정회 국회의원 명단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하여 치루어진 대통령선거는 1972년 12월 23일과 1978년 7월 6일에 제8·9대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하였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시해되자 1979년 12월 6일 최규하를 제10대 대통령으로, 그리고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全斗煥)을 선출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전두환은 1980년 10월 22일 헌법을 개정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1980년 12월 31일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대신에 대통령선거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인의 임무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주업무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다른 것이 있다면 대통령선거인은 대통령을 선출할 뿐 지역선거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에 대한 선출권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구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구와 대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1선거구에서 1인의 대의원선거를 하되 1선거구의 인구가 2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구 2만까지 마다 1인의 대의원을 더 추가하여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선거구의 인구가 10만을 초과하여 확정될 경우에는 그 선거구의 대의원 정수는 5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인

선거구와 정수에 대해서는 1선거구에서 2인의 대통령선거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선거구의 인구가 2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구 1만까지마다 1인의 대통령선거인을 더 추가하여 선거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1선거구의 인구가 5만을 초과하여 확정하는 경우 그 선거구의 대통령선거인과 정수는 5인으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인은 5,277명으로 이전보다 2배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13대 대통령선거의 특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것에 비하여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의 선출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적이지만 자유경쟁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 제13대 대통령후보자별 득표현황

구분 대통령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한국국민당 金鍾哲	민권당 金義澤	민주한국당 柳致松	민주정의당 全斗煥	계			
5,277	5,271	85	26	404	4,755	5,270	1	6	99.9
후보자별득표율(%)		1.6	0.5	7.7	90.2	100			

□ 당선자 명단

선 거 구 명	당선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비 고
고 창 읍	金 寧 完	1946. 3. 22	고창읍 읍내리 223	
	金 東 勳	1937. 11. 2	고창읍 읍내리 177	
	金 正 雄	1938. 6. 21	고창읍 덕산리 73	
고 수 면	徐 淳 基	1948. 9. 9	고수면 부곡리 293	
	崔 炳 日	1931. 3. 13	고수면 황산리 148	
아 산 면	姜 程 熙	1926. 9. 17	아산면 하갑리 67	
	鄭 金 悅	1939. 6. 8	아산면 남산리 645	
무 장 면	鄭 基 杓	1947. 9. 8	무장면 덕림리 332	
	李 達 洙	1948. 4. 18	무장면 강남리 751	
공 음 면	金 永 植	1935. 12. 29	공음면 칠암리 산28	
	金 明 會	1938. 2. 27	공음면 선동리 773	
상 하 면	金 箕 柱	1927. 11. 2	상하면 장신리 1002	
	李 又 衍	1944. 12. 8	상하면 자룡리 360	
해 리 면	李 晶 洙	1935. 7. 19	해리면 사반리 179	
	李 德 淵	1933. 11. 9	해리면 동호리 125	

선거구명	당선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성송면	金範山	1935. 12. 12	성송면 상금리 172	
	鄭庸煥	1928. 8. 17	성송면 학천리 313	
대산면	鄭昌永	1941. 6. 18	대산면 덕천리 123	
	卓正淵	1936. 4. 14	대산면 울촌리 529	
심원면	韓潤錫	1940. 9. 1	심원면 만돌리 675	
	李辰奎	1940. 6. 2	심원면 주산리 170	
홍덕면	愼世宰	1943. 6. 13	홍덕면 사천리 53	
	李伯龍	1936. 10. 19	홍덕면 치룡리 596-5	
성내면	朴秉燁	1936. 7. 27	성내면 산림리 279	
	高光祿	1932. 9. 12	성내면 옥계리 406	
신림면	尹正鉉	1932. 3. 17	신림면 무림리 81	
	韓相薰	1947. 6. 2	신림면 부송리 309	
부안면	朱乘來	1933. 2. 9	부안면 송현리 234	
	李康奉	1947. 11. 28	부안면 용산리 산5	

□ 후보자별 득표사항

선거구명	후보자별 득표수				
고창읍	金寧完 1,860	柳濟善 1,627	金東勳 2,480	柳濟旭 777	金正雄 2,535
고수면	徐淳基 1,105	崔炳日 1,629	安在燦 774		
아산면	姜程熙 1,748	劉贊植 961	鄭金悅 1,450		
무장면	鄭基杓 1,729	李達洙 1,511	徐吉泳 1,382		
공음면	金永植 1,506	金明會 1,738	金大錫 1,352		
상하면	金笑柱 1,579	李又衍 1,453	金洙 843		
해리면	李晶洙 1,896	李德淵 1,636	趙權行 1,433		
성송면	李永燁 990	金範山 1,465	鄭庸煥 1,180		
대산면	金鍾玉 906	金敏鉉 1,303	鄭昌永 1,468	卓正淵 1,313	
심원면	安準枝 987	韓潤錫 1,475	李辰奎 1,019		
홍덕면	愼世宰 1,088	李規桓 1,005	李伯龍 1,468	李載南 528	
성내면	李載燁 761	朴秉燁 926	曹秉湜 646	高光祿 867	南栽金 411
신림면	尹正鉉 1,551	韓相薰 1,212	高南奎 1,167	文成烈 117	
부안면	朱乘來 594	李康奉 90	全在準 258		

□ 투표상황

선거구명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 수			기권수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78	150,292	(2,284) 75,841	63,193	1,110	64,303	(109) 11,538	84.8
고창읍	11	22,260	(330) 11,239	9,279	86	9,365	(23) 1,874	83.4
고수면	4	8,355	(102) 4,144	3,503	52	3,560	(4) 584	85.9
아산면	6	10,355	(158) 5,130	4,159	82	4,241	(6) 889	80.7
무장면	5	11,297	(180) 5,664	4,622	129	4,751	(13) 913	83.9
공음면	6	10,848	(188) 5,322	4,596	81	4,677	(5) 645	87.8
상하면	5	9,138	(139) 4,721	3,875	90	3,965	(12) 756	84.0
해리면	7	11,647	(170) 5,754	4,905	127	5,092	(4) 662	88.5
성송면	4	8,587	(154) 4,297	3,635	94	3,729	(7) 568	86.8
대산면	5	12,064	(167) 6,072	4,990	74	5,064	(7) 1,008	83.4
심원면	4	8,500	(99) 3,930	3,481	57	3,538	(8) 392	90
홍덕면	5	9,411	(148) 4,947	4,089	56	4,145	(8) 802	83.8
성내면	5	8,172	(132) 4,299	3,611	43	3,654	(3) 645	85
신림면	6	9,197	(144) 4,907	4,047	55	4,102	(4) 805	83.6
부안면	5	10,461	(173) 5,415	4,336	84	4,420	(5) 995	81.6

7. 고창군 정당활동 상황

이 장에서는 고창군에서 활동했던 각 지구당의 창당과 소멸 및 변경, 그리고 연락사무소 등에 대해서 약술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업무가 1963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자료를 구비하지 못했다.

가. 지구당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및 소멸상황

- 만정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2.10 결성신고 (대표 金相欽)
 - 1963. 4.18 지구당 등록
- 민주공화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2.22 결성신고(대표자 金永寅)
 - 1963. 5.22 지구당 등록
- 자유민주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준비위원회
 - 1963. 8.13 결성신고(대표자 金秀學)
 - 1963. 8.22 지구당 등록
- 추풍회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9. 2 결성신고(대표자 陳斗銀)
 - 1963. 9.21 지구당 등록
- 국민의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9. 2 결성신고(대표자 金相欽)
 - 1963. 9. 4 지구당 등록
 - 1963. 9.15 결성신고(대표자 李炳淵)
 - 1963.10. 5 지구당 등록
- 민주당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9. 7 결성신고(대표자 朴用興)
 - 1963. 9.12 지구당 등록
- 신한당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6. 8. 1 결성신고(대표자 柳昇錫)
 - 1966. 9. 1 지구당 등록

- 자유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6. 9.16 결성신고(대표자 鄭世煥)
 - 1967. 1.23 지구당 등록
- 만중당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7. 4. 27 결성신고(대표자 陳斗銀)
 - 1967. 5. 1 지구당 등록
- 대중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8. 1.20 결성신고(대표자 李炯淵)
 - 1968. 2.15 지구당 등록
 - 1970. 1.22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대표자 徐用鉉)
 - 1970. 4.28 지구당 등록
- 신민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9. 9.10 결성신고(대표자 金相欽)
 - 1969. 9.18 지구당 등록
- 통민당(가칭) : 전북 제10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71. 1.13 결성신고(대표자 金鳳九)
 - 1971. 5. 8 중선관정 제813호(71. 5. 5)중앙동 등록 취소통지에 의해 말소
- 민주통일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73. 1.16 결성신고(대표자 李熙天)
 - 1973. 1.23 지구당 등록
- 민주정의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0.12.15 결성신고(대표자 陳鏡鍾)
 - 1981. 1. 5 지구당 등록
- 민주한국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0.12.30 결성신고(대표자 金珍培)
 - 1981. 1.14 지구당 등록
- 민주사회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0.12.30 결성신고(대표자 曹秉厚)
 - 1981. 1.14 지구당 등록
- 한국국민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0.12.30 결성신고(대표자 李昊鍾)
 - 1981. 1.14 지구당 등록

- 사회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1. 1. 8 결성신고(대표자 鄭均桓)
 - 1981. 124 지구당 등록
- 민권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1. 1.14 결성신고(대표자 崔在燮)
 - 1981. 124 지구당 등록

※ 1988. 3. 17.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법률 제4003호)으로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고창군 위원회가 정당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음.
- 민주정의당 : 고창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8. 3.24 결성신고(대표자 李昊鍾)
 - 1988. 4. 6 지구당 등록
- 통일민주당 : 고창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8. 4. 2 결성신고(대표자 鄭在吉)
 - 1988.10. 2 활동기간 만료로 소멸
- 평화민주당 : 고창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8. 4. 6 결성신고(대표자 鄭均桓)
 - 1988. 4.16 지구당 등록
- 통일민주당 : 고창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9. 3.20 결성신고(대표자 鄭在吉)

나. 지구당 등록상황

- 민정당
 - 1963. 4.10 전북 제9지구당(高敎) 등록 (대표자 金在計)
 - 1965. 6.25 민중당으로 신설 합당
- 민주공화당
 - 1963. 5. 6 전북 제9지구당(高敎) 등록 (대표자 金炳寅)
 - 1963. 8.12 대표자 金炳鐸으로 변경 등록
 - 1964. 9.26 대표자를 愼鏞南으로 변경 등록
 - 1968. 8.27 당기위원회 규정 18조(제명)에 의하여 대표자 愼鏞南 제명
 - 1969. 3. 4 대표자 李昊鍾으로 변경 등록

- 1970. 7.29 대표자 직무대행 金秉甲으로 변경 등록
- 1971. 1.21 법개정에 따라 전북 제10지구당으로 명단 변경 등록
- 1971. 3.11 慎鑄南으로 변경 등록
- 1971. 8.23 李昊鍾으로 변경 등록
- 1973. 6.14 정당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편 보완 제6지구당(高敝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李炯玉)
- 1979. 7.18 대표자 李昊鍾으로 변경 등록
- 1980.11.10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말소

자유민주당

- 1963. 8.23 전북 제9지구당(高敝) 등록 (대표자 金秀學)
- 1964.12. 4 민정당으로 흡수 합당

국민의당

- 1963. 9. 4 전북 제9지구당(高敝)으로 등록 (대표자 金相欽)
- 1963. 9.10 중앙당의 지구당 창당취지통지에 따라 말소
- 1963.10. 5 전북 제9지구당 등록(대표 李炯淵)
- 1964.10. 8 민주당으로 흡수 합당

민주당

- 1963. 9.12 전북 제9지구당(高敝)으로 등록 (대표자 朴鍾律)
- 1964.12. 8 대표자를 李炯淵으로 변경 등록
- 1965. 6.25 민중당으로 신설 합당

추풍회

- 1963. 9.21 전북 제9지구당(高敝)으로 등록 (대표자 陳斗銀)
- 1964. 3.20 대표자 安判童으로 변경 등록
- 1967. 3.31 통한당으로 당명칭 변경에 따라 지구당의 명칭이 통한당으로 변경 등록

민중당

- 1965. 6.25 전북 제9지구당(高敝)으로 등록 (민정당과 민주당을 흡수하여 신설 합당함)
(대표자 金相欽)
- 1967. 4. 7 신민당으로 신설 합당
- 1967. 5. 1 지구당 등록(대표자 陳斗銀)
- 1972. 9.18 법개정에 의하여 전북 제10지구당으로 명칭 변경 등록
- 1973. 7. 2 중선관정제 607호 취소통지에 의거 말소

□ 신한당

- 1966. 9. 1 전북 제9지구당(高敞)으로 등록 (대표자 李炯淵)
- 1967. 4. 7 신민당으로 신설 합당

□ 자유당

- 1967. 1.23 전북 제9지구당(高敞)으로 등록 (대표자 鄭世煥)
- 1970. 2. 2 신민당으로 흡수 합당

□ 통합당

- 1967. 3.31 전 추풍회가 통합당으로 당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 등록 (대표자 安判重)
- 1971. 5. 4 중선관정제 780호 중앙당 등록 취소통지에 의하여 말소

□ 신민당

- 1967. 4. 7 전북 제9지구당(高敞)으로 등록 (대표자 金相欽)(신한당과 민중당을 흡수하여 신설 합당)
- 1969. 9. 8 정당법 제39조에 의해 자진 해산
- 1969. 9.18 전북 제9지구당으로 등록 (대표자 金相欽)
- 1970. 2. 2 자유당을 흡수 합당
- 1970.10. 1 대표자 李元浬로 변경 등록
- 1971. 2. 1 제10지구당으로 명칭 변경 등록
- 1972. 4.13 대표자 陳懿鍾으로 변경 등록
- 1973. 6.27 선거구 조정으로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개편 보완 등록 (대표자 金相欽)
- 1980. 4.29 대표자 金相欽으로 변경 등록
- 1980.11.10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말소

□ 대중당

- 1968. 2.15 전북 제9지구당(高敞)으로 등록 (대표자 李炯淵)
- 1969.12.26 등록 취소 (법정 당원부족으로)
- 1970. 4.28 전북 제9지구당으로 등록 (대표자 徐甲鉉)
- 1971. 1.16 전북 제10지구당(高敞)으로 명칭 변경 등록
- 1972. 5.10 지구당 자진 해산

□ 민주통일당

- 1973. 1.23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李熙天)
- 1978. 5. 8 대표자 金一凡으로 변경 등록
- 1980. 11.10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말소

민주정의당

- 1981. 1. 5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 陳懿鍾)
- 1981. 2.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井邑)에 이관
- 1990. 2.15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신설합당

 한국국민당

- 1981. 1.14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李昊鍾)
- 1981. 2.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井邑)에 이관

 민주한국당

- 1981. 1.14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金珍培)
- 1981. 2.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井邑)에 이관

 민주사회당

- 1981. 1.14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曹乘厚)
- 1981. 1.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井邑)에 이관

 민권당

- 1981. 1.24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崔在燮)
- 1981. 2.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井邑)에 이관

 사회당

- 1981. 1.24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鄭均桓)
- 1981. 2.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井邑)에 이관

 민주자유당

- 1990. 5.15 전북 고창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 李昊鍾)
- 1994.10.18 대표자 변경등록 (대표자 金柱燮)

 신민주연합당

- 1991. 4.13 명칭 변경 등록 신청
- 1981. 4.15 명칭 변경 승인
- 1991. 9.16 신민주연합당 민주당 신설 합당

 민주당

- 1991. 9.16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鄭均桓)

 통일국민당

- 1992. 3. 7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魯棟采)
- 1994. 7.15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의 신설합당

- 새 한국당
 - 1992.11.16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林東甲)
 - 1995. 3. 6 새한국당 민주당 흡수 합당
- 신민당
 - 1994. 7. 8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魯棟采)
 - 1995. 3.31 신민당 자유민주연합 신설 합당
- 자유 민주연합
 - 1995. 5.31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魯棟采)
- 새정치 국민회의
 - 1995. 9. 6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鄭均桓)
- 한나라당
 - 1997.11.24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金柱燮)

다. 연락소 등록상황

- 민주정의당
 - 1982. 2.25 전북 제6지구당 고창군 연락소로 등록 (대표자 李相福)
 - 1988. 3.24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법률 제4003호)에 의거 국회의원 선거구가 정읍, 고창에서 고창지구가 분리되어 소선거구가 되면서 당지구당 연락소는 소멸

제 2 장 의원선거 및 개원준비

제1절 의원 선거

1. 의원 선거 현황
2. 의원 당선자 현황

제2절 개원 준비

1. 의회 사무기구 신설
2. 지방자치 단체 조례 규칙 정비
3. 원구성

제 1 절 의 원 선 거

1. 의원 선거 현황

고창군 의회 정수는 15명에 37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25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는 고창읍으로 6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음면 선거구의 경우 1명이 출마하여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읍면 투표구별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투표구별 후보자 득표상황

선거구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 투표 수							무효투표수 (나)	기권수 (다)	투표율 (%)	유효투표율 (%)
				후보자별 득표 수										
				1	2	3	4	5	6	계				
고 창 읍	부재자	588	568	김동훈 128	이연수 57	진남표 120	김상필 164	박태수 44	김승현 32	545	23	20	96.6	95.9
	1투	1657	1,296	329	182	263	324	105	41	1,244	52	361	78.2	95.9
	2투	1977	1,559	300	209	320	439	179	64	1,511	48	418	78.9	96.9
	3투	1613	1,282	206	210	208	490	92	33	1,239	43	331	79.5	96.6
	4투	1711	1,384	275	174	312	413	111	44	1,329	55	327	80.9	96.0
	5투	1525	1,232	235	166	325	359	72	36	1,193	39	293	80.8	96.8
	6투	1599	1,280	214	186	198	455	90	97	1,240	40	319	80.1	96.9
	7투	1038	822	141	115	109	202	205	20	792	30	216	79.3	96.4
	8투	1319	1,057	212	136	225	291	130	28	1,022	35	262	80.2	96.7
	잘못투입 된투표지 계		1	0	0	0	1	0	0	1	0			
	계	13,027	10,481	2,040	1,435	2,080	3,138	1,028	395	10,116	365	2,546	80.5	96.5
고 수 면	부재자	117	113	이상용 27	이종운 29	류길승 51				107	6	4	96.6	95.5
	1투	1,062	852	154	186	480				820	32	210	80.2	96.3
	2투	1,086	849	249	84	473				806	43	237	78.3	94.9
	3투	869	709	158	130	391				679	30	160	81.6	95.8
	계	3,134	2,523	588	429	1,395				2,412	111	611	80.5	95.6

선거구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나)	기권수 (다)	투표율 (%)	유효투표율 (%)	
				후보자별 득표수										
				1	2	3	4	5	6					계
아산면	부재자	156	150	강신교 54	성호익 92					146	4	6	96.2	97.3
	1투	1,377	1,078	537	495					1,032	46	299	78.3	95.7
	2투	1,138	836	304	504					808	28	302	73.5	96.7
	3투	1,128	833	258	526					784	49	295	73.8	94.1
	계	3,799	2,837	1,153	1,617					2,770	127	902	76.3	95.6
	무장면	부재자	170	166	김남규 81	이돈우 79					160	6	4	97.6
1투	1,585	1,128	509	539					1,048	80	457	71.2	92.9	
2투	1,498	1,187	690	436					1,126	61	311	79.2	94.9	
3투	1,070	786	202	533					735	51	284	73.5	93.5	
계	4,323	3,267	1,482	1,587					3,069	198	1,056	75.6	93.9	
공음면	부재자	152		최석기										
1투	764													
2투	1,342													
3투	878													
4투	675													
계	3,811													
				무투표당선										

선거구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나)	기권수 (다)	투표율 (%)	유효투표율 (%)	
				후보자별 득표수											
				1	2	3	4	5	6	계					
상 하 면	부재자	112	108	전춘식	노병열						106	2	4	96.4	98.1
	1투	978	804	479	291					770	34	174	82.2	95.8	
	2투	1,304	996	423	531					954	42	308	76.4	95.8	
	3투	795	637	165	447					612	25	158	80.1	96.1	
	계	3,189	2,545	1,122	1,320					2,442	103	644	79.8	95.9	
해 리 면	부재자	129	125	한충호	오균호	이만우					121	4	4	96.9	96.8
	1투	1,104	890	187	299	373				859	31	214	80.6	96.5	
	2투	1,030	804	198	246	324				768	36	226	78.1	95.5	
	3투	767	587	76	243	239				558	29	180	76.5	95.1	
	4투	1,199	937	192	276	417				885	52	262	78.1	94.5	
계	4,229	3,343	683	1,110	1,398				3,191	152	886	79.0	95.5		
성 송 면	부재자	102	100	김영호	심재규	이영엽	이종위				95	5	2	98.0	95.0
	1투	860	680	113	199	187	157			656	24	180	79.1	96.5	
	2투	770	625	49	139	183	240			611	14	145	81.2	97.8	
	3투	1,040	820	87	213	210	258			768	52	220	78.8	93.7	
	계	2,772	2,225	261	581	601	687			2,130	95	547	80.3	95.7	

선거구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나)	기권수 (다)	무효율 (%)	유효투표율 (%)	
				후보자별 득표수										
				1	2	3	4	5	6					계
대산면	부재자	194	190	오동열 56	김기재 128					184	6	4	97.9	96.8
	1투	1,235	936	341	549					890	46	299	75.8	95.1
	2투	1,681	1,315	718	543					1,261	54	366	78.2	95.9
	3투	1,021	792	412	347					759	33	229	77.6	95.8
	4투	998	738	325	365					690	48	260	73.9	93.5
	계	5,129	3,971	1,852	1,932					3,784	187	1,158	77.4	95.3
심원면	부재자	109	107	박홍렬 34	이재수 9	전종열 61				104	3	2	98.2	97.2
	1투	627	503	246	51	190				487	16	124	80.2	96.8
	2투	946	755	311	115	282				708	47	191	79.8	93.8
	3투	1,581	1,284	410	163	668				1,241	43	297	81.2	96.7
	계	3,263	2,649	1,001	338	1,201				2,540	109	614	81.2	95.9
홍덕면	부재자	153	144	김백수 48	원병희 50	최인규 44				142	2	9	94.1	98.6
	1투	1,424	1,134	382	429	293				1,104	30	290	79.6	97.4
	2투	954	739	273	257	177				707	32	215	77.5	95.7
	3투	377	306	81	128	89				298	8	71	81.2	97.4
	4투	747	566	131	209	191				531	35	181	75.8	93.8
	5투	479	363	90	131	121				342	21	116	75.8	94.2
	계	4,134	3,252	1,005	1,204	915				3,124	128	882	78.7	96.1

선거구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부표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나)	기권수 (다)	투표율 (%)	유효투표율 (%)	
				후보자별 득표수										
				1	2	3	4	5	6					계
성내면	부재자	115	110	이명근 66	고병운 41					107	3	5	95.7	97.3
	1투	1,300	1,046	469	539					1,008	38	254	80.5	96.4
	2투	840	678	321	326					647	31	162	80.7	95.4
	3투	630	504	220	253					473	31	126	80.0	93.8
	계	2,885	2,338	1,076	1,159					2,235	103	547	81.0	95.6
신림면	부재자	124	114	류길규 43	유종운 64					107	7	10	91.9	93.9
	1투	923	724	323	365					688	36	199	78.4	95.0
	2투	990	769	370	364					734	35	221	77.7	95.4
	3투	1,054	827	371	409					780	47	227	78.5	94.3
	계	3,091	2,434	1,107	1,202					2,309	125	657	78.7	94.9
부안면	부재자	145	142	전재식 72	김준형 65					137	5	3	97.9	96.5
	1투	989	795	338	422					760	35	194	80.4	95.6
	2투	589	439	140	278					418	21	150	74.5	95.2
	3투	1,135	871	288	540					828	43	264	76.7	95.1
	4투	809	637	186	406					592	45	172	78.7	95.9
	잘못투입 된투표지		1	0	1					1	0			
계	3,667	2,885	1,024	1,712					2,736	149	782	78.7	94.8	

2. 의원 당선자 현황

고창군의회 의원 당선자를 직업별, 학력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별 현황

계	구분	농업	상업	수산업	기타	비고
15		9	1	2	3	

학력별 현황

계	구분	국졸	중졸	고퇴	고졸	대퇴	대졸	비고
15		2	1	1	7		4	

연령별 현황

계	구분	36~40	41~45	46~50	51~55	56~60	60이상	비고
15		3	1	5	4	1	1	

제 2 절 개원준비

1. 제1대 개원

가. 의회 사무기구 신설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91. 4. 4 조례 제1205호)되어 고창군의회 사무기구가 신설되었다.

의회사무과에 사무과장(행정사무관)을 두며 정수는 13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며 다음과 같다.

□ 의회사무과 직원 현황

구	계				5급			6급			7급			기능직		창	일	비	
	계	5급	6급	7급	소	행	행	소	행	행	소	행	소	9	10				경
정원	13	7	6		3	1	2	2	1	1	2	2	6	3	3				
현원	16	6	1	6	1	2	3	3		2	1	1	2	2	6	2	4	1	2

나. 지방자치 관련 조례·규칙 정비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한 관련 자치법규가 일체히 정비 완료되어 의회관련 자치법규 10종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제정공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조례(6종)

- 1)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1992. 5. 7 조례 제1236호)
- 2) 고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1991. 4. 4 조례 제1205호)
- 3) 고창군의회공인조례(1991. 3.30 조례 제1200호)
- 4)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1991. 4.12 조례 제1169호)
- 5)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1991. 4.13 조례 제1201호)
- 6) 고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1991. 4.21 조례 제1172호)

□ 규칙(4종)

- 1) 고창군의회규칙(1991. 4.13 조례 제629호)
- 2) 고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1991. 4. 4 조례 제628호)
- 3) 고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1991. 4. 4 조례 제627호)
- 4) 고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1991. 4.13 조례 제630호)

2. 제2대 개원

1) 원구성

가. 집회공고

총선후 처음 개원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로부터 25일이내에 자치단체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의회는 집회공고를 1995년 7월 10일 고창군수가 공고 하였으며 집회일시는 1995년 7월 18일 10시로 공고되었다.

나. 의장단 선거

1) 전반기 의장단 선거

'95년 7월 18일 11시에 개최한 제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5명중 소수정당 소속의원 및 무소속 의원 6명이 선거에 불참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

하여 연장의원인 이돈우 의원의 사회로 진행하였으며 9명이 투표에 참석 만장일치로 무장면 선거구 출신인 이돈우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하였으며,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에도 6명이 불참한 가운데 9명이 투표에 참석 만장일치로 대신면 선거구 출신인 김기채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하여 제2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2) 후반기 의장단 선거

'97년 1월 18일 14시에 개의한 제5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5명중 14명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 의원인 이돈우 의원의 사회로 진행하여 투표한 결과 최석기 의원 12표 이돈우 의원 2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공음면 선거구 출신인 최석기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으며,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에도 총 투표자 14명중 고병운 의원 8표 성호익 의원 6표로 성내면 선거구 출신 고병운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하여 제2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여 민주 지방자치를 향한 힘찬 항해가 시작되었다.

제 3 장 고창군의의회 운영

제1절 집회와 회기

1. 집회 일람

제2절 본회의 주요의안 처리상황

1. 주요의안 처리상황

제3절 의안제출 및 처리

1. 종류별 의안처리 상황
2. 예산안과 결의안
3. 조례안
4. 승인안
5. 건의 및 결의안
6.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상황
7. 건의문 채택

제4절 군정질문과 답변

1. 군정질문과 답변 내용

제5절 민원처리

1. 민원처리 상황

제 1 절 집회와 회기

1. 집회 일람

고창군의회는 1995년 7월 18일 제2대의회 개의를 시작으로 95년도 임시회 5회, 정기회 1회로 55일간의 회의를 가졌으며 98년도 상반기까지 총 25회에 235일의 회의를 갖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연도별 집회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집회 현황

년도별	구 분	개 회 수	회 의 일 수	비 고
계	합 계	25	235	
	임 시 회	22	130	
	정 기 회	1	105	
'95	계	6	55	
	임 시 회	5	20	
	정 기 회	1	35	
'96	계	8	80	
	임 시 회	7	45	
	정 기 회	1	35	
'97	계	8	80	
	임 시 회	7	45	
	정 기 회	1	35	
'98	계	3	20	
	임 시 회	3	20	
	정 기 회			

□ 본회의 운영

회 수	구 분	기 간	일 수	처리된 안건
제 36 회	임 시 회	'95. 7. 18~ 7. 19	2	3
제 37 회	"	'95. 7. 31	1	5
제 38 회	"	'95. 8. 28~ 9. 2	6	19
제 39 회	"	'95. 10. 9~ 10. 14	6	14
제 40 회	"	'95. 11. 14~ 11. 18	5	10
제 41 회	정 기 회	'95. 11. 25~ 12. 29	35	30
제 42 회	임 시 회	'96. 2. 5~ 2. 6	2	3
제 43 회	"	'96. 3. 11~ 3. 16	6	20
제 44 회	"	'96. 5. 18	1	3
제 45 회	"	'96. 5. 31~ 6. 5	6	7
제 46 회	"	'96. 7. 8~ 7. 16	9	19
제 47 회	"	'96. 9. 10~ 9. 18	9	19
제 48 회	"	'96. 10. 28~ 11. 8	12	7
제 49 회	정 기 회	'96. 11. 25~ 12. 29	35	27
제 50 회	임 시 회	'97. 1. 18~ 1. 20	3	5
제 51 회	"	'97. 2. 24~ 3. 5	10	18
제 52 회	"	'97. 5. 6~ 5. 13	8	18
제 53 회	"	'97. 6. 16~ 6. 20	5	11
제 54 회	"	'97. 6. 30	1	2
제 55 회	"	'97. 8. 27~ 9. 3	8	12
제 56 회	"	'97. 11. 3~ 11. 12	10	11
제 57 회	정 기 회	'97. 11. 25~ 12. 29	35	33
제 58 회	임 시 회	'98. 2. 9~ 2. 17	9	13
제 59 회	"	'98. 3. 16~ 3. 21	6	15
제 60 회	"	'98. 4. 28~ 5. 2	5	10

제 2 절 본회의 주요의안 처리상황

1. 주요의안 처리상황

□ 주요의안 처리상황

(제2대 고창군의회)

회기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36회 임시회 (2일간)	1차	· 의장 선거의 건 · 부의장 선거의 건	· 의 장 : 이돈우 의원 · 부의장 : 김기채 의원
	2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95. 7. 18~7. 19 · 기타 : 간부 공무원 소개
제37회 임시회 (1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전라북도교육위원 선출의 건 · 고창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의회 의원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회기 : '95. 7. 31 · 원안 의결 · 경력 직 : 정기동 후보 · 비경력직 : 유병천 후보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제38회 임시회 (6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군정 보고의 건 · '95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 회기 : '95. 8. 28~9. 2 · 원안 의결 · 의 원 : 진남표, 원병희 경력직 : 김해성, 정재학, 유희석 · 보고자 : 군수 이호중 · 제안자 : 부군수 채진묵 · 원안 의결 · 내무 : 최석기 의원 산건 : 고병윤 의원 운영 : 성호익 의원 · 위원 : 김상필, 유길승, 노병열, 김준형, 이종위, 원병희, 유종윤의원

회기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39회 임사회	제3차	· 실과소별 업무보고	·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제4차	· 실과소별 업무보고	· 건설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제5차	· 실과소별 업무보고	· 사회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제6차	·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 흥덕면 도시계획 변경동의안 심의 의 건 · 영광원전 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서 심의의 건 ·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대한 종합질 의의 건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종합 질의답변
제40회 임사회 (5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사업장 순방의 건 · 본 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95. 11. 14~11. 18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사업장 순방)
	제2차	· 지방업체보호와 부실공사방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청운무 피해보상촉구 결의안 ·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사업장순방, 위 원회 활동)
	제3차	· 고창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및 운 영조례안 · 고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 군정 및 사업장 순방결과에 대한 질의의 건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회기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41회 정기회 (35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96년도 주요시책보고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 '95. 11. 25~12. 29 · 원안 의결 · 제안설명 : 이호종 군수 · 제안설명 : 재무과장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 '96주요시책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진남표, 성호익, 이종위, 최석가, 전종열, 이만우, 노병열 · 위원 : 김기채, 원병희, 유종운, 이종위, 진남표, 고병윤, 김준형, 김상필, 전종열 의원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96 주요시책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의결 ·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제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주요시책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제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주요시책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도시과
	제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 질문의 건 · 집행부관계 공무원중 증장계요구 결의안 · 본회의 휴회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 김기채, 노병열, 유길승, 이종위, 김상필, 이만우, 성호익, 전종열의원(8명) · 보류 · 원안 의결(특위 활동)

회기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41회 정기회	제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집행부관계 공무원 증정제요구 결의안 철회의 건 • 지방자치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답변: 이호종 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의결 • 위원: 진남표, 유길승, 성호익, 최석기, 김기채, 김준형, 고병운, 이종위, 전종열, 노병열의원(10명) • 원안 의결(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
	제8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승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의결
	제9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 •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상임위원회 활동)
	제10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의 건 • 고창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 고창군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 '96공유 재산관리 계획승인의 건 • 고창군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 영광원전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중간 보고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의결 • 위원장: 이만우 의원
제42회 임사회 (2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96. 2. 5~2. 6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상임위원회 활동)

회기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44회 임사회 (1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결정의 건 ·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특별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 '96. 5. 18 · 위원 : 진남표, 성호익, 최석기, 노병열, 고병운, 유종운, 이종위, 김상필 의원(8명) · 원안 의결
제45회 임사회 (6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사업장 순방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 '96. 5. 31~6. 5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군 지도소지소설치 폐지조례안 · 사업장 순방결과 보고의 건 · '96공유재산관리 계획추가 승인안 ·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제46회 임사회 (9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고창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 '9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 '96. 7. 8~7. 16 · 원안 의결 · 제안설명 : 이호종 군수 · 보고 : 기획실장 박춘오 (결과보고 중지) · 위원 : 김기채, 김상필, 이만우, 원병희, 고병운, 유종운, 김준형 · 의원 : 성호익, 유종운 · 경력직 : 정재학, 조홍환, 김동근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제1회 추경심사)

회기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46회 임사회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주민등록사무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 '96하반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 • 지방채 차입금융자 승인안 • 원전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 수박우리밀 피해면적조사 및 보상 촉구 결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의결 • 원안 채택 • 원안 채택
제47회 임사회 (9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군정 질문의 건 •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 보고의 건 • 영광원전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간 보고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 '96. 9. 10~9. 18 • 원안 의결 • 질문 : 김상필, 노병열, 유종운, 이종위, 원병희 의원 (5명) • 보고 : 기획실장 박준오 • 보고 : 위원장 이만우 • 원안의결(상임위활동)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제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도소

회기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5차	·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수산과
	제6차	·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지역경제과
	제7차	· 군정질문 답변의 건 ·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 고창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 고창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고창군 준농림지안에서의 식품接客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 · 고창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 보고 : 이호중 군수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제48회 임사회 (12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사업장 방문의 건 · 읍·면정보고 및 군민과의 대화 개최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96. 10. 28~11. 8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군민과의 대화)
	제2차	· 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의 건 · 군민과 대화결과 보고의 건	· 차기 회기 보고 의결 · 차기 회기 보고 의결

회기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49회 정기회 (35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97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95년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96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 '97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 선임 · '96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 '96.11.25~12.29 · 원안 의결 · 설명 : 이호종 군수 · 설명 : 재무과장 황태성 · 의장제외한 전의원(14명) · 위원 : 김준형, 김상필, 고병운, 최석기, 이종위, 원병희, 유종운(7명)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 질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 김기재, 최석기, 김상필, 유종운, 유길승, 고병운, 성호익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 질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변 : 이호종 군수
	제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9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95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95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 본회의 휴회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상임위원회 활동)
	제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의견 · 고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 고창군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재해대책 기금운영관리 조례안 · 고창군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의결

회기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51회 임사회 (10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97년 군정 보고의 건 · 군정 질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 '97. 2. 24~3. 5 · 원안 의결 · 보고 : 이호종 군수 · 질문 : 이만우, 이돈우, 이종위 의원(3명)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소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공보실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소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제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소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제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소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제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소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과, 수산과, 산림과
	제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소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제8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소별 업무보고 · 군정질문 답변의 건 · 고창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 영광원전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지방공단지원사업소 · 답변 : 이호종 군수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보고 : 위원장 이만우
제52회 임사회 (8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 '97. 5. 6~5. 13 · 원안 의결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보실, 내무과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질문의 건 · 군정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 유종운, 이종위의원(2) · 재무과, 지적과, 기획감사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회기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4차	· 군정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	· 산업, 지역경제, 축산, 수산과
	제5차	· 군정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	· 산림과, 건설과
	제6차	· 군정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	·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지방공단지원사업소
	제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질문 답변의 건 · 현장조사 활동결과 보고 채택의 건 · '96공유재산 추가관리 계획승인안 · 고창군 환경보존을 위한 기본조례안 · 고창군 공설묘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97상반기 공유재산 추가관리 계획승인안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97상반기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승인안 · 지방채 차입금융자 승인안 · 성송도시계획 시설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의견 청취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변: 이호종 군수 · 원안 채택 · 원안 의결
제53회 임시회 (5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97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 '96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97. 6. 16~6. 20 · 원안 의결 · 설명: 이호종 군수 · 위원: 이돈우, 진남표, 김기채, 전종열, 성호익, 노병열, 이만우, 유길승의원(8명) · 의원: 김준행, 이종위 경력직: 김재영, 조홍환, 김동근 · 위원: 진남표, 성호익, 원병희, 김상필, 노병열, 유종윤, 이만우, 이종위의원(8명)

회기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군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 · 정읍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 '97상반기 공유재산추가 관리계획 승인안 · '97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 승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의결
제54회 임사회 (1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결정의 건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연장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 '97. 6. 30 · 원안 의결
제55회 임사회 (8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군정 질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 '97. 8. 27~9. 3 · 원안 의결 · 질문 : 김상필, 노병열, 원병희, 성호익, 유길승, 김준형의원(6명)
	제2차	· '97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보고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
	제3차	· '97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보고	· 재무과, 환경보호과, 사회과
	제4차	· '97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보고	· 산업과, 농촌지도소
	제5차	· '97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보고	· 건설과, 수산과, 산림과
	제6차	· '97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보고	· 도시과, 지역경제과
	제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보고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 보고승인의 건 · 고창군 재정운영사항 공개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지방공단체발지원사업소 · 답변 : 이호중 군수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회기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삼 의 결 과
제56회 임사회 (10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사업장방문 및 군민과 대화계획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 '97. 11. 3~11. 12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사업장 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 '97하반기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 승인의 건 · 고창군 일반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지방채 차입금융자 승인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이돈우, 김기채, 진남표, 유길승, 성호익, 노병열, 이만우, 전종열의원(8명) · 위원 : 김상필, 유길승, 성호익, 이종위, 유종윤, 김준형, 고병운, 노병열, 진남표의원(9명)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군민과의 대화)
제57회 정기회 (35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98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96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9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 '97.11.25~12.29 · 원안 의결 · 설명 : 이호종 군수 · 설명 : 재무과장 황태성 · 원안 의결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소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소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방공단지원사업소

회기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57회 정기회	제8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창군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고창군 재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지정리로 인한 행정구역 경계변경 승인안 지방채 차입금 용자수정 승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 의결 원안 의결 원안 의결 원안 의결
제58회 임시회 (9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기 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8년 군정보고 및 업무보고의 건 군정 질문의 건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기 : '98. 2. 9~2. 17 원안 의결 원안 의결 질문 : 진남표 의원 보고 : 기획감사실장 김덕진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소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감사실, 문공실, 내무과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소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진흥, 재무, 지적, 사회과
	제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소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호, 가정복지, 산업과
	제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소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 축산, 수산과
	제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정질문 답변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답변 : 이호종 군수
	제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소별 업무보고 성과소별 업무보고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과, 수산과 산림, 건설, 도시과 서면 질문
	제8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소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과(서면보고 : 민방위 재난관리과, 지도소, 보건소, 지방공단사업소)
제59회 임시회 (6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기 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사업장 방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기 : '98. 3. 16~3. 21 원안 의결 원안 의결 원안 의결(사업장 방문)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방문결과 및 질의, 답변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유종윤 질의 : 유길승, 이만우, 김기채, 고병윤, 노병열의원(5명)

회기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59회 임사회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군제증명동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98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고창군 부동산중개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 고창군 화훼유통 공사설립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 고창군의회 의원회의 수당 및 회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의결 • 원안 채택
제60회 임사회 (5일간)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 '98. 4. 28~5. 2 • 원안 의결 • 설명 : 군수 이호종 • 위원 : 김상필, 유종윤, 원병희, 고병윤, 김준형, 이돈우, 노병열의원(7명)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 '98공유재산관리 계획수정 승인안 •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사업장방문 및 군민과의 대화결과 보고의 건 • 고창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조례안 •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채택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제 3 절 의안 제출 및 처리

1. 종류별 의안처리 상황

구분 종류	접수	처리	처 리 내 용					비고
			가 결		부결	계류	철회	
			원안	수정				
계	173	173	97	21	9	2	3	
조 례 안	80	80	69	6	5			
예 산 · 결 산	13	13	3	10				
승 인 · 동 의	27	27	16	5	4	1	1	
청 원 · 진 정 및 건 의	41	41						
건 의 안 및 결 의 안	7	7	6				1	
의견청취안	5	5	3			1	1	

2. 예산안과 결산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 기 별	제 출 건 수		가 결		비 고
	예산안	결산안	예산안	결산안	
계	10	3	10	3	
제38회 임시회	1		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1회 정기회	2	1	2	1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46회 임시회	1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9회 정기회	2	1	2	1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53회 임시회	1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7회 정기회	2	1	2	1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60회 임시회	1		1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상황

구 분	자 치 단 체 제출예산안		수 정 액		의회의결 예산액	당초(전회) 예산대비 증·감액	비 고
			삭감액	자치단체 수정요구액			
제38회 임시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111,100,513	34,710	451,369	111,551,882	7,492,645	
	일반회계	98,327,227	34,710	451,369	98,778,596	4,347,539	
	특별회계	12,773,286			12,773,286	3,145,106	
제41회 정기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117,362,942	638,558	2,411,184	119,774,126	8,222,244	
	일반회계	104,449,896	638,558	2,411,184	106,861,080	8,082,484	
	특별회계	12,913,046			12,913,046	139,760	
제41회 정기회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	116,877,790	6,647,040	△826,986	116,050,804	△3,723,322	
	일반회계	106,680,510	1,909,040	3,891,014	110,571,524	3,710,444	
	특별회계	10,197,280	4,738,000	△4,718,000	5,479,280	△7,433,766	
제46회 임시회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123,480,082	739,050	1,054,694	124,534,776	8,483,972	
	일반회계	116,472,260	738,050	1,054,694	117,526,954	6,955,430	
	특별회계	7,007,822	1,000		7,007,822	1,528,542	
제49회 정기회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	129,789,152	706,140	1,114,756	130,903,908	6,369,132	
	일반회계	117,340,881	706,140	1,114,756	118,455,637	928,683	
	특별회계	12,448,271			12,448,271	5,440,449	

구 분	자 치 단 체 재출예산안		수 정 액		의회결 예산액	당초(전회) 예산대비 증·감액	비 고
			삭감액	자치단체 수정요구액			
제49회 정기회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	121,911,897	1,818,681	20,365,548	142,277,445	11,373,537	
	일반 회계	116,743,711	1,818,681	20,365,548	137,109,259	18,653,622	
	특별 회계	5,168,186			5,168,186	△7,280,085	
제53회 임시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144,364,229	220,342	346,356	144,710,585	2,433,140	
	일반 회계	137,683,091	220,342	227,113	137,910,204	800,945	
	특별 회계	6,681,138		119,243	6,800,381	1,632,195	
제57회 임시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148,753,202	700,000	△7,997,998	141,548,214	△3,162,371	
	일반 회계	141,672,019	700,000	△7,204,988	133,674,031	△4,236,173	
	특별 회계	7,081,183		793,000	7,874,183	1,073,802	
제57회 정기회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	164,014,703	4,293,174	7,438,434	171,453,137	29,904,923	
	일반 회계	157,137,291	4,293,174	7,438,434	164,575,725	30,901,694	
	특별 회계	6,877,412			6,877,412	△996,771	
제60회 임시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172,549,313	85,795	472,563	173,021,876	1,568,739	
	일반 회계	164,694,100	85,795	272,563	164,966,663	390,938	
	특별 회계	7,855,213		200,000	8,055,213	1,177,801	

다. 예산결산안 처리 현황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결일	의결내용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군수	95. 8.22	제38회	제3차	95. 9. 2	수정의결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95.11.21	제41회	제9차	95.12.22	원안의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95.11.21	"	"	95.12.22	"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95.12.11	"	"	95.12.22	수정의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95.11.21	"	"	95.12.22	"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96. 7. 5	제46회	제3차	96. 7.16	"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96.12.12	제49회	제4차	96.12.26	원안의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96.11.23	"	"	96.12.26	"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96.12.11	"	"	96.12.26	수정의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96.11.20	"	"	96.12.26	"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97. 6. 9	제53회	제2차	97. 6.20	"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97.11.20	제57회	제8차	97.12.29	원안의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97.11.13	"	"	97.12.29	"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97.12. 8	"	"	97.12.29	수정의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97.11.20	"	"	97.12.29	"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98. 4.25	제60회	제2차	98. 5. 2	"

3. 조 례 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 별	제출수	가 결		부 결	계 류	철 회	비 고
		원 안	수 정				
계	80	69	6	5			
제37회 임시회	2	2					
제38회 임시회	6	6					
제39회 임시회	1	1					
제40회 임시회	2	2					
제41회 임시회	5	4		1			
제42회 임시회	1			1			
제43회 임시회	9	7	2				
제45회 임시회	1	1					
제46회 임시회	6	4	2				
제47회 임시회	8	6	1	1			
제49회 임시회	10	10					
제51회 임시회	2	2					
제52회 임시회	3	3					
제53회 임시회	1	1					
제55회 임시회	1	1					
제56회 임시회	2	2					
제57회 임시회	7	7					
제59회 임시회	7	7					
제60회 임시회	6	3	1	2			

나. 유형별 조례안 처리 현황

처리별	구분	총 계	의 원 발 의				군 수 제 출				비 고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80	2	1	1		78	23	52	3	
가 결	원 안	69	2	1	1		68	18	47	3	
	수 정	6					5	1	4		
부 결		5					5	4	1		
계 류											
철 회											

다. 조례안 처리 상황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95. 7.15	제37회	제1차	95. 7.31	원안의결
고창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95. 7.15	"	"	95. 7.31	"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안	"	95. 7. 7	제38회	제3차	95. 9. 2	"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95. 7.20	"	"	95. 9. 2	"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5. 8.22	"	"	95. 9. 2	"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5. 8.22	"	"	95. 9. 2	"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95. 8.22	"	"	95. 9. 2	"
고창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	95. 8.22	"	"	95. 9. 2	"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월일	처리내용			
			회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5. 9.27	제39회	제6차	95.10.14	원안의결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95. 9.27	제40회	·	95.11.18	·
고창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조 례안	·	95. 9.27	·	제3차	95.11.18	·
고창군리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	95.12. 2	제41회	제10차	95.12.29	·
고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	95.12. 9	·	·	95.12.29	·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95.12. 9	·	·	95.12.29	·
고창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	·	95.12. 9	·	·	95.12.29	·
고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	95.12.19	·	제4차	95.12.27	내무위 부결
고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	95.12.16	제42회	제1차	96. 2. 6	내무위 부결
고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95.11.23	제43회	제6차	96. 3.16	원안의결
고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 태료부과징수조례안	·	95.12.26	제43회	제6차	96. 3.16	·
고창군의회의원회의수당여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5. 1.31	제43회	제6차	96. 3.16	·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월일	처리내용			
			회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96. 1.31	·	·	96. 3.16	원안의결
고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	·	96. 1.31	·	·	96. 3.16	·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6. 1.31	·	·	96. 3.16	수정의결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례안	·	96. 3. 4	·	·	96. 3.16	·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6. 3. 4	·	·	96. 3.16	원안의결
재단법인고창군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 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	최석기 의원외 17인	96. 3.16	·	·	96. 3.16	·
고창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 지조례안	군수	96. 5. 6	제45회	제2차	96. 6. 5	·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96. 5. 6	제46회	제3차	96. 7.16	·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6. 5. 6	·	·	96. 7.16	·
고창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	96. 5. 6	·	·	96. 7.16	·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6. 5.25	·	·	96. 7.16	수정의결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월일	처리내용			
			회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96. 5.25	제46회	제3차	96. 7.16	수정의결
고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96. 5.25	"	"	96. 7.16	원안의결
고창군내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6. 8.16	제47회	제7차	96. 9.18	"
고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6. 8.16	"	제1차	96. 9.11	내무위 부결
고창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	96. 8.24	"	제7차	96. 9.18	수정의결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6. 8.24	"	"	96. 9.18	원안의결
고창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96. 9. 3	"	"	96. 9.18	"
고창군부동산중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96. 9. 3	"	"	96. 9.18	"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96. 9. 3	"	"	96. 9.18	"
고창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6. 9. 4	"	"	96. 9.18	"
고창군고창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	"	96. 9. 6	제49회	제5차	96.12.28	"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96. 9. 6	"	"	96.12.28	"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월일	처리내용			
			회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96.10.13	*	*	96.12.28	원안의결
고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	96.11.20	*	*	96.12.28	*
고창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96.11.20	*	*	96.12.28	*
고창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	96.11.20	*	*	96.12.28	*
고창군재해대책운영등에관한조례안	*	96.11.20	*	*	96.12.28	*
고창군화훼생산유통공사설립에관한조 례안	*	96.11.29	제49회	제5차	96.12.28	원안의결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96.12.13	*	*	96.12.28	*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6.12.20	*	*	96.12.28	*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97. 1.17	제51회	제8차	97. 3. 5	*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97. 2.24	*	*	97. 3. 5	*
고창군환경보전올위한기본조례안	*	97. 2.21	제52회	제7차	97. 5.13	*
고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	97. 3.21	*	*	97. 5.13	*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97. 4.22	·	·	97. 5.13	원안의결
고창군사무의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	97. 4.30	제53회	제2차	97. 6.20	·
고창군제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	97. 6.18	제55회	제7차	97. 9. 3	·
고창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 과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97. 7.23	제56회	제2차	97.11.11	·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	·	97.10.30	·	·	97.11.11	·
고창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	97.10.30	제57회	제8차	97.12.29	·
고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97.11.22	·	·	97.12.29	·
고창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	97.11.22	·	·	97.12.29	·
고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	97.11.24	·	·	97.12.29	·
고창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 과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97.12. 9	제57회	제8차	97.12.29	·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 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97.12. 9	·	·	97.12.29	·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 조례안	노병열 의원의 4인	97.12.11	·	·	97.12.29	·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월일	처리내용			
			회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98. 2. 5	제59회	제3차	98. 3. 21	원안의결
고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98. 2. 6	"	"	98. 3. 21	"
고창군화훼생산유통공사설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98. 2. 6	"	"	98. 3. 21	"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8. 2. 5	"	"	98. 3. 21	"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8. 2. 6	"	"	98. 3. 21	"
고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	98. 2. 6	"	"	98. 3. 21	"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8. 3. 12	"	"	98. 3. 21	"
고창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	98. 3. 13	제60회	제2차	98. 5. 2	"
고창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	"	98. 3. 13	"	"	98. 5. 2	수정의결
고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	"	98. 3. 13	"	"	98. 5. 2	원안의결
고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98. 4. 1	"	"	98. 5. 2	"
고창군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	95.11.11	"	제1차	98. 4. 28	산업건설 위 부결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및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	96. 1. 31	"	"	98. 4. 28	산업건설 위 부결

4. 승 인 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 별	제출수	가 결		부 결	계 류	철 회	비 고
		원 안	수 정				
계	27	16	5	4	1	1	
제38회 임시회	1		1				
제41회 임시회	2		1	1			
제43회 임시회	1	1					
제45회 임시회	1		1				
제46회 임시회	2	2					
제49회 임시회	4	1		2		1	
제51회 임시회	2	1		1			
제52회 임시회	4	3	1				
제56회 임시회	2	1	1				
제57회 임시회	5	5					
제59회 임시회	2	1			1		
제60회 임시회	1	1					

나. 승인안 처리 현황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결일	의결내용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하반기)	군수	95. 7.20	제38회	제3차	95. 9. 2	수정의결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95.11.23	제41회	제10차	95.12.29	원안의결
지방채(차입금)용자승인안	"	98.12.29	"	제4차	95.12.27	산업건설 위 부결
'96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	"	96. 3. 6	제43회	제6차	96. 3.16	원안의결
'96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	"	96. 5.14	제45회	제2차	96. 6. 5	수정의결
지방채(차입금)용자승인안	"	96. 5.31	제46회	제3차	96. 7.16	원안의결
'96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96. 7. 5	"	"	96. 7.16	"
채무부담승인안	"	96. 9.11	제49회	제3차	96.12. 5	절 회
지방채(차입금)승인안	"	96. 9.11	"	제5차	96.12.28	원안의결

의안명	제출자	제출발의	처리내용			
	발의자	년월일	회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96공유재산추가관리계획승인안	군수	96.10.25	제49회	제2차	96.12.3	내부위결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6.11.26	"	"	96.12.3	"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	97. 1.14	제51회	제8차	97. 3. 5	원안의결
경지정리로인한행정구역경계변경승인안	"	97. 2.21	"	"	97. 3. 4	내부위결
'96공유재산추가관리계획승인안	"	96.11.25	제52회	제7차	97. 5.13	수정의결
'97상반기공유재산추가관리계획승인안	"	97. 3.14	"	"	97. 5.13	원안의결
'97상반기공유재산추가관리계획승인안	"	97. 4.23	"	"	97. 5.13	"
지방채융자승인안	"	97. 4.26	제52회	제7차	97. 5.13	"
'97하반기공유재산추가관리계획안	"	97.10.30	제56회	제2차	97.11.11	"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월일	처리내용			
			회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97지방(차입금)용자수정승인안	군수	97.11. 6	제56회	제2차	97.11.11	수정의결
지방채(차입금)용자수정승인안	"	98. 8.22	제57회	제8차	97.12.29	원안의결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7.11.25	"	"	97.12.29	"
'97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승인안	"	97.12. 5	"	"	97.12.29	"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7.12.11	"	"	97.12.29	"
경지정리로인한행정구역경계변경승인안	"	97.12.22	"	"	97.12.29	"
지방채(차입금)용자승인안	"	98. 2. 4	제59회	제1차	98. 3.16	내무위 제류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98. 3.12	"	제3차	98. 3.21	원안의결
'98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승인안	"	98. 4.20	제60회	제2차	98. 5. 2	"

5. 건의 및 결의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 별	제출수	가 결		부 결	계 류	철 회	비 고
		원 안	수 정				
계	7	6				1	
제39회 임시회	1	1					
제40회 임시회	2	2					
제41회 임시회	1					1	
제43회 임시회	1	1					
제46회 임시회	2	2					

나. 건의(결의)안 처리 현황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결일	의결내용
영광원전 안전대책 강구 및 5·6호기 건설반대 결의안	전종열 의원의 2인	95.10.10	제39회	제6차	95.10.10	원안채택
지방업체 보호와 부실공사 방지 촉구 결의안	진남표 의원의 4인	95.11.15	제40회	제2차	95.11.15	"
청운무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최석기 의원의 4인	95.11.15	"	"	95.11.15	"
중징계 요구 결의안	운영위 원장의 12인	95.12.1	제41회	제7차	95.12.11	철 회
직업전문학교 교과목 증설 건의안	고병운 의원의 3인	96. 3.16	제43회	제6차	96. 3.16	원안채택
원전 피해 보상 촉구 결의문	성호익 의원의 9인	96. 7.16	제46회	제3차	96. 7.16	"
수박, 우리밀 피해 면적조사 및 보상촉 구 결의안	성호익 의원의 9인	96. 7.16	"	"	96. 7.16	"

6. 의견 청취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 별	제출수	가 결		부 결	제 류	철 회	비 고
		원 안	수 정				
계	5	3			1	1	
제39회 임시회	1	1					
제52회 임시회	1	1					
제53회 임시회	2	1			1		
제57회 임시회	1					1	

나. 의견 청취안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결일	의결내용
홍덕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 요청	군수	95.10. 2	제39회	제6차	95.10.14	원안의결
성송 도시계획시설(일단의주택지 조성 사업)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	97. 3. 3	제52회	제7차	97. 5.13	·
정읍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	97. 6. 5	제53회	제2차	97. 6.20	·
고창 경, 품, 미 선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	97. 6. 9	·	·	97. 6.17	내 무 위 류 제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 의견 청취안	·	97.11.25	제57회	제1차	97.12. 9	철 회

7.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사항

위원회명	회기	활동기간	구성위원	처리내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8회 임사회	95. 8.31 ~9. 2 (3일간)	위원장 김준형 간사 유길승 위원 김상필 · 노병열 · 이돈우 · 이종위 · 원병희 · 유종윤	○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회 심사 의결 예산액 총액 : 111,551,882천원 일반회계 : 98,778,596원 특별회계 : 12,773,286원
영광원전 조사특별위원회	제39회 임사회	95.10.11 ~98.6.30 (2년9월)	위원장 : 이만우 간사 : 이종위 위원 : 전종열 · 노병열 · 김상필 · 원병희 · 고병운 · 유종윤 · 성호익	○ 원전가동으로 인한 환경에 미 치는 영향과 문제점 조사 및 대책 강구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 한 법률 개정 요구 - 관련기관방문 : 국회, 통상 산업부 한전본부 - 원전가동으로 인한 실질 피 해에 대한 특별지원 요구

위 원 회 명	회 기	활동기간	구 성 위 원	처 리 내 용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제41회 정기회	95.12.15 ~12.22 (8일간)	위원장:전종열 간 사:노병열 위 원:성호익 · 이종위 · 진남표 · 최석기 · 이만우 · 유길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액: 691,944천원 지출액: 625,034천원 잔 액: 53,367천원 ○ '94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과다 책정 등 39건 시정 및 개선요구 ·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액: 129,774,126천원 일반회계: 106,861,080천원 특별회계: 12,913,046천원 ·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액: 116,050,804천원 일반회계: 110,571,524천원 특별회계: 5,479,280천원
'95 행 정 사 무 감 사 특 별 위 원 회	제41회 정기회	95.12.4 ~12.9 (6일간)	위원장:원병희 간 사:김상필 위 원:김기채 · 유종운 · 이종위 · 진남표 · 고병운 · 김준형 · 전종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 집행등 43개 부문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요구

위 원 회 명	회 기	활동기간	구 성 위 원	처 리 내 용
지 방 자 치 발 전 및 지 역 활 성 화 대 책 특 별 위 원 회	제41회 정기회	95.12.11 ~	위원장:진남표 간 사:김준형 위 원:유길승 * 성호익 * 최석기 * 김기채 * 고병운 * 이종위 * 전종열 * 노병열	
군 정 주 요 업 무 에 대 한 행 정 사무 조사 특 별 위 원 회	제44회 임시회	96. 5.20 ~5.30 (11일간)	위원장:최석기 간 사:성호익 위 원:진남표 * 노병열 * 이종위 * 김상필 * 유종윤 * 고병운	◦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 추진현황 등 45개분야 사무조사 실시 • 총 36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 지적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제46회 임시회	96. 7.15 ~7.16 (2일간)	위원장:원병희 간 사:유종윤 위 원:김기채 * 김상필 * 이만우 * 고병운 * 김준형	◦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심사의결 예산액 총 액:124,534,776천원 일반회계:117,526,954천원 특별회계:7,007,822천원

위 원 회 명	회 기	활동기간	구 성 위 원	처 리 내 용
'96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9회 정기회	96.11.26 ~12.2 (7일간)	위원장: 김기채 간사: 성호익 위원: 진남표 * 김상필 * 유길승 * 최석기 * 노병열 * 이만우 * 이종위 * 김기채 * 전종열 * 원병희 * 고병운 * 유종운 * 김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노선 개선등 61개 부문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책을 제시하여 자치역량 확보와 복지 고창군 건설 촉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9회 정기회	95.12.12 ~12.26 (15일간)	위원장: 고병운 간사: 원병희 위원: 김상필 * 최석기 * 이종위 * 유종운 * 김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142,277,445천원 일반회계: 137,109,259천원 특별회계: 5,168,181천원 ◦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130,903,908천원 일반회계: 118,455,637천원 특별회계: 12,448,271천원 ◦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자금운영관리등 50여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책 제시 ◦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액: 4,979,248,000천원 지출액: 1,401,986,840천원 잔액: 3,477,261,160천원

위 원 회 명	회 기	활동기간	구 성 위 원	처 리 내 용
'95 행 정 사 무 감 사 특 별 위 원 회	제41회 정기회	95.12.4 ~12.9 (6일간)	위원장: 원병희 간 사: 김상필 위 원: 김기채 * 유종윤 * 이종위 * 진남표 * 고병운 * 김준형 * 전종열	◦ 예비비 집행등 43개 부문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요구
지 방 자 치 발 전 및 지 역 활 성 화 대 책 특 별 위 원 회	제41회 정기회	95.12.11 ~	위원장: 진남표 간 사: 김준형 위 원: 유길승 * 성호익 * 최석기 * 김기채 * 고병운 * 이종위 * 전종열 * 노병열	
군 정 주 요 업 무 에 대 한 행 정 사 무 조 사 특 별 위 원 회	제44회 임시회	96. 5.20 ~5.30 (11일간)	위원장: 최석기 간 사: 성호익 위 원: 진남표 * 노병열 * 이종위 * 김상필 * 유종윤 * 고병운	◦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추진 현 황등 45개분야 사무조사 실시 · 총36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 지적

위 원 회 명	회 기	활동기간	구 성 위 원	처 리 내 용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제46회 임사회	96. 7.15 ~7.16 (2일간)	위원장: 원병희 간 사: 유종운 위 원: 김기채 ▪ 김상필 ▪ 이만우 ▪ 고병운 ▪ 김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심사의결 예산액 총 액: 124,534,776천원 일반회계: 117,526,954천원 특별회계: 7,007,822천원
소 규 모 주 민 숙 원 사 업 등 에 관 한 행 정 사 무 조 사 특 별 위 원 회	제53회 임사회	97. 6.23 ~7. 3 (10일간)	위원장: 유종운 간 사: 노병열 위 원: 진남표 ▪ 성호익 ▪ 원병희 ▪ 김상필 ▪ 이만우 ▪ 이종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를 대비한 선진군정 되 도록 문제점과 개선책 제시 ▪ 군민의 의견과 정서를 고려 치 않은 사항 6건 ▪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5건 ▪ 무사안일한 행정행위 5건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제53회 임사회	97. 6.18 ~6.19 (2일간)	위원장: 노병열 간 사: 유길승 위 원: 이돈우 ▪ 진남표 ▪ 김기채 ▪ 전종열 ▪ 성호익 ▪ 이만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심사의결 예산액 총 액: 144,710,585천원 일반회계: 137,910,204천원 특별회계: 6,800,381천원

위 원 회 명	회 기	활동기간	구 성 위 원	처 리 내 용
'97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	제57회 정기회	97.12.1 ~12.7 (7일간)	위원장: 유길승 간사: 노병열 위원: 진남표 * 김상필 * 성호익 * 이종위 * 고병운 * 유종운 * 김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 입장에서 냉철한 감사활동으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등 20건에 대하여 문제점 지적과 개선책 제시등 시정요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제57회 정기회	96.12.13 ~12.29 (17일간)	위원장: 성호익 간사: 유길승 위원: 진남표 * 이돈우 * 노병열 * 이만우 * 김기재 * 전종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액: 2,456,707,000원 지출액: 1,591,134,840원 잔액: 865,572,160원 ○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건설기계 과태료 결산 부당 등 49건의 지적사항 시정요구 ○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141,548,214천원 일반회계: 133,674,031천원 특별회계: 7,874,183천원 ○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171,453,137천원 일반회계: 164,575,725천원 특별회계: 6,877,412천원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제60회 임시회	98.4.29 ~5.2 (4일간)	위원장: 이돈우 간사: 원병희 위원: 김상필 * 고병운 * 김준형 * 노병열 * 유종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심사의결 예산액 총액: 173,021,876천원 일반회계: 164,966,663천원 특별회계: 8,055,213천원

7. 결의문 채택

영광원전 주변대책강구 및 5·6호기 건설반대 결의문

본 결의문을 채택하기 전까지의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들의 초 관심사입니다.

1대때 1호기나 2호기가 가동되었을 당시 우리도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철이 안되고 3·4호기가 건설이 되었고 앞으로 5·6호기를 건설하는데 대한 그러한 자료나 모든 것을 수집해 볼때 여기가 5·6호기가 들어서서는 안되겠다는 연구팀들도 이야기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이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 범국민적으로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안전지대에서 위험 받은 우리 군민들이 되기 때문에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알리고자 합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온 인간은 보다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물질문명을 발전 시켜 왔고 훼손된 자연환경과 더불어 인류생활 환경도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인류를 위한 사회 발전은 지구촌이라는 거대한 인류집단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를 형성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무한경쟁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인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산업 발전의 근원은 동력이며 전기라고 본다. 첨단산업사회의 도래로 폭발적으로 수요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 발전시설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 갈수도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수적이면서도 거부당하는 필요불가결한 산업이라고 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본군에 인접 건설된 영광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1·2호기가 가동중에 있고 3·4호기가 완공하여 95. 6. 9 연료봉을 장전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95. 7. 31일 4호기 냉각재 방사능 누출로 가동을 중지, 수리중에 있고 3·4호기의 잦은 고장과 또한 5·6호기 건설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 이로 고창군민은 사고위험에 대한 정신적 불안과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다.

그리고 영광원전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 최악의 상해임이 명백하여 이미 72킬로미터 본군의 연안은 죽음의 바다로 변하여 누대로 살아온 어민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실정이다.

지역이기주의와 생존권이 수반될 특수성 때문에 지역여건이 불합리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시설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5·6호기 건설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핵발전소 설치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원전주변에 위치한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하여 상응하는 보상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수차에 걸친 의사 절충을 하였으나 원전 사업주인 한전과 국민의 생존을 수호하는 정부로부터 적절하고도 능동적인 대책이 없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본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며 건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1. 정부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원전주변 국민과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발전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원전가동으로 직접피해를 받고 있는 지선 어민을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과 현실성 있는 보상 범위를 책정하여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1. 4기의 원전 수용만으로 국가발전에 대한 희생이 충분하다고 보며 현재 추진중인 5, 6호기 건설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기 건설 가동되고 있는 원전에 대한 확고한 안전대책을 세워 주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세워 제시하여야 한다.

1995년 10월 10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지방업체 보호와 부실공사 방지 촉구 결의문

본군 관내에는 10여개 사의 건설업체가 있으나 그 규모가 영세하여 공사 수주실적이 부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바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건설업 등의 균형 발전으로 경제력을 제고하여 부실공사와 공사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구속력은 없지만 집행부의 노력과 특단 조치가 요망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하여 집행부에 이송 촉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업체 보호와 부실공사 방지 촉구 결의문

군 관내 지방업체를 보호함으로써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각종 공사의 건설시공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 집행부로 하여금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촉구함.

1. 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하도급은 반드시 관내 전문업체가 하수급 하도록 한다.
1. 공공 도급 계약의 경우 가급적 군 관내 업체를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한다.
1.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부실공사와 부조리를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

1995년 11월 15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청운무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본군 100여 가구의 농가는 김장무 수급조절과 소득향상을 위해 330ha 청운무를 재배 하였으나 종자불량으로 인하여 생육과정에서 황화현상이 나타나는 등 완전폐농에 이르게 되어 농민들의 자구책으로 종묘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게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회사측의 폭력행사로 많은 농민이 입원가료 중에 있음은 심히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길 없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려되는 더 큰 마찰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어 관련 중앙부처인 농수산부와 흥농 종묘회사에 즉시 보상할 것을 강력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저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청운무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

고창군민을 대표한 군의원 모두는 흥농종묘에서 생산한 청운무 종자를 고가로 구입하여 파종한 농가들이 황화현상과 생육부진으로 폐농사태가 발생되어 피해 보상을 흥농종묘측에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피해 농가를 대리하여 군민의 이름으로 즉시 피해 보상할 것을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농림수산부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피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묘관리법을 보완 완벽한 종자가 공급되고 피해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한다.
1. 흥농종묘는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즉시 피해 농가측과 대화하여 정당한 피해 보상을 시행하라.
1. 피해보상이 안될시는 흥농종묘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자와 종묘의 불매운동에 뜻을 모으고 흥농이라는 상표가 붙은 간판의 철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한다.

1995년 11월 15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징계 요구 결의안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개발 촉진지구 선정사업 및 정읍, 고창간 4차선 진입도로 사업등 지역현안 사업을 안일하게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시책보고시 의원의 질의에 항의성 및 불성실한 답변으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회위상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의회의 뜻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증징계 요구 결의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능력 배양으로 지역에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지역에 현안들을 군민의 총의에 의하여 합법적이며 합당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막중한 군정 수행을 담당한 군 간부 공무원이 지역발전에 획을 가름할 수 있는 개발 촉진 지구 선정사업과 자손만대 길이 남을 고창읍 4차선 진입도로등 중차대한 현안사업을 안일하게 추진할 뿐 아니라 군민에 대의 기구인 본회의장에서 군의원 질의에 항의성 반위협적이고 면박성 답변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등 본의회와 전의원을 경시하는 바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와 같은 도시과장 정전환을 증징계할 것을 요구 결의함.

1995년 12월 1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 제4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본결의안 철회 처리.

직업 전문학교 교과목 증설 건의안

건 의 문

고창군 직업 전문학교의 기능대학 승격에 즈음해서 귀부의 건의서 회신 [노동부 훈정 68540~741(95. 9. 11)]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회에서도 귀부의 결정에 대하여 10만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기며 군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첨 내용을 건의하오니 부디 검토하시여 우리의 뜻이 대학 설립에 반영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부에서도 산업인력활성화 방안과 직업훈련 체제 개편 계획이 모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건의하는 과목은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학과이며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학과로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적인 주민의 요청이오니 설립때부터 해당학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1996년 3월 16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수박, 우리밀 피해면적 조사 및 보상 촉구 결의안

이번 장마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에서 재배하는 수박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는 밀을 생산해 내는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우리 고창군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해야될 그런 현시점에 와서 농수산부 장관과 도지사께 이 건의문을 보내 드리기 위해서 본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코자 했습니다.

건 의 문

본군의 전형적인 농군으로써 군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특히 1만여 ha의 야산개발지는 군민의 소득을 결정짓는 관건으로 여름철의 수박과 가을철의 김장채소는 전국제일의 주산지이며, 또한 범군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우리밀 재배운동으로 본군에도 많은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금년도 수박재배 면적은 2,796ha로 이중 노지재배 면적이 2,608ha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개화기에 계속된 장마로 인하여 착과율이 60~70%에 불과하고 만연되는 탄저병과 만고병 역병 등으로 피해 면적이 572ha나 되고 피해 면적은 계속 확산되고 있어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우리밀 재배면적은 188ha(생산예상량 15,000가마/40kg)로 수확기에 계속된 장마로 수발아와 변질 등으로 455백여만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장마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군민의 대의 기구인 본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수박에 대한 피해상황을 농작물 피해 대책 차원에서 전수조사 적정한 보상과 각종 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우리밀에 대한 수매기준을 완화하여 생산전량을 정부에서 수매하고 농작물 재해 대책 차원에서 차액 보상을 하여야 한다.

1996년 7월 16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원전 피해 보상 촉구 결의문

그 동안에 원전, 피해보상 문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보상촉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의원님들에 동의물 얻어서 촉구 결의문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을 해당 부처에 발송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배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결의문이 되겠습니다.

원전피해보상 촉구 결의문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본군에 인접 건설되어 사고 위험에 대한 정신적 불안과 방출되는 온배수로 인하여 본군의 72km 연안은 이미 죽음의 바다로 변하여 누대로 살아온 어민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실정이며, 수려한 자연경관은 수백개의 철탑과 거미줄처럼 얼켜진 송전선으로 인하여 지역에 걸맞는 관광개발 계획은 이미 무산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이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피현상 노골화로 지역 경제는 직·간접적인 막대한 피해를 감수 당해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어 이러한 본군의 절실한 실정을 누차 건의하였으나 사업주체인 한전과 국민의 생존을 수호하는 정부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능동적인 대책이 미흡하여 군민의 대의 기구인 본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며 건의사항이 관철될때까지 군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정부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원전주변 국민과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발전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 지원하여야 한다.
1. 원전가동으로 직접피해를 받고 있는 지선 어민들과 축계 양식장을 비롯한 맨손어업을 하는 주민들에 대한 생계 대책과 현실에 준한 보상범위를 책정하여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1. 원전가동으로 온배수 영향과 철탑 및 운곡댐 영향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본군이 현격하게 많은데도 원전을 중심으로한 반경 5km이내 면적을 기준 본군과 영광군의 지원비율이 17대 83 책정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실질 피해를 조사 적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기 건설된 4호기의 원전수용만으로도 국가발전에 대한 희생은 충분하다고 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5, 6호기 건설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1. 기 건설 가동되고 있는 원전에 대한 확고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인근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1996년 7월 16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부부 간첩단 사건 규탄 결의문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 및 혼란책동 음모를 강력 규탄하고 부부간첩단 사건을 군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현 상황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경제침체로 인하여 전 국민의 관심이 정치 및 경제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간과한 북한은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고 간첩을 남파하는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음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군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에서 군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북한의 어떠한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용감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키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부 간첩단 사건 규탄 결의문

시대착오적 간첩 도발 규탄한다. 간첩·친북 좌익세력 뿌리 뽑아 자유민주체제 수호하자.

북한이 대남 적화를 위해 우리 사회에 지하공작 거점을 구축하고 북한 추종세력을 조직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이번 최정남 직파 부부간첩단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간첩 남파행위는 그동안 북한이 주장했던 화해와 평화의 구호들이 선전적 기만 행위에 불과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며, 특히 원로 교수로 활동해온 엘리트 지식인 간첩 적발은 우리 사회 전반에 침투되어 친북 좌익세력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 및 혼란책동 음모를 강력 규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북한이 적화통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히 실증되고 있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책동에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1. 우리는 북한 김정일 집단이 대한민국을 무력과 폭력으로 전복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간첩남파 등 각종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정부가 국내에서 잠복 암약하고 있는 간첩을 철저히 색출하고 친북좌익 세력을 발본색원 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1997년 11월 28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제 4 절 군정질문 및 답변

1. 제 38 회 임시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자	답 변	답 변 요 자
이 종 위 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호종군수의 5대공약사업중 하나인 대우 부품공단 조성 추진 복안과 착공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바 범 고창군민 유치운동 전개 의사는? • 보들지구 경지정리사업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 마무리를 못한채 농민들은 겨우 농사를 지었는데 본지구의 사고경위와 내력은 무엇이며, 공사 마무리를 위한 견해와 대책은? • '91년도 본군 경영사업 일환으로 대신제 매립사업이 책정되어 성송면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으나,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인바 사업의 추진경위와 중단된 사유, 금후 추진 방안은? 	이 호 종 군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우지방공단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대우에서 대산면, 성송면 일부지역 부지 100만평에 1,200억원의 사업비를 년차적으로 투자하여 주행사협장, 공장부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대우에서 군과 도를 경유하여 지난 6월 21일 건설교통부에 지방공단지정 신청중에 있으므로 공단지정 즉시 기반공사 실시 계획 임. • '94. 12. 5 주식회사 대륙토건사와 계약체결후 토건공사 100%, 구조물공사 94%정도의 사업시행중 '95. 6. 14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중단 되었으나, 보증회사인 대한토건사와 공사감리인 농업진흥공사가 10월 추수이후 시행 완료 하겠음. • 대신제는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잡종 재산으로 '93년도 택지개발 목적으로 재정경제원에 매각 요청 하였으나, 국도 23호선 확포장 예정지구로 매각보류 통보를 받아 이리국토관리청에 당초계획을 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 지난 한해시 국무총리 고창방문 때 지원요청한 136억원의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p>		<p>• 경 요청하여 '95년 4월 우회도로 개설로 확정되었으나, 고창 월곡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본군과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간의 협약에 따라 월곡택지가 분양 완료되기전까지는 자체 택지개발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양기되어있으나, 성송면과 떨어져 있고 6,000여평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재협의하여 자체 조성토록 추진 방안을 검토 하겠음.</p> <p>• 지난 8월 12일 국무총리와 농수산부 장관께서 본군 한해 현장방문때 항구적 한해대책 사업비 136억원을 건의한바 있음. 그 내용은 신림 가평 경지정리 지역내 배수개선사업비 11억원 심원 도천저수지 개보수사업비 9억원 부안면 연기지구 저수지 송상동 농업용수개발사업에 116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 하였음.</p>
<p>김 상 필 의 원</p>	<p>• 민선군수로서 재임 3년동안의 군정방향과 군민들께 공약한 고창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실천계획과 혹시 공약사업중 수정을 해야 할 사업은 없는지?</p>	<p>이 호 중 군 수</p>	<p>• 완전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군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군수를 비롯한 8백여 공직자가 철저한 봉사정신을 발휘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마을진입로 포장, 보도블럭정비등 적</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은 규모의 사업을 많이 시행하겠으며, 빈약한 재정지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공단 조성과 기업을 유치하겠으며,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기업 유치등 세일즈 활동을 통해서 경영행정수행에 주력하겠으며, 모든군정에 책임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p> <p>다음은 공약사업 8건중먼저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승격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97년 개교와 동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p> <p>고수와 아산농공단지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건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체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는등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p> <p>석정온천관광지개발사업은 기반 시설 공사와 부지정리를 완료하여 민간자본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천혜의여건을 갖춘 관광개발지라는 점을 집중 홍보하겠으며,</p> <p>다음 구시포어항 1종항 승격에 대해서는 인근 영광개마1종어항의 4km에 있고 등록어선이 37척뿐이나 어항법과 어항기준이 완화된 특례 조항을 적용 1종어항</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으로 승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p> <p>다음 동호, 구시포 해안도로개발에 대해서는 '98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p> <p>다음 원전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화합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한전본사와 영광원전측과 계속협의하여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p> <p>섬진강 광역상수도사업은 본 부 안담 광역상수도사업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류길승의원	<p>· 지난 '91년 1월 1일부터 오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임대한 고창읍 화산리 산44번지의 1필지 3만여평의 고창읍 쓰레기매립장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 옮길 것인가?</p>	이호종군수	<p>·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과제로 생활민원해결과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우리군내에 입지를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향후 30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p>
전종열의원	<p>· 임산물 직매장, 명산품육성, 노인복지시설등 군비 미부담으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위기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는?</p>	이호종군수	<p>· 임산물 직매장시설, 내고장명산품육성, 노인요양시설사업등 95년도 당초예산심의시 의회에서 삭감하여 보류된 사업으로서 금회 추경</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시 재원부족으로 계상치 않았으나 결산추경시 검토하겠습니다.
최 석 기 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체조를 비롯하여 화장실청소하기, 예절지키기운동등 민선군수 취임이후 현시대와 맞지않는 구시대적 발상인 전시행정위주라 할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김 덕 진 내 무 과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추진한 생활체조, 공중화장실 청결운동과 예절지키기운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체조와 예절지키기는 90%, 공중화장실 청소는 66%가 잘하는 일이라고 응답한바 있으며, 주민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으로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한다면 보완 발전시켜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공약사업의 하나인 구시포항 개발은 그 공정을 20%에 해당되며 지시사항 50건은 현재 17건만이 완공되어 30%에 해당되는바 이는 대통령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고창군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나온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추후 대책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강 유 원 기 획 실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2. 25일 대통령 취임이후 공약사업은 도솔제 축조, 고창~정읍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직업전문학교 건립, 구시포항개발등 4건으로 도솔제 축조는 '94년도 완공되었고, 고창~정읍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과 직업전문학교 건립은 순수 국가예산사업으로 '96년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시포어항 개발은 '89~'96까지 총 12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포함 34억원으로 연륙교 303m를 시설하였으나 그중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 4대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있는지? 선거와 관련한 읍면 리장단의 사직현황과 결원, 재임용된 사례가 있는지와 리장단 명단제출바라며, 관내 관변단체 현황에 대한 자세한 보고와 군소유 사무실을 사용하는 단체는 어느단체인지, 또한 관변단체와 관련한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 추진상황과 처리 결과를 답변 바라며, 40여명의 청내 여직원에 대한 근무여건이 매우 불편한 실정인바 근무여건을 향상 시킬수 있는 대책은?</p>	<p>김 덕 진 내무과장</p>	<p>안 국비지원 저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속적인 중앙 및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또한 지시사항은 지방선거준비 철저등 성격상 완료된 지시사항이 17건이며, 내용상 완결되는 것이 아닌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지시사항이 33건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음.</p> <p>· 4대 동시선거에 대한 공무원 선거개입이나 개입시비사례를 신고 또는 접수된 것은 한건도 없었으며, 지난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법정시한인 '95. 3. 29까지 사퇴한 리반장은 12명으로 리장 6명과 반장 6명이며, 사퇴한 이후 6개월안에 재임명된 리반장은 한명도 없으며, '95. 8. 31 현재의 리반장 명단은 별도 제출한 자료로 가름하였으며, 정액 및 비정액으로 국, 도, 군비를 보조하는 단체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등 14개 단체가 있으며, 군소유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예총고창군지부, 행정동우회등 5개 단체이며 현재까지 관</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고창군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고창읍을 비롯한 5개 면으로 되어있는데 고창읍과 개발예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허가지역에서 신고지역으로 완화시켜주는 것이 주민편의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적과정의 견해는? · 등록된 장애인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직하며 현실과 맞지않는 운영지원금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받지 않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회과장의 견해는? 	박 춘 오 사 회 과 장	<p>변단체와 관련한 상부의 정식지침이나 지시는 없었으며 명랑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한 여직원 탈의실 설치에 청사공간부족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나 금후 탈의실을 확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거래허가신고 지정내용을 보면 서해안고속도로 경유지인 고창읍, 아산, 무장, 공음, 흥덕지역이 허가지역이며, 기타 고수면의 8개면은 신고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92년도와 95년도 6월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해체토록 노력하겠음. · 등록된 단체명, 대표자 및 연락처는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창군지부 대표 최관주 연락처는 61-1080,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고창군지회 대표 김호열 연락처는 63-9563이며, 사단법인 한국농아복지회고창군지회 대표 최희수, 연락처는 FAX 61-1080이며,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국도비의 보조없이 전액군비로 충당됨으로써 지원이 절대부족한 실정인바, 타시군의 장애인단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배출입소, 자동차배출가스등 환경유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는데 적발과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개선이나 시정등 사후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 대형, 소형관정의 수와 그상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번 한해시 한해면적을 보고 받고 소형관정을 배정했는지 여부와 대형관정 고장시 수리비가 과다하고 수리기간이 오래 걸리며 전기료가 과다하여 농민의 큰부담이 되고 있어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설과장의 견해는? 	<p>정 중 호 환경보호 과 장</p>	<p>채 육성방안을 비교검토하여 군내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96년도예산에 대폭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환경에 대한 의식은 선진국형인 반면에 행동은 의식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공해배출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개선 및 시정되도록 하겠으며, 유선방송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원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고 재사용하도록 계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과장 해외연수중으로 다음 임시회시 답변 청취 의견

2 제 41 회 임시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문	질문요지	답변	답변요지
김기채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면 본청 262명, 직속기관 164명, 사업소 12명, 읍면 343명등 지방직만 781명에 이르는 방만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바,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특성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창군 조직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원안내 전화서비스는 주민에게 민원처리 절차를 알리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부족하여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군민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이용실태를 사안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를 주도해나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요, 바람일 것입니다. 	이호종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군의 행정기구는 현재 1의회, 2실 15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13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위해서 행정수요가 증가, 확대된 분야는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상대적으로 기능이 쇠퇴하고 유사한 것은 통합하여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계획을 도에 제출 중에 있으며 조직개편안이 12월 중 도에서 확정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 하겠습니다. 개통이후 11월말까지 총이용 건수는 1,549건이며 하루 평균 16건을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하도록 고창군보, 고창신문, 유선방송등을 통한 홍보와 직원 전파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 우리사회와 국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은 우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요즘 청소년 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고창군의 견해는?</p> <p>·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성의 복지증진 및 시설물의 확충계획은 어떤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의 자립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은?</p> <p>· 행정은 무엇보다도 공신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법규적용과 행정의 반복적 적용에 여러 가지</p>	<p>이 호 중 군 수</p>	<p>리 모두의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청소년들이 정서순화와 심신수련활동을 통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청, 경찰서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청소년 선도방안을 강구 추진 하겠음.</p> <p>· 여성교양교육실시, 이용, 꽃꽂이, 노래등 다양한 취미교실 운영등을 통해서 여성들의 여가선용과 교양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으며, '96년도에는 연건평 400평 규모의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여성들만의 종합복지 공간확충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더욱 넓히도록 기여 하겠음.</p> <p>· 어린 소년소녀가 가장역할을 하는 세대는 75세대로 이들이 의지를 잃지 않고 멋있게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법정기본생계비 지원은 물론 특별지원할 계획이며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유지, 독지가등 결연후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음.</p> <p>· 금년도 본군을 상대로한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1건이고, 소송은 금년도에 제기된 1건을 포함 현</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다름으로 인하여 금년 고창군을 상대로한 행정심판과 소송이 몇 건이고, 법규적용 잘못으로 고창군이 패소한 건을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구분하여 원인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람.</p>		<p>계 민사 3건, 행정 1건, 4건이 계류중에 있으며, 법규를 잘못 적용 패소한 건은 한건도 없으며 행정의 공신력제고를 위하여 법제교육과 행정소송 실무교육등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주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96년도부터 고분변호사를 위촉운영토록 하겠음.</p>
<p>노 병 열 의 원</p>	<p>· 국가에서 농촌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지사업이 당초 예산과는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14개 읍면을 재조사하여 올바른 계도를 하실 의향은?</p> <p>· 상하면 우회도로와 지방도 733호와 교차점 사거리에서 우회도로 개통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2년동안 2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p>	<p>김 계 환 산업과장</p> <p>이 용 남 건설과장</p>	<p>· 93년도에서 95년까지 조성된 기계화단지 212개소이고 총사업비는 6,961백만원중에서 보조비가 1,929백만원, 자담이나 용자가 4,032백만원이고 95년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농기계 사후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이미 처분한 것이 4건, 규격축소구입 1건, 적발되어 보조금 2,403백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사업목적에 위반된 사례가 있으면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내년도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p> <p>· 본 도로는 지방도 733호선으로서 구서포 아산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총연장은 13.7km이며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 사업소 정읍지소입니다.</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1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등 교통사각지대가 있는바, 인명을 중시하고 복지행정을 추구하는 현시점에 군수께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p> <p>· 상하 용정지구는 경지정리사업 설계시 구시포 배수갑문간 소하천 1,500m구간에 대하여 직강공사 및 농로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설계토록 누차 건의 하였으나 완전 제외되어 심히 유감스러움을 느끼며 농경지를 보호하고 소득을 올려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대대적인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바, 상습적인 농경지 침수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지역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단순히 경지정리사업만 시행한다면 앞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군수의 대책은?</p>		<p>급커브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대책으로는 선형개량, 노폭확장,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등의 예방대책이 있겠으나, 노폭확장등 선형개량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사업에 대한 제반여건을 조사하여 관리청인 도에 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선 사고방지를 위하여 급커브 구간에 반사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조치 하겠음.</p> <p>· 상하 용정지구는 129ha로 총사업비 2491백만원을 투입 95년 가을 착수하여 96년 5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시공측량을 실시중에 있는바, 중앙배수로의 측량을 재설시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하천 개수공사를 실시할 경우 4억5천여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년차적인 계획으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침수에 따른 대책은 경지정리사업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 시행하겠음.</p>
유길승	· 전국에서 제일가는 야산개발지	이호종	· 관내 야산개발지의 면적은 약

질문	질문요지	답변	답변요지
의원	<p>구에 경작을 하여 소득보다는 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수박 대체작물은 무엇이며 수박 후기작으로 경작되는 김장채소의 대체작물은 무엇입니까?</p> <p>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경작비가 거의 들지 않고 무공해이고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는 메밀? 농민이 흘리는 피땀에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대체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군수	<p>6,800여ha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전기작으로 땅콩과 수박을 경작하고 있으며 수박 후기작으로 대부분 무, 배추등을 경작하고 있으나, 과잉생산으로 가격파동이 많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이 되지 못하는 때도 있음.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비교적 생육기간이 짧고 일손이 적게드는 메밀뿐만 아니라 타대체작목 재배방안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수익성과 타당성 검토후 농가에 권장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p>
원병회의원	<p>· 주식회사 삼미기술산업은 흥덕면 치룡리 100번지 118,675평 규모로 1990년 5월 30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경비행기 및 동부품 생산공장으로 창업계획이 승인된후 무단방치하다가 95년 5월 1일 본 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자회사인 삼미특수강에서 인수하였다고 하는바, 그 동안 삼미특수강측과 사전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등 여론수렴에도 관심을 가져주셨는지와 삼미특수강의 지방공단 지정</p>	이호중 군수	<p>· '95. 5. 1일 공장설립등 추진실적부진으로 승인사항을 취소함과 동시에 관련 지방세 1억9백만원을 추진하였으며, 국세청, 통상산업부등 관련기관에 취소사실을 통보하였으며, '95. 8. 30일 삼미그룹 계열사인 삼미종합특수강에서 동부지품 매입하였고 '95. 9. 20일 삼미그룹 본사와 삼미종합특수강 기술진이 타당성과 현황파악차 내군한바 있으며 앞으로 군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승인을 요구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한후 지</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승인 신청등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 바람.		역주민과 제반 문제를 협의 추진할 계획임.
이 종 위 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년도 소도읍가꾸기 개발사업은 고창시장에 따른 집단구역을 형성시키고 또한 도로확충망과 내고장 물건사주기 운동을 실천해서 과연 이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이 호 종 군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먼저 고창읍 소도읍가꾸기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 년차사업으로 총 48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가로망 확충과 주민편의시설 관광문화 단지 조성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본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도로망이 확충되면 자연발생적으로 상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단상가 구역 조성을 위한 구역정리등은 여러가지 도시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점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고창읍을 중심으로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은 전주와 광주등 인근에 대도시가 있고 또 정읍과 영광등으로 우리지역 경제가 부진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정신적인 측면에서 고창물건사주기 운동등 군민들의 애항심 발휘같은 의식개혁이 바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관광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확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 제가 95년도 담배세를 93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5억원이 줄었습니다. 국산담배 한갑을 피움으로서 우리 지방세 460원이 붙어난다고해서 각종 사회단체 군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관내 담배 소매업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약 3년에 걸쳐서 약 100만원씩 지급 되었으나 우리군에서도 적절한 방법을 찾아 담배소매상들의 뜻을 위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지방세 확충방안과 세수입증대방안은 무엇인가?</p> <p>• 고창지방공단 조성이 우리 10만 군민의 염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여년 동안 이 지역을 지켜왔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가 말것인가 땅값 몇푼 보상받아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상당히 침</p>	<p>이 호 중 수 군</p>	<p>총으로 기업등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음.</p> <p>•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개발욕구 충족과 완전한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서 폭 넓게는 고창지방공업단지와 같은 대단위 공단조성과 우수한 기업유치,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하여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선운산에 유스호스텔 건립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세수입중 제일 비중이 큰 담배소비세의 증대방안의 하나인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운동은 행정에서는 봉상마찰로 취하기가 곤란 함.</p> <p>• 고창지방공업공단은 주식회사 대우에서 성송면과 대산면 일부 지역 101만5천평에 주행 연구시설을 비롯하여 공업단지 주거용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00년까지 총 1,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올해 있어 무조건적으로 땅만 팔려 농토를 잃고 실망에 빠져 있는 농민을 위로해 줄수 있는 방안은무엇인가?</p> <p>· 다음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모든사업은 선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위임사무라 할 지라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과감히 수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균형있게 발전시킬수 있는 중장기적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리지 않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며 예를들어 정읍시에서는 오지개발사업비를 소득원개발사업비로 50%를 사용하고 있는바 또한 환경개선사업비로 50%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군수의 확실한 의지는?</p> <p>· 각종단체 보조 및 경비를 굳은 의지를 가진 시장군수는 96년도에 예산요구를 안했는데 많이</p>	<p>이 호 증 군 수</p>	<p>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토를 잃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이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가급적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음.</p> <p>·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법에 의거 90년부터 99년까지 각면당 20억원씩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지개발사업은 96년도부터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등에 50%정도씩 투자하도록 정부의 시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우리군의 경우 기 시행되고 있는 도로 확포장 개설공사를 96년도까지 마무리하고 97년도부터 소득기반, 환경개선사업등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계규정이 개정되지 않는한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향후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 검토 추진하겠음.</p> <p>· 각종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의 부담은 지방재정법과 개별법령등에 의하여 정액보조와 임의</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수께서는 예산을 이렇게 요구 했습니다.</p> <p>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군수가 각종 사회단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민원 내지 부탁의 말씀을 거절하기 힘들어서 우리의회에 떠넘기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지 않느냐 의혹을 갖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군수의 확실한 답변과 굳은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보조단체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p> <p>예산처럼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 기식 지원은 하지 않겠으며 사회단체로부터 연간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효율적이고 객관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음.</p>
<p>김 상 필 의 원</p>	<p>· 월곡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형평성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고창읍 관내에서 이루어진 보상가에 있어 90년도에 시행한 덕산택지개발지구 평균 보상가격이 평당 90,000원 93년도 고창읍 고창우회도로 평당 230,000원, 94년도에 시행한 석정온천 우회도로 보상금액이 59,400원이었으나 월곡택지지구의 입지여건과 매매실태개발전망등을 종합검토하여 볼 때 94년 12월에 산정된 평당 68,500원의 보상가격은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p> <p>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p>	<p>이 호 종 군 수</p>	<p>· 고창읍 월곡리와 교촌리일대 8만8천평을 96년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해 8월 30일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위탁시행 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금년에 우선 14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보상과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부당하게 감정평가되었다고 토지주가 건의한 미매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12월중 실시 계획인 재감정 의뢰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본격적인 재감정을 실시하기전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이 안된 필지에 대한 재 감정은 언제 실시할 것이며 현실가에 근접한 보상이 되도록 할 용이는 없는지?</p> <p>계감정 결과 토지주들이 불응할 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p>		
	<p>· 주민자치시대를 강조하는 지방자치 시대는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관치 행정속에서 노인복지행정체계보다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시점에서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창군의 중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은?</p> <p>· 고창읍민은 물론 고창군민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정읍고창간 4차선 확포장 도로 고창읍 전입도로 불부합지구가 기존도로 선형과 일치하지 않게 개설되고 있어 많은 군민들로 부터 비판과 조소거리가 되고 있는바 본회의에서 시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외면하고 만선군수의 결심</p>	<p>이 호 중 군 수</p> <p>이 호 중 군 수</p>	<p>· 경노당을 찾는 노인들은 마땅한 일거리나 취미없이 소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경노당별 활동계획을 세워 건전한 취미활동과 게이트볼등 노인들에게 알맞는 생활체육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석정온천 관광지에 실버산업 유치를 위해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노력하겠음.</p> <p>· 현재 추진중인 고창에서 정읍간 4차선 진입도로중 구 동방다방에서 우회도로쪽으로 1.5m의 폭으로 약 110m정도가 삼각형 형태의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불부합 지역의 관동도로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차선 17m는 일직선으로 시행하고 인도폭을</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명한 조치를 바람.</p>		<p>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신축중인 원광한의원 건물이 외관상 동방다방 건물보다 들출되게 보이는 것 등에 대하여는 건물선형 불일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주와 협의하여 기둥부분 후퇴등 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음.</p>
<p>이 만 우 의 원</p>	<p>·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관내에 30여개의 보건기관이 있으나 한방의료기관이 단 한군데도 없는바 효과적인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안이 있는지 군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p> <p>· 지난 가정복지과 시책보고에 있어서 65세이상 노인이 10,000명을 넘어 이제는 경노당에 간식비, 운영비 및 노령수당등 물질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 개발이</p>	<p>이 호 종 군 수</p> <p>이 호 종 군 수</p>	<p>· 농촌인구 노령화로 신경통, 관절염 환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한방진료과목 개설을 위하여 수차례 걸쳐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한의사 지원요청을 한바있으나 현행제도상 한의대출신의 공중보건의 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한의사 제도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므로 공중한의사 배출시 한방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음.</p> <p>· 현재 각읍면 마을의 경노당을 찾는 노인들은 마땅한 일거리나 취미없이 화투놀이 등으로 소일하고 있는 현실인바 앞으로 군에서는 경노당별 자체활동계획을 세워 노인들이 건전한 취미활동과 노인들에게 알맞는 생활</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매우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며 21세기 고령사회를 앞둔 현시점에서 전반적인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고창군의 중장기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특히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도 1개시군당 수 십억원을 어촌에 투자하여 낙후된 저소득 어촌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발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소득을 높이는데 있어 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96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본군에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떠한 수산행정 방향을 잡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람.</p>	<p>이 호 중 군 수</p>	<p>체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음.</p> <p>· 낙후된 해안지역의 균형개발과 어민의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군은 줄포만권역으로 94년도와 95년도 2개년에 걸쳐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11개 어촌계에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방침이 1개권역당 사업기간이 2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은 96년도에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나 타지역의 해안에 비해 경제적 투자가치등 개발잠재력이 풍부하고 인근 영광원전의 온배수 피해로 인한 대체어장개발등 소득원을 발굴해야될 실정에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성 호 의 의 원	<p>· 우리 고창군에 농업용수는 적은 규모에 소류지나 저수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소형 관정개발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기상이변으로 인해 한해가 올 경우 즉흥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으로 중규모댐건설이 절실하다고 보아 댐 건설의 적지를 추천하겠습니다. 아산면 계산리 사신원지구 약 211m²면적에 중규모댐을 건설하면 3,500만톤의 물을 담수해서 약 9,000ha에 용리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신원 지구에는 12가구에 2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으로 이주대책에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바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미래 지향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p>	이 호 종 군 수	<p>· 해마다 계속되는 한해로 우리 농민들이 애타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 역시 우리군도 장기적인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댐건설이 절실함을 공감하고 있으며 아산면 계산리 사신원지구는 이전에 몇차례 댐건설의 적지로 거론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수산부에서 사신원지구에 대한 용수개발도 추진할 계획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여 현지답사와 수량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조사 결과 중규모댐 1개소와 양수장 2개소 용수로 65km² 시설에 약 500억 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방문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p>
	<p>·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강, 선조들로 부터 깨끗하게 물려받아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인천강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바 인천강을 정비해서 생활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방안을 강구 답변 바랍니다.</p>	이 호 종 군 수	<p>· 인천강은 준용하천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96년도에 군비등 3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원평교부근 약 400m의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시 운곡댐 하류지역의 인천강 호안 정비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고창천 하류에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 아산 농공단지 무지개빛 희망을 갖고 용감하게 92년 8월 29일부터 93년 8월 17일까지 단기간에 거금 33억원을 그것도 군비가 부족하니까 빛까지 내다가 조성올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군비는 얼마를 투입했으며 용자금 상환내력과 이자는 얼마씩 지불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봉 필 운 지 역 경 제 과 장</p>	<p>이 98년까지 완공되면 정화된 맑은 물이 흐르게 되어 인천강을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p> <p>· 지금까지 아산농공단지 조성에 투입된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조성사업비 33억3백만원중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14억9백만원 순수 군비부담이 494백만원, 기채한 금액이 14억원으로 기채한 금액 14억원중 국비에서 기채한 4억 용자금상환 조건은 5년거치 5년균등상환이고 도비에서 기채한 10억원의 용자금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이율은 85%이며 상환할 금액은 총 21억9천3백만원이며 그중 5억1천6백만원 상환하고 1,677백만원 상환잔액이 남아 있으며 상환기간은 1992년에서 2002년까지가 되겠으며 아산농공단지가 정상화되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 하겠음.</p>
<p>전 종 열 의 원</p>	<p>·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모든 재원을 발굴해야 하는바, 재원 발굴 방법중 돈 안들고 발굴 할</p>	<p>이 호 종 군 수</p>	<p>· '93. 11. 1~95. 4. 15까지 여수수산대학교에서 피해용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배수구 북쪽 16.8km의 지점까지 피해예상지</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수 있는 것이 천연자원 개발이라고 하는바 집행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명사십리 해안관광 개발, 해안 관광도로, 구시포항 개발, 종묘배양장등 약 7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광원전의 위험한 지역에 발전계획을 세운다면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의문인데 군수의 명쾌한 답변 요망</p> <p>·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새롭게 일하는 풍토조성과 공직사회 사기 앙양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인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공직내부 뿐 아니라 일부 외부에서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바 공직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법에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답변 바람.</p>		<p>역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원전 주변의 해안은 온배수를 이용한 종묘배양장과 어류 양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하고 인공어초 시설 적지를 개발하여 공동어장과 낚시터 개발등 영광원전의 온배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어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p> <p>·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마친후 그 결과물도에 제출하였으며 조직개편안에서도 확정되면 관련 조례등을 개정하여 시행하겠으며 순환보직 인사도 아울러 단행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쇄신해 나가겠습니다.</p>

3. 제 43 회 입시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유 종 운 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창군내 쌀생산 면적과 생산량은 얼마이며 전년대비 금년도의 쌀생산 면적과 생산 계획은? 우리군의 휴경농지 면적과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 강구 방안은? 농지에 비닐하우스 설치 면적과 대책강구 방안은? 군관내 보건소 및 14개 읍면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의 근무불성실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근무지에 공중보건의의 주민등록과 거주 여부 및 개선 대책은? 	<p>최 풍 진 산업과장</p> <p>송 용 관 보건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창군내 쌀생산면적은 15,713ha로써 95년 생산량은 528천석이며 금년도는 전년대비 3% 증가한 546천석을 계획하고 있음. 휴경지 면적은 24.7ha이며 휴경지의 대책은 필지별 카드를 작성하여 행정, 농협, 지도소와 공동관리하고 작목반 인근영농법인 등과 연계하여 대리경작체계 및 생산화에 총행정력을 경주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자체재원 확보하여 영농의욕 고취 시키겠음. 비닐하우스 시설면적은 206농가에 108ha이며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시설을 할 경우 자금지원을 지양하나 정부지원 배제는 97년 사업부터 적용하므로 농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관내 공중보건의는 21명 배치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은 전원 고창군내에 이전되었고 거주 현황은 19명 현재 거주하고 3명은 고창읍 및 정읍에서 출퇴근하고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창군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의약검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고, 단속자 자격기준은? 		<p>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단속은 95년에 주의 8명, 경고 6명등 1차 조치는 끝난 상태이며 지속적인 복무단속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창군내 의약업소는 총 70개소이며 단속자 자격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의료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써 현재 단속 공무원은 의약검사원증을 부여받고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집행하고 있음.
김 상 필 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창천 정화사업이 '93~'96년까지 총사업비 6,316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차집관로 사업이 완료되면 석탄, 죽림지구 농업용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 	이 호 중 군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창천 하류지역의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을 위하여 95년도 농조에서 소형관정 25공을 개발 활용하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고창천의 맑은물과 처리장의 발류수를 회석하여 농업용수로의 활용방안 검토중이며 금년부터 2001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월곡지구양수장 신설사업으로 하류지역의 부족한 농업용수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창군의 문화유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이 호 중 군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군 특산물과 각종기념품등의 판매코너, 관광민박지정 관광코스 개발동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한 농구대 설치와 문화 예술거리 조성 방안?</p>	이 호 종 군 수	<p>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으며, 우선 동리고택은 관리상 문제가 해결되면 개방하고, 고창이 판소리 고장임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동리국악당, 고창읍성, 새마을공원등에 판소리 음향을 시설하며, 해자복원은 고창읍성 고건물 복원 완료와 주변여건이 성숙되면 적극 검토하겠음.</p> <p>· 정부시책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사업은 청소년들의 농구대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내에 5개소가 보급되어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겠음.</p> <p>533개 전마을에 농구대를 설치하는 문제는 청소년들의 이용추세와 군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추진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거리 조성은 동리국악당 광장, 모양성주변, 실내체육관 주변등에 놀이마당 음악회등이 수시로 개최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유도해 나가겠음.</p>
	<p>· 영광원전 피해지역 지원금과 원전 5.6호기 중설 반대 대응 방안?</p>	이 호 종 군 수	<p>· 원전피해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며 지원금 배분기준</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은 40%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30%는 인구수 비율 20%는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10%는 지역 발전 등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배분함이 기준에 따라 고창군에 15%, 영광군에 85%가 배분되고 있는 실정임.</p> <p>배분기준에 대한 다방면의 대책 강구로써 수산자원 피해등 경제적 손실과 주변환경오염, 군민불안감 채공등을 원전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음. 5, 6호기 증설반대는 원전 추가건설에 대한 반대여론등을 관계기관에 골절없이 전달하고 중앙부처 방문시 한전사장등을 만나서 전달 및 요청하겠음.</p>
이 만 우 의 원	<p>· 고추 연중 전통시장을 열어서 기존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할 용의와 고추시장 활성화 계획?</p>	이 호 증 군 수	<p>· 군내 고추재배면적은 95년도 기준으로 2,300ha 생산량 4,700여톤, 생산액 281억원정도이며 판매시장은 고창상설시장과 6개소의 5일시장 원예협동조합 위판장, 청과물위판장이 있으며, 5일시장중 2개소는 기 정비하였고, 군비6억원을 투자하여 4개시장을 정비 추진할 계획임.</p> <p>앞으로 상설시장이나 5일시장중에 고추 전용시장을 개설할 방</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유길승 의원	<p>• 관내 군도선형 개량 대책?</p> <p>• 고창읍 주차난 해소 대책?</p>	<p>이호종 군수</p> <p>이호종 군수</p>	<p>안을 적극 검토 하겠으며, 또한 저공해 고추생산을 위해 비가림 재배면적등을 확대하고 국립농산물 검사소와 협조하여 품질인증제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음.</p> <p>• 관내 군도는 230개 노선, 연장 215km이며 이중 교통사고 발생 예상지역은 3개 노선 4개소에 2 km 정도임.</p> <p>작년부터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1개소씩 군도 선형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4억3천 만원을 투자하여 아산면 용계리 원평교 부근 440m의 군도 선형 개량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군도 위험도로를 재조사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많은 곳부터 년차적으로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겠음.</p> <p>• 군에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관통도로와 모양성 진입도로등 노상주차장을 확대지정하여 400여대 차량이 주차가능토록 하고, 고창우회도로 개설이 완공되면 성강주유소와 한전사이에 노상 주차장을 확대지정하여 300여대의 차량이 이용토록 하겠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또한 새마을공원옆에 1,200평의 주차장을 완료예정이며 고창읍 천변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고창읍 도시 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주차장 확충 추진과 공공시설물등에 부설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 임.</p> <p>아울러 건축허가시에는 일반 평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토록 유도하겠음.</p>

4. 제 47 회 입시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 상 필	<p>·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요금 적용 정상화대책?</p> <p>· 고창읍 화산·노동지구에 대한 도로망 개설등 개발대책?</p>	이 호 중 군 수	<p>· 현행 상수도 급수조례는 92년 10월 30일 급수조례 개정시 가정용으로 통합, 개정되어 단일화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2호 이상 공동주택에서 상수도요금 부과시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최초 급수신청시 미분양상태에서 1가구로 신청한후 수시로 가구변경으로 인한 가구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누진율이 적용되는 어려움이 많음. 또한 초과부담한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요금표에 의거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상수도요금 부과로 인한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음.</p> <p>· 노동과 화산을 연결하는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총연장 5.5km, 노폭 3m로 대중교통수단 이용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로 알고있으나, 화산·노동지구의 도로 확포장사업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속 추진 노력하겠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노 병 열 의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장 연고지 위주 인사 대책은? • 상하면 장호선도로 확·포장 대책? • 군내 경지정리 잔여면적에 대한 대책? 	<p>이 호 종 군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장이 지역주민과 일체감을 갖고 대민행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연고지배치 인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출신지역 분포 불균형등으로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음. 현재 14개 읍·면중 11개 읍·면은 연고지 배치하고 3개면은 타출신 면장으로 배치·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읍·면장 및 읍·면 직원 인사는 제반여건을 감안, 연고지 위주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음. • 장호선 도로는 장산리에서 장호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4.2km의 군도 3호선 도로로서 수년전에 시행한 콘크리트 포장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본 도로개설 사업에 양여금 지원을 계속요청, 조속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음. • 고창군의 총 답 면적은 15,745ha이며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10,726ha이며 현재 경지정리는 8,574ha 시행완료 되었으며 금년에 1,214ha가 실시되면 대상면적대비 91.3%가 완료됨.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노 병 열 의 원</p>	<p>· 상하면 송림선 도로개설?</p> <p>· 구시포선 굴곡도로 선형개량 대책?</p>	<p>이 호 종 군 수</p>	<p>96년 7월 재조사 결과 당초 10,726ha에서 12,442ha 증가되어 도에 1,829ha를 기본조사 예정지로 요구했으며 잔여면적은 98년 봄에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p> <p>· 본 송림선은 무장면 교흥리와 상하면 검산리 막정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 총연장 7.6km, 이중 무장면 구간이 4.2km임. 금년도에 8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무장면 교흥리에서 도곡리간 2km를 토공작업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 25%임. 무장면 잔여구간은 년차계획에 의거 97년까지 마무리하고 상하면 송림선은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 반영·추진하겠음.</p> <p>· 구시포도로는 지방도 733호선으로 도에서 관리하며 년차적으로 선형 개량공사 시행중이며, 금년도에 상하면 석남지구 1km를 대비 6억 3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선형개량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지방도 796호선인 대산면 광대지구도 2억 6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올해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시포 액젓공장 앞도로는 도에 건의하여 현장실태 조사후 시행되도록 하겠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유 종 운 의 원	<p>· 93년부터 95년까지 3번에 걸쳐 한해가 극심하나 하천 기성제 정비가 되지않아 금년 6월 21일과 24일 100mm 이상의 폭우로 용배수가 되지 못하여 침수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군내 하천개보수사업 추진대책은?</p> <p>· 93년 4월 20일 공원지구로 33,456평을 지적고시한 새마을공원은 95년도 특별교부세 2억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던중 96년도 명시어월까지 의회의 예산 승인 부기를 무시하고 부지매입 1,563평을 167,347천원만</p>		<p>· 우리관내 하천은 준용하천 84개소, 소하천 171개소이며, 개수대상 하천길이는 총 998km이고, 개수완료된 하천은 3,651km에 전체 하천 개수율은 36.5%임. 준용하천 개수율은 55%에 95년도에 5억 5천만원 투자되었고, 금년에 갈곡천, 와탄천, 강남천 등 3개 하천 2.9km를 도비 11억원 투자하여 개수사업 추진중이며, 준용하천 기성제 정비는 올해 2천4백만원 투자하여 2km를 정비할 계획임.</p> <p>군내 소하천 총 길이는 223km로 개수율은 17%에 94년도부터 지방양여금이 매년 2억원 정도 지원되며 금년에도 2억 5천만원이 지원되어 무장면 정거 소하천 1km를 정비하고 있음.</p> <p>앞으로 상습 침수지역, 재해 위험지역등에 우선적으로 연차 시행 하겠음.</p> <p>· 새마을공원 주차장시설은 새마을공원 조성기본 계획에 따라 주차장 시설면적 3,300평에 총사업비 6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주차장 편임용지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244백만원으로 평가되어 시설비에</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집행하고 예산이 없어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의회와 협의없이 사업변경하여 예산을 투자하려는 의도는?</p> <p>· 군정질문이나 질의답면은 의회와 집행부의 답변이 아니라 의회가 고창군민의 대의기구로서 고창군민의 답변인데 반해 의례적이고 임기용변식의 답변이 되지 않나하는 의문점에 대한 실천방안은?</p>	<p>이 호 중 군 수</p>	<p>서 토지매입비로 167백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했으며 잔여토지매입비에 대한 부족 사업비는 97예산에 반영·추진하겠으며, 주차장 조성공사시 성토비를 절감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전신전화국앞~우회도로 개설 공사장 토사중 3만㎡를 반입하여 주차장 조성부지 성토용으로 사용할 계획임.</p> <p>· 본인이 군수 취임후 제2기 군의회 군정질문, 답변내용은 제38회에 26건, 39회 7건, 43회 9건 등 총 42건으로 군정질문 답변내용이 대부분 완료 및 추진중에 있으며 일부는 법적, 제도적 제약과 재정적 한계로 추진상황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음.</p>
<p>이 중 위 의 원</p>	<p>· 고창지방공단은 군수 8대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농지보상 가격에 대한 대우지방공단측과 지역해당 주민들의 절충안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p>		<p>· 고창 지방 공업단지 개발사업은 95년 11월 17일 도 지정승인을 받아 95년 12월 28일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감정평가중이며 사업착공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도에 전달 관계부서 협의중이며, 96년 8월 29일</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 중 위 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군은 사회복지 시설 부분에는 많은 투자로 복리증대 향상을 보았지만 소득증대에는 부진하여 앞으로 첨단농업단지를 육성하여 소득증대 및 농업단지 활성화등의 육성방안은? ·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고창이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체육진흥 방안으로 태권도를 육성할 계획은? 	이 호 중 수 군	<p>환경영향평가 완료되는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토지보상 가격은 주민요구액과 대우측의 제시액에 차이가 있어 군에서 중재안을 대우측에 전달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중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98까지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95~2004년까지 15조원의 농특세 재원으로 농림수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에 투자되는 사업은 단지화하여 첨단농업육성과 연계추진 중임. · 생산 유통 지원사업등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군단위로 권역화하여 시행하는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 우리군은 체육발전과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상반기에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발족하였고, 학교체육은 무장영선중·고의 유도부, 고창여중·고의 여자육상부 창단계획,전국 여자역전마라톤경기를 주관코자 적극 검토중이며 태권도 실업팀 육성은 협회를 구성하고 태권도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 종 위 의 원	<p>• 대신제 매립을 고창군의 경영사 업인대 반해 지금까지 사업추진 이 지연되는 등 그간의 추진경 위에 대한 설명</p> <p>• 재정확충 방안으로 제3섹타 건 설업체를 설립하여 적체되어 있 는 공무원들 인사 활성화 및 건 설업체 부실공사 방지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p>	이 호 종 군 수	<p>• 성송면 대신제 주변지역 개발에 필요한 대신제 5,027평의 매각 을 지난해 재정경제원에 매각요 청 이후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 과 교환재원으로 협의후 96년 7 월 26일 등가교환 대상토지로 관리전환 결정이 이루어졌음. 대신제토지는 감정평가 완료하 였으며 9월중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연금관리공단측의 유선통보를 받음. 대신제 매각건이 해결되고 일단 의 주택자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추진 하겠음.</p> <p>• 3섹타 사업은 민관 협력방식의 기업형태로 공공부문과 민간부 분이 공동으로 자금 출자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수익성, 수익성등 이중효과 거양을 목적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3섹 타 사업으로 추진가능한 사업은 농수산물 가공 유통산업, 관광· 레져산업등이 유망하나 본군의 재정능력 및 제반여건면에서 본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생 각됨.</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원 병 회 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군 96년도 총예산액 124,534백만원중 자체수입은 132억원으로 자립도가 127%에 불과하며 자동차세면에서는 본군 거주 공무원이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지역 세수증대를 올리는 경향이 짙은데 고창군 관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동차를 우리군에 이전할 계획은? • 지방세 수입중 비중이 가장 큰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캠페인 및 행정 제재, 우리고장 담배 피우기 판로개척 대책은? • 흥덕면 신덕리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 환경관리과에서 비위생 매립시설로 폐쇄조치를 받게 되고 96. 2. 25 폐기물 관리법 개 	이 호 중 군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수 확보방안으로 자주재정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예산확보 및 채납세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측면에서 수차 관외 등록차량을 증용하여 48대를 이전시켰으며 관내 등록차량 대수는 152대, 연간 세액이 3천만원 정도이나 지속적으로 관외차량 이전등록을 이전해 나가겠음. • 우리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은 청년회의소, 밀알회등 매년 정기적으로 전개하여 다방업, 요식업 주 등의 교육을 통하여 적극 동참토록 하고 있으며, 외국산담배 안피우기 운동으로 군내 76개소 다방업소에 외국산 담배 판매금지 표찰을 게시하고 명절맞이 각 읍면에 플래카드 게시하는등 상당한 효과를 거둬. 담배값 광고문안 게재는 인쇄비에도 미치지 못하며 서울직판장 판로개척은 이해관계가 얽혀 한시적인 행사에 그치고 맘. • 기존 쓰레기장을 폐쇄하고 신설 위생매립장 추진 과정에서 관계법의 개정으로 침출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폐기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정으로 폐기물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별도사업비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유로 기존 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민원도 해결하고 폐기물 처리기능도 할수 있는 대책마련은?</p> <p>· 동림저수지 주변은 현행법 제정 이전인 1961. 12. 27부터 홍덕면 지역 148필지 151ha, 성내면 105필지 46ha로 총 253필지 197ha의 임야가 1종 수원합양림으로 35년간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하여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며, 지역은 경사도 30°미만으로 평지와 같고 토질이 우수하여 개간을 하면 작물이 자랄수 있는 옥토로써 작물재배시 평당 529원씩 환산했을 때 연간 소득이 197ha에서 29억 5천 5백만원이라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실정이</p>		<p>물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추가 시설비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 소요되고, 관리인도 고정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쓰레기장은 1,000명 정도 군단위 쓰레기장 조성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변 농경지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침출수 차단막, 소독, 복토, 쓰레기장 덮개등 위생적 관리에 철저, 주변 진입로포장 사업은 97년 홍덕면 우선 사업으로 책정, 보고하도록하여 주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토록 하겠음.</p> <p>· 동림저수지 주변 제1종 수원합양보안림은 총 266필지 228ha가 지정, 89년 12월 산림법개정시 보안림 지정기준이 저수지 만수위 2km에서 1km이내로 축소된에 현 지정면적은 253필지 197ha이며, 소유자 187명이고, 제1종 수원합양보안림은 보안림으로서 개간, 초지, 과수원 이용으로는 일부 또는 전면적 해제 불가능하며 조림이나 육림등 산림사업은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가능 할 뿐더러 국비보조 사업시에도 선정대상으로 하고 있고 산림소유자 개인 경제적</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므로 이같은 소득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보안림 완전해제 또는 일부해제와 위 사항을 시행할 수 없을 때엔 보안림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산림법 제63조에 산주에게 지급에 대한 군수의 지?</p>		<p>소득을 위한 개발보다는 다수 이용 용수의 저수로 지정되었으므로 지정목적의 달성, 경관보존 등 군민전체의 공익적인 기능을 위해 산림보존 되어야 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보상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산주들이 손실을 입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규정을 만수위 1km에서 500m로 축소, 조정해 주도록 건의 하겠음.</p>

5. 제 49 회 정기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 기 채 의 원	<p>•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발전구상을 통해 21세기 군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청사진이 더 한층 요구되는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실천이 가능한 구상안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되는 구상안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재원별 대책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인바 재원별 확보대책은?</p> <p>•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내에 3,200명방미터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계획인데 이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막대한 군비의 부담과 완공되었을 때 운영비등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이사업에 양여금을 투자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양여금사업에 미치는 영향등 양여금</p>	이 호 종 군 수	<p>• 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금년 6월 20일 한국산업개발연구원측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립중에 있으며 어느 한 분야나 지역에 치우치는 일 없이 골고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충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으며 본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계획수립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년도별 군재정 규모와 투자 가용재원 및 민간부분 참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분석, 고려하여 현실성있는 투자계획과 집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음.</p> <p>• 유스호스텔은 양여금, 도비등 총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유스호스텔은 별도의 양여금을 요청하여 획득한 것이며 우리 고창에 지원되는 다른 일반양여금 사업에는 하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스호스텔 운영방법으로는</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의 환경시책의 기본방향을 보면 환경보전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을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기준을 두고 있는바 쓰레기 종량제 추진결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발생량의 증감사항과 재활용품 선별에 대한 운영성과,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결과와 축산폐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람. · 군의회에서 누차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타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완공한 도로포장사업이 얼마되지 않아 상수도, 하수도, 통신공사 사업등 제시공 되고 있는 사 		<p>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있으나 어느쪽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가는 우리군의 여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종량제는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된 읍면소재지 81개 마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종량제 이후 약 30%가 감소하였으며 재활용품선별 실적은 11월말 현재 총 294톤을 수거하였고 공해배출업소 132개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과태료 6건에 2백8십만원, 배출부과금 7건에 5백4십6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축산폐수방지를 위해서는 시설허가와 신고대상 175농가에 대하여 정기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계몽을 하겠음. · 현재 군에서는 각종사업시행시 도로의 이중굴착을 예방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하여 국토관리청, 한전, 한국통신, 경찰서, 농조관계자등 10명의 위원으로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초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례를 자주 보고 있는바 향후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p>		<p>도로굴착사업을 요하는 기관으로 부터 공사구간, 사업기간 등을 미리 신청하게 하여 1년간의 사업을 미리 조정협의를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건에 20.7km를 처리한바 있으나 긴급복구 또는 농어촌사업등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간혹 굴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충분한 협의 조정을 건친후 시행할 수 있도록 도로굴착사업 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p>
<p>최 석 기 의 원</p>	<p>• 본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타군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림저수지와 두암저수지가 있는데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관리권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볼 때 동림저수지와 두암저수지는 본군 고창농조에서 관리권한을 전환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운곡저수지를 한전이 민영화 되기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우리군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원수를 영광원전에</p>		<p>•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관할농조는 수원공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며 물리면적의 규모에 따라 동진농조와 영광농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농조구역의 변경은 농지개량조합법에 의거 농조간의 상호협의, 조정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그동안 군에서도 이들 저수지에 대해서 관리권 이전 뿐만 아니라 물사용료징수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하여 이를 뒷받침할 관계법과</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서 사용하고 있는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원수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당연히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p> <p>· 97년도 농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총식부 계획면적이 25,926ha로 이중 답 15,713ha, 전은 10,213ha이며 휴경면적은 논의 경우 172ha, 전의 경우 300여 ha가 되리라고 보는데 금년도 휴경은 일소 작전을 전개한 결과 가시 지역 휴경답은 매꿔졌다고 하나 산간오지의 휴경지는 일부 방치되어 있는바 절대 인력이 부족한 농촌노동인력을 고려하여 적은 인력으로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작목이 요구된다고 볼때 산간곡간답에는 자연수를 이용한 승어, 토하양식과 또한 수원이 부족한 지역은 전으로 전환하여 감나무 또는 본군의 특산품인 복분자 나무등을 재배하도록 하고 밭에 대해서도</p>		<p>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한전소유인 운곡댐 시설물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는 세금으로는 송수관과 관리사에 대한 재산세,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운곡댐 원수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징수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사항으로 관련 세법이 개정되도록 내무부에 건의한바 있음.</p> <p>· 금년도 우리농민들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내 175ha에 대해 휴경지 없애기 운동과 쌀생산화 시책을 총력 추진한 결과 종합평가에서 전라북도 1위로 농림부에 추천되어 최종심사중에 있으며 '97년도에도 산간오지등에 방치되어 있는 휴경농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종합적인 생산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밭휴경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밭기반 정비실사와 경쟁우위 작목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생산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군은 야산개발지가 많고 조금만 비가 내려도 차량운행이 어렵게 되고 웅덩이가 많이 생겨 수박등 약간의 충격만 가하여도 피해가 발생하는 상태인바 농기계와 차량이 불편없이 운행할 수 있는 경작로 사리부설 사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97년도 예산에 경작로 사리부설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람. • 매월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는 군민들의 호응이 전무한 상태인바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는 반상회를 폐지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언제든지 행정과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주민청원회의 제도를 도입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군의 사리부설 대상 구간은 농어촌 도로등 총연장 1,072km 중 미포장구간 870km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군에서는 연간 100km정도를 부설하고 있는 실정인바 경작로에 대해 사리부설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여건이므로 우선 긴급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97년도 수정예산에 사리부설 골재구입비를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음. • 지난 수십년동안 매월 25일 정례 반상회는 행정과 주민간에 가교역할을 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획일적인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자율 모임 성격으로 변화되면서 반상회 참석율과 관심도는 저조한 실정인바 '97년부터는 연간 2회 정도로 실천가능한 시기를 정해서 반상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마을 주민들간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열린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연고지 위주로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연고지에서 장기근속을 하다보면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상이라고 판단되는바 읍면간 순환보직을 시행하여 발전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새로운 근무이미지를 구상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행정은 지역주민과 일체감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관계로 대부분 연고지 위주로 배치 근무토록하고 있으나 한곳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자기 발전의 정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사운명을 연고지와 순환 근무제를 병행 실시하여 적극적인 자기발전과 대민봉사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김 상 필 의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세기동안 본군의 소득 구조는 별다른 변화없이 이어져 왔던바 UR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의 여파로 좌시할수만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작목의 개발과 전환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본군에서는 어떠한 대응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임도를 2~3부 능선에 개설하였을시 휴경지화 되어가고 있는 수백헥타의 산간곡간답과 밭에 과실수나 약용작물, 산딸기 등의 작목을 재배할 수 있고 산림욕장등 자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도겸 경작로를 개설한다면 본군의 획기적인 새로운 소득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임도개설사업은 대체적으로 산 하단부에 묘지와 많은산주들이 집중되어 있고 농경지와 임야간의 지표차이로 인한 시공 기술상 문제등을 고려하여 산의 중·상단부에 개설된바 산의 2~3부 능선에 개설할 경우 산불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농경지와 연계한 소득기반 조성에 유리한 경작로 기능도 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산의 어느 부분이 사업목적상 더 효율적 인지와 기술적, 실무적 사항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 하단부에 임도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김 상 필 의 원</p>	<p>반이 조성되리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p> <p>• 금년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23번도로 고창읍 우회도로는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인하여 시가지와 너무 인접한 곳에 개설하고 있어 고창읍 구간 5군데의 평면교차로가 조성되어 준 고속화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대형사고가 수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실상 시내도로 가능한 상태인바 고창읍의 발전과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우회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제2의 우회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볼때 현재 마련중인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에 고창읍 우회도로 개설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p> <p>• 본군의 장기발전계획의 기초시안에 의하면 문화관광산업에 핵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들 체계적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인 종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이 구상되지 못하고 있는바, 본의원의 견해로는 본군의 관광 명소를 종합적으로 영상화하여 소개할 수 있는 영상실과 각종</p>	<p>이 호 중 군 수</p>	<p>• 현재의 고창우회도로는 시가지가 인접하여 각종 사고위험이 있고 장차 고창읍 시승격등 시가지 지역이 확장될 경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아 현재 용역중인 군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시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향후 고창읍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도 우회도로 개설계획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p> <p>• 군민문화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여성회관과 복지회관이 건립되고 월곡택지지구내에 문화광장, 문화거리의 조성, 문화원증축등이 완료되고 나면 동리국악당과 더불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공간이 상당부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판소리 성지로서 본군의 이미지 창출을 위</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유 종 윤 의 원	<p>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공간 조성, 그리고 문화유적지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등을 갖춘 종합 문화센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p> <p>· 96년도 군정시책보고에서 21세기 새고창의 모습과 희망에 넘치는 고창군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과거와 같이 의례적인 농촌 정책으로는 농촌을 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밀물처럼 밀려오는 국제 경쟁력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고창군도 농어촌 발전대책사업으로 금년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투자를 하였다면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였는지?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상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군의 농산물이 국내외의 시장 개척방안과 지원책은 무엇인지?</p>	이 호 중 군 수	<p>하여 판소리 박물관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판소리 박물관이 건립되면 판소리 관련자료 향토사료 전시 관광유적지등 홍보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음.</p> <p>· 우리군의 아산개발지등에 대한 작목전환은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수박, 화훼, 시설채소, 배, 사과, 오이, 가지, 방울토마토, 버섯 등으로 점차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생산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농업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을 위한 사업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농산물의 국내시장 개척을 위해 서울 상설시장 3개소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관악구, 동래구 농산물직거래 사업도 활발히 전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해외시장개척은 금년도 우리군에서 일본, 캐나다 등에 돼지를 비롯 약 3,300여톤을 수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유망수출품목에 대하여 적극 지원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 본 의원은 농촌의 선결문제가 환경개선사업도 있지만 우선 경지정리에 의한 기계화 영농이라고 누차 거론한바 있습니다.</p> <p>본군의 답 면적 15,713ha중 경지정리대상 계획으로 13,109ha가 있으나 경지정리 대상면적중 잔여 면적이 3,309ha가 있는바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9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소규모 경지정리 대상 면적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도 소규모 경지정리 가능 면적과 불가능면적 조사와 년차적 사업계획의 입안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의 대책과 계획은?</p>		<p>· 총 답면적 가운데 경지정리 잔여면적 2,604ha중 급년 1월중에 농림부계획으로 우리군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한계농지 1,755ha를 제외하고 소규모 경지정리 대상지역으로 조사된 면적은 134개 지구에 849ha입니다. 소규모 경지정리 대상지는 중앙과 도의 지원방침이 확정될 경우 지구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경지정리 사업은 우리군민의 기본적인 소득사업임을 감안하여 경제성에 우선한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유 증 윤 의 원	<p>· 선운산은 자연공원법 제5조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79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받아 동법 제15조에 의거 공원관리 및 시설계획과 용도를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으나 제1회 수산물축제를 위하고 공원계획의 변경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여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며 법질서 확립을 우선해야 하는 행정입법을 위배하고 군민을 위한 행</p>	이 호 중 군 수	<p>· 제1회 수산물축제 행사장 부지는 94년 10월 도립공원계획변경결정이 승인된 집단시설지구로 자연공원법과 전라북도 도립공원관리조례에 의거 군수위임 사항으로 시행한 사업이며 본 부지는 수산물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긴급 임시포설로 매립하였으나 수산물축제이후 관광 성수기철에 관광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각종 행사동 놀이공간</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향후 군수께서는 훼손된 농지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p>		<p>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나 본부지 매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방법상 여러 의원님들과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고창발전을 위한 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원 계획법에 의거 체육시설부지 조성시 대채농지 조성비 납부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p>
<p>유길승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농촌은 UR과 WTO체제로 접어들면서 농민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바 조금이라도 고통분담과 위로하는 차원에서 조곡용마대 즉 공판수매용마대를 보조해 줄 용의는 없는지 우리군은 농군으로서 전체의 농민에게 위로의 보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군수의 뜻은 어떠하신지? • 중국에 우리교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방을 선택해서 동족 성회복과 애국적 분위기로 교류가 되어서 서로의 왕래를 통한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바 자생단체의 수익을 앞세운 신뢰성없는 교류보다는행정기관대 행정기관의 믿음이 있고 기본적인 제도화에서 이루어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 	<p>이호중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에서 벼 수매용 마대를 지원할 경우 고추, 무, 땅콩등 타작물과의 형평성문제와 열악한 군 재정력등을 감안할때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므로 농림부와 도에 건의하여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비 지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음. • 현재 진행단계에 있는 중국사양현과의 자매결연 추진은 지난 11월 1일 양지역간의 교류·협력의향서를 교환하였으며 내년 1~2월중에 사전 실무방문단이 상호 왕래한 후 교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를 거쳐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이며 중국교포돕기 운동은 같은핏줄끼리 동포애를 갖는다는 점에서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뭇게 생각하시는지 아픔을 안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동포를 서로 돕고 아픔을 나눠야 할 현실에서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위로의 손길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중국동포돕기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p>		<p>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군단위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언론기관 등의 협조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운동이 전개된다면 우리 군민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음.</p>
<p>고 별 윤 의 원</p>	<p>· 자치시대의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행정내부의 관리위주 조직에서 주민복지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조직이 필요하고 둘째 행정기구의 확대보다는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의 규모로 축소해야 하며, 셋째 사람중심의 조직운영보다는 일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이어야 하고 넷째 조직관리에 비용개념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기양하는 경영적 조직개편을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능쇠퇴조직의 정비나 시설규모나 업무량에 비하여 인원이 많거나 직급이 상향된 조직등을 최우선적으로 개편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조직개편을 강조하는</p>	<p>이 호 중 군 수</p>	<p>· 우리군의 조직은 1의회 2실15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13면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부응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 재조정의 필요성을 갖고 있으며 97년 전반기까지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에 대한 조직인력을 종합진단하고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면 정밀분석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과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경영행정체제로 재조정할 계획이므로 여러 의원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지역과 물물교환이 가능한 나라와 국제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이유는 고창군민의 소득구조는 80%이상이 밭과 논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군민들의 여론은 군지도소를 폐지하고 지도소 직원 일부는 군청에 흡수시키고 잔여인원은 읍면에 배치 특산물개발, 고소득작목의 개발등 피부에 와닿는 기술지도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본지도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p> <p>선진국들의 사교클럽이라 불리는 OECD가입으로 경쟁력 강화만이 선진자치단체가 된다는 현실을 감안할때 국제교류를 관장하는 부서와 정보화 관련 부서의 신설 또는 기능을 보강할 때가 도래했다고 보는바 군수께서는 현원의 범위내에서 신설 또는 보강할 용의는 있으신지?</p>		<p>군도 국제교류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와 정보화 관련 부서에 일차적으로 기구신설 보다는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고 추후 여건 변화 추이등을 지켜 보면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력보강등 적극적인 대응책을강구해 나갈 계획임.</p>
<p>성 호 의 의 원</p>	<p>· 97년도부터 본군 60여명의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하며 특작재배등 작목의 다변화로이에 대한 지도인력의 역할이 전문적인 재배기술의 부족으로 한계에 도달한 실</p>	<p>이 호 중 군 수</p>	<p>·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은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방직 전환시행이 결</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정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인바 농촌지도인력을 농가소득증대와 지도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 '계'단위로 운영하는 행정체제를 품목단위별로 팀을 구성하여 과종에서 수확까지 재배기술을 연구토록해서 토양관리, 비배관리, 물관리, 병충해관리등 재배관리를 연구농가에 일을 접목시키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며 영농지도에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아울러서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단위 육묘 및 묘포장을 설치해서 공익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여 본군에서 전략작목으로 재배하는 수박, 고추, 방울토마토 등의 육묘와 배, 사과, 감나무, 산딸기등 우량 묘목을 생산 품질을 보충해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우리 고창에 자랑인 석정은천은 1991년 2월 25일 관광지로 지정</p>		<p>정될 경우 향후 지도소관리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아가며 우리군에 어느방법이 유리할 것인지 의회와 전문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있게 연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p> <p>· 석정은천조합은 조합원 357명으로 91년 12월에 자율적으로 결</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되어 2001년도까지 10년간 총 358,388백만원의 사업비로 464천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의 주체인 석정은촌개발조합이 토지주들로 구성된 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시설지구분양계약등 법적 책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본군에서는 석정은촌에 대한 홍보를 감안할 때 반드시 법인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석정은촌개발사업은 10년간이라는 긴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성공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볼때 2001년까지의 사업기간을 2~3년 앞당겨서 완료할 절대적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p> <p>· 고창군민의 의지가 담겨있고 고창읍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고창 홍덕간 4차선 진입로가 불행스럽게도 불부합지구라는 이유로 도로계획선을 확보하지 못하여 후손대대로 조소거리가 되도록 기존 도로계획선과 일치하지 않게 공사가 진행되어가고 있는</p>		<p>성하여 운영되고 있고 현재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향후에 시설지구분양등 법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법인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들이 필요에 의하여 법률상 정하고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므로 조합원들에게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법인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석정은촌의 기반조성사업은 9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기반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가시적인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석정은촌개발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p> <p>· 본인은 불부합지구라는 말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정황이 어찌되었던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 불부합지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바로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회도로 진입로 개설에 있어 도시계획상 도</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바 도로 계획선의 확보와 일치된 도로의 선은 도시의 미를 결정짓는 최우선의 관건으로 사명을 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불부합지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도로계획선을 확보하고 불부합으로 인하여 소멸된 면적은 도로개설면적에 포함해서 보상하고 반드시 도로선을 정연하게 시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 불부합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p> <p>· 본군은 전라북도 최서남단에 위치한 관계로 상권이 빈약한데 비하여 상권이 잘 발달된 전주와 광주가 한시간 거리내에 위치해 있고 또한 30분거리 이내에는 부안, 정읍, 영광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본군의 경제력이 분산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농어촌 버스노선 체계가 정읍, 영광에 직접 연결이 되어서 더욱 경제력은 분산되고 있으며 고창에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버스노선 체계가 순조롭지 못해서 정읍, 영광에 보내는 실정인바 농어촌 버스노선을 바꾸어서 경제력과</p>		<p>로 25m를 확보하여 시공해야 했지만 지적불부합으로 23.9m를 확보할 수 밖에 없었고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1.1m 부족분은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 협의 매수를 위해 토지주 설득등 많은 노력을 해 보았지만 토지주의 강력한 반발로 매수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p> <p>· 농어촌버스 연장운행은 군의 경우 군 경계로부터 15km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하고그 이상은 필요시에 도지사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타시군에서 우리군 지역으로 연장 운행하고 있는 현황으로는 정읍시에서 8개노선에 39회 영광군에서 1개노선에 5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타시군으로 연장운행하고 있는 현황은 정읍시로 3개 노선에 19회 영광군으로 2개 노선에 14회를 운행하고 있는바 앞으로 현지조사와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해당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창</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경쟁력을 고장읍을 중심으로 집 중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읍을 중심으로 농이촌버스 노선 이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6. 제 51 회 입시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문	질문요지	답변	답변요지
이 만 우 의 원	<p>· 영광 핵발전소 1~4호기 가동과 5~6호기 건설에 따른 질문</p> <p>-철탑 유해파 피해에 관한 고창군의 정밀한 현장조사 및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군민의 안전을 위해 한전에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으신지?</p> <p>-한전의 온배수 저감대책 이행 여부를 파악 밝혀주시고,</p> <p>-냉각수 취수구 어류피해 저감 방안시기는 언제이며 이행여부는?</p> <p>-영광원전 협의회에서 온배수 확산범위조사, 해양생태계 영향조사등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한전을 적법절차에 따라 고소하는 것이 직무수행에 바람직함 군수의 견해는?</p> <p>-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 지원이 관련법상의 지원 기준이 너무나 불합리적으로 되어있어 법개정등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p> <p>-어업피해의 반대급부인 특별지원사업비는 어업피해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5대 15로 고창군이 불리하게 되어 있음.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p>	이 호 종 군 수	<p>·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법 개정건과 특별지원기금 배정문제등 두가지 사항은 답변드리고, 철탑 유해파 문제, 4.6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 조건이행, 핵폐기물 처리실태 등은 관계기관과 협조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는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p> <p>-군에서는 '96. 8월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시 온배수피해, 철탑, 송수관 설치등을 포함한 배분비율 재조정과 반경 5km를 10km이내로 확대방안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고창군에 특별조항을 신설하여 지원하도록 통상산업부에 직접 방문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지난 2. 18일부터 3. 10일까지 동법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3월 3일 군에서는 군의회원전특위 의견등을 종합개정안 의견서를 통상부와 도에 제출 군의 강력한 뜻을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특별지원금은 현행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5.6호기 원전 건</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것인지 군수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영광 핵 발전소 저준위 핵 폐기물에도 독성이 강한 플루토륨 239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핵 폐기물이 있으며, 임시저장은 몇 년까지 가능하며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p>		<p>설사업비의 1%인 321억원중 15%에 해당하는 48억원배정 받았으며,</p> <p>현재 입법예고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은 15%로 상향조정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군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실정으로 어업 피해등을 고려한 배분방법으로 개정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이 돈 우 의 원</p>	<p>· 유가인상으로 인한 온실재배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해야 될 실정으로 이것을 그대로 방관해야 할 것인가 아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p> <p>· 규모화 추진사업에 대한 우리 관내 실적은 몇농가와 ha가 접</p>	<p>이 호 증 군 수</p>	<p>· 관내 시설하우스는 118농가 37.5ha를 설치 오이, 고추, 방울토마토등 재배 현행 제도상으로는 군에서 시설하우스 농가에 유통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금년 1월부터 유가인상에 대한 농가 보호책의 일환으로 "면세유"제도를 종전 연간 950시간에 1,300시간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음.</p> <p>재배농가의 난방비 절감방법 등을 널리 홍보하고, 농가 필요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면세유"가 지원되도록 중앙에 건의 하였습니다.</p> <p>· 본 제도는 65세이상 농업인이 자경농지를 팔거나 5년이상 장</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수 되었는지?</p> <p>• 표준규격이외의 농림시설에 한해서는 5월부터 피해복구비를 제외한다고 중앙재해대책 본부 발표에 따른 시설현황과 규격미달 시설에 대한 조치?</p> <p>• 농수산부에서 무를 수매하여 북한동포에게 지원에 대한 군수 의견?</p> <p>• 봄가뭄으로 인한 경지정리지구 농업용수 확보 대책은?</p>		<p>기 임대할 경우 정부가 직접 소득보조금으로 1헥타당 258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신청 받고 있음. 우리군은 135ha 3억5천만원(국비)의 지급계획중 지금까지 10농가 10ha 2천5백만원이 신청 되었습니다.</p> <p>• 군내 비닐하우스 총면적은 대략 297.5ha정도이며 이 가운데 시설하우스는 37.5ha 일반하우스 260ha정도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면적 시설실태등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집계되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p> <p>• 우리군 생산 김장무는 총 12만 7천톤정도가 현재 밭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동포 지원은 절차상 문제와 재정상 어려움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금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12개 지구 903ha이며, 현재 종합진도 67%로써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5월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군내 저수율은 88% 수준으로 못</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 영광원전 피해지역 지원금과 원전 5.6호기 증설 반대 대응 방안?</p> <p>· 중산저수지 여수를 심원도전제로 또 연화제로 양수하는 방안에 대한 군수님 의견은?</p> <p>· 소값하락으로 한우 농가들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그에 대한 대책은? -소값은 30%인하 되었는데 고기값은 그대로 공급되는 이유 -1일 산유량 61톤으로 추계되는데 유량에 함유된 유지방과 유단백질의 성분비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가. -경제적 가중치를 적용한 선발</p>		<p>자리와 이양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뭄의 장기화에 대비 관정, 양수장등을 활용한 저수지 담수와 논물 가두기를 적극 추진하고, 저수지 준설사업 62개소와 대형관정 6개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p> <p>· 중산저수지 방류 여수를 도천제에 담수하는 방안은 우선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용수관로 4km, 양수장 3개소 기타 부대 시설등이 필요하며, 총사업비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도천제공사가 마무리되면 유역면적, 담수상황 등 심도있게 검토후 고창 농조와 협의 연구기관에 적극 검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p> <p>· 정부에서는 금년도 소값안정을 위해서 500kg을 기준으로 2백4십만원에서 2백5십만원대를 적정가격으로 설정후 2백4십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축협을 통하여 수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선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계속 무제한 수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값이 하락한 만큼 정육가 인하를</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기존 지수식은 어떻게 배점을 정하고 있으며, 관내 사육환경에 적용 가능한가</p> <p>-젓소 검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검정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는?</p>		<p>유도하기 위해서 축협등 관련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협의하겠으며, 쇠고기 소비 확대등 소값 안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젓소 선발기준지수를 보면 사유량은 6,300kg이며, 성분비는 유지율 3.7%, 유단백질 3.35%, 무지 고형분유 8.75% 이상입니다. 군내 평균 산유량은 6.442%이며, 성분비는 유지율 3.8%, 유단백질 3.2%, 무지 고형분유 8.6%로써 선발기준지수와 비교할 때 우리군의 젓소산유량과 유지율은 기준보다 높으며, 유단백질과 무지 고형분율은 90%이상으로 우유의 질은 좋은 편입니다. • 고창 축협의 젓소능력 검정사업소에 가축개량사 3명이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의 집유권자인 매일우유 집유소에도 검정원 1명이 주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축협, 매일우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 종 위 의 원	<p>· 권한이 없는자 승인은 대법원 판례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을 살펴 보았을때 당연히 무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을 도지사가 승인한 사례도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주민이 만약 환매 요구시 대책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p>	이 호 종 군 수	<p>· 92년 12월 23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26만1천㎡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후 1차로 94년 2월 7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당초 승인된 예정지구면적의 10/100인 2만6천1백㎡범위 안에서 실제로 가로망 변경등 예정지구면적 확장분 2만4천3백1십㎡와 구적오차 증가분 5천7백9십㎡를 포함 합계 3만1천㎡의 면적이 확대된 29만1천1백㎡를 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 득하였고 2차로 96년 5월 18일 필지별 편입지, 제척지, 기타지구 측량에 따른 지적오차 증가분등 3천4백9십5㎡가 발생되어 29만4천5백9십5㎡를 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득하였음.</p> <p>군에서는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도에서는 승인전 동법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 건설부에 질의를 하여 93년 12월 2일 구적오차등의 면적 증가분은 예정지구면적의 축소 또는 확대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설부 회신 결과에 의해 변경승인 하였습니다.</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이용 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용지인 도로율이 27.9%로써 과다하게 책정되므로써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상승케하여 분양받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부담이 과중되었는데 군수 견해?</p> <p>• 택지개발촉진법 제5조 2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시설의 범위는 60/100인데 월곡택지 개발의 주거용지는 44.7/100적게 조성된 이유와 지구내의 우회도로 예정부지 매입 및 공사비 집행과 완충 녹지부지매입 및 시설비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p>		<p>• 건설부의 가로망 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은 일반적으로 시급 이상 도시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읍지역과 같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집단화되지 않은 도시에서는 주거지역 도로율 20~27%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주변도로간 연계, 위험방지등을 위해서 우회도로와 관통도로가 교차하는 삼거리 부근에 교통광장 확보등 불가피하게 27.9%를 책정한 것입니다.</p> <p>또한 분양가격은 공사완료 시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며, 현재 예정가격은 44만 7천원으로 공고 앞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될 수 있도록 공영개발 사업단과 협의중에 있음.</p> <p>•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있어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주거용지 조성 규모는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지역의 인구밀도, 주택공급상황, 주택수요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후 적정한 규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p> <p>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주거용 시설범</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 월곡택지지구내 공용청사지역 나머지 잔여부지를 사회복지시설지구로 변경해서 신축건물을</p>		<p>위 60/100이상이란, 택지개발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단속 주택건설 용지에 있어서, 건축물 연면적중 주거용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비율을 의미하므로 추후 건축행위시 적용되는 사항임.</p> <p>· 택지지구 우회도로 예정부지는 92년 12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승인시 확정된 부지이며 추가로 편입된 부지는 택지지구 우회도로와 관통도로가 교차하는 삼거리 구간으로써 택지지구의 원활한 진입과 주변도로와의 연결체계를 형성하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경계사이의 토지불용지 발생방지를 위해서 변경편입 하였으며, 우회도로변에 설치예정인 완충 녹지시설은 94년 2월 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승인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으로 대로변에 10~15m의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교통 소음차단등 쾌적한 주민 생활편익에 기여하도록 한 것임.</p> <p>· 96년 3월 월곡택지개발 지구내에 임주를 희망하는 기관을 조사해 본 결과 고창우체국, 법원,</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집단으로 신축하시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군수 견해?</p> <p>- 정전시 비상전력(10k) 대체 발전기에 대해 지방재원으로 50% 보조 주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p>		<p>선거관리위원회, 읍사무소등 4개 기관에서 4,400평이 요청되어 본 부지는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의 청사부지에 여성회관이 입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계획 운영 기법상 공용의 청사 부지를 사회복지 시설로 변경한 전례도 없는 상황입니다.</p> <p>- 현행 농림사업 통합 지침상 농기계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본 통합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발전기 구입시에도 반값 공급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6. 제 55 회 임시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문	질문요지	답변	답변요지
김삼필의원	<p>· 고창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1968년 1월 18일에 연장 37,109m에 연면적 339,584㎡로 계획되어 그동안 1976년 12월 7일과 1985년 6월 28일, 1992년 9월 7일 등 3차에 걸쳐서 변경되었고 월곡택지개발사업등 신규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현재는 연장 55,776m에 연면적 790,119㎡로 되어 있음.</p> <p>96년말까지 개설된 실적은 46.8%로서 절반도 안된 실정이며 지금부터 30년전인 1968년 1월 18일 최초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실적은 86.1%로써 미개설된 연장 20,444m의 면적 47,155㎡를 소유한 분들에게서는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수도 없으며 재해만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6m 도로를 개설하므로써 차 한대만 주차해도 차량소통이 안되는 아무 대책없이 추진되고 있음.</p> <p>현재 95년도에 4가구에 대하여 1억여원을보상한 서흥동 소방도로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특정인의 요구나 편견에 의하여 무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창</p>	이호종군수	<p>· 고창읍 도시계획 도로는 총연장 56km중 50% 정도는 개설이 되었고 나머지 미개설된 도로 28km를 개설하는데 총 1,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노선별로 주민이용도, 교통편의성, 현실성 등 제반여건과 군 가용자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후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음.</p> <p>특히 서흥동 도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총 487m중 우선 120m 구간은 소도읍가꾸기로 개설 완료하였으나 95년도에 일부 보상된 나머지 367m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p> <p>현재 6m 계획전 도로등 여건변동에 의하여 도로폭의 조정이 필요한 곳은 금후 도시계획 제정 시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견과 주민공청회등 여론을 수렴한 후 조정되도록 검토 하겠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 상 필 의 원	<p>읍 도로 개설사업 시행계획을 계획년도, 주민에 미치는 영향, 고창읍의 발전등을 공정하게 분석 평가한 자료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고 공개하여 순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도로 폭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 8m로 변경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p> <p>· 본군은 노령산맥의 줄기가 동남간 방향으로 뻗어 나가고 있어 방장산과 문수산, 구왕산, 고산 등 6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하게 있고 산자락에는 산촌개발의 적지마을 여러곳 있음.</p> <p>산촌개발사업은 사업규모가 14억으로서 산촌오지마을을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금년도에 부안면 용산마을에 이어 고창읍 화산마을 고수면 신기, 온사마을 두평, 용두마을, 성송면 암치마을, 아산면 구암마을 등에 연차적으로 확대 유치할 방안은?</p>	이 호 중 군 수	<p>·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는 이러한 사업이 있는 것도 몰랐으나 96년 10월경에서야 국가지원사업으로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와 중앙에 요구한 결과 다행히 우리군 부안면 용산마을이 선정됨으로서 금년부터 국비 7억, 도·군비 3억, 용자 4억등 총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p> <p>정부에서는 전국 150개 마을에 대하여 200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부안 용산마을에 고수 신기, 아산 구암, 심원 담암, 신림 입정등 5개 마을을 농림업 복합형의 산촌 마을로 지정하여 줄것을 금년 8월초 도에 요구하였음.</p>

질문	질문요지	답변	답변요지
김상필 의원	<p>· 임도개설사업은 126km 계획중 96년도 말까지 51km 실적으로 48%의 실적에 있으나 군정질문과 질의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개선책을 지적하였고 시정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아 다시한번 질문을 촉구드립니다.</p> <p>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도개설사업이 산의 7~8부 능선에 위치 시설되고 산불초등 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게 시설되고 있고 일반 산림자원 관리에도 이용도가 낮으며 야산, 산을 이용한과수원조성,곡간담을이용한 송어 양식등 내수면 개발 사업 등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으며 또한 임도와 연결도로가 주요지점에 설치되지 않고 있는바 2~3부 능선에 임도사업을 시행토록 다시한번 촉구함.</p>	이호종 군수	<p>· 지난해 말 군정질문시 임도의 효용성을 높일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2~3부 능선에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심에 따라 금년도 시행중에 2기 노선 6km의 임도 신설사업 추진시 적극 수용함으로써 사업현장의 여건과 지형, 시공기술상 가능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2~3부 능선에 개설토록 하였음.</p> <p>앞으로도 임도가 산불피해 최소화, 산촌마을 주민들의 생활편익은 물론 주변 농경지와 연계한 소득원도로도 기능도 겸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사항등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하겠음.</p>
김준형 의원	<p>· 우리 지방행정도 노인복지행정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임.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1,590명으로서 군 전체인구의 13.2%를 점유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은 한민족 5천년 역사에 배고픔을 해결한 시대의 사람들임.</p>	이호종 군수	<p>· 군내에 경로당이 총 153개소가 있으며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등 연간 1억 2천 8백만원 지원하고 있음.</p> <p>그중 읍면소재지 경로당은 17개소로 연간 난방비가 45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 난방비는 평균적으로 98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우리군의 경노당 수는 157개로 서 운영비가 연간 102백만원이 지원되며 그중 난방비가 31백만 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점진적 으로 읍면 소재지 경노당부터 태양열 난방을 설치하여 노인들 이 심신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 을 위해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p>		<p>태양열 난방시설은 전문시공업 체를 통하여 조사해본 결과 420 리터와 500리터용 두 종류가 있 고 시설비는 3백5십만원 내지 4 백만원 정도로서 그렇게 큰 비 용이 소요되지 않고 있으나 주 로 온수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난방용으로 설치하기 위해 보일 러 시설과 연결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부담이 따르며 순수한 태양열 이용시에도 난방효과는 30%정도 밖에 거둘수 없다는점 등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투자 효과적, 기술적인 사 항등 보다 더 자세히 조사를 한 후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음.</p>
<p>김 준 형 의 원</p>	<p>· 96년말 고창군의 인구수는 8, 265명으로서 여성의 비율이 50. 7%인 41,904명이며 군행정 조 직의 현원은 762명으로서 여성 공무원이 23.3%로서 1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군본청 사업소, 읍면 6급이상 여성공무 원의 27%로서 타 군 평균 36 %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임. 시를 제외한 8개군의 읍·면·동 여성 계장은 완주와 무주, 부안 군은 1명, 임실군은 2명으로 여 성공무원을 우대한다 있으나</p>	<p>이 호 중 군 수</p>	<p>· 97년 8월말 현재 우리군 산하 전체 공무원수는 762명이며 이 중 여성공무원은 23.3%인 178 명이 근무하고 있음. 여성공무 원중 계장급인 6급이상 공무원 은 보건진료소장 14명, 군본청 및 사업소 계장 5명등 19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0.6%를 차지하고 있음. 공정한 인사원칙과 서열 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근무성 적이 우수한 여성공무원에 대해 서도 군청이나 읍면 계장등으로 승진시킬 계획임.</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김 준 형 의 원</p>	<p>우리군은 발탁한 사실이 없음. 여성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여권 신장을 위해서 읍면 계장으로 승진 발탁 인사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p> <p>· 우리 고장은 전통문화예술의 보전육성과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전통국악보급과 문화예술의 잠재력을 관광 상품화하여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4년 11월 29일에 개정된 동리국악당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공연단의 구성과 단원의 자격, 공연관계, 실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놓고도 예산상의 이유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어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창달 시책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됨.</p> <p>판소리의 발상지인 우리 고창군민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고 양질의 문화예술의 혜택속에 모든 군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내년부터라도 동리국악공연단을 구성, 상설운영함으로써 크고 작은 각종행사때 마다 정기 또는 수시공연할 수 있도록 하여 신명나는 고창 문화예술이 숨쉬</p>	<p>이 호 증 군 수</p>	<p>· 우리 고장은 전통적인 소리 문화의 맥이 이어져온 예의 고향으로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91년도에 동리국악당을 개관한후 매년 판소리발표회, 국악연수교실 운영등 판소리의 대중적인 보급과 계승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p> <p>상설 국악공연단에 대해서는 상임단원 13명, 준단원 10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이미 94년 11월에 조례까지 제정한후 군 재정형편상 운영치 못하였으나 앞으로 일정규모의 국악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노 병 열 의 원</p>	<p>는 고창, 살기좋은 문화의 도시로 고창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동리국악단을 구성하여 상설운영할 용의는 없는지?</p> <p>· 고창 도축장은 간이 도축장으로써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시설을 갖추지 않을시 동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2월 31일자로 자동폐쇄되도록 되어 있어 명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이와 같은 긴박한 사항을 별 문제없는 사항처럼 대처하고 있는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p> <p>군민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식육을 공급할수 있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는바 군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반드시 도축장은 본군에 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니 어떻게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람.</p>	<p>이 호 중 군 수</p>	<p>· 고창읍 율계리에 있는 간이 도축장은 법에 의하여 금년말로 자동폐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군에서는 지난해 12월 현 간이 도축장 경영자(이준진)의 도축장 시설 변경 신청에 따라 도축장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변경 허가를 한바 있음. 시설비 24억 정도가 소요되어 정부로 부터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 하였으나 지원 불가 통보를 받았음.</p> <p>축산농가등 군민들의 편익과 군 세수증대,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검토한바 있으나 개인사업에 재정보조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실정이며 우리군과 비슷한 상황인 임실, 부안군에서도 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시설하여 운영되고 있음.</p>

질문	질문요지	답변	답변요지
노병열의원	<p>· 명사십리 해안종합개발계획이 95년에 수립되어 96년 예산 5천만 원을 들여서 96년 7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음. 군수께서는 일부 추진이 안되고 있는것 같이 보이는데 명사십리 해안종합개발 사업은 관광 소득화사업으로서 무한의 자원을 잠재하고 있는데도 타당성조사와 용역시행 과정에서 보여진 욕구가 희석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 차원에서 군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본 개발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간의 추진 내용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p>	이호종군수	<p>· 21C 서해안시대를 대비한 전천후 해양종합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 선진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지난 96년 7월 명사십리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바 있음. 용역실시 결과 총면적 150만평을 해양문화센터 종합상가, 휴양촌, 산림욕장 등으로 개발하는데 총투자비가 6천7백억 정도에 달하는 방대한 계획임. 명사십리 관광지개발은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볼수 있는 총연장 11.2km의 동호~구시포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을 현재 시행중이 있으므로 앞으로 숙박, 휴양시설등 민간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구시포항 개발로 인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명사십리 해수욕장등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사업은 98년 이후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이미 건교부에도 건의한바 있는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이 구체화되며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음.</p>
유길승의원	<p>· 많은 예산과 높은 경쟁으로 건립한 복지회관이 설계의 잘못등 당초 목적과 기대에 부흥하지</p>		<p>· 군내의 읍면 복지회관은 8개소가 있으며 조례에 의거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못하고 있음. 앞으로 운영상황과 군민의 복지회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복지회관 건립전에 충분한 운영계획을 수립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은?</p>		<p>회에서 관리토록 되어있고 현재 예식장, 이·미용실, 경노당, 독서실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복지회관은 흥덕면, 아산면등 비교적 잘 운영되는 곳도 있으나 농촌 실정상 젊은층과 학생이 적고 생활수준의 향상, 교통수준의 발달 등으로 큰 이용 수요가 없어서 시설 사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 읍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 수요에 맞는 용도개발 주민들의 요구시 야간개방등 방안을 강구하며 복지시설이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음.</p>
<p>유 길 승 의 원</p>	<p>· UR, WTO체제에 돌입하면서 농민의 사기는 물론 경쟁력을 잃고 있음. 소값이 극도로 하락하여 양축농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나 소고기 판매가격은 하락전이나 똑같이 판매되고 있어 양축농가와 농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음. 농민의 현실을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보고하여 높은 소비율을 유도 생산농가와 판매상의 수급조절을 맞추어 소값의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p>	<p>이 호 종 군 수</p>	<p>· 축산물 가격 연동제는 80년도 당시 농수산부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도에 축산물 연동가격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별로 연동제를 실시한바 있으나 당시 산지 가격조사 심의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연동제 가격이 시행되는 등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가 88년도에 국제적인 개발 추세에 따라 축산물 가격 연동제를 폐지하고 자율가격제</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원 병 회 의	<p>· 총사업비 18,350백만원이라는 본 군단일사업 규모로서는 가장 큰 미래 유망사업의 하나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지만 96년 12월 28일 의회로부터 의결을 거쳐 고창 화훼생산유통공사 조례가 제정되었고 97년 2월 6일 내무부로부터 공사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97년 7월 11일 공사설립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훼 관련사업을 보면 농림수산부훈령 제877호인 97년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의 화훼생산유통 지원 사업에 의하면 1992년부터 2004년까지 235개소에 917,270백만원의 사업비로서 97년도 사업규모는 15개소에 57,930백만원으로 보조 40%, 용자 40%, 자부담 20%로 지원 추진되고 있으며 화훼계열화 사업에 있어</p>	이 호 증 군 수	<p>로 전환 되었음. 생산지 소값이 하락되었음에도 정육가는 인하가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군 불가관련 부서의 합동 지도등을 통하여 자율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음.</p> <p>· 화훼계열화 사업은 농림부 방침상 15.3ha 규모에 총 183백 5천 만을 용자 80%, 자부담 20% 조건으로 군과 일반기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공사를 설립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그동안 부지는 흥덕면 치릉리로 확정하고 공사설립을 완료하는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해 왔음. 그러나 금년 7월초 농림부에서 첨단원예농단 조성 사업계획을 발족하면서 본 사업과는 달리 30ha의 규모에 총 3백억원을 기존의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과 동일한 조건인 보조 40%, 용자 40%, 자부담 20% 조건으로 지원하고 농업경영체와 일반 기업 간 협력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화훼계열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참여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불균형으로 농가 참여가 불투명하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화훼생산유통 사업이나 첨단 원예단지 조성 사업과 같이 보조금 40%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보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사업을 전면 수정하여 기설립된 공사의 사업과 참여 농가를 분리하여 공사에서는 참여농가가 감당할 수 없는 중요생산 및 분양사업과 유통 및 판매사업 등을 하도록 하고 참여농가는 화훼생산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40%의 정부보조를 지원받아 화훼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며 본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주력 사업인 중요생산 공급사업의 참여업체인 주식회사 동양기전의 별도 사업으로 책정하였는바 큰 중요생산 공급사업은 반드시 공사에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당초 계획을 수정할 의지는 없는지?</p>		<p>되었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개선 방향으로 사업을 1단계 7.5ha, 2단계 7.5ha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본 사업의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생산시설 면적 직영과 분양면적을 조정함으로써 1단계사업은 공시직영 위주로 현행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추진토록 하고 1단계 사업추진 후 2단계 사업은 농가참여방식으로 추진하되 지원기준을 타사업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추진하는 방안 또 육묘시설과 유통시설은 공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재배작목은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조성하는 방안등 본 화훼계열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농림부에 강력 건의하겠음. 앞으로 농림부와 협의하여 결정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수정한후 1단계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계획임.</p>

질문	질문요지	답변	답변요지
<p>성호익의원</p>	<p>· 물은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에게 절대로 필요한 요소임.</p> <p>인류 역사문명도 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발달해 왔다는 사실을 굳이 상기할 필요도 없이 그 중요성은 바로 생명의 영속성과 직결되는 것임.</p> <p>우리 고창군에서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에 보유하고 있는 물도 한 기업체 사업을 유치하고 사업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혹은 지방세 수입 몇억의 증대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양질의 수자원 지역을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해제한다고 하는 합의각서를 97년 1월 4일 작성 공증하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원전 및 홍농읍 상하리와 성산리 지역에 1일 4,000톤을 그것도 매일 우선적으로 고창군 지역보다 먼저 공급한다 했음.</p> <p>고창군에서 오랫동안 지역발전과 더불어 살아야될 고창인의 한사람으로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몇가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p> <p>첫째 : 운곡저수지 일대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고창군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하</p>	<p>이호종군수</p>	<p>· 군에서는 골프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유치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등 절차문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97년 1월 군과 원전 냅스사간에 상수원 보호구역해제에 대한 합의 각서를 교환하면서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었음. 그러나 골프장 부지 위치상 부득이하게 운곡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와 생활용수 공급에 관한 사항이 맞물려 있어 여러가지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것 같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사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는 사항은 합의각서 교환시 골프장 예정지 하단부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관계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조치도 취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운곡댐 수질과 수자원 보호는 가능하다고 판단됨.</p> <p>다음은 영광 홍농지역에 부안댐 광역수를 1일 4천톤씩 공급하는 문제입니다. 86년 9월 우리군의 필요에 따라 운곡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조건으로 원수공급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무상으로 원수를 공급받아</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고 민감한 사안이기때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후 신중히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제라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p> <p>둘째 : 합의각서 4의 10항을 보면 영광에 매일 4,000톤씩 고창군보다 우선 공급하되 부족시는 고창군과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고창군보다 우선 영광에 우리물을 먼저 공급해 주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그것도 부족시 고창군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은 무슨 뜻인지.</p> <p>세번째 : 지난 86년 9월 한전과 원수공급 협약서 제6항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원수를 우리 고창군이 공급받도록 되어 있음.</p> <p>우리군의 용수 확보가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서둘러서 고창군민이 사용해야 할 연간 원수대금으로 1억 6천여만원 정도에 달하는 4,000톤을 원전에 공급함은 부당한 결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p> <p>네번째 : 추진중인 관내 상수도 관망도는 우리군 실정에 의해서</p>		<p>영광 홍농지역에서도 운곡댐물을 1일 4천톤정도 사용하여 왔음.</p> <p>그러나 고창군의 골프장 사업추진상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용수로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사용 예정인 부안댐 광역상수도 3만6천1백톤중 4천톤을 홍농지역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임.</p> <p>지역의 이익과 지금까지 입고 있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군 임의로 협의없이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겠으나 국가 정책사업이고 홍농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로서 불가피하게 부안댐물을 대체 공급토록 한 것이며 부안댐은 상수도 전용댐이므로 원수대는 없고 정수에만 실제 사용한 용량에 따라 지급하게 됨.</p> <p>다음은 부안댐 물을 홍농지역에 공급시 시설계획 사업비 부담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항임.</p> <p>기 수립지 시행중인 부안댐 광역상수도 순수사업계획이 홍농지역 공급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 현재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념스사에서 실시중인 기본설</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계획되어 있음으로 만약 한전에 공급할 경우 관 규격 및 공급위치 사업비 부담 기준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p> <p>다섯번째 : 만약 한전에 공급해 줄 경우 부안댐 광역상수도 개발에 따른 고창군 부담금도 한전이 배분받아야 마땅하며 고창군이 배분받은 36,100톤외에 추가로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p> <p>여섯번째 : 우리 고창군은 지금까지는 가뭄시에도 물걱정 없이 살아왔음. 물이란 사용하기에 충분해야 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량 확보도 필요함. 앞으로 생활용수는 전국 온라인망화할 것임.</p> <p>섬진강과 부안댐도 우리는 믿을 수 없음. 우리는 남에게 줄 물이 없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원전에 물을 공급한다는 것인지.</p> <p>일곱번째 : 우리는 한전을 생각하면 영광과 더불어 비교할때 먼저 자존심부터 상하게 되어 있음. 운곡저수지는 비록 한전이 축조한 댐이지만 우리 고창군행정 구역안에 있음.</p>		<p>계 변경 결과가 남품이 되고 나면 수자원공사, 익산국토청·도 등과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게 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설비용 일체는 냅스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각서 교환시 군에서 부안댐 통합 정수장 건설비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도 흥농지역 공급량 비율만큼 냅스사에서 부담하도록 상의 협의한 바 있음.</p> <p>그리고 부안댐 용수를 3만 6천 1백톤 외에 추가 배분받는 사항은 부안댐 통합정수장 총시설용량이 현재 8만 7천톤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수장 건설시 시설계획량의 100% 정도 여유량이 있으므로 추가 배분받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배분받도록 노력했겠음.</p> <p>그러나 우리군의 용수 공급 계획을 볼때 2011년을 기준으로 용수 최대량은 섬진강 광역수 6천 7백톤을 포함하여 4만 5천 2백톤이며 평균 공급계획량은 흥농지역 4천톤등 4만 1천 7백 4십톤으로 최대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과 비교시 수치상으로는 1일 3,460톤의 여유가</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1일 1,000톤의 식수를 우리 고창 읍민이 공급받는 것보다 고창에 댐을 축조하게 허락해 준 것 자체만 갖고도 그보다 몇배, 몇십배 큰 자원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p> <p>우리는 그에 따른 혜택은 커녕 오히려 천혜의 자원 보고인 해안선을 잃어 버리고 총 149기의 송전탑과 송수관로 매설등으로 인해 피해만 입고 있는 실정은 참으로 안타까울수 밖에 없음.</p> <p>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자존심과 자원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군민과 더불어 대책을 숙고해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있는 상태임.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지역과 군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음. 그리고 물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되기 전부터 지하수는 틀림없이 앞으로 오염된다. 따라서 상수도 물을 조속히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신념으로 일해 왔음.</p> <p>부안댐물 문제도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고창까지 포함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받게 된 것임. 저도 자신있게 군민에게 충분하고 좋은 물을 공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p>

7. 제 57 회 정기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문	질문요지	답변	답변요지
유길송 의원	<p>· 우리의 자연환경은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실현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어촌으로 구성된 군 전체의 마을 구성을 감안하여 마을단위로 쓰레기 소각장 및 수집장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면 이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대기오염을 염려할 수도 있지만 주민의 밀도가 적은 자연부락에서는 쓰레기 생산량을 감안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p> <p>· 우리군은 절대적인 농군으로서 농산물을 이용한 경제성장은 말할 나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넓은 야산개발지와 논농사가 생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실정으로 불안한 농산물 가격과 높은 인건비, 부족한 인력은 농민들을 압박하며 영농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바 일손을 줄이고 영농비를 줄이기 위해 클라식 콤파인을 확대 보급하여 농촌경제를 희생할 의지에 대한 답변 요망.</p>	이호종 군수	<p>· 그동안 읍·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시행해 오던 쓰레기 종량제를 내년도에 군 전지역에 걸쳐 확대시행하여 농촌지역 마을단위까지 청소차량이 순회수거하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마을단위 소각장 설치하는 또다른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고 종량제 시행지역의 경우 불법적인 소각행위를 할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p> <p>· 금년까지 군내에 보리전용 수확기인 크리식콤바인은 총 8대가 공급되어 있으나 금년도 우리군의 보리재배면적은 1,900여 헥타로 작년보다 233%나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리전용수확기의 추가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나 해당 가격이 6천만원으로 군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1대와 농업실적 우수군 시상사업비에서 5대 정</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김 상 필 의 원</p>	<p>· 본군의 농어촌 버스운행 현황을 보면 운행업체는 1개업체로서 운행체계를 보면 상하, 공음 대산면과 부안, 심원, 흥덕, 성내면의 노선체계가 고창읍을 중심으로 직선 노선으로 되어있지 않고 대부분이 지그자그식으로 되어 있어 고창읍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등·하교 시간의 배차시간이 적절하지 않아 본군의 경제권이 분산, 유출되고 있고 고창읍에 위치한 중·고등학교를 진학 희망하는 학생들이 정읍, 부안, 영광, 법성의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인바 농어촌버스운행체계를 대폭 수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대중교통수단의 보다 높은 질적 향상을 위하여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볼때 현재의 농어촌버스 운행허가를 개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의지를 답변 바람.</p>	<p>이 호 중 군 수</p>	<p>· 도를 지원하여 읍면에 끌고루 보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p> <p>· 현재 군내 농어촌버스는 1개 회사에서 38대를 80개 노선에 1일 353회 운영중에 있으나 농어촌 인구감소, 자가용차량의 급속한 증가등 사회적 경제적인 환경변화로 80개 노선가운데 25%에 해당하는 20개 노선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에만 1억원정도, 98년도에 2억 1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실정이며 현행 버스운행체계 재조정과 고창군 중심의 경제 생활권 확보, 버스회사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순기능적인면, 역기능적인면등 여러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내년초 교통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조사한후 합당한 대안을 강구하겠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정은천과 고창읍, 아산간을 연결하는 4차선 확·포장사업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사업이 군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못하고 공사추진에만 편리하고 말은 사업비 불리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관내 주요기관들이 방장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정기를 받아 터를 이루고 있는 풍수지리적 중요지점인 성산뫼산으로 연결되는 맥이 끊기도록 추진되고 있다는데 현재의 절개후 터널공사방법을 터널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노선개설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희망하는 현 도로를 확·포장하여 개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아산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총연장 9.6km인 고창~아산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이며 공사는 98년부터 도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성산 뫼뫼 통과 공법은 지역정서등을 감안하여 도와 우리군이 터널굴착 공법으로 설계해 줄 것을 익산국토청에 강력히 요구중에 있으며 현 도로 확·포장은 건교부의 설계기준에 의하여 4차선 도로개설시에는 교통사고와 도로정체 현상방지, 물류비용절감을 위해서 부득이 신설노선을 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음.
김 상 필 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관내에서도 제일 중요한 지역인 선운산 집단시설지구 행정재산인 현재 공용주차장 이용객들이 대기하는 파고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경쟁입찰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는바 군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시 지적인 사항은 시정하지 않은채 일개 개인에게 합리화하여 매각하였던바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자수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우리의 전통 자수를 육성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산단지로 지정을 하였으며 사업자가 사업비 6천 4백만원을 지원받아 전시 판매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선운산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여 사업장 부지를 선운산에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상가부지를 매각한 것입니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과장은 위치 변경승인등 일련의 행정적 조치없이선운산 도립공원 지구내 사업지구 행정재산의 부지 선정을 위하여 96년 12월 28일 재무과에 대부입대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업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도와준바 있는지? 군민의 편의시설인 공용주차장 이용객 대기시설 지역임을 감안하고 선운산 집단시설지구 번영회의 반발 그리고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장 변경승인 요청시 거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 본 지역을 매각하도록 요구 하였는데 본군 관내 12개 특산단지가 선운산 집단시설지구 상업지역에 부지알선을 요구할시 행정의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알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할지?</p> <p>도시과장은 동지역의 행정재산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 어떠한 이유로도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전환하기 위한 용도폐지를 하여서는 안된다고</p>		<p>매각과정에서 관계부서간의 인식착오로 파고가 전체시설이 매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최소면적 외에는 환수하였습니다.</p> <p>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야기 되었으나 이 사업은 군 특산단지 사업으로 감정가격에 의하여 수의계약 하였으며 건물도 자수의 생산, 전시, 판매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유 종 운 의 원	<p>보는데 왜 용도폐지를 하였는지? 누구의 의지로 용도를 폐지하게 되었는지? 고창자수 개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을 행정행위가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군민의 정서로 보아 본 지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고창자수 특산단지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고 불매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약할 용의는 없는지?</p> <p>· 고창 화훼생산 유통공사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된 규정을 무시하고 의회와 아무런 협의없이 97년 8월 23일 본 사업계획을 수정하였는데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또한 수정된 계획에 의하면 생산시설의 일부를 농가에 임대분양토록하고 불가피할 경우 위탁생산 및 전체 직영도 가능하도록 변경 승인하였는데 동양기전에서 직영이 가능한지? 제56회 임시회 기간중 고창 화훼생산유</p>		<p>· 고창화훼생산유통공사는 그동안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공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부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단계에서 두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난 4월 농림부가 화훼계열화 사업보다 규모가 크고 조건이 유리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농민참여가 어렵게 되어 우리의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둘째는 최근 들어 잇따른 기업도산, IMF 구제금융 긴급지원 대규모 실업등 국내경제가 위축되어 화훼산업</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통공사를 현장 방문하였던바 사무실이 개설되어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와 급여의 재원은 어떻게 어디에서 조달하는지?</p> <p>또한 군비 15억 5천만원과 동양기전 출자금 15억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고창화력생산유통공사 정관 48조와 고창화력생산유통공사조례 24조에 의하면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년도 개시 1개월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97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98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승인내력을 97년 12월 10일까지 서면 제출 바람.</p>		<p>대한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사업을 재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운영상황은 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동양기전의 창업지원금으로 운영하였고 공사설립후는 자본금(30억 5천만원)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였으며 원금 손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p>
유 종 운 의 원	<p>· 날로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우리군 관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97년도 11월 말 현재 관내 등록차량은 총 12,899대로 심각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주차난 해소에 방관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자자할 뿐만 아니라 고창을찾는 손님들이 주차장이 없어 얼굴을 붉히는 사례</p>	이 호 종 군 수	<p>· 현재 군내 차량보유대수 총 1만 3천여대중 4천 5백 2십대 정도인 35%가 고창읍에 집중되어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그동안 군에서는 자구책으로 공직자 차량이용 억제와 관통로 노상주차허용, 중앙로 일방통행 지정등 현장사정을 고려한 주차난 해소대책과 신흥동, 서흥동등 주민 밀접지역의 도로를 개설하</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가 있어 안타까운실정이며 군청 내 주차공간이 차선내에 80대 주차선외 25대동 10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데 직원차량은 245대에 이르고 있어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수요일 차 없는날, 홀·짝수제 운행등 직원들에게 규제만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최대의 서비스라 생각되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군수의 의지는?</p> <p>· 97년도 고창군 최대 목표로 추진한 쌀증산 종합대책 방안으로 군 관내 담면적 14,509ha를 재배하여 쌀 생산량 총 195만가마(45kg)정도 수확하였으나 무한 경쟁시대에 U·R 협상타결로 2004년까지 쌀의 최소시장 접근 물량 4%를 수입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고창군은 현재까지 쌀증산 종합대책만 앞세우고 쌀 판로에 대한 방안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고창쌀 제값받기를 위한 상표를 개발하고 판촉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p>		<p>여 어느정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현재추진중인 천변도로 확·포장사업과 성강주유소에서 귀빈장 구간의 도로확장 정비사업도 완료되고 나면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보려고 후보지 몇곳을 물색하여 검토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어 급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의견 수렴후 주차장 시설 용지를 반영하여 추진 하겠음.</p> <p>· 이미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농촌경제 연구소에서 국내·외 쌀 9개 품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창 동진벼 쌀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명된바 있으며 현재 군에서는 우수한 고창쌀의 재배방법에서부터 판매,유통, 홍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농촌지도소장을 주축으로 군과 농협, 농검이 고창쌀 생산, 판매 기획단을 구성한바 있으며 치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 97년도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을 연말에 무더기로 발주해 부실공사의 우려와 함께 상당건수가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하며 이같은 연말 일괄발주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겨울공사로 인해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다음년도에 예산을 이월하는 행정편의 주위의 행정을 개선하고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p>		<p>· 연말에 사업발주가 많다는 건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지선정과 매입의 어려움, 상급기관의 사전 사업승인, 협의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예산편성후 결정된 수해피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사업등 부득이 늦어진 경우도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이 종 위 의 원</p>	<p>· 그동안 군수께서는 민선자치시대의 초대군수로서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중 잘한 점과 잘못된 점 또한 잘한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10가지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이 호 종 군 수</p>	<p>· 본인이 군수로 취임한지 2년 6개월에 접어들었지만 본인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평가를 하든지 적어도 오직 군민을 위하고 군의 발전을 위한 일에 사심없이 열심히 앞만보고 뛰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군정을 수행하면서 보람을 느낀 사항이라고 한다면 총리이하 장·차관등 두터운 중앙인맥을 바탕으로 국가예산 확보면에서 타 시·군에 비해 큰 두각을 보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행정실적 평가에서도 총 15개 분야에서 중앙과 도로부터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고 시상금이 33억 3천만원에 이르러 여러 언론기관에서도 조정 수행능력이</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 우리 군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조정사업들을 살펴보면 유스호스텔에 33억, 공설운동장 29억 7천, 군민복지회관에 15억 3천, 여성회관에 12억, 북분자시협장 26억, 판소리 박물관에 35억, 청소년수련관에 35억등 총 186억이 투자되고 있으며 군비가 100억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의 1년 지방세는 65억으로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p>		<p>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으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지난번 예산 제안 설명시 의원 여러분께 솔직히 밝혀 드린바와 같이 중산저수지 소유권이전,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건축허가, 관통로 불부합지구, 갈마 양돈단지 조성,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자선정등 사업추진과정에서 군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된점도 있었으나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p> <p>· 사업의 시급성은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7개 사업은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마 왔습니다. 공설운동장을 보더라도 우리보다 군세가 훨씬 빈약한 무주군, 진안군은 이미 건립되어 있고 장수도 36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중에 있지만 그동안 우리군은 각종 행사시 학교운동장을 빌려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는등 하루속히 건립해야 할</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또한 건물이 완성되었을시 운영 관리비등이 매년 15억에서 20억 정도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와 대책은?</p> <p>이러한 사업들이 군민의 소득증대와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p> <p>•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를 이루며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관리제도 정착시키기 위함이며 합리적인 자원 배분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고창군의 97년도 부터 2001년도까지의 중기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사회개발비 2,991억, 경제개발비는 2,719억으로 추계지만 계획을 세웠는데 경제개발비가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개발비를 272억이나 더 많이 세울 이유가 무엇입니까?</p>		<p>실정이며 이들 7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189억원이며 국도비등 지원액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최소한의 부담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특별교부세 확보, 민간 투자유치상 사업비 투자등 군비 투자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p> <p>• 지방재정법에 의거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이며 매년 초에 수정보완을 실시하는 추계에 의한 연동계획의 일종이며 97년도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상 경제개발비보다 사회개발비가 많은 것은 내무부 중기 재정 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사업분류 기준과 실제예산 편성시 기능별 분류기준과의 차이로 사회개발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97년도 예산의 경우 경제개발비가 사회개발비보다 28배가 많고 98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더라도 경제개발비쪽에 22배가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 지방교부세 8억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그동안 국가로부터 고창군의 지방교부세가 적정하게 교부되었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분석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지방교부세 및 시행령 제3조 교부세법 산정기초자료에 의거 본 의원이 검토해본 바로는 29개 항목중에서 미개설도로의 면적이 본 군에는 60,800㎡가 있음에도 누락이 되었고 공원면적 45,398,000㎡가 있음에도 도시공원 1,698㎡만 산정함으로써 약 20억 정도가 누락되었고 98년도에는 594억 6천 3백만원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 98년도 예산 편성시에 441억 5천 3백만원만 계상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방교부세법 제13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용의는?</p>		<p>·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8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감소로 인하여 감액교부된 것이며 산정기준 29개 항목중 도로미개설 사항과 공원면적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중에는 미개설 도로가 없고 지방도는 2개 노선이 미개설 되었으나 이는 도 산정자료에 포함되었으며 도립공원 선운산의 경우도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 교부세 자료에 포함되어 산정 되었습니다.</p> <p>또 98년도 예산안에 교부세를 441억 5천 3백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97년 대비 5% 증액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이며 이후 내무부에서 확정된 금액은 454억 3천 6백만원으로 우리군과 비슷한 완주군보다 67억 6천만원이 많고 부안군보다 48억 2천만원이 많습니다.</p> <p>특별히 우리군에만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하게 배정되었다고는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 우리 고창군은 1차산업에 의존도 인구가 약 65%, 2차산업이 75%, 3차산업이 27.5%이나 군수께서는 농업행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선군수 탄생이후 순수 군비 투자사업으로 농민에게 실시한 사업이 작년에 비해 1억 5천만원이나 적은가?</p> <p>농업행정추진예산 또한 금년이 작년에 비해 30%가 줄었는데 다른 사업에는 엄청난 군비를 쓰면서 농업부문에는 상대적으로 적은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농업분야 투자사업 효율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춘 품목육성 선진화, 현대화 등 시설과 기술보급 등에 주력한다 하셨는데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p>		<p>· 이종위 의원께서 질문한 통계자료는 산업과 소관 농업행정예산 중에서 일부만을 보고 질문하셨으나 우리군은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에 의하여 95년부터 3개년에 걸쳐 총 66개 사업에 2,41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이 가운데 단순히 산업과 소관의 농업투자 예산은 96년도에 비해 97년도가 4개분야에서 37억 3천 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농가의 희망물량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지원방침 변경, 시설채소 생산 유통사업의 보조비율 감소, 농기계 반값지원 규모감소, 제해피해 복구비 지원이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22개 분야는 줄었으나 농어민 학자금지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등 13개 분야에서는 신규지원 또는 증액되었습니다.</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지구 및 야산개발지구에 사리부설 해소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농업용수 해결방안과 경지정리 뒷마무리 하자보수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에는 1억 4천 5백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총연장 150km의 사리부설을 실시하였고 98년도에도 총 250km 정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1억 9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앞으로도 총연장 1,500km나 되는 군내 미포장 도로의 사리부설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임. • 그동안 군에서는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군내 소류지 총 74개소의 준설을 완료하였고 금년 겨울에 36개소를 더 준설할 계획이며 98년에는 대형관정 22공을 개발할 계획이며 대규모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추진중인 연기지구, 암치지구등 대형공사가 98년에 착공 완료되면 농업용수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계산계 개발사업도 기본계획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경지정리사업중 96년 봄에 마무리한 11개지구, 97년 봄에 마무리한 12개지구에 대하여 하자보수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공회사에 98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 대우 지방산업단지의 토지매입이 98년도 하반기로 미루어 짐으로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군수님께서 솔직담백한 마음으로 군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재특용자금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고창에 주차난 해소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창읍 천변도로도 확포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투용 자금은 우리 군민의 피와 혈세로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p>		<p>3월 15일까지 보수를 완료토록 지시하였음.</p> <p>· 그동안 오랜 시간을 끌어 왔던 보상가격 문제가 최근 타결 전망을 보이던중 정부의 경제위기 상황이 초래됨에 따라 신규 투자 억제조치와 국내·외 자동차 시장의 극심한 불황으로 인하여 부득이 98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조치를 요청한 통보를 받았으나 우리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더라도 인내심과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p> <p>· 천변도로 확포장 사업은 고창대교에서 고창교까지가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97년 4월 재정경제원에 재투자금 30억원을 용자 신청하여 97년 8월 내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따로 설치하는 사항은 이 사업이 천변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고 2개년에 걸쳐 완성되는 사업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p>

8. 제 58 회 임시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진 남 표 의 원	<p>·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바로는 자립기반의 구축 즉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되었는지 또한 공직자와 군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시대정신과 부합되는지 등 정신적·물질적 측면 전반에 걸쳐 유형·무형의 지역 홀로서기가 어디까지 뿌리내렸는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과연 군수께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얼마만큼 기반구축을 하셨는지?</p>	이 호 종 군 수	<p>·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다른 지역에 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로 뛰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난 2년 7개월간 중앙에만 평균 한달에 15회꼴로 방문하여 국·도비등 의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으며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모든 열정을 바쳐 열심히 일해 왔다.</p> <p>그결과 174분야에 상을 받은 일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평가기준이 다를수가 있겠으나 자부심을 느끼는 군민도 상당수 있다.</p> <p>재정자립도 문제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세원은 한계가 있고 국·도비등 지원사업에 대해 의존해야할 입장에서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우선 중앙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기업유지와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진 남 표 의 원	<p>· 지역경제의 가름자인 재정자립도가 3년 내내 10%선 밑돌고 있다는 현실은 오늘 우리가 처한 지역 살림살이의 열악한 현 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취약한 재정 상황에서 군은 수많은 사업들을 벌려왔으나 그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특히 지역발전의 방향 설정에서 군민들의 희망과 배치되는 대목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실패라는 낙인이 찍힌 화훼계열화사업 고창지방공단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군이 그동안 추구했던 화려한 미래성의 실체는 아닌지 의회에서 사업에 부당함을 그렇게도 지적하였건만 이것이 독단행정의 당연한 귀착점은 아닌지 서글픈 마음을 지울수 없으며 사기업에서도 있을수 없는 무분별한 행정사용으로 양사업 공단사업소와 공사까지 설립하여 막대한 행정력과 인력 예산을 낭비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p>	이 호 중 군 수	<p>· 화훼계열화 사업은 지난번 정기회의사 직접 답변드렸듯이 타사업에 비해 불리한 조건 하에서 농민참여가 어렵고 세계 화훼시장의 침체등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된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는 개발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므로 시간을 두고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지연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음.</p> <p>군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일부시행 착오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군수에게 있을 것이며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큰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p> <p>추진중인 공설운동장등 7개 사업은 군민의 문화복지향상과 소득증대 지역공동체 활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진 남 표 의 원	<p>·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인구증가, 경제유입방안, 외지자본투자유입방안, 소득원 개발, 신규세원발굴이 선행조건임. 60~70년대 이농을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생존을 위해 도시로 이동하였으나 지금의 이농은 좀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도시로 교육이농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p> <p>지금 고창은 질 좋은 교육에 대한 욕구로 학생들의 외지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자금 외지유출중 첫번째 순으로 꼽을수 있음.</p> <p>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계와 손잡고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전문대의 군내 유치나 지역 특성을 감안 종합대학분교 예를들어 국악과, 사학과, 체육과 등의 분교 유치로 이농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p>	이 호 중 군 수	<p>·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고장 학교 보내기”, “내고장 상품 이용하기” 운동등은 군민 모두가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 나감으로서 전체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해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학교보내기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 검토하겠음.</p> <p>농어촌 버스조정 방안에 대한 용역 연구결과가 나오면 군내 노선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경제력 집중화나 내고장 상품 이용하기 운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군민들도 개인적으로 다소 손해가 나더라도 이러한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 하겠으며 대학유치에도 본인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고창기능대학을 유치하는 결실을 거둔바 있으며 항공전문대학 유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종합대학 분교설립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진 남 표 의 원	<p>· 주정차난이 가중되어 가는 차량 증가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주정차난은 어떻습니까. 우리 고장이 차량으로 뒤덮이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공간이 너무도 태부족하여 심각한 차량 몸살을 앓고 있음.</p> <p>연간 25% 이르는 폭증으로 군내 주차 능력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지 오래이나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p> <p>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시급히 개설 최소한의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상가밀집지역에 군이 앞장서 공용주차장을 확보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도시미관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액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p> <p>또한 국민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공직자부터 자전거타기 운동에 수범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함.</p>	이 호 중 군 수	<p>· 주정차난 해소방안으로 도시계획 도로의 시급한 개설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교통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고창읍내 계획도로 총연장 56km중 남은 28km를 개설하는데 보상비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도비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고창 천변도로 섬강주유소에서 귀빈장까지 도로 국악당옆 도로 등이 개설되면 고창읍내 교통여건을 상당히 호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 재정비시 확보하는 방안등 충분히 검토하겠음.</p> <p>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은 군의 재정능력 설치시 운영방안과 사업효과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회와 협의 결정하겠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진 남 표 의 원	<p>· 주민 자치시대 군민 의식과 군민 화합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됨.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출신지역, 씨족, 학연에 따른 편 가르기가 보이지 않은 인의 장막을 이루고 있으며 군민의 총화를 해치고 있음.</p> <p>갈등과 반목이 추악한 인신공격으로까지 심화되어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있어 흐트러진 자치는 바로 세우고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갈라진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 시급하다.</p> <p>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군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군민제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채택된 제안은 군정주요 시책으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포상을 실시 사기진작을 유도해야겠음.</p> <p>·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제도가 그저 공짜로 주는 금전적 혜택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음.</p> <p>매주 1회 정도를 봉사의날로 지정하여 분야별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거리 환경정화</p>	이 호 중 군 수	<p>· 군민화합 측면에서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각종 공청회, 군정설명회, PC통신 등을 활용하며 군민의 의견 또는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군정에 대한 참여마당을 확대할 계획이며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제는 좋은 방안이므로 군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열린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p> <p>· 사회단체 보조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각 보조단체의 성격에 맞게 사업이 운영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봉사의날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은 각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진 남 표 의 원</p>	<p>등을 실시한후 소정의 봉사료를 지급하면 땀흘려 일하는노동의 즐거움과 함께 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거둘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특히 사회 소외계층인 노인들에 봉사의 기회를 맡긴다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른들의 수범사례로 산교육장이 될 것임.</p> <p>· 민선자치시대 이후 뒷전으로 밀려버린 문화관광사업은 글썽없는 무공해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우리 고장의 문화 관광사업은 연계성이 없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천혜의 자원을 사장시키는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으며 그동안 행정은 연계 관광권 개발을 기회가 있을때 마다 구호처럼 외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천적인 대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p>	<p>이 호 중 군 수</p>	<p>· 연계 관광권 개발을 위하여 재정상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수, 지식묘공원 조성, 선운산개발, 해수욕장 편익시설 등 다방면의 관광인프라 확충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 각 관광지별 특성을 살린 개발을 통해서 관광벨트화 기반을 구축하여 소득과 연계된 개발이 되도록 지속 추진 하겠음.</p>

질문	질문요지	답변	답변요지
진남표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양성, 선운산, 석정온천, 지석묘군 리아스식해안등 이들 자원에 대한 개발 방향이 초기의 기본계획과 영동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하나로 묶어 연계상품으로 내놓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실정임. · 석정온천을 예로 들어보면 호남에서 선두주자로 나서 개발된 온천 사업을 민간에 내맡겨 지금 동네 목욕탕 수준으로 전략하는 수모를 겪고 있어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 적극적인 개발의지가 보이지 않아 개발의 적기를 놓쳐버린 대표적인 예임. · 소중함을 잊고시는 문화재중 하나인 모양성은 후손들의 개발의지 부족으로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유산을 적극개발 군민소득으로 연결 되어야 하는 자원으로 외곽에 민속촌을 조성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며 이같은 	이호종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정온천 개발은 최근 경제난 국과 부동산 거래부진 투자자의 투자마인드 침체등 외적인 상황과 개발 사업자의 자금력등 여러가지 요인이 겹쳐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며 군에서도 상하수도등 일부 기반시설 사업에 7억 원정도 직접 투자한바 있으며 온천진입도로 4차선화사업, 민자유치대상 사업 선정등을 비롯하여 대기업 투자유치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석정온천은 1차적으로 개발 사업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군내 관광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행정적인 뒷받침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 하겠음. · 고창읍성 개발은 지금까지 건물 복원 등에 치중해 왔던 단순개발을 탈피하여 외곽지역과 연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잘 알고 있으며 판소리 박물관도 넓은 의미에서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 민속촌 조성을 비롯하여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진 남 표 의 원	<p>작업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모양성 개발은 절름발이 개발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p> <p>· 판소리 성지의 상정은 동리국악당 운영에도 문제가 있음. 국악당 체계를 모태로 국악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시기이며 국악당~모양성을 잇는 관광라인 형성도 시급한 과제이며 국악대학의 실제 실상은 무엇인가.</p> <p>· 외지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선운산에는 당초 계획과는 엉뚱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94년 전국적으로 보기드문 관광용수 공급을 위한 도솔제가 완공되면서 계곡에 물이 흐르는 정취를 제공, 가족단위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계곡 정비사업등 후속개발이 이루어지지</p>	이 호 중 군 수	<p>기념품 판매코너, 답성놀이 여인상등 볼거리 개발 확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겠음.</p> <p>· 국악원 설립에 대해서는 현 국악당 연수실 운영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판소리 박물관 건립과 병행하며 부족한 연수시설, 확충 등 설립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 하겠음.</p> <p>· 국악전문대학 유치 관계는 판소리 고장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일반인 보급과 후진 양성을 위해 설립 요건을 검토한 결과 180억원 막대한 자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판소리 박물관 건립등 여건을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국악원, 국악대학등 설립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음.</p> <p>· 선운사 개발은 계속 정리 사업에 일부 투자한바 있으나 오·폐수 처리 시설은 부지매입중(26,000평중 17,000평 매입)에 있으므로 추후 도비 지원등 시설비 재원이 마련되면 추진계획이며 시설지구 개발사업은 당초개발 계획안대로 유희시설등 추진기 위해서 우선 부지매입 단계</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진 남 표 의 원	<p>않아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도솔재 축조의 본뜻이 반감되고 있으며 각종 생활 오폐수로 계곡물에 흉물스럽게 섞어 있으나 관로시설 사업을 뒤로하고 유스호스텔 건립이라니 대안 부재 행정이 아닌지.</p> <p>· 칠산어장 천혜의 갯벌로 상징되던 72km에 이르는 우리의 해안이 죽어가고 있음. 영광원전은 국가기간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밀어붙이기식으로 증설을 계속 이에 따른 온배수가 우리의 해안을 뒤덮으면서 우리의 앞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바꾸어 놓고 있음.</p> <p>커다란 자원을 잃어버린 수밖에 없는 현실앞에 행정은 당연히 사력을 다해 대책수립에 나서야 했을 것이며 해안을 사수하는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다는 절연한 의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노력한 대책과 대처 자원개발의 대안적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람.</p>	이 호 중 군 수	<p>에 있으나 선운사 소유 1만평 정도가 소음 공해등 환경오염을 이유로 매입에 불응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꽃단지 조성 방안등 계획변경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p> <p>· 영광원전으로 인하여 상실돼가고 있는 수산자원의 대체개발 차원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 어류양식장, 종묘배양장 시설등 수산증·양식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고소득이 전망되는 굴, 종묘배양 사업등 경쟁력 있는 대체 자원을 집중 개발해 나가겠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진 남 표 의 원	<p>· 명사십리 해수욕장개발 구시포~ 동호관광도로 개설사업 등을 더 이상 늦출수 없으며 여기에 대죽도·소죽도, 동호항을 개설 여객선 해상로를 개설하여 위도와 격포를 연결하여 군산항까지 또 계획에 포함하여 우리 바다는 천혜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관광객이 몰려 들고 있는 그곳과 연계 관광권을 형성하는 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며 동호항을 관광항으로서 해양 위락센타를 만드는 청사진이 나와야하며 삶을 잃어버린 어민들에게 살길을 마련해 주는 조치가 필요함.</p> <p>· 어종별로 양식촌을 지정 관광객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등 잠은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업 방향 설정이 요구됨.</p> <p>한때 칠산어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쌍여도 인근 바다에는 바다 낚시터를 개설 수산업을 관광차원으로 육성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이 요구됨.</p> <p>이같은 사업은 엄청난 재원이 요구되나 재원만 타령하고 있을수 없음. 영광원전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p>	이 호 증 군 수	<p>· 동호항 개발은 95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며 해양위락센타 개발안에 대해서도 어촌종합개발 기본 계획 수립시 구상하였으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됨.</p> <p>· 현재 개발중인 구시포항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1종항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동호항 개발, 해양위락센타개발, 쌍여도 부근 바다 낚시터 개발에 대해서도 원전지원, 국도비지원, 민자유치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리고 군내 전 해안을 쾌허로 만들어 버린 책임자임.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임. 원전은 대체 자원개발에 적극적 참여할 의무가 있음. 우리 모두 뜻과 중지를 모아 새로운 해안을 찾아 나서야 할 시기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군은 농업소득 의존도가 65%에 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임. 농업이 지역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업이고 기간 산업임. 농업에 대한 투자가 연도별 평가와 진단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효과를 발하지 못하고 있음. ·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재원사업인 총 134개 사업중 본군이 실행한 67개 사업이 군내에 투자되는 자금이 770억원이나 흘러갔다 엄청난 돈이 적기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전략사업 선정이 없이 쓰여진데서 비롯되었으며 과연 투자예산의 몇 % 효과를 보았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중소기업 발전은 국가경제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지만 농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서 투자 효과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며 95년부터 농촌구조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대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투자된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점 공감하고 있는 사항임. · 94년부터 97년까지 투자된 농림산업에 대한 사업별 종합적인 투자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된바 있으므로 참고 바람. 사업별 투자의 지침은 농림부계획에 의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그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행정은 그동안 수많은 재원을 즉흥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사용, 고비용 저효율 체계를 자초하고 말았음.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변화의 흐름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투자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67개 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효과와 전망 금후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고장에 전략적 경쟁작목이 있는지 수박, 무, 배추 등을 거론할 것임. 이같은 명성을 얻기까지 행정이 뒷받침한 역할은 무엇인가? • IMF한파가 밀이 닳치면서 농업의 기반이 뒤흔들리고 있음. 사료값, 우유값 상승으로 농업 투자 비용이 급등 축산업과 하우스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임. 사료비에 대한 군비보조, 초지조성비, 보조하우스 농가에 대한 유가보조를 비롯한 품목별 보조사업 확대등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 행정의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함. 		<p>그때 사용 할수도 없음. 앞으로 농업은 IMF체제하에서 정책방향의 변화와 U턴 현상등 농업 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수립등 중앙집권적인 형태에서지방에 많은 부분이 이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에서 이러한 농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전략작목을 선정하여 행정 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장 육성해 나가는 사항을 수요공급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IMF시대에 따른 농업보조 방안은 현재 면세유제도, 농업경영자금 및 농기업경영자금, 예너지절약등 시설자금 등이 지원되고 있고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농산물 유통자금 5억 7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음. 군자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군과 농협, 축협, 수협이 협의하여 사료값, 기름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농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p>· 저비용 신농업을 개발하고 대농민 홍보에 나서야 하며 복분자 연구소 또한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던바 기술농업 전환과 농촌경제의 흐름을 볼때 과감한 폐도 수정이 필요함.</p> <p>고창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특작 지역임.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방향을 바로잡고 기술농업, 고품질농업, 수출농업, 지속관리농업의 4대 목표를 선정, 농업을 살리는 비장한 각오로 복분자 연구소 사업을 보류하시고 가칭 특작 첨단농업인 훈련원 개설을 제안함.</p>		<p>어가에게 이차보전제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추후 구체적인 국·도비 삭감 내용이 시달되면 추경예산 편성시 준비 지원을 고려하겠음.</p> <p>· 농업인 훈련원을 개설하는 방안을 지역농업센터가 농민들이 체험하고 배울수 있는 현장 교육장 기능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설 인력 배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농민훈련 교육기능도 겸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음.</p> <p>복분자 시험장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업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건립하도록 하겠으며 21C 종합농업연구센터 기능을 위해서 단순히 복분자 개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품목의 농업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음.</p>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진 남 표 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한 농산물 유통으로 관내 농민들이 피땀흘려 수확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5일 시장을 권역별로 나눠 농산물 전문 유통센터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센터를 전문 시장으로 상설화하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싼 값에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게 되어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심권에 대단위 농산물 직거래 센터 설립도 병행 추진이 필요함. · 축산사업에도 주민들의 민원에 문제가 많음. 축산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공단지과 같은 농축단지를 개발하여 환경문제도 종합적으로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축산물 두수에 맞추어 분양하는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 호 중 군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시장은 소득 수준의 향상과 교통 발달로 많은 변화로 옛날과 같은 활기를 찾아줄수 없는 실정이지만 농산물유통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은 우선 고창읍에 설립되는 원예작물 도산매센터의 운영 상태를 검토해 본후 기존 5일 시장 기능과 시장별 농산물 유통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추어 질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 했음. · 농축단지 조성은 축산사업으로 인한 다각적인 민원해소를 위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므로 혐오시설 기피 현상으로 인한 부지 선정문제 시설규모와 사업비조달 집단화시 가축전염병 피해발생문제, 종합폐수처리시 운영문제, 입주자 수요, 정부시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으며 가정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위치 선정 문제라 생각됨.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진 남 표 의 원	<p>· 주민행정에 절대적인 행정조직 활성화는 어떠한가? 군의 행정 조직은 형식주의 책임회피 주의라는 중병을 앓고 있음. 특히 위기에 처했을때 명령계통 만 바라보는관료제의 구습에 젖 들어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p> <p>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모들이 먼저 나서서 제 역할을 찾는 노력을 보여야 함. 공무원은 이제 전문인임.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책과 함께 하드웨어적인 조직 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p> <p>프로젝트팀, 매트릭스 조직이 바로 그것임.</p>	이 호 종 군 수	<p>·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마련중에 있는 지방행정 조직개편 방침이 새정부 출범이후 시달되면 우리 군의 조직과 인력도 큰폭으로 개편될 전망이므로 앞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과 대민서비스기능, 부서별 고유역할 정립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프로젝트팀과 매트릭스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반영 하겠음.</p>

제 5 절 민 원 처 리

1. 민원처리 현황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진 정	95.7.12	고창군 원예협동조합장이군범	고창군 원예협동조합의 파산 음모 조작 및 부지매입	· 조합장선거 낙선 불복(불의종)으로 1994청과물공판장 설립에 따른 과수협회 해산, 직매인, 반원, 직원 등 매수와 원예협동조합의 부지매입으로 원협 인수 종용하고 있음.	진정서 철회(95. 8.23)
진 정	95.7.14	심원면 용기리 수다마을 오대성의 3인	선운산 진입로 노선 변경 요청	· '94년도 시행 선운산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현행도로 한편으로만 설계되어 형편에 맞지않아 삼인정마소에서 신덕상회까지 150m구간 진입노선을 접도구역법에 의한 도로양면으로 설계변경 요망	· 현지여건 및 도로설계구조령에 의거 안정성 및 효율성을 검토 설계하였으며, 홍수량에 의한 하천최소단면은 16m이상으로 산출되어 하천폭을 줄일수없이 선형변경 불가능 회신
진 정	95.9.21	대산면 대촌리 이장 정래성의 382인	양돈협업 단지조성 반대	· 중앙종돈장 분뇨수 방출로 외탄천의 어패류 고갈 및 하상의 갯벌화 실정. 군수님 재임기간 불허약속 하였으나 사업계획에 의거 정지작업 완료 상태	· 현지 확인결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간에 마찰이 없도록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 사업시행 촉구 회신
건의	95.9.23	해리면 수동리 이장 오형열의 119인	군도7호선 포장공사 요구	해리면 지도마을에서 소재지 사이 군도7호선 3.3km를 포장공사 건의	군재정 형평상 즉시 해결 못하고 이후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처리 회신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탄 원	95.10.11	성내면 신성리 이숙종 외 3인	도로공사 로 인한 진 동으로 가 물치 양어 장 대량 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물치 월동기를 맞이해 주변의 심한진동소리(덤프차의 매립토및골재하차 진동) 및 도로 요철부분의 진동소리와 지반진동으로 95년 9월 11일부터 양어장에 흙탕물이 발생 9월 19일 가물치대량폐사 발생 변상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으로 보아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 처리토록 조치하고, 농어촌소득증대 사업에 선도적역할 당부 회신
질 의	95.11.20	고창읍 월곡리 류제풍 외51인	월곡택지 보상액에 대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년도 덕산택지지구 90000원, 95년도 월곡지구 68,500원이며, 석정우회도로는 택지에서서 1.5km 떨어진 산간지대인데 59,400원, 월곡지구는 68,500원으로 평가. 93년도 우회도로 230,000원인데 월곡지구 68,500원 등 개별공시지가등 비교 형평에 맞지 않음. 월곡택지 완료후 57억원의 이익 남는다는 보도한바 계약체결 약정서 사본 공개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1.23 재감정평가 결과 평균 26.9%의 높은가격 평가 되었으며, 현재 토지보상 실적이 73%에 이르고 있음. 진정인들의 타 지역과 비교 보상가격 차이는 토지는 도시, 중소도시, 농촌등 지역, 환경, 이용상황 등을 감안 공득법 규정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치로 보상금액 결정되었음. 회신
탄 원	95.11.23	신림면 자포리 김영외 1인	구거 직강 공사에 편 입된 토지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8년 구거 직강공사시 1,313㎡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해준다는 조건도 없이 특조법으로 무단이전 동기 수속을 밟기에 거절 하였음. 타인의 토지는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본인들은 제외되어 수차례에 걸쳐 대책마련에 노력 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 되지 못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이송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음. 회신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진 정	95.12.2	대산면 매산리 조충웅 외13인	고창 동백 유기농 산 영농법인 자동차 인 계	<p>· 94년 2월 15일 동백유기농 산 영농법인 설립(대표 박규상)후,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지원사업 2억5천만원 책정. 면단위 유기영농단위로 지원되어 대표이사 출신 아산면으로 양보하고 병동차만 성내 김정태씨가 사용하도록 이사회 결정.</p> <p>그후 박규상은 남산리 거주 5명과 김정태를 영농조합에 가입시켜, 리단위에서 사업자금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5년 9월 5일자로 동백유기농업법인 관계서류를 인계하였으나 자동차를 인계하지 않아 조속 해결 바람.</p>	<p>· 유기농지도자가 있는 10ha이상의 적정단지를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p> <p>귀 영농조합법인에서 차량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사업결정권자의 사전 승인없이 행한 행위로 고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보조지령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회신</p>
진 정	96.2.12	무장면 송계리 김대열 외28인	화산제저 수지복구	<p>· 1945년 준공당시 화산제는 제방길이 121m, 깊이 4~5m로 24ha의 물리면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토사유입으로 저수지가 매몰되어 지금까지 사용 못하고 있어, 금후 경지정리사업 추진시 병행하여 저수지를 복구하여 줄 것을 요망.</p>	<p>·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이송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음. 회신</p>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진 정	96.2.22	상하면 하장리 김준원	상하면 보 건지소 대 지 사용료 청구	· 1985년도에 면단위 보건지 소 신축계획에 의거 부지 를 선정하였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 김준원씨 소 유 1,292㎡중 144㎡를 차 후 매입키로 구두승락하 고 신축하였음. 그후 매입을 촉구하였으나 예산부족이유로 지연되어 사용료를 청구하게 되었음.	·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이송 처리 회신
진 정	96.3.4	무장면 목우리 한용태	미 확장도 로 400m 구간의 확 장으로 사 내버스 통 행	· 오지마을로서 고창이나 무 장소재지를 가려면 40분 을 걸어가야 버스를 탈수 있어 매우 불편하므로, 94 년도 목동지구 경지정리 당시 미확장구간 400m를 확장하여 버스통행에 불 편이 없도록 조치	·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이 송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 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대 책을 강구하겠음 회신.
진 정	96.3.23	상하면 장호리 노병상 외19인	첨 단 시 설 하 우 스 지 원 자 금 장 기 저 리 자 금으로 전 환	· 1992년 20명이 모여 용두 작목반을 구성 5ha의 시 설하우스를 대형단동으로 설치하는데 농협자금과 자부담을 투자 하였으나,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빚 만 남아 어려움이 있어 농 협자금을 장기 저리지금 으로 전환요망	·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이송 처리 회신
진 정	96.5.20	고창읍 교촌리 박복선 외17인	영 농 기 계 화 단 지 농 기 계 회 수 또는 부담 금 보상	· 월곡택지 감정평가액의 차 이가 심하여, 93년도 월곡 리 상월마을 영농기계화 단지로 선정받아 마을공 동체를 구성하였으나, 택 지조성으로 경지면적 90 %가 없어지므로 불필요 한 농기계를 회수 또는 부 담금 보상을 요구.	·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 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 부 이송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청 원	96.7.10	상하면 용정리 노연국	폐지된 해 안진입도 로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정지구경지정리 사업시행중 지적도상으로는 유일한 바다 진입로가 폐지되었고, 폐지된 도로가 사업지구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지구 포함시키지 말았거나, 포함시켰다면 도로를 재조성 했어야 함에도 도로를 폐지하므로 해서 인접 토지주들의 불이익과 주민의 불편 많음. 	청원서 철회(96. 9.9)
진 정	96.7.12	아산면 상갑리 강현희	고창죽림 ~ 아산면 간 도로확 포장 공사 구간 설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죽림~아산면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설계에 의하면 진정인의 토지 대부분이 도로부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매우 큰 실정 이므로 현재의 설계를 마을쪽으로 변경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시계의 불량, 급커브등 교통사고의 위험지역은 부득이 도로선형을 직선으로 시공하게 되었음. 회신
건의	96.7.22	해리면 변영희 김종하 외11인	통합보건 지소해리 면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해리면에 통합보건지소설치 간곡히 부탁. 통합조건지소 부지 확보하여 언제든지 군에 기부채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이송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진 정	96.7.29	무장면 군의원 이돈우 외6인	통합보건 지소해리 면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장면에 통합보건소 유치를 위해 1,000명의 부지를 확보 기부체납 서남부 중심지역으로 군민들의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며, 도로망 발달로 어디서든지 5분이면 보건서비스를 받을수 있음. 이러한 조건으로 통합보건소 무장유치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이송
진 의	96.9.23	고창읍 읍내리 박경구 외34인	화산쓰레 기매립장 진입로 확 포장 공사 및 환경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매립장 중간 진입로 흙판을 원상복구해 주고, 진입로까지 도로를 놓어 촌도로로 확포장하여 버스노선 개설등 쓰레기장 설치 당시 약속사항을 이행하여 살기좋은 화산, 호동, 노동마을이 되도록 건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부(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이송
진 정	96.10.10	홍덕면 치룡리 오홍석	가설 건축 물(전기양 계축사)자 진철거 보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간 사용하기로 입차한 땅위에 계사를 당초 신고 면적보다 142평초과 신축하여, 자진철거 계고장이 도달하였으나 양계축사가 가설 건축물이므로 몇 년간만 경영하고 철거하도록 부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홍덕면사무소에서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므로, 추인신고 신청을 하시면 관련법 검토후 추인 가능함 통보.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치 리 내 용
탄 원	96.10.14	부산시 동래구 거제1동1463-10 29통5반김용호	무장면 옥산리 산67번지 입야 일부 불하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장면 옥산리 산67번지의 임야가 일제시대때 일본 사람에게 매매한후 다시 매입하였음. 정읍법원의 소환장이 와서 법원에 출두하고 나서야 국유지로 환원사실 알게 되었고, 82년 토지사용료를 물게 되었고, 83년도에는 군울부터 불하하여 저에게 상속되었음. 개발비용을 12차 부담하였는데 현재 2차개발한 토지와 개발되지 않은 임야가 일부 있는데 남은 토지를 저에게 불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산리 산67-1(임)외6필지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69년도에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사항으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국가에 매각 요청하여 승인될 경우 절차에 의거 매각할 수 있음을 추후 통보하겠음. 회신
진 정	96.11.14	무장면 송계리 김형진 외39인	양돈장 건립반대에 따른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계리에 13,500평 규모에 7천마리 수용규모의 양돈장 건립시 수량의 고갈로 농사가 어렵고,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토양오염등의 이유로 마을에 양돈장 건립 절대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돈장은 축협중앙회종돈사업소가 농림부시책사업으로 "전문종돈업육성농장"을 설치 종돈육성 및 분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사업착수전 반드시 주민들과 사전 충분히 협의를 거쳐 민원을 완전 해결후 사업추진토록 촉구 회신
진 정	96.11.21	무장면 목우리 한용태 외265인	도로 확포장으로 시내버스 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지마을로 고창을 가려면 30분을 걸어나가야 시내 버스를 탈수 있음. 저희 마을앞 월평교를 지나 목동사이 약 600m 구간이 미확포장으로 버스 통행이 안되고 있어 조속히 버스가 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민의 숙원을 풀어주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년도 특별교부세 50,000천원을 투입 금년말 실시설계 완료하여 97년도 확장할 계획임 회신

종류	접수일	만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진 정	96.11.25	고창읍 화신동 지역주 민일동	관동도로 연장개설 공사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동도로는 25m의 노폭과 4m의 인도로 2차공사가 마무리되었음. 시외터미널에서 우회도로까지 연장 2차 공사 구간을 보면 도로폭과 인도가 당초 규정에 못미치는 구간이 있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동방다방에서 110m구간이 지적불부합으로 폭 1.1m미확보한 사실 있음. 지적불부합지역 협의매수 불가능하여 폭 1.1m확보가 어려우며, 원광한의원 건물기둥은 도시계획선에 이상이 없으며,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신축건물임.
진 정	97.3.24	상하면 장호리 표제복 외65인	라성 간선 지구 피해 예상 폐수로6개 구간 현대 화시설 요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성 간선지구는 경지정리된지가 오래되어 비가 조금만와도 하단 하천옆 논들이 침수되는 것은 폐수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피해면적이 늘어나고있어 피해예상지역 폐수로 6개구간을 현대화 시설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이송
탄 원	97.8.22	전주 시 덕진구 인후1동 2단지아 파트118 동309호 임영애	공 단 사업 소 백진현 전주시 전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는 병환으로 지난 4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체부자유 3급동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창군청 공단사업소에 근무하는 백지현을 전주시로 전출 부모와 함께 근무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원서 취하
진 정	97.8.27	고창읍 읍내리 문봉주 외91인	모양성 팔 각정설치 와 소방도 로 개설요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양성에 건평 15~20평 규모의 팔각정(목조 및 시멘트 라멘조)건립하여 휴식공간과 기초체력단련장으로 활용 성북동 본동 마을 안길이 비좁은 관계로 화재진압에 애로가 있어 소방도로 개설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창군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고창읍성 복원사업과 연계 복합문화관광지 개발계획임. 도시계획도로 58km중 미개설도로 28km 개설시 막대한 예산소요로 년차적으로 개설 검토중에 있음.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민 원	97.11.12	성내면 고문상 외31명	고엽제 휴 우중으로 어려움 호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갑종씨는 1965년 3월 월 남전 참전후 고엽제 휴우중으로 1982년에 사망하고 아들 고영철은 75세 할머니와 어려운 생활 영위하고 있음. 고영철군은 중학교 2학년 때 전북대병원에서 "유전적 요인에 의한 다발성 위·장관 용종증에 의한 유착성장 폐쇄증"을 선고 받고 소장절제, 절개에 의한 용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따뜻한 손길을 바라는 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이송
민 원	97.11.17	정읍시 이재수 외1인	재 생 자 원 (폐 비 닐, 농약공병) 수거 보상 금지급 요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읍재생공사에서 폐비닐 수거 보조원으로 임명받아 폐비닐 및 농약공병을 수거하였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함. 고창사람이 아닌 정읍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려금 지급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의 재생자원 수거 장려금 집행지침에 의거 지급하고 있음. 도의 농촌 재생자원 수거 장려금 지급지침은 농민이 아닌 전문 수집상 및 고물상등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진 정	97.12.9	성송면 산수리 변준섭	경 지 정 리 남 창 지 구 배 수 구 와 용 수 로 수 로관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년도 남창지구 경지정리를 시행하면서 배수구에 수로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냥 공사한 관계로 비가오면 배수로에 잡초가 우거져 물이 논으로 범람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배수로에 수로관 설치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의 부족한 예산으로 충분한 시설은 어려우나 배수로 수로관 설치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 하겠음. 회신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진 정	98.1.13	고창읍 읍내리 유희조	도시계획 도로폐지	· 읍내리 595-10, 595-8번 지는 68년부터 소방도로 (도시계획선)가 계획되었 는바 30년이 지난 지금까 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저희 집 앞에는 4차선도 로와 뒷편에는 천변도로 가 나 있어 소방도로의 기 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 어 도시계획선을 폐지하 여 주시가 바람.	· 도시계획정비시 교통, 인 구, 개발성장 과정등을 감안존치 및 폐지를 세밀 히 검토할 계획으로 97. 1. 12일기 회선내용임.
진 정	98.3.18	공음면 선동리 감삼량 외44인	건동선 경 지정리 사 업 관련	· 건동선 확포장공사를 하는 데 경지정리 사업과 동일 시 감보율을 적용하는 것 은 절대 할 수 없다. 농어촌도로개설시 편입된 토지는 감정가에 의거 전 액보상을 원칙으로 하여 야 함. 경지정리 사업 시행 신고 된 토지는 지적법에 의거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보 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하 는데 적법성 여부 확인 감보율을 적용 한다면 건 동선 공구만 적용할 것.	· 경지정리사업 시행신고된 토지는 지적법에 의거 토 지 분할을 할수 없어 편 입된 토지의 이전이 불가 능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 환지를 1.2공구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담당환지사 와 협의 결정하겠음. 회 신
진 정	98.4.2	공음면 건동리 김완식 외77인	양돈장 건 립에 따른 환경 오염 피해에 관 련	· 오폐수로 인한 농토의 오염 · 심한 악취로 인해 쾌적한 생활에 지장 초래 · 대형지하수개발로 식수가 고갈되어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	· 97.12.16 농지전용신고 접 수되어 98.3.17반려조치 되었음. 민원인의 돈사신축 재 추 진시 인근주민의 정서와 진정인들의 의사를 참고 처리 계획. 회신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진 정	98.4.27	성내면 신성리 이숙종 외4인	가물치 집 단 폐 사 의 확실한 규 명 과 보 상 요 구	<p>· 84년부터 가물치 양식을 시작하였는데 93년 5월에 영광군 가마미에서 사료를 구입 사육하던중 2어가 폐죽음을 당하는등 4년간이나 집단폐사를 겪었음.</p> <p>다른 곳에서 사료를 구입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영광군 가마미에서 사료를 구입하면 집단폐사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확실한 규명 과 보 상 요 구.</p>	<p>· 집행기관에 이송 한바 사실상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 행정으로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p> <p>수협 의 영 어 자 금 대 출 등 알 선 및 정 부 지 원 사 업 적 극 지 원 하 겠 음. 회 신</p>

제 4 장 기타 의정활동 사항

제1절 해외 의정연수 보고

1. 연수 개요
2. 국가별 일반연수

제2절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1. 의정활동 총결산

제 1 절 해외 의정연수 보고

1. 연수 개요

가. 연수 목적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의회 구현과 지방화시대에 대비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지방자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화·정보화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와 경영마인드 개발에 기여하고 해외 선진의회 운영, 지방자치 도시 견학등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 방안을 강구하여 의정발전에 반영하기 위함.

나. 연수 기간

1996년 5월 4일 ~ 5월 15일(11박 12일)

다. 연수 지역 - 3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피지

라. 연수단 구성

총 15명(의원 10명, 수행공무원 4명, 기자 1명)

구분	직위	성명	비고
의원	의장	이돈우	단장
"	부의장	김기채	부단장
"	의원	유길석	
"	"	최석기	
"	"	노병열	
"	"	이종위	
"	"	전종열	
"	"	원희	
"	"	고운	
"	"	유종운	
사무과	사무과장	안재식	
"	전문위원	오동근	
"	직원	조병관	
"	"	조길행	
기자	전주일보	조봉권	

2. 국가별 일반연수

□ 오스트레일리아

가. 일반 현황

호주는 1777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에 의해 유럽에 소개되었고 그후 수차에 걸친 탐험과 답사후 1829년 영국의 식민지로 선포되었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가도가도 끝이 없는 나라 무한하게 펼쳐지는 황야의 지평선 서구 선진국 호주는 한반도의 약 35배(면적 7,686,844km²)이며, 인구는 약 19백만명 정도이다.

국가 형태는 6개의 자치구와 2개의 특수구로 구성된 연방정부이며 특별구인 캔버라가 수도이다.

전체인구의 80%가 영국계 아이슬랜드계이며 그외는 유럽과 아시아 기타 태평양제국 사람들로 구성되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 국토가 바다로 둘러싸인 특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륙성 기후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약 600mm 정도로 보편적으로 건조한 나라로.

나. 연수 내용

◇ 시가지 풍경

한마디로 한쪽의 그림과 같은 도시이다.

모든 건물들이 스라브형식 건물은 극히 드물고, 바다와 자연림이 잘 조화된 붉은 기와 지붕이 전반적이며 또한 주택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정원은 잔디와 아름다운 정원수로 조성되어 있으며 정원수는 나무가지 하나라도 잘리려면 시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자연을 얼마만큼 중요시하는 나라인가를 알 수 있다.

모든 차량은 좌측통행이며 교통질서를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등이 정해진 시간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횡단할 사람이 신호등 밑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은 우리도 한번 시행해 볼적한 것이었다. 시가지 상점은 오후 5시가 되면 상점안에 불을 켜켜로 철시를 하는 것은 극히 범죄가 없는 나라이지만 혹시 절도행위가 있을시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후 5시를 넘어도 상점문을 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곳들은 한국인 및 일본인이 운영하

는 것을 볼 때 역시 동양인들의 강한 생활력을 엿볼 수가 있었다.

시내에는 잔디 공원이 많이 있어 골프 및 각종 운동시설이 되어 있으며 시민이 어느때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볼 때 국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나라임이 인식되었으며 우리도 이런 제도는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 웨더데일 야생동물원

웨더데일 야생동물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주에만 있는 캥거루 및 코알라와 기타 조류 및 동물들을 기르는 곳으로 동물의 수와 면적은 넓지 않으나 아담하게 구성되어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임.

◇ 블루마운틴 풍경

시드니 서쪽 100km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시드니 근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로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사이로 절벽과 협곡기암 폭포들이 기기묘묘한 광경을 연출한다는 지역이나 이날 많은 비로 절경은 보지 못했으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원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지 개발에도 적극 적용하여야 하겠음.

◇ 시드니 시청 및 NEW SOUTH WALES주 의회 방문

의회를 방문시는 주의회 대변인이 손님을 접대 및 현황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변인이 캔버라에 출장중에 있어 호주인인 상원의원 1명과 중국계인 여성의원 1명과 상호 관심사 토론.

- 연방정부는 외교와 국방·무역등 대외관계에 대한 업무에 한정되어 있고 내정문제는 각주가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 연방의회는 상하 양원제이며 하원의 제1당수가 수상으로 임명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의회도 상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음.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바다에 떠 있는 듯이 자리잡은 오페라 하우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드니의 상징적 건물이라고 한다.

지붕에는 106만장의 타일을 붙여서 마치 조가비를 몇 개씩이나 포개 놓은 듯하다. 안에는 2,700명이 들어가는 콘서트 홀을 비롯하여 1,550명이 들어가는 오페라극장, 드라마극장, 영화관, 아트 갤러리, 음악스튜디오등의 시설이 되어 있었다. 이 아름다운 건물도 당초 설계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설계자가 영국으로 돌아가 개관시에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시드니 바다에 떠있는 이 건물을 볼 때 우리도 자연경관과 조화를 시킨 건축술은 본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본다이 비치 해변

시드니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10km쯤 되는 곳에 있는 해변으로 시드니의 대표적인 휴양지라고 한다.

해변에는 높은 파도가 계속 밀려들기 때문에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서핑을 즐기는 남녀가 많았다.

깨끗한 해변의 백사장은 정말 부러운 자원이었으며, 우리나라에는 이런 곳에 많은 음식점이 생겨 이로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데 호주는 전반적으로 휴양지에 음식점 및 일반 상가가 없으므로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었다.

◇ 캠퍼크 공원

이곳은 해안에 있는 공원으로 해안과의 높은 절벽과 푸른 바다가 정말 잘 어울려진 곳으로 낭떨어지 난간도 철재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로 설치한 것은 자연을 얼마나 중요시 하고 있는가를 느꼈다.

또한 주정부에서 조성한 모든 공원은 입장료가 없는 것이 특색이었음.

□ 뉴질랜드

가. 일반 현황

1642년 네덜란드인 아베타르만이 이곳을 발견했고 그후 네덜란드의 한 지리학자가 자기 고향이 질랜드인데 앞에다 뉴만 부처 뉴질랜드라고 지었다고 한다.

1769년부터 1777년까지 호주를 발견한 제임스 쿡이라는 선장이 뉴질랜드 전역을 세밀히 관

찰후 영국인의 이민이 시작되었고, 원주민의 마오리족과의 토지분규를 치른후 1852년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받았다고 한다.

하얀구름의 나라 동화같은 그림의 나라 남태평양 남단에 자리잡은 뉴질랜드는 눈부시게 깨끗한 환경과 맑은 햇살로 유명한 곳이다.

면적이 268,676km로 일본이나 영국 정도로 비슷하지만 인구가 적기 때문에 매우 넉넉함과 여유를 한층 느낄 수 있는 나라다.

대부분 영국계이며 마오리족인이 약 4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2%정도를 차지하며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인구의 80%가 기독교 믿는다. 해양성 기후에 속하여 온난하며 한서의 차가 적고 고산지대에는 겨울철에 눈이 많고, 남반구 온대에 위치하며 적도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약 9,500km 떨어져 있다. 북섬에는 화산이 많고 지열이 지표에 노출되어 온천 많다.

나. 연수 내용

◇ 사회보장 제도

세계에서 가장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나라중 하나이다.

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있고 실업, 상해, 미망인의 경우에도 수당이 주어진다. 심지어 본인의 과실로 사고에도 국비가 지원되며, 실업자 수당을 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우리에게서 꿈의 복지국가이다.

또 이나라는 여자가 우대받는 나라로 남자가 이혼을 당하면 완전 파산이 된다고 한다. 이혼 시는 전 재산 절반을 여자에게 주어야 하며, 여자가 결혼시까지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하니 우리나라 여성들이 부러워 할 나라다. 교육은 5세부터 15세까지 의무교육이며 누구든지 19세까지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새이민 정책

뉴질랜드 정부는 새이민 정책을 발표 매년 2만명의 이민자를 받아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민 신청을 위한 4가지 제도를 발표 했다.

뉴질랜드의 침체된 국가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인구증가에 의한 적절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젊고 야심있는 젊은이들을 적극 받아드리고 있어 우리 한국인 이민도 상당히 많이 있었음.

◇ 마운틴 쿡 국립공원

크라이스티 처치 국제공항에서 버스로 약 6시간 걸리는 곳으로 크라이스티처치에서 캔터베리 주의 대평원인 목초지 경유 뉴질랜드의 명소인 쿡산(3,764m)은 남섬의 등뼈 구실을 하는 서든 알프스산맥의 중심이며 이 일대에는 3,000m 넘는 산이 19개나 있으며, 쿡 마을의 연간 강우량은 4,000mm가 넘고 비오는 날도 160일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가 도착한 다음날 아침에도 억수같은 비가 내려서 쿡산 정상을 볼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안타까웠으나 퀸스타운에서 돌아올 때 날씨가 화창하여 정상을 볼수 있었다.

◇ 퀸스타운

퀸스타운은 혼한 표현으로 그림같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곳이다. 여왕이 살기에 알맞는 곳이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답게 고원의 공기속에서 질푸른 와카티푸 호반에 펼쳐진 휴양 도시다.

이곳은 3,800명에 불과한 이도시의 인구가 관광철에는 2만명 이상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 크라이스트처치(에이번강, 해글리 공원)

크라이스트처치는 남섬 동해안 캔터베리 평야의 중앙에 위치하는 도시로 오클랜드웰링턴을 연결하는 뉴질랜드 대도시다.

남섬에서 정치, 경제, 문화, 관광등 모든면에서 중심지이며 인구는 약 35만명으로 1850년도에 건설된 도시로 도시의 명칭은 이곳에 대성당을 세울려고 온 사람들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크라이스트처치 출신이었다는 유래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에이번강과 교외의 전원풍경 또한 한쪽의 그림같은 도시로 높은 지역의 주택이 더비싼 즉 좋은 풍경을 많이 볼수 있는 곳이 비싸다고 한다. 모든 주택이 우리나라 별장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에이번강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에이번 강은 맑은물을 자랑으로하는 깨끗한 강이다. 좁은강의 양쪽에는 잔디가 잘자라 있고 또 버드나무도 심어져 있다. 이 에이번강을 따라 산책하는 크라이스트처치 시민이 많았다.

뉴질랜드는 각 가정에 하수도 관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생활하수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빗물등을 흘려보내는 관이다. 모든 생활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후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내보내기 때문에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에이번강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강으로 보존되고 있다. 해글리 공원은 우선 넓다. 182ha라는 면적만해도 우리나라 공원의 수십배나 되는 규모로

고창군 모양성보다 10배가 넘는 공원이다.

공원을 갈로질러 간선도로가 있어 북해글리공원 남해글리공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원 모두가 잔디로 조성되어 스포츠 그라운드로 사용하고 있다.

◇ 오클랜드

인구 80만명인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도시이다.

북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태평양과 태즈먼해 두바다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도시에 2개의 항구를 만들어 해외 무역과 국내 상공업의 중심지로 번영하게 되었으며, 항구에는 아름다운 요트들이 많이 있으며, 오클랜드인들은 집은 없어도 요트는 구입한다고 하며 요트 인구가 많은 만큼 올림픽 대회서도 요트강국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 로터루아

로터루아는 마오리말로 2번째 호수라는 뜻으로 큰호수를 안고 있는 도시다. 인구는 약 40,000명의 도시로 북섬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다. 이 고장은 지열지대의 중심부로 온천, 간헐천, 호수의 도시로 유명하다. 이곳은 마오리족 마을을 잘 보존되어 마오리족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도시이다.

◇ 로터루아 시청

세계 최초의 여성 참정권 확립, 토지개혁, 노후연금법이 제정된 나라로 현재 뉴질랜드는 노동당과 국민당의 양대 정당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도 최종 판결은 영국의 대법원에서 받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영국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수 있었음.

시장은 의회 의장이 겸하고 있으며 로터루아 자립도는 약 90%를 상회하여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극히 적게 받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곳은 마오리족의 문화와 잘 조화를 이루워 시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풍족한 경제력은 훌륭한 정치를 이루워 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로터루아는 한국 교민이 3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90년도부터 한국인 관광객이 약 2만명이 넘고 있으며 로터루아 시청 주관으로 '95. 8월에는 코리아 축제(음식물 축제)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었다고 함.

시청 방문시 시관광도가 한글로 표기된 것을 시장이 직접 나누워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각국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라도 편리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우리도 한번 제고하여야 한다고 판단 되었음.

시의 재정 재원은 토지세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정 추진방침은 도시개발 및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함.

◇ 양목장 및 간헐천

뉴질랜드에서 기르고 있는 각종 양의 종류를 전시하고 양털깎기 시범 및 양몰이 개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는 양목장 답사를 마치고, 30m나 더운물이 높이 솟아 오르는 간헐천과 마오리족의 전형적인 마을에서 마오리족들의 생활사를 답사하였다.

□ 피 지

가. 일반 현황

1643년 독일의 탐험가 아벨 타만에 의해 발견 1874년 영국령으로 합병되었으나, 1970년에 독립하였다.

인구는 약 800천명으로 피지 원주민이 50%, 인도인이 48%, 기타 52%이나 한국인 이민수도 3년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열대성 기후로 사탕수수 재배가 전반적인 수입원이며, 환상적인 자연적 조건으로 국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현재는 국민소득 2,000\$이나 앞으로는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나라 임.

입법기관은 상·하원제로 상원의 정수는 34인으로 임기는 4년이며, 하원의 정수는 70인으로 임기는 5년이며, 상·하원 해산제도가 있다.

인도계 의석 비율이 있었으나 피지계 정권장악으로 인도계는 의원에 진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세계인권협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역 임.

나. 연수 내용

◇ 사 회

인구 800천명인 피지는 원주민이 50%이며, 영국인의 사탕수수재배 노예로 왔던 인도인이

44%를 차지하고 있으나 '93년도 정권교체로 인도인은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피지의 경제력은 가지고 있으나 향후 정치 불안으로 피지를 떠나는 인도인이 많이 있으며, 앞으로도 원주민과 인도인의 갈등은 종교적 문제와 모든 상권 장악에 대한 갈등으로 민족차별이 심화될 것 임.

日記 1997年(禮記4330年)8月29日(水曜日) [B7]

全北日報

가)고창군이 총 부임해 내년 말 3상사업을 추진, 주소통 및 주차난 1호로 있다.

고창군 구상한 들어온 고창현역 1호로 있다.

고창군 구상한 들어온 고창현역 1호로 있다.

고창군 구상한 들어온 고창현역 1호로 있다.

며 폭 12m로 가설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함께 원천부지 활용차 한에서 2억원을 투자해 고수부지 양쪽에 길이 1.4km, 폭 3m의 자연 거 관음도로를 가설,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충주시도시과장은 "주민 편의 증진 및 도심 교통난해소차원에서 전천후 확보장점이 최대 편익이었

다고 들고 '내년 말 전천후 확보 장공사가 완공되면 교통체증완산 및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창군 구상한 들어온 고창현역 1호로 있다.

고창군의회(의장 박희갑)는 27일 제 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6명의 의원이 나와 군정 연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날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화력발전소 조성사업에 비롯 동리국악당 상설운영방안, 운곡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등 군정 연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벌였으나 일부의 경우 제당 상황 질의를 피하여, 향후 개선과제 로 지적됐다.



없는가-동리국악당 공연단 구성 등의 조치는 제정되지 3년이 넘었

설조사만 미치고 전무한 실정이 다-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충북도의원(고수연)-마을 복지향상의 운영 및 관리가 부실한 데 이어대한 대책은 소값은 폭락 하고 있으나 쇠고기같은 요지방육 등이다. 효율적인 출가관리 방안 은 무엇인가.

▲원주도의원(홍익연)-경기 안 성과 전남 해남에 조성중인 원단 원단단지 조성사업은 국고 보조 가 40%나 있는 반면 용역에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사업은 용자만하 고 있어 행정성 없으며 이로인해 사업추진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심도있는 질문... 재·삼탕은 여전

다음은 질문내 용요지.

▲충북도의원(고창용)-고창용 도시계획도로가 30년전에 수립, 현실성이 없고

장기간 방치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함에 따라 재검 토가 필요하며 도로폭도 최소 8m 로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 일도가 7-8부 능선에 개설되고 있어 산 경 초동진화 및 이용도가 낮은 만 들 2-3부 능선에 시행할 용의는.

▲충북도의원(부안연)-노안인 구기 철차 용가추세이나 경로당 세 대한 난방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 한 실정이다. 특수시책으로 경로 당 난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은

동리국악당 공연단 구성 상설운영을 화력발전소사업 국비보조 받아내야 운곡저수지 상수원보호 해제 안된다

으나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관 소리 발상지로서 자존심 회복과 양질의 문화해당공공차원에서 국 악당 구성 용의는.

▲충북도의원(상하연)-축산물 처리 규정에 의거 고창 간이도축 장이 연말에는 폐쇄돼야 하는데 축산농가 및 관내 식육업자들의 불편 해소 및 군민에 양질의 신선 육 공급차원에서 새로 도축장시 설을 현대화할 의지는 없는가. 영 사십리 해안관광개발계획이 타당

에대항 대책은.

▲충북도의원(아산연)-운곡저 수지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시키려면 주민들 의견수렴과 정을 거쳐야 하는데 공청회나 설 명회 등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또한 영광군에 매일 4천 t의 생활 용수를 우선 공급기로 협의각서 를 작성하고 부족사에는 협의결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달라.

[高城-祝東記者]

충북군의회는 화력발전소

고창군의회(의장 박희갑)는 27일 제57회 본회의 제6차 본회의를 열 고 올 한해 농안의 주요 군정에 대 한 질의를 가졌다.

이날 군정질의에서는 모두 4명 의 의원이 나와 화력발전소사업에 비롯 화력발전소사업, 용어촌 소대기근제 등 지역 현안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받았다.

▲충북도의원(고수) -농어촌 조 례기차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 있다. 마을단위의 소대기차장을 설치한다던 소대기차제에 대해 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되는 데 군정연의 대책은. 농촌민부 육으로 영농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조수확을 위한 협력사업이던 확대공급 용의는.

▲충북도의원(고창용)-고창군 의 정책성과 통치권을 입증시키기

위에서는 농어촌버스와 운동노선 조정 및 용차문제기 시급한데 집 행부족의 견해에 대책은 무엇인 가. 선운산 관광시설지구내 공용 버스승강장인 행정계산을 가연하 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특 예외로 사비가 일고 있는 만큼 제 약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충북도의원(신영) -화력발전

소사업이 지난 8월 당초 계획보다 속도 수월했는데도 의회측과 용 언도 협의불치를 거치지 않은 이 유는.

▲충북도의원(정승) -재정특별 용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고창현역도로를 확보장하는 것은 대다수 군민정서와는 배치되는 만 들 지방양어업이나 특별교부세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항 견해는.

/ 고창-연순특기자

선운산승강장 부지 해약할 의사는 협의없이 화력발전소 왜 추진했나

議 政 白 書

발행일 : 1999년 1월

발행처 : 고 장 군 의 회
585-8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편집·제작 : 전 북 의 정 연 구 소

인 쇄 : 전 주 조 화 인 쇄 사
